생명의 땅 으뜸 전남
Land of Life, Best Jeonnam

2022년 친환경농업과 소관
사업시행지침

전라남도
JeollaNamdo

목 차

Ⅰ. 2022년 친환경농업 추진방향 ····· 3

1. 2021년 주요성과 ····· 4
2. 2022년 중점 추진계획 ····· 6
3. 2022년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 ····· 8
4. 2022년 달라지는 지침 내용 ····· 13

Ⅱ. 분야별 사업추진 지침 ····· 25

친환경정책

1 유기농가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사업 ····· 29
2 친환경농산물 전시·홍보 부스 운영 지원 ····· 36
3 친환경농업 육성기금 융자 지원계획 ····· 42
4 친환경농업 전문기술지 보급 지원 ····· 64
5 친환경농업보전 프로그램 ····· 68
6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시범사업 ····· 123

친환경관리

7 친환경농산물 인증비 지원 ····· 149
8 친환경농산물 잔류농약검사 지원 ····· 159
9 논벼 재배농가 왕우렁이 공급사업 ····· 164
10 친환경농업단지 조성 지원 ····· 178

목 차

11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 193

12 유기·무농약 지속 직불제 ····· 214

13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 220

14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 253

15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 ····· 275

16 친환경퇴비 생산시설현대화 사업 ····· 306

17 친환경농산물 안전성 관리강화 ····· 325

유기농육성

18 친환경농업 기반구축 사업 ····· 333

19 친환경농산물 계약재배 청년농가 육성 ····· 419

20 유기농 생태마을 육성 ····· 441

21 유기농 생태마을 활성화 ····· 456

22 친환경 과수·채소 전문단지 조성 지원 ····· 472

23 친환경농산물 생산·유통 인프라 구축 ····· 500

24 과수농가 비가림 하우스 시설 지원 ····· 520

25 친환경 포트육묘 이앙기 공급 지원 ····· 526

26 친환경 중경제초기 지원(신규) ····· 533

27 친환경 해충방제기 지원(신규) ····· 541

Ⅲ. 시군별 사업내역 ····· 547

생명의 땅 으뜸 전남
Land of Life, Best Jeonnam

I

2022
친환경농업 추진방향

2022년 친환경농업 추진방향

목표 및 중점방향

목 표 『유기농을 선도하는 생명의 땅 으뜸 전남』 실현

중점방향 유기농 중심 친환경농업 육성 및 인증품목 다양화

시책 추진 방향

1 유기농 중심의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 육성

2 과수·채소 등 친환경농산물 품목 다양화

3 제4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 추진

4 체험·관광 연계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융복합산업 확산

5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 생산·유통기반 확충

6 친환경농가 소득보전 및 경영안정

7 안정적 판로확보 및 소비자 신뢰구축

1 2021년 주요성과

□ (인증내실화) 유기농 중심의 인증품목 다양화 추진

○ **유기농 인증면적 25,870ha('21.11.기준), 유기농이 무농약 인증면적 추월**

- 무농약 재배농가들의 유기농 재배로 전환이 두드러짐
- 유기농 면적 전국 대비 64% 달성, 전년 대비 2,100ha 증가

◇ **인증현황(2021년 11월말)**

- 인증면적 : 40,463ha(목표 46,500ha의 87%) * 전국 75,216ha의 54%
  - 인증별 : 유기농 25,870ha(목표 24,000ha의 108%) * 전국 40,604ha의 64%
    무농약 14,593ha(목표 22,500ha의 65%) * 전국 34,612ha의 42%
  - 품 목 별 : 벼 27,137ha(67.1%), 벼 이외 품목 13,326ha(32.9%)

○ **소비자 수요에 맞는 과수·채소 중심의 인증품목 다양화 추진**

-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인증단계, 품목별 차등지원) : 46천ha, 400억원

○ **친환경 과수·채소 면적 확대를 위한 품목별 전문단지·비가림 시설 지원**

- 친환경 과수·채소 전문단지 : 9개소, 30억원, 비가림시설 : 4ha, 8.8억원

□ (블루농산) 체험·관광과 연계한 유기농업 확산

○ **친환경농업의 교육·체험, 농촌관광을 연계한 유기농업 복합타운 조성**

- 친환경 유기농업 복합타운 조성('19~'22) : 1개소(구례), 180억원

○ **마을단위 유기농 성공모델 구축을 위한 유기농 생태마을 조성**

- 유기농 생태마을의 주민소득 증대를 위한 생산·가공·체험시설 지원(2개소, 10억원)

□ (소득보전)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 실천기반 마련

○ **친환경농자재 지원으로 지속가능한 농업환경 관리 및 개선·보호**

- 토양개량제 무상공급 : 90천톤, 128억원, 토양개량제 공동살포 17억원
- 유기질비료(퇴비 등) : 440천톤, 203억원, 친환경농자재 : 9,260ha, 81억원

○ **친환경 실천농가 직불금 및 육성기금 지원으로 경영 안정 도모**

- 친환경농업 직불금 : 23천ha, 143억원 , 유가무농약 지속 직불금 : 11천ha, 43억원
- 친환경농업 육성기금 융자지원 : 70억원(융자한도 농가 1억원, 법인 5억원)

○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 실천 및 일반답 농가의 친환경 신규인증 기반 구축**

- 왕우렁이 공급 : 65천ha, 78억원, 친환경농산물 안전성 관리 강화 대책 마련

○ **친환경인증을 획득한 농가를 대상으로 친환경농산물 인증비 지원**

- 친환경농산물 인증비 지원 : 21천건, 137억원

○ **자연재해 대비 유기농가 경영안정을 위한 재해보험 가입비 지원**

- 유기농가 농작물재해보험료 지원 : 9,000ha, 9억원

□ (기반조성) 친환경농업 생산·유통 기반확충

○ **규모화된 단지를 친환경농업 지구로 조성하여 생산·유통시설 등 공동생산 기반 구축**

- 친환경농업기반구축(지구조성) 사업 : 8개소, 57억원
- 친환경농산물 생산·유통 인프라 구축사업 : 2개소, 10억원

○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사업 추진을 통한 친환경농업 공익적 기능 제고**

-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사업 : 5개소, 7.5억원

□ (경쟁력 강화) 안정적 판로확보 및 홍보강화

○ **안정적인 판로구축을 위한 친환경 물류센터 운영 및 친환경농산물 홍보**

- 호남권 친환경농산물 물류센터 매출 실적 : 135억원 달성
- 친환경농산물 홍보 및 유기농 무역박람회 참가(28업체, 84백만원)

○ **소비수요에 부응하는 안전농산물 생산을 위해 의식교육·검증체계 구축**

- 친환경농업 실천교육(친환경교육관) 및 친환경인증농가 의무교육(27천명)
- 잔류농약 검사비 지원(5천건, 800백만원)

《'22년 공모사업 선정실적》

• '22년 친환경농업기반구축사업 공모선정 : 9개소, 85억원(전국 최다 선정)

2 2022년 중점 추진계획

블루농수산과 연계한 체험·관광 중심의 **유기농업 확산**과 소비가 생산을 견인하는 선순환 체계 구축으로 **인증품목 다양화** 및 **친환경 소비문화 조성**

Ⅰ 추진 방향

❍ 친환경농업 구조를 무농약에서 **유기농업 중심으로 '틀'을 전환하고,** 과수·채소 중심의 품목다양화 확대로 **친환경농업 경쟁력 강화**

❍ 안정적인 **친환경농업 생산기반 조성**으로 **소비 확대**에 대응

❍ **농업환경 관리 강화**로 **친환경농업으로의** 쉬운 **전환 유도**

❍ 소비 선순환 구축 등 판로확대를 위한 **신규 소비처 확대·발굴**

Ⅱ 인증 목표

❑ **'22년 인증목표 : 46,000ha** * 도 경지면적 286천ha의 16%

❍ 인증단계 : 유기농 26,000ha, 무농약 20,000ha

※ (유기농면적) '19년) 14,500 → '20년) 23,770 → '21년) 25,870 → '22년) 11,458

❍ 인증품목 : 과수 등 벼 이외 13,326ha(33%), 벼 27,137ha(67%)

※ (벼 이외 품목점유율) '19년) 30% → '20년) 32% → '21년) 33% → '22년) 35%

2021년(11월말) 추진실적

❍ 인증면적 : 40,463ha(전국 인증면적 75,216ha의 54%)

- 유기농 25,870ha(인증면적의 54%), 무농약 14,593ha(인증면적의 42%)

❍ 품 목 별 : 벼 27,137ha(67%), 과수·채소 등 13,326ha(33%)

Ⅲ 중점 추진과제

❑ 유기농 중심의 융복합 산업화 및 품목다양화 추진

- ❍ 교육·체험, 농촌관광과 연계한 유기농업 복합타운 조성 : 1개소, 180억원
- ❍ 유기농중심 마을관광 육성을 위한 유기농 생태마을 육성 : 2개소, 10억원
- ❍ 과수채소인증 확대를 위한 친환경 과수채소 전문단지 조성 : 6개소, 30억원
- ❍ 관행 과수농가의 친환경전환을 위한 비가림하우스 지원 : 4ha, 8.8억원

❑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 실천기반 마련 및 생산·유통시설 확충

- ❍ 친환경농업 실천기반 조성을 위한 비료 지원 : 90천톤, 170억원
- ❍ 무제초제 농법실현을 위한 논 제초 왕우렁이 공급 : 41천ha, 50억원
- ❍ 유기농 확대·품목 다양화를 위한 친환경농업단지 조성 : 46.5천ha, 400억원
- ❍ 단지의 공동생산관리를 위한 친환경농업 기반 구축 : 9개소, 85억원
- ❍ 안정적인 친환경 벼 생산을 위한 포트육묘 이앙기 지원 : 20대, 14억원
- ❍ 친환경농산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생산·유통 인프라 구축지원 : 3개소, 10억원
- ❍ 농업환경개선을 위한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사업 지원 : 5개소, 7.5억원

❑ 친환경농가 소득보전과 경영안정

- ❍ 친환경 농업인 소득 보전을 위한 친환경농업 직불금 지원 : 22천ha, 148억원
- ❍ 친환경농가 경영안정을 위한 유기·무농약 지속 직불금 지원 : 18천ha, 43억원
- ❍ 농가부담 경감을 위한 친환경농산물 인증비 지원 : 21천건, 137억원
- ❍ 유기농가의 재해부담 경감을 위해 유기농가 농작물재해보험 지원 : 10천ha, 10억원

❑ 판로확대를 위한 신규수요처 발굴 및 소비자 신뢰구축

- ❍ 판로확대를 위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시범) : 2,741명, 13억원
- ❍ 잔류농약 검사로 소비수요에 부응한 안전농산물 생산 : 5천건, 8억원
- ❍ 친환경농산물 우수성 홍보를 위한 유기농 무역박람회 참가 : 28부스, 0.8억원
- ❍ 친환경농산물 안정생산·공급을 위한 학교급식 계약재배농 육성 : 110개소, 15억원

3 2022년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

생명의 땅 으뜸전남

농림·축산 분야

01

전라남도

친환경농업 전문기술지 보급지원

친환경농업 관련 재배농법 및 유통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전문기술지(월간 친환경)를 보급합니다.

새롭게 시작합니다

- **사업취지**
  - 친환경농업에 관심 있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정보 제공
- **핵심내용**
  - 도내 친환경농업 실천의지가 있는 농가·청년농업인에게 유기농 실천 선도 기술과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전문 기술지 보급
    ※ 도내 친환경 농가 : 28,000호

시행일 : 2022년 1월 1일

구체적으로 알아볼게요

-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 친환경단지대표, 친환경농업인, 기타 친환경농업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청년농업인 중 2,800가구를 선정하여 지원합니다.
  - 신청인 거주지의 읍·면·동사무소에서 1차적으로 수요조사를 마친 후 대상자를 선정하여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 **무엇을 지원하나요?**
  - 친환경농업 정보(친환경농업 관련 최신기술, 재배농법, 유통 정보 등)를 제공하는 전문 기술지 구독을 지원합니다.
-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 청 인 : 본인
  - 신청시기 : 2021년 12월
  - 신청장소 : 거주지 읍·면·동사무소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및 제공·이용 동의서 각 1부

문 의 친환경농업과 친환경정책팀(☎061-286-6323)

농림·축산 분야

02

전라남도

친환경농업 육성기금 융자 지원 자부담 감면

친환경농업 융자지원 사업 대상자의 부담을 줄여드리기 위해 융자받는 금액(기존 10%)의 자부담을 전액 감면합니다.

이렇게 달라집니다

주요내용	융자 자부담
종 전	변 경
자부담 10% 확보 의무 (융자받는 금액 기준 최소 10% 이상)	▶ 자부담률 10% → 0% 개선

시행일 : 2022년 1월 1일

구체적으로 알아볼게요

· '친환경농업 육성기금 융자지원 사업'이란 무엇인가요?

- 도내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개인 및 법인을 대상으로 친환경농업 실천과정에서 필요한 생산·가공·유통·수출·농자재 생산 관련 자금을 1%의 저리로 융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 도내 1년 이상 거주한 친환경농업인 및 친환경농업 관련 법인, 친환경농산물 유통업체 입점자, 유통업체가 사업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어떻게 사용할 수 있나요?

- 친환경농산물 생산·가공·유통·수출에 필요한 시설 확충 및 설치를 비롯한 친환경농업을 통해 소득증대를 도모하는 사업에 자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단체(법인)
- 신청시기 : 2021년 12월
- 신청장소 : 거주지 읍·면·동사무소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및 제공·이용 동의서 각 1부

문 의 친환경농업과 친환경정책팀(☎061-286-6323)

생명의 땅 으뜸 전남

농림·축산 분야

전 국

03 유기농업자재 지원 확대

친환경농업 집적지구 육성을 위해 유기농업자재 지원대상이 '친환경농가 → 친환경+일반농가'로 확대되고, 토양검정결과 제출이 의무화됩니다.

이렇게 달라집니다

주요내용	
	지원대상
	토양검정 결과

종 전		변 경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일반농가
제출하지 않음	▶	토양검정 결과 제출 의무

시행일 : 2022년 1월 1일

구체적으로 알아볼게요

· '유기농업자재'란 무엇인가요?

- 「친환경농어업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공시 자재로 유기농산물을 생산, 제조·가공 또는 취급하는 과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허용물질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만든 제품입니다.

· '일반농가'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① '22년 친환경농업기반구축 사업에 포함된 일반농지 ② '11~'21년 친환경농업기반구축 사업에 포함되었던 일반농지 ③ 지자체 자율결정 순입니다.

· 토양검정 결과를 왜 제출해야 하나요?

- 토양검정 결과 유기물 함량이 적정 수준 이상인 경우 토양개량용 유기농업자재, 녹비종자 지원을 제한하기 위함입니다.

· 어디에 신청하나요?

- (사업신청) 읍·면·동사무소, 2021. 11~12월, (토양검정) 시·군 농업기술센터, 수시

문 의 친환경농업과 친환경관리팀(☎061-286-6332)

농림·축산 분야

04

전라남도

친환경 중경제초기 지원

인력으로 제초하는 친환경 농업인의 노동력 부담 경감과 왕우렁이 피해답의 기계제초 전환을 위해 중경제초기를 지원합니다.

새롭게 시작합니다

· 사업취지

- 친환경농업인 부담 경감 및 벼 생산성 향상

· 핵심내용

- 친환경 중경제초기(승용형, 보행형, 논두렁형) 지원 ※ 보조 50%, 자부담 50%

시행일 : 2022년 1월 1일

구체적으로 알아볼게요

· 지원내용은 무엇인가요?

- 친환경 중경제초기(승용형, 보행형, 논두렁용) 구입비의 50%를 지원합니다.

승용형	보행형	논두렁용

·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 친환경 벼 인증면적 10ha이상(보행·논두렁 1ha이상)인 친환경농업농가 및 법인을 지원합니다.

· 어떤 점에서 도움이 되나요?

- 고령화 등으로 제초 인력확보가 어려운 친환경농가의 생산비를 절감하고, 벼 생산성을 향상 시킬 수 있습니다.
- 왕우렁이가 방제하기 어려운 잡초(여뀌, 물질경이, 자귀풀 등)를 제거할 수 있어 친환경 재배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 어떻게 신청하나요?

- 친환경인증서와 신청서를 지참하여 가까운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문 의 친환경농업과 유기농육성팀(☎061-286-6843)

05

전라남도

친환경 해충방제기 지원

사과·배·아열대 과수 등 친환경 과일을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친환경 과수농가에 해충방제기를 지원합니다.

새롭게 시작합니다

· 사업취지

- 안정적으로 친환경 과수를 재배할 수 있도록 지원

· 핵심내용

- 친환경 해충방제기(광방충기, 해충포획기) 지원 ※ 보조 50%, 자부담 50%

시행일 : 2022년 1월 1일

구체적으로 알아볼게요

· 친환경 해충방제기란 무엇인가요?

- 해충의 본능적인 생리생태를 이용한 파장 및 광을 활용하여 해충을 기피하거나 유인하여 방제하는 것입니다.

· 지원내용은 무엇인가요?

- 친환경 해충방제기(광방충기, 해충포획기) 구입비의 50%를 지원합니다.

광방충기(GN형+GRC형)	해충포획기

·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 과수 친환경 인증을 받은 농업인 및 법인에게 지원합니다.

· 어떤 점에서 도움이 되나요?

- 친환경 방제로 살충제 사용을 줄여 친환경 과수를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습니다.

· 어떻게 신청하나요?

- 친환경인증서와 신청서를 지참하여 가까운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문 의 친환경농업과 유기농육성팀(☎061-286-6843)

4 2022년 달라지는 지침 내용

사업명	기존 지침	지침 개정	개정 사유
유기농가 농작물재해 보험료지원	5. 사업계획 • 사업량 : 9,000ha • 사업비 : 900백만원 (도비 270, 시군비 630)	5. 사업계획 ○사업량 : **10,000ha** ○사업비 : **1,000백만원** (도비 300, 시군비 700)	매년 유기인증 면적 증가와 기상이변으로 인한 재해 발생 증가 등 보험 가입수요 증가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지원	5-가. 지원자격 및 요건 ○ 신청일 현재 임신부 또는 출산 후 1년 이내 산모	5-가. 지원자격 및 요건 ○ **'21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 또는 신청일 현재 임신부	출산부 지원자격이 추가 사업자 선정 시점에 따라 바뀌어 사업수요 예측 애로
	8-가. 지원신청 및 접수 ○ 발급된 임산부 고유번호 검증 후 쇼핑몰 회원가입 진행	**<신설>** ○ 임산부는 고유번호 **발급일로부터 30일 이내 쇼핑몰 회원으로 가입**하고, 고유번호 발급일로부터 **60일 이내 1회 이상 농산물을 주문**하여야 함.(조건 미충족 시 사업포기자로 간주)	사업포기자 기준이 없어, 한번 선정된 임산부는 일정기간 실구매가 없어도 사업대상자 자격 유지, 집행 부진 요인으로 작용
	8-나. 꾸러미 상품 주문 및 배송 (지원한도) ○ 사업대상자 확정일(고유번호 부여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지원	8-나. 꾸러미 상품 주문 및 배송 (지원한도) ○ 사업대상자 확정일(고유번호 부여일)로부터 **'22년 12월 15일까지 지원**	임산부의 구매 가능기간이 회계연도와 불일치하여 연도 내 집행에 한계
	8-다. 품질관리 ○ 공급업체는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상품에 이상(배송착오, 변질 등)이 있거나 품질에 문제가 발생 시, 교환 및 환불 등 즉각 처리	8-다. 품질관리 ○ 공급업체는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상품제작 및 제공을 위해 「별표」의 공급조건을 준수하여야 함 - (추가) 안전성 검사결과 잔류농약이 검출되었고 해당 농산물이 임산부에게 공급된 경우 **즉시 임산부에게 고지하고 교환 및 환불 실시 후 해당 조치사항을 시·도 및 유통공사에 보고**	잔류농약 검출 시 「친환경농어업법」에 따른 조치 이외 공급업체 선정에 영향이 없어 공급업체의 안전관리 책임의식 저하 우려
	8-바. 제재 및 보고 ○ 친환경농산물에 잔류농약 검출 등 인증기준 위반사항 발생 시 관련 인증의 취소 등 행정처분 의뢰	8-바. 제재 및 보고 **<신설>** ○ (1차) 주의+차년도 공급업체 선정 시 **감점 5** ○ (2차) 경고+차년도 공급업체 선정 시 **감점 10** ○ (3차) 계약해지+향후 2년간 공급업체 **선정 배제**	잔류농약 검출 시 「친환경농어업법」에 따른 조치 이외 공급업체 선정에 영향이 없어 공급업체의 안전관리 책임의식 저하 우려

사업명	기존 지침	지침 개정	개정 사유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사업	5-나. 지원자격 및 요건 ○ 주민협의회, 사업총괄코디, 행정 전담조직 등 아래 사업추진 기반요소 사전 구축한 사업 대상 지역 마을	5-나. 지원자격 및 요건 ○ 주민협의회, 행정담당자 지정 등이 갖춰진 사업대상 지역마을 **(사업총괄코디 삭제)**	현장지원조직 역량 강화
	5-바. 개인활동 ○ 3개 분야, 6개 과제, 14개 세부 활동	5-바. 개인활동 ○ 3개 분야, 6개 과제, **16개** 세부 활동**(2개 추가)** - **둠벙 조성 및 관리** - **바이오차 투입**	탄소감축에 효과가 높은 이행활동 추가
	6-가. 사업신청단계 ○ 시·군은 마을별 농업환경을 검토한 후 마을을 선정하여 시·도에 신청 ○ 시·군은 최근 5년간의 토양, 용수 데이터 확보 및 여건 조사	6-가. 사업신청단계 **<신설>** ○ **친환경농업집적지구는 의무**적으로 사업 신청 ○ 시·군은 최근 **2년간**의 토양, 용수 데이터 확보 및 여건 조사	'친환경농업 집적지구' 연계 강화로 사업성과 제고
	6-다. 세부계획 수립 및 시행단계 ○ 현장지원조직	6-다. 세부계획 수립 및 시행단계 ○ 현장지원조직 **<신설>** - 민간기관에 위탁 운영 가능하나, 현장과의 긴밀한 소통을 위해 지역주민을 참여시키고, 동 기관이 농업환경조사 역량이 있는지 종합 판단 - 전문지원조직에서 제공한 '현장지원조직으로 활동 가능한 민간기관 풀' 참고하여 선정	
		<신설> 6-사. **전문지원조직 운영** ○ 농식품부는 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전문지원조직'을 지정하여 운영 - 전문지원조직은 지자체 현장지원조직의 운영 지원, 지자체 사업계획 및 활동에 대한 성과점검, 지자체·현장지원조직 대상 교육 사업전반 운영 지원	효과적 사업운영을 위해 중앙단위 사업관리체계 구축
	7-나. 보고 및 기타	7-나. 보고 및 기타 **<신설>** ○ 성과관리 및 환류를 위해 전문지원조직 內 전문가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	

사업명	기존 지침	지침 개정	개정 사유
친환경농업 육성기금 융자사업	2. 사업개요 자. 융자한도 ※ 융자받는 금액을 기준으로 10% 자부담 이상 확보	2. 사업개요 자. 융자한도 ※ 당초 : 자부담 10% → 변경 : 자부담 0%, 부담률 전액 면제	친환경농업(법)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자부담률 전액 면제
친환경 농산물 인증비 지원	1. 목적 ○ 명예감시원~ 3. 사업계획 ○ 명예감시원 활동비	<삭제>	'21년부터 명예감시원 활동비는 농관원 예산으로 지원
	나. 사업기간 : 2021. 1월~12월 (12개월간) ○ 사업신청자 선정 : 연중 ○ 지원대상자 확정 : '21.12월 이전	나. 사업기간 : 2022. 1.~10. (10개월간) ○ 사업신청자 선정 : **2022. 1.~10.** ○ 지원대상자 확정 : **2022. 11. 30.까지**	친환경(지속)직불금 사업기간과 동일하게 적용, 시군 간 사업비 재배정을 통한 미집행 예산 최소화
	5. 세부사업 추진요령 가. 사업내용 ○ 지원내용 : 개인·단체인증 소요비용의 항목별 실소요액(지원한도) 80%지원	5. 세부사업 추진요령 가. 사업내용 ○ 지원내용 : 개인·단체인증 비용 실소요액(지원한도*) 80%지원 * 지원한도 : 개인인증2ha미만 570천원 이내, 2ha초과시 ha당 50천원씩 추가	개인인증 지원 한도액 명시
	5. 세부사업 추진요령 가. 사업내용 ○ 지원제한 : 개인농가 기준 인증단계별 지원건수를 2건으로 제한 - (개인인증) 농가기준 최대 2건 지원가능(무농약1건, 유기농 1건)~ - (기타사항) 기타사유에 의해 2건 이상 추가지원이 필요한 경우 도의 판단에 따름	5. 세부사업 추진요령 가. 사업내용 ○ 지원제한 : 개인농가 기준 유기, 무농약 인증단계 구분 없이 최대 **2건 지원** - (개인인증) **농가기준 인증단계 구분 없이 최대 2건 지원** - <삭제>	작물별 생육기간이 다른 인증농가의 유기농, 무농약 인증단계별 각 1건 제한에 따른 애로 해소
	○ 지원항목 - 보조지원 : 항목별 지원액(실소요비용~지원한도액) 합계액의 80%	○ 지원항목 - 보조지원 : 항목별 지원총액(실소요비용~지원한도액)의 80% **< 친환경농산물 인증비 지원항목 산출 예시 >**	인증비 지원항목 산출 내용 예시
친환경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지원	4. 사업추진 다, 검사기관 - (잔류농약)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민간분석기관(공인검정기관, 안전성 검사기관 등), 시군 농업기술센터 등	4. 사업추진 다, 검사기관 - (잔류농약)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시군 농업기술센터, 민간검정기관「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99조에 따라 지정받은 검정기관	관련 법적근거 명시

사업명	기존 지침	지침 개정	개정 사유
	라. 검사대상	라. 검사대상 * 잔류농약 검사기관은「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제126조에 따른 검점증명서 발급	관련 법적근거 명시
논 벼 재배농가 왕우렁이 공급사업	라. 사업추진요령 1) 사업신청·접수 ○ 사업신청 안내 시 왕우렁이 사용 후 수거, 동계작물 재배 또는 깊이갈이를 미실시한 농가는 '22년부터 사업신청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안내	라. 사업추진요령 1) 사업신청·접수 ○ 사업신청 안내 시 왕우렁이 사용 후 수거, 동계작물 재배 또는 깊이갈이를 미실시한 농가는 사업신청 제한	의무사항 미이행 농가 사업 제한
	라. 사업추진요령 5) 사업비 집행·정산 ○ 지불위임 신청하는 경우 본인 서명·인감도장 날인 후,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인감증명서 첨부	라. 사업추진요령 5) 사업비 집행·정산 ○ 지불위임 신청하는 경우 본인 서명·도장 날인 후,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신분증 사본 첨부	인감증명 요구 사무 정비
	<사업신청서식> ※ 구비서류 : 지불 위임 시 신청농가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	<사업신청서식> ※ 구비서류: 지불위임시 신청농가 본인서명사실확인서(신분증 사본)	인감증명 요구 사무 정비
친환경농업단지조성	라. 사업비 지원 ○ 지원조건	라. 사업비 지원 ○ 지원조건 <추가> - 병해충 방제를 위해 공동 방제하는 경우 공동방제 수행자의 사전 공동방제 신고 및 공동방제 확인서 제출 의무화 - 친환경농업단지 내 농약비산 예방을 위한 친환경농업단지 안내 깃발 설치 의무화	공동방제 사전신고제 의무화로 친환경농산물 안전성 관리 강화 친환경농업단지 안내 깃발 설치 의무화로 안전성 관리 강화
	라. 사업비 지원 ○ 인증단계별 1ha당 지원한도 ※ 무농약 벼 6년차 이상은 2021년부터 지원중단(무농약 벼 5년차는 2021년까지만 지원하고 2022년부터는 지원을 중단할 계획임) * 2022년부터는 '유기농 벼'지원 한도를 ha당 1,000천원으로 인하할 계획임	라. 사업비 지원 ○ 인증단계별 1ha당 지원한도 ※ 무농약 벼 **5년차 이상은** 2022년까지만 지원하고 2023년부터 지원 중단할 계획임* **2023년** 부터는 '유기농 벼' 지원 한도를 ha당 1,000천원으로 인하할 계획임	친환경농업단지 인증 확대를 위해 무농약 벼 5년차 지원제한 1년 유예, 유기농 벼 지원 한도 인하 '23년으로 연기

사업명	기존 지침	지침 개정	개정 사유
	바. 저비용 친환경농법 실천 확대 ○ 단지에 대한 공동방제를 추진할 경우는 단지대표(또는 단지대표가 지정한 대리인)가 입회하여 사용약제(제제)를 샘플을 채취하고 확인하여야 한다.	바. 저비용 친환경농법 실천 확대 ○ 단지에 대한 공동방제를 추진할 경우는 공동방제 수행자는 반드시 공동방제 신고서를 사전에 시·군에 제출하고, 단지대표(또는 단지대표가 지정한 대리인)는 입회하여 사용약제(제제) 샘플을 채취하고 확인하여야 한다.	공동방제 사전신고 의무화
		<서식 1> 친환경농업단지 공동방제 신고서 <서식 2> 친환경농업단지 공동방제 확인서	서식 추가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2. 주요내용 가. 사업대상자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정보 및 동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임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임업인 및 농업법인 ○ 다만 경영정보 등록이 불가한 대지(경작지로 이용) 등에서 유기·무농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 및 농업법인은 지원 가능 ○ 경영체 등록을 원칙으로 하되 ---------- 지목이 임야인 토지는 산지전용허가를 득해야 함	○ ----------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임업인 및 법인 ○ 삭제	법 조항 현행화 '21년 한시적으로 적용한 사항으로 삭제
	다. 지원대상 <지원대상 농지> ○ 2021년 사업기간('20.11월~'21.10월)	<지원대상 농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지로 2022년도 사업기간('21.11월~ '22.10월)	공익직불법에 따라 근거법 추가 및 사업기간 변경
	마. 지원형태 및 사업범위 <지급단가> ○ 기본형직불제에서 논으로 지원받은 대상농지는 친환경직불제에서는 논단가로 지급, 그 외 농지는 공부상 지목과 재배작목에 관계없이 밭 단가로 지급하되 채소·특작·기타와 과수로 구분하여 지급	<지급단가> ○ ---------- ---------- 친환경직불도 논단가로 지급. 그 외 농지는 농지의 이용에 따라 구분하여 지급	농지의 이용에 따른 직불금 지급을 위한 자구 수정

사업명	기존 지침	지침 개정	개정 사유
	3. 사업신청 및 선정 가. 사업홍보 및 신청 <사업계획 변경> ○ '21년 사업신청 후 사업대상자, 인증기관, 인증종류, 농지현황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사업신청 변경신고서[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신청기관(읍·면·동)에 제출하도록 하고, 사업기간 중 인증이 종료 예정인 농업인에게는 향후 인증 종료 전에 인증연장 신청을 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반드시 공지	<사업계획 변경> ○ 사업신청 후 사업대상자, ---------- 인증 종료 예정인 농업인에게는 인증이 종료되기 전에 인증이 갱신되어야 한다는 내용을 반드시 공지	「친환경법」 제21조, 시행규칙 제17조에 근거한 수정
	<사업신청 기간> ○ 농업 또는 임업경영정보를 참조할 수 없는 대지 등 필지는 AgriX에 개별 자료 입력 필요	○ 삭제	모든 사업대상지는 농업경영체를 등록해야 함(공익직불법)
	<사업신청 장소> ○ 전년도 10월 이전 신규 인증을 받은 필지는 금년도 사업 신청이 가능하며 금년도 중 반드시 인증갱신을 통해 사업기간 동안 인증기관의 관리가 지속되어야 함.(인증기간 종료 전에 갱신 신청을 한 경우 인증기관의 관리 중인 것으로 인정)	<사업신청 장소> ○ 전년도 10월 이전 신규 인증을 받은 필지는 금년도 사업 신청이 가능하며 금년도 중 반드시 인증갱신을 통해 사업기간 동안 인증기관의 관리가 지속되어야 함	사업기간내 인증정보 지속성 유지
	나. 사업선정 및 이행단계 <이행점검 단계> ○ 시·군·구 및 인증기관에서는 친환경농업직불사업---------- 「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 제9조와 제40조의 인증기준에 ----------	<이행점검 단계> ○ 시·군·구 및 인증기관에서는 친환경농업직불사업---------- 「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 제11조와 제54조의 인증기준에 ----------	법 조항 현행화
	<이행점검 요청> ○ 수시로 요청	<이행점검 요청> ○ 신청정보 변경시 수시 요청	사업대상자 신청정보 현행화 필요
	4. 사업 시행 및 관리 가. 교부결정 및 사업시행 단계 <사업비 배정 및 직불금 지급> ○ 각 시·도(시·군·구)는 친환경농업인에게 보조금 지급(11월)	<사업비 배정 및 직불금 지급> ○ 각 시·도(시·군·구)는 친환경농업인에게 보조금 지급(11~12월)	직불금 지급기간 수정
	나. 정산 및 사후관리단계 ○ 추가	○ 시도 및 시·군·구는 사업이 완료된 회계연도가 끝나고 2개월 이내 e나라도움에 정산/실적 보고서를 등록 ○ 농식품부는 사업시행기관의 정산보고서 접수 및 보조금의 확정	e나라도움을 통한 정산 단계 추가

사업명	기존 지침	지침 개정	개정 사유
	○ 농업인 등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친환경농업 직접지불금을 받은 것으로 판명된 경우에는 직불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그 사유가 발생한 기간 동안 이미 지급한 직불금은 회수 조치하고, 해당 농업인은 향후 3년간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사업 신청 참여를 제한	○ ---------- ---------- ---------- 판명된 경우에는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직불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 ----------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사업 선정을 제한	법 조항 명시
	○ 환수절차 : ---------- ---------- ----- 공익증진직불기금회계	○ 환수절차 : ---------- ---------- ----- 공익증진직불기금회계 공익증진직불기금회계 반납계좌(농협 301-0286-2705-71)로 반납	반납계좌 명시
유기·무농약 지속직불제	나. 지원대상 ○ 2021년 사업기간(1월~10월*) 중 친환경농업을 성실히 이행하고 인증기관의 이행점검 결과 적격으로 통보받은 농지 * 사업기간은 전년도 11월부터 당해 연도 10월까지 1년간으로 하되, '20년 11~12월의 경우 '20년에 직불금을 이미 지급하였으므로 '21년에 한하여 이행기간을 1~10월로 정함	나. 지원대상 <신설> ○ 지원대상 농산물: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친환경농산물" 일체 ○ 지원대상 농지: 2022년 사업기간('21.11.1.~'22.10.31.) 중 친환경농업을 충실히 이행하고 인증기관의 이행점검 결과 적격으로 통보받은 농지	친환경농업직불제 지원대상과 동일
	마.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마.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신설> - 친환경농업 직불제 지급면적과 무농약 지속직불 지급면적을 합한 면적은 5.0ha를 초과할 수 없음	지급한도액 기준 명확화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마. 지원형태 ○ 재원 : 국고, 지방비, 농협지원금 등	마. 지원형태 ○ 재원 : 지방비(보전금+시·도비+시·군·구비)	전환사업의 실제 재원을 기재
	가. 사업신청단계	가. 사업신청단계 <신설> [시·군·구] ○ 시·군·구는 보전금, 시·군·구비, 사업물량을 확정하여 시·도에 보고(10월말) [시·도] ○ 사업물량, 시·군·구별 예산 배정(안), 시·도, 시·군·구비	시·군·구의 예산 및 사업물량 보고절차 신설 시·도의 역할 명문화

사업명	기존 지침	지침 개정	개정 사유
		분담액(비율) 및 사업신청기간 등이 포함된 익년도 사업 기본계획을 시·군·구에 통보(11월초)	
	나. 사업자 선정단계	나. 사업자 선정단계 **<신설>** [시·도] ○ 시·군·구에 익년도 사업시행 지침 및 확정예산 통보(12.15.까지)	시·도의 역할 명문화
	바. 품질 및 유통단속 검사 1) 품질검사 및 품질등급 평가 가) 검사기관의 품질검사 ○ 검사기관 : 농진청(농관원), 지자체(시·군·구) ○ 검사시기 : 농진청(농관원) 지자체 합동점검 연2회	마. 이행점검단계 《품질검사 및 유통단속》 1) 품질검사 및 품질등급 평가 가) 품질검사 ○ 검사기관 : 시·도(주관) 및 시·군·구(실행) ○ 검사시기 : 시·도 주관 정기검사 연 2회 **<신설>** * 시·도(시·군·구)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협의하여 '유기질비료 특별 품질검사 계획을 수립한 후 정기 및 수시 품질검사를 실시할 수 있음, 이 경우 소요 예산은 시·도(시·군·구)에서 부담함	조문체계 변경(바. 품질 및 유통단속 검사에서 이동) 전환 취지에 맞게 변경 시·도의 품질검사 업무 수행 경험 부족 보완책
	2) 유통단속 검사 ○ 농촌진흥청장(농관원장), 시장·군수·구청장은 비료의 품질검사 이외에 「비료관리법」 및 본 사업지침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는 유통단속 검사를 실시 ○ 유통단속 검사는 「비료관리법」 및 본 사업 지침에 따라 실시 및 조치	4) 유통단속 ○ 시장·군수·구청장은 비료의 품질검사와는 별도로 「비료관리법」 및 본 사업시행지침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는 유통단속 실시 **<신설>** ○ 시장·군수·구청장은 부정·불량 비료의 신고 접수 및 단속을 위한 관계기관·단체와의 핫라인 구축 운영 - 농관원 등 관계기관과 상시 연락체계 구축 및 협조	농관원은 「비료관리법」에 따라 비료 품질검사 요령(예규)을 제정하여 품질검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바, 농관원의 역할을 지침에 규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음 단속의 실효 제고를 위해 유관기관 간 업무협조 체제 유지 필요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다.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다.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신설>** ○ 지자체는 지역별(읍·면·동, 리별, 마을별 등) 공급계획량을 농협중앙회 시·군지부에 유선 또는 공문 통보하여 지역농협을 통한 토양개량제 공급 협조 (중략)	원활한 공급을 위한 업무협조

사업명	기존 지침	지침 개정	개정 사유
		* 공동살포율을 높이기 위해 지역내 규산질·석회질 토양개량제 모두를 살포할 수 있는 공동살포대행자를 선정해야 함	공동살포대행자 선정기준 명확화
유기농업자재지원사업	가. 사업대상자	1 사업대상자 <신설> ① 녹비작물 종자, 유기농업자재 및 자재원료 ○ 2021년도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발급받은 토양검정 결과를 제출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에 한해 지원 ② 토양검정 및 시비처방 컨설팅 ○ (토양검정) 친환경인증을 받지 않은 일반 농업인등 ○ (시비처방 등 컨설팅) 시비처방 등 컨설팅을 희망하는 농업인등	토양검정 결과 제출 의무화 신규 사업내용 추가
	나. 지원자격 및 요건	2 지원자격 및 요건 ① 녹비작물 종자 ○ 지원대상 농지에서 제외 <신설> - 토양검정 결과 유기물함량이 유기물 상한을 초과하는 농지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② 유기농업자재 및 자재원료 ○ 선정 우선순위 - (그 외 농지) '22년 친환경농업 기반구축 사업에 포함되었던 일반농지> '11~'21년 친환경농업기반구축 사업에 포함되었던 일반농지>지자체 자율결정 ○ 지원대상 농지에서 제외 - 토양검정 결과 유기물함량이 유기물 상한을 초과하는 농지는 토양개량용 유기농업자재 지원 대상에서 제외 ③ 토양검정 및 시비처방 등 컨설팅 ○ (토양검정) 「친환경농어업법」에 따라 친환경인증을 받은 농지는 제외 ○ (시비처방 등 컨설팅) 토양검정 결과가 있는 농지에 대해 한해 지원	제외기준 명확화 일반농지 선정 우선순위 기준 명확화 제외기준 명확화 신규 사업내용 추가
	다. 세부계획 수립 및 시행 단계	3 세부계획 수립 및 시행 단계 [시·도(시·군·구)] <신설> ○ 시·도는 토양검정 및 시비처방 등 컨설팅 수행기관 및 운영	신규 사업내용 추가

사업명	기존 지침	지침 개정	개정 사유
		방안 등을 확정하여 농림축산식품부 및 시·군·구에 통보하고(2월) 시·군·구는 토양검정 대상농가의 토양을 일괄적으로 채취하여(2~3월까지) 지정된 토양검정 기관에 송부 - 토양검정 결과 및 시비처방 등 컨설팅 지원 결과는 해당 수행기관을 통해 '22.6.30.까지 제출받고 그 결과에 따라 농가의 지원 품목 변경이 필요한 경우, 시·도와 협의하여 지원품목 변경('22.7.31.까지 완료)	
	라. 자금배정 및 집행단계	4 자금배정 및 집행단계 [시·도(시·군·구)] <신설> - 토양검정 및 시비처방 등 컨설팅 지원은 시도별로 지정된 기관에서 받은 토양검정 결과나 시비처방 컨설팅 내역(별지 제5-2호 서식)을 확인 후 보조금 집행 [사업대상자] ○ 토양검정 및 시비처방 등 컨설팅 지원사업 대상자는 사업년도 상반기까지 시·도별로 지정된 토양검정 및 컨설팅 수행기관에서 토양검정 및 컨설팅 실시 - 그 결과에 따라 유기농업자재 지원 품목 변경이 필요한 경우 시·군·구 담당자에게 품목 변경을 요청('22.6.30.까지) [토양검정 및 시비처방 등 컨설팅 수행 기관] ○ 토양검정 및 시비처방 등 컨설팅 지원내역(별지 5-2호 서식)을 해당 시·군·구에 제출('22.6.30.까지) - 컨설팅 지원내용은 토양검정 결과에 따른 시비처방 관련 내용을 필수로 포함	신규 사업 추진절차 추가 신규 사업 추진절차 추가 신규 사업 추진절차 추가
		<신설> (별지 제1-3호 서식) 유기농업자재지원사업 신청서<토양검정 및 시비처방 등 컨설팅 지원> (별지 제5-2호 서식) 컨설팅 결과 확인서	신규 사업신청서 추가

사업명	기존 지침	지침 개정	개정 사유
	마.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5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신설> ○ (토양검정·시비처방 등 컨설팅) 국비 100%	신규 사업내용 추가
	바.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신설> ○ 유기농업자재 및 자재원료(ha당, 총 구입비 기준) : 관행농업 100만원	관행농가 지원에 따른 지원한도 기준 설정
친환경퇴비생산시설현대화지원	나. 지원자격 및 요건	나. 지원자격 및 요건 <신설> ○ 농업법인(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기본규정」 제35조제9항 및 별표6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 (중략) ○ 친환경퇴비생산시설현대화 지원사업을 '17~'21년 지원받은 업체 배제	'담보제공 및 지상권 설정 등 재산권에 제약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내용 등 농업법인 지원요건을 명확히 전달하기 위해 지침에 명시 사업대상자를 선정 중복을 막음으로써 퇴비 품질 향상을 위해 지원받지 못한 업체 참여를 확대하여 퇴비의 전반적인 품질향상에 기여
	마.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⑤ 퇴비살포기, 농업용로우더 등 정부지원 농업기계 목록집에 농기계로 등록된 품목은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의 사후관리 보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	마.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⑤ 퇴비살포기, 농업용로더 등 정부지원 농업기계로 등록된 품목(농업기계 구입지원사업 시행지침 참조)은 한국농기계협동조합의 사후관리 보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	농업기계 목록집은 책자이며 상시 변경되는 내용을 반영하기 어려우므로, 농업기계에 대한 용어 명확화
친환경과수농가비가림하우스	2. 사업추진 가. 사업대상자 • 과수 친환경 인증을 받으려는 농업인 및 법인	2. 사업추진 가. 사업대상자 • 과수 친환경 인증을 받은 농업인 및 법인	사후관리 어려움과 기존 친환경 과수 농가 사업 수요 증가 등으로 사업대상자 기준 변경
	2. 사업추진 라. 지원조건 • 사업비 기준 단가 : 22천원/㎡ • 지원한도 : 1인당 지원 면적 상한 2,000㎡지원 가능	2. 사업추진 마. 지원조건 • 사업비 기준 단가 : 25천원/㎡ • 삭제	농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자재값 현실화

□ 친환경농업과 소관 사업 신청 공통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사항, 고유식별번호 수집 · 이용 동의 사항, 개인정보의 제공동의 사항이 있는 사업에 대하여 붙임 서식을 사용**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업인 지원을 위한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추진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유효 기간 내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고유식별번호 수집·이용 동의 사항>

1.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업인 지원을 위한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추진시, 신청자의 본인확인, 신청대상물에 대한 소유권 등 확인, 년차별 지원내역 확인 및 농림축산식품사업 지원내역확인 등의 관리
2. 수집하려는 고유식별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고유식별정보(생년월일)
3. 고유식별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유효 기간 내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농림축산식품사업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농림축산식품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 기간 내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생명의 땅 으뜸 전남
Land of Life, Best Jeonnam

II 분야별 사업추진 지침

친환경정책 분야

1 유기농가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사업

1. 목 적

○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시 유기농가에 대하여 자부담분(10%)을 지원함으로써 재해에 취약한 유기농산물 생산의 경영비 절감과 관행농업 또는 무농약 인증 농가의 유기농 상향인증 촉진 및 유기농업 정착 유도

2. 추진방침

○ 재해피해 우려가 큰 품목 적극 가입 독려 및 우선 가입 지원

○ 농가부담 보험료(10%) 전액을 지원하여 유기농가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률 제고

○ 재해 발생 시 손실보전을 통한 유기농가의 안정적인 소득보장 및 경영불안 해소

○ 가입대상 및 품목은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사업 지침에 준하고, 재해피해 발생 시 '재해보험 기준약관'을 적용하여 손해사정 및 보험금 지급

3. 근거법령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전라남도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 제10조(농업인의 소득안정 지원)

○ 「전라남도 친환경농업 육성기금 조례」 제4조(기금의 용도)

4. 추진기간 : 2022. 1. ~ 12.

5. 사업계획

구 분	사업량 (ha)	사 업 비(백만원)		
		계	도비(30%)	시군비(70%)
유기농가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사업	10,000	1,000	300	700

6. 사업내용

○ 가입품목 :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대상 품목(67) 중 유기인증 품목

○ 지원내용 : 유기농 인증농가가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시 순보험료의 자부담분(20%)을 전액 지원(보험료 100% 지원)

*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재원 비율 : 국비 50%, 도비 20%, 시군비 20%, **자부담 10%**

7. 사업추진 체계

가. 사업대상 : 재해보험사업자가 판매하는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한 유기인증 농가의 필지

나. 지원기준 : 자부담분(10%)의 도비 30%, 시군비 70%

○ 보험가입자별 지원한도는 없으며, 지원범위는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

○ 친환경인증서에 인증 구분이 유기농산물로 되어 있는 가입 필지에 한해 보험료 지원

다. 사업추진 방법

○ 품목별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시기에 보험 가입 후 사업 신청

○ 사업신청 시 농가 자부담분을 도 및 시·군에서 지원

- 사업비 지원내역은 매분기 말에 품목별로 분류하여 보고(별지 제2호 서식)
- 최종 보조금 교부 결정에 따른 부족액은 시군비로 확보·지원
- 시군에서는 품목별 유기인증 실적을 감안하여 자체 시행지침을 마련, 예산범위 내 품목별로 지원 단가는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음.

○ 사업 정산은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사업' 정산 시 '유기농가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사업'으로 지원한 내역 별도 정산

* 각 시군은 지역·단위농협과 연계하여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추진

라. 사업신청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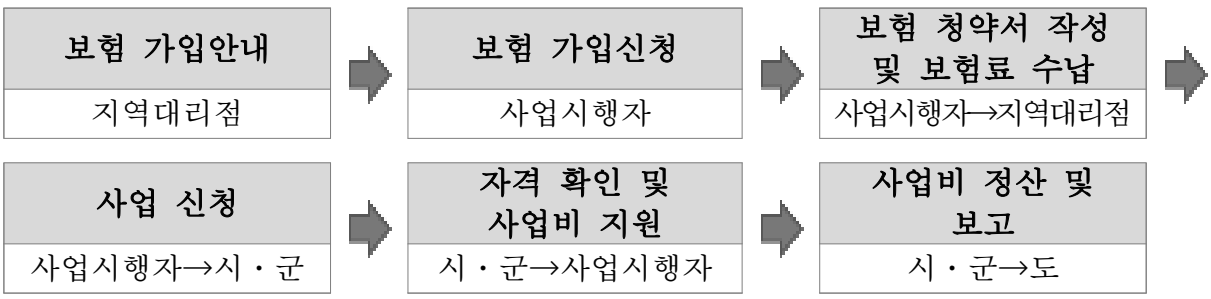

마. 세부 추진사항

○ 도에서는 시군의 유기농가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사업의 수요조사 실시

○ 수요조사 결과 및 전년도 집행실적, 유기농산물 인증면적 등을 반영하여 시군 사업비 배정 및 가내시

○ 도에서 농작물 재해보험 품목별 가입 시기 시·군 안내, 시·군에서는 보험 가입 및 사업 신청 홍보·독려

○ 유기농가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사업 희망자는 지역대리점 등에서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신청 후, 사업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및 친환경인증서(유기인증),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을 시·군에 제출

○ 시·군에서는 보험 가입 여부 및 유기인증 필지 등을 면밀히 확인 후 보조금 지급

○ 시·군에서는 사업비 정산결과(별지 제3호 서식)를 도에 보고

8. 기　　타

○ 본 사업시행 지침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농어업재해보험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농어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등 관련법 규정에 의함

○ 보험료율, 보험료 할인·할증 적용 등은 금융감독원 인가결과에 따라 일부 변경 가능

○ 보험 상품 및 보험 인수 조건 등 기타 구체적인 사항은 재해보험사업자가 작성하는 업무 방법에 따름

9. 행정 사항

○ 농작물 재해보험 품목별 가입 시기에 따라 가입 홍보 및 독려 : 수시

○ 유기재배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실적 통보(보험사업자 → 도, 시·군) : 수시

○ 사업 추진상황 보고(시·군 → 도, 별지 제2호 서식) : 매분기 익월 5일까지

○ 사업 정산 보고(별지 제3호 서식) : 12. 31. 까지

○ 보험금 수령 현황 제출(별지 제4호 서식) : 익년 1월 말까지

○ 농가별 가입 명부(별지 제5호 서식) 작성 및 비치

[별지 제1호 서식]

유기농가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사업 신청서

1. 신청자(대표자) 현황

신청자	단체명				소속 농가수	
	성 명 (대표자)		생년월일		연락처	
	주 소					
	유기인증 면 적	ha	유기인증 번호			
	유기인증 품 목		연간 예상 생 산 량	kg/10a	계 약 재 배 량	

2. 보험 가입 내역

보험 내용	증 권 번 호					
	계약체결일					
	가 입 품 목					
	계약자 부담 보 험 료	사업량 (ha)		사 업 량(천원)		
				계	도비	시군비

붙임 1. 유기인증 증빙서류(친환경 인증서) 1부. * 농가별 인증면적이 명시되어야 함.

2. 보험 증권(보험가입증서) 1부.

3. 소속 농가별 가입 명부(별첨 1/단체인 경우) 1부. 끝.

위와 같이 유기농가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사업에 참여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상기 고유식별번호(주민번호등록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상기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20 . . .

신청자 : (인 또는 서명)

○ ○시장·군수 귀하

〔별첨 1〕

유기농가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신청서 명부(단체명)

연번	주 소	성 명	전 화 번 호	신청 일자	가입 품목	가입 면적	인증 면적	유 기 인증번호

[별지 제2호 서식]

유기농가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사업 추진상황 보고(분기)

가 입 실 적			사 업 비		
품 목	농 가 수	가입 면적	계	도 비	시군비
계					

[별지 제3호 서식]

유기농가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사업 정산 보고

1. 사업 실적

(단위 : 호, ha)

	벼		과 수		채 소		기 타	
	농가수	지 원 가입면적	농가수	지 원 가입면적	농가수	지 원 가입면적	농가수	지 원 가입면적
품 목 별 지원실적								

2. 사업비 정산

(단위 : 천원)

사 업 계 획				사 업 실 적						집 행 잔 액 (A-B)
사업량	예 산 액(A)			농가수	보험 건수	사업량	집 행 액(B)			
	계	도비	시군				계	도비	시군	
ha				호	건	ha				

○ 집행잔액 발생 사유

–

3. 문제점 및 건의사항

○

–

–

[별지 제4호 서식]

유기농가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사업 보험금 수령 현황

(단위 : 호, ha, 천원)

품 목	피 해 현 황		보 험 금	피해유형 (재해내용)
	농가수	피해면적		
벼				
과수				
채소				
기타				

[별지 제5호 서식]

농가별 가입 명부(시 · 군 보관용)

(단위 : ha)

연번	주 소	성 명	가입 품목	가입 면적	인증 면적	유 기 인증번호	가입자 서 명 (날 인)

2 친환경농산물 전시·홍보 부스 운영 지원

1. 목 적

○ 지역에서 생산된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수도권·대도시 등 국내 홍보 활동을 지원하여 전남 친환경농산물 이미지 제고

○ 도시 소비자에 도내 친환경농산물의 우수성을 알리고 친환경 실천 농업인이 생산한 농산물의 신뢰성 확보로 경쟁력 강화

2. 추진방침

○ 도내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입소문 마케팅으로 지역농산물 판매 촉진

○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친환경농산물 및 유기가공 식품의 전시 홍보 부스 운영이 가능하거나 대량 소비처 확보가 가능한 규모의 단체 및 업체 등 발굴

3. 근거법령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전라남도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제10조(농업인의 소득안정 지원)

○「전라남도 친환경농업 육성기금 조례」제4조(기금의 용도)

4. 추진기간 : 2022. 1. ~ 12.

5. 사업계획

구 분	사업량 (부스)	개소당 (백만원)	사 업 비(백만원)		
			계	도비(50%)	시군비(50%)
친환경농산물 전시·홍보 부스 임차료 지원	28	3	84	42	42

6. 사업내용

○ 지원단가 : 3,000천원(도비 1,500[50%], 시군비 1,500[50%])/부스

○ 지원내용 : 친환경농업 관련 박람회 참가 친환경농산물 전시·홍보 부스 운영 비용 지원

- (참가비) 친환경농산물 전시·홍보 부스 임차료 및 비품 대여비, 전시 품목(친환경농산물 및 유기가공식품 등) 운반비
- (홍보비) 친환경농산물 및 유기가공식품 홍보를 위한 플래카드, 리플릿 등 제작비

※ 보조금은 친환경농산물 및 유기가공식품 등 전시·홍보 물품을 구입하는 비용으로 사용 불가능

7. 사업추진 체계

가. 사업대상 : 친환경농업인 단체 및 유통업체

○ 도내 친환경농산물 생산자 단체(친환경농업인연합회, 영농법인, 작목반 등)

○ 도내에서 생산한 친환경농산물 가공·유통하는 업체

나. 사업자 선정

○ 시장·군수가 친환경농산물 생산자 단체(시군 친환경농업인연합회, 작목반, 영농법인, 영농회사 등), 가공·유통 업체 중 소비 선호도가 높고, 대량 소비처 발굴이 가능한 규모가 큰 우수 단체·업체 우선 선정

다. 사업 시행체계

사업 신청	→	대상자 선정 및 참가 박람회 결정	→
사업시행자→시・군		시・군	
사업비 집행	→	**박람회 참가 및 친환경농산물 전시・홍보 부스 운영**	→
시・군→사업시행자		사업시행자	
사업비 정산	→	**사업비 정산 및 보고**	
사업시행자→시・군		시・군→도	

라. 세부 추진사항

○ 도에서는 시군의 친환경농업 관련 전시·홍보 행사 참가 수요조사 실시

○ 수요조사 결과 및 전년도 박람회 참여도, 부스 운영실적 등을 반영하여 시군 사업비 배정 및 가내시

○ 도에서 친환경농업 관련 박람회 행사 안내 및 시군별 사업비 확정 통보

○ 친환경농산물 전시·홍보 부스 운영 지원사업 희망자는 사업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시·군에 제출

○ 박람회 참가 대상 시군은 친환경 영농 규모, 대량 소비처 발굴 가능성 등을 확인하여 참가 단체 또는 업체 선정

○ 사업시행자는 사업 완료 후 1주일 이내 시장·군수에게 사업비 집행결과를 정산하여야 함

○ 시·군에서는 보조금 지급 시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사업계획에 따른 소요액을 정확히 산정하였는지 정산 관련 서류 검토 후 보조금 지급

○ 시·군에서는 사업비 정산결과(별지 제2호 서식)를 도에 보고

마. 사후관리

○ 시·군에서는 친환경농산물 전시·홍보 부스 운영 참가 단체 및 업체에 대해 지속 관리하여 판매촉진을 위한 행정적 지원 추진

○ 친환경농업 관련 박람회 참가 및 국내·외 바이어 상담회 등의 부대행사를 통해 발굴한 판로확보처(새로운 수출 판로 등)는 상시 친환경농산물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별지 제3호 서식)

8. 행정 사항

○ 친환경농업 관련 박람회 참가, 전시·홍보 부스 운영 : 4~11월

○ 다음연도 사업 수요조사 결과 제출 : 9월

○ 사업 정산 보고(별지 제2호 서식) : 12. 31. 까지(행사 종료 후 30일 이내)

○ 소비처 관리(별지 제3호 서식) : 12. 31.까지(시군에서도 비치 및 관리)

[별지 제1호 서식]

친환경농산물 전시·홍보 부스 운영 지원사업 신청서

1. 신청자(대표자) 현황

신청자	단체·업체명				전화	
	성 명 (대표자)		생년월일		사 업 자 등록번호	
	주 소					
	친환경관련 종사기간	년 월	구 분	생산( ), 가공( ), 유통( )		
	친 환 경 영농 규모	㎡			평균 연매출액 (단위:백만원)	
		전작 ㎡	수도작 ㎡	기타 ㎡		

2. 사업 계획

추진 계획	참가 박람회명				
	박람회 기간				
	부스 운영	사업량 (개소)		사 업 량(천원)	
				계	도비	시군비
	전 시 품 목	*구체적으로 작성*			

위와 같이 친환경농산물 전시·홍보 부스 운영 지원 사업에 참여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상기 고유식별번호(주민번호등록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상기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20 . . .

신청자 : (인 또는 서명)

○ ○시장·군수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친환경농산물 전시·홍보 부스 운영 지원사업 정산 보고

1. 사업 실적

참가 박람회명								
단체·업체명								
방 문 관람객(명)	월/일		월/일		월/일		월/일	

판매 현황	구분	주요품목	판 매 액(천원)				
			계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곡류						
	특작						
	과수						
	가공						
	기타						

2. 문제점 및 건의사항

○

–

–

3. 사업비 정산

(단위 : 개소, 천원)

운영 부스	예 산 액(A)			집 행 액(B)			집 행 잔 액 (A-B)
	계	도 비	시 군	계	도 비	시 군	

○ (부스참가) 천원, (홍보물 제작 등) 천원

○ 집행잔액 발생 사유

–

4. 부대행사(국내·외 바이어 상담 등) 결과

(단위 : 천원)

상 담 업체명	출품 품목	상 담 내 용	상담결과	계약금액 (소싱예정액)

[별지 제3호 서식]

친환경농산물 전시·홍보 부스 운영 지원 소비처 관리

(단위 : 천원)

업 체 명	공 급 품 목	유 통 채 널	월 판매액

3 친환경농업 육성기금 융자 지원계획

친환경농업의 건전한 육성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친환경농업 실천 과정에서 필요한 자금을 장기·저리로 융자 지원

1. 추진방향

○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에 대한 융자사업 추진으로 친환경 농업 실천과정에서 위험요인 해소, 저리자금 지원 등 경제적 어려움 해소

○ 친환경 농산물의 가공, 유통, 수출을 위한 유통·시설자금 지원으로 안정적인 판로확보와 고부가가치 창출

○ 친환경농업 재배면적 증가에 따른 친환경 농자재의 개발과 생산시설자금의 지원으로 농자재의 안정적 공급 및 생산기반 확충

○ 대출취급기관이 신용 평가를 통해 자금을 지원하고 자금 대출 후 회수 까지 책임을 지는 체제로 운영하여 기금의 효율적 관리

2. 사업개요

가. 융자금액 : 70억원

나. 사업기간 : 2022. 1. 1. ~ 12. 31.(1년)

다. 융자기관 : 농협중앙회 전남지역본부(시군지부)

라. 융자 신청자격

○ 도내 1년 이상 거주 친환경농업인 및 친환경농업 관련 법인

※ 법인 : 농업인 5명 이상이 결성한 생산자단체(법인체), 친환경농산물의 가공·유통·수출 촉진을 위한 관련업체 및 단체 등

○ 친환경농산물 유통업체 입점자 및 도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도내 친환경농산물의 계약재배를 통하여 매입하는 유통업체

마. 융자신청 제외자

○ 융자신청 자격자 중 금융기관의 대출요건 불·부합자
(본인이 금융기관 확인 - 서식 1)

- 신용불량, 연체, 담보부족 등

※ 대출담보 부족으로 인한 융자사업 포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기관에서는 신용, 담보 한도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지원대상자 선정

바. 대상사업 : 친환경 농산물 생산·가공·유통·수출 및 친환경 농자재 생산과 관련된 사업

사. 지원자금

○ 시설자금 : 친환경 농산물생산·가공·유통·수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신규시설 설치 및 기존시설 확충 사업(친환경농자재 생산시설 포함) 등

○ 운영자금 : 시설사업 외에 직접 친환경농업을 통해 소득증대를 도모하는 사업(판매장 임차료, 포장 디자인 개발, 원료구입 및 수매자금, 친환경 농자재 생산자금 등)

※ 운영자금은 생산자단체와 농업법인체를 우선 지원

아. 대출이율 : 연리 1%(연체이율 10%)

자. 융자한도

○ 개　인 : 1억원 이내

○ 생산자단체 및 유통업체(업체당) : 5억원 이내

○ 친환경 농자재 생산업체 : 5억원 이내

○ 친환경 농산물 유통업체 가맹점 입점자 임차료(개소당) : 10억원 이내

○ 도와 협약 수도권 친환경농산물 물류기지 건립 및 임대 : 10억원 이상

※ 당초 : 자부담 10% → 변경 : 자부담 0%, 부담률 전액 면제

차. 지원(상환)조건

○ 시설자금 : **2년거치 6년 균분상환**. 단, 소득발생이 늦은 과수 등의 사업은 3년거치 7년 균분상환

○ 운영자금 : **2년거치 3년 균분상환**, 친환경 농산물 유통업체 및 가맹점 사업자는 최장 10년 이내로 하되 임대차 계약기간 종료 후 일시상환(필요 시 1년까지 상환 유예 가능)

※ 친환경농산물 물류기지 건립 및 임대 사업자는 최장 10년 이내이며, 임대차 계약기간 종료 후 일시상환

카. 융자금 지원

○ 시설자금

- 중도금 : 사업비가 3천만원 이상인 시설자금은 사업자가 원하는 경우 시장·군수의 기성 확인서(서식 7)에 의거 금융기관의 규정에 적합한 요건 충족 후 지원
- 완공금 : 시장·군수의 사업완료 확인서(서식 9)에 의거 금융기관 규정에 의한 채권확보 후 지원

○ 운영자금

- 사업 실시 전에 신청할 경우는 친환경농업육성기금 운영자금 집행계획서(서식 8) 등을 확인한 후 금융기관에서 지원할 수 있음
- 사업 완료 후에 신청할 경우는 사업완공확인서(서식 9)를 제출받아 읍·면·동에서 직인날인 후 금융기관에 대출신청서와 함께 제출

※ 단, 사업 실시 전 대출을 받을 경우에도 사업종료 즉시 정산을 하여야 함

3. 지원 대상자 선정

가. 현지조사

○ 시장·군수는 융자 신청 농업인 및 생산자단체의 사업계획서를 면밀히 검토한 후 현지조사 실시

○ 현지조사는 지원대상자 선정 평가표(서식 4, 4-1, 4-2)에 따라 사업내용과 융자신청액 등 타당성 검토

○ 현지조사는 반드시 시군 또는 읍면 담당공무원과 금융기관 직원 합동으로 「현지 확인반」을 편성하여 실시

※ 융자대상별로 지원조건이 다르므로 사업계획서를 면밀히 검토

나. 지원대상자 선정

○ 시장·군수는 친환경 관련 생산·가공·유통·수출 등 분야별 관련 실과 협조를 받아 육성기금 추진 주무부서에서 총괄하여 사업추진

○ 시장·군수는 사업선정 평가표(서식4, 4-1, 4-2)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후보자 명부를 작성하고, 시군 자체 농업농촌 관련 심의회 및 친환경농업추진위원회에서 융자사업 대상자 선정 및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도에 보고(서식 5)

- **지원대상자가 중도포기 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 담보능력, 사업추진의지 등을 재검토 확정**

○ 도에서는 시군의 사업신청액과 친환경농업 육성 기여도(친환경 농산물 인증실적 등)를 감안, 사업계획 융자금 범위 내에서 「전라남도 친환경농업 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융자대상자 확정 및 사업비 배정

- 단, 사업의 파급효과가 크고 도가 직접 기획한 사업의 경우 우선 배정
- 융자지원 대상자 확정사항을 본인에게 알려 조기에 사업 착수토록하고,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자에 대하여도 그 사유를 설명하여 민원 발생 예방

1) 우선지원 대상사업

○ 친환경 농산물 소비 및 판매 활성화 사업

○ 친환경 농산물 수출기반 조성 및 수출증대사업 등

2) 우선지원 대상자

○ 친환경농업 육성(인증면적 및 매출규모) 기여도가 높은 자 우선

○ 신규신청자는 기 지원자 보다 우선

○ 기 지원자 중에서 선정할 경우 지원받은 연도가 오래되거나, 지원받은 금액이 적은 자 우선

※ 융자대상자 선정 이후 개인사유, 사업미착수 등으로 사업포기 시 차년도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

3) 사업계획서 접수 시 사업포기인정서 함께 제출

○ 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가 사업계획서 제출 시 사업개시 계획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지 않을 경우, 융자사업을 포기한다는 포기인정서(서식 11)를 포함 제출

○ 사업개시 계획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사업 미착수 시는 사업포기 간주

4. 융자계획 공고(홍보) 및 신청접수

가. 공 고(홍보)

○ 장 소 : 시군, 읍면동, 농협 게시판

※ 홍보 : 반상회보, 마을방송, 유선방송, 도 및 시군 홈페이지 등 활용

○ 내 용 : 2022년 전라남도 친환경농업육성기금 융자계획

- 신청기간, 접수처, 신청자격, 지원한도액, 구비서류 등

나. 신청 및 접수

○ 기　　간 : 2021. 12. 1. ~ 2021. 12. 29.

○ 접 수 처 : 주민등록지 읍·면·동사무소

※ 사업자의 사업장이 관외일 경우 가급적 주민등록상 주소지 시·군에서 접수

○ 신청서류 : 신청서, 사업계획서(별첨 **서식 1. 2. 3**, 읍면동·시군 비치)

- 읍면 또는 시군에서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 전입일 등은 신청서 접수시 담당직원이 확인, 가급적 신청서류 간소화

○ 접수 시 유의사항 : 융자 신청자격 해당여부 확인(주소 등)

※ 사업계획서 접수 시 융자사업 포기인정서 포함 접수

※ 무자격자의 신청서 반려 시 반드시 사유를 설명하여 민원 예방

다. 융자신청결과 조치

○ 읍면동 : 신청자격 여부 등을 검토 후, 총괄집계표와 신청서를 시군에 **2021. 12. 29.까지 제출**

○ 시 · 군 : 읍면동으로부터 신청서 취합, 금융기관의 대출가능 여부(신용도 조회) 검토 및 현지 확인 후 별첨 신청내역(**서식 5**)을 道에 **2022. 1. 7.까지 제출**

5. 사후관리

가. 사업계획의 변경

○ 지원대상자 확정 후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군수를 경유·검토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거쳐 변경

※ 사업계획을 임의로 변경할 경우에는 융자금 지급불가

나. 지원대상자의 지위 승계

○ 지원대상자의 사망 사유로 지위를 승계(부부, 부자 등) 받고자 할 때에는 시장 · 군수가 사실 확인 후 도지사 승인

다. 융자금 회수 조치

○ 융자금 상환완료 전 사업자가 융자사업 목적을 포기하거나 他 시도로 전출한 경우

○ 융자금을 지원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사업추진 기관별 업무담당】

기 관 별	내 용
도	○ 사업추진상황 총괄 지도·감독 ○ 도 시책사업 지원 대상자 선정 및 시군 사업비 배정 ○ 시군별 소요자금 배정 및 금융기관에 융자금 대여
시·군	○ 융자지원 대상자 추천 및 도에 신청 ○ 사업자별 사업추진 지도 및 사업장 관리 ○ 개인별 관리카드 비치·관리 및 사후관리 ○ 자금배정 신청 및 융자금 집행현황 보고
읍·면·동	○ 융자지원 신청서 접수 ○ 융자금 대출신청용 친환경농업육성기금 운영자금 집행계획서 및 사업완료확인서 발급
융자취급 금융기관	○ 자금관리 및 융자 실행 ○ 융자금 대출현황 보고 및 융자 원리금 상환

6. 융자사업 업무추진 체계

항 목	시 한	내 용
① 사업신청서 접수	전년도 12. 1. ~12. 29.	**사업희망자(단체) → 읍면동.시군** ○ 사업신청서.사업계획의 적정성 확인 ○ 융자신청 자격 해당여부 확인 ※ 무자격자 신청 시 사유 설명 반려
② 현지조사 및 담보능력 등 확인	1. 6.까지	**시군단위 : 행정+지도+농협** ○ 조사표에 의한 현지실사 평가(서식4, 4-1, 4-2) ○ 신용도 및 담보능력 확인
③ 융자사업 신청상황 집계보고	1. 7.	**시군 → 도** ○ 사업분야.자금종류별 등 집계보고(서식5) - 융자사업 우선순위(서식 5-1), 융자사업 신청서 사본(서식 1) 첨부 ※ ②항의 조사결과 부적격자 제외
④ 사업자별 융자금액한도액통보	2월말	**도 (친환경농업추진위원회) → 시군.농협** ○ 신청금액.친환경농업기여도 등 감안 융자한도액 통보
⑥ 자금배정 신청	사업완료 10일전	**시군 → 도** ○ 농협시군지부에서 실행가능한 융자금액을 확인 후 자금배정 신청(서식 6)
⑦ 자금배정	시군신청후	**도 → 기금관리부서.시군.농협** ○ 신청에 따라 자금배정 조치
⑧ 융자실행	사업완료후	**융자사업자 → 농협** ○ 사업완료 후 시장군수의 사업완료확인서를 발급 받아 해당 금융기관에 융자신청 및 실행

7. 행정사항

가. 사업장 및 융자 대출 관리

1) 시·군

○ 사업추진 상황을 수시 점검하고, 문제점(사업포기 등) 발생 시 그 결과를 즉시 도에 통보하여 융자 미 실행액 최소화

○ 융자 대행기관이 자금을 적절히 지원할 수 있도록 협조체계 강화

○ 사업자가 사업을 완료한 경우, 융자사업비 집행 명세(서식 10)를 제출받아 보관

2) 읍·면·동

○ 운영자금 사업자 중 사업완공 전에 '친환경농업육성기금 운영자금 집행계획확인서(서식 8)'에 의거 대출을 실행한 경우는 사업 완료 후 사업자로부터 대출자금 사용 내역 증빙서류를 제출받아서 비치

- 사용 내역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부정 사용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에 통보하는 등 행정조치를 하고 사업추진 다음연도부터 10년간 친환경농업육성기금 사업신청이 불가함을 안내해야 함
- 불이행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명단을 작성·관리하여 제재 기간 동안 대상자 선정에서 배제

3) 융자취급 금융기관

○ 융자금을 신속하게 대출하여 친환경농업인의 자금난 해소

○ 원칙적으로 12월말까지 사업 완료된 사업자에게 융자실행 *** 필요 시 중도대출**

나. 사업장 및 융자 대출 관리

○ 자금배정 신청 시 매월 20일까지 도에 신청서(서식 6) 제출

○ 융자실행률 제고를 위해 매분기 마지막 달까지 추진실적 보고서(서식 13) 제출

○ 금융기관은 매월 말 융자실적을 다음달 3일까지 도에 제출

다. 사업비 정산

○ 금융기관은 도에 '22. 1. 31.까지 '21년 친환경농업육성기금 융자사업 정산보고(서식 12)

○ 금융기관은 당해 연도 말일까지 사업대상자에게 대출을 실행하고 남은 잔액을 다음 연도 1월까지 도에 반환 조치

[서식 1]

2022 전라남도친환경농업육성기금 융자신청서

<table>
<tr><td rowspan="3">①신청자</td><td>주 소</td><td colspan="3"></td><td>전 화</td><td colspan="2"></td></tr>
<tr><td>성 명
(대표자)</td><td colspan="2"></td><td>생년월일
(법인번호)</td><td colspan="2">-</td></tr>
<tr><td>친환경관련
종 사 기 간</td><td colspan="2">년 월</td><td>신청
분야</td><td colspan="2">생산( ), 가공( ), 유통( ), 농자재( )</td></tr>
<tr><td>②취급품목</td><td colspan="2"></td><td>연매출</td><td>백만원</td><td>전 년 도
매 출 액</td><td>백만원</td></tr>
<tr><td>③사업명</td><td colspan="6"></td></tr>
<tr><td>④기융자
연 도</td><td>년</td><td>기융자
자금명</td><td></td><td>기융자
기 관</td><td>국가 ( )
도 ( )
시군 ( )</td><td>기융자
금 액</td><td>백만원</td></tr>
<tr><td>⑤신 청
내 역</td><td>융자
금액</td><td colspan="2">백만원</td><td>자금
종류</td><td>시설( )
운영( )</td><td>상환
기간</td><td>2년거치 3년 상환( )
2년거치 6년 상환( )
3년거치 7년 상환( )
10년거치 일시상환( )</td></tr>
<tr><td>⑥첨 부
서 류</td><td colspan="3">사업계획서 1부.</td><td>⑦대출희망
금융기관</td><td colspan="3">농협( ), 기타( )</td></tr>
<tr><td colspan="2">⑧신용불량, 연체등록</td><td colspan="3">여, 부 (서명)</td><td>확인일자</td><td colspan="2"></td></tr>
</table>

「전라남도 친환경농업육성기금조례 시행규칙」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상기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 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상기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날인)

○ ○ 시 장·군 수 귀하

※ 1. 신청자가 법인일 경우 성명란에 법인명과 대표자 이름, 법인등록번호 기재
2. ②는 유통업체만 기재하고, ③, ④번 란은 해당되는 경우만 기재
3. 대출희망 금융기관은 도와 융자취급 및 대여약정 체결은 한 농협 선택
4. ⑧은 신용불량, 연체자 등록 등 융자금 신청가능여부 파악을 위해 금융기관 담당자 날인

[서식 2] - 개인용

사 업 계 획 서

□ 영농현황

성 명		신청분야	생산 · 가공 · 유통 · 수출
주 업 종		연간소득액	
농 지 규 모	전 평, 답 평, 과수원 평, 하우스 평, 기타		
친환경농산물 재 배	○ 재배 : ha(유기농산물 , 무농약 , 저농약)		
친환경농산물 품목별취급량		연간매출액	

□ 사업계획

사 업 명				
규 모				
총 사 업 비	만원(자기자본 , 육성기금융자 , 기타차입금)			
사 업 기 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주 사업내용	구체적으로 작성			
연 간 소 득 액	만원			
소 요 자 금 조 달 계 획	소 요 자 금		조 달 계 획	
	소 요 처	금 액	자금구분	금 액
		만원	육성기금	만원
			차 입 금	만원
			기 타	만원

※ 1. 친환경농산물 품목별 취급량 및 연간매출액은 유통업체만 기재
2. 농지규모는 상세히 기재

[서식 3] - 법인용

사 업 계 획 서

□ 법인 현황

법 인 명		법인 대표자	
주 사업내용		설 립 일	년 월 일
자 산 규 모		참여농가수	명
사 업 규 모		연간 매출액	만원

□ 사업계획

사 업 명				
규 모				
총 사 업 비	만원(육성기금 , 자기자본 , 기타)			
사 업 기 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주사업내용				
연간매출액	만원			
소요자금 조달계획	소 요 자 금		조 달 계 획	
	소 요 처	금 액	자금구분	금 액
		만원	육성기금	만원
			차 입 금	만원
			기 타	만원

[서식 4]

시군 검토의견서

신청자 주소 및 이름		지원사업명	

항 목	검 토 의 견	평 점
사업자의 친환경농산물 재배 및 취급실태		
지원대상 사업의 장래 전망		
사업자의 신용도		
도·시군 시책사업과 관련성		
종합의견(약술)		

[서식 4-1]

지원대상자 선정 평가표

(개인 - 3천만원 미만, 단체 - 5천만원 미만)

사업자 주소 및 이름		지원사업명	

평 가 항 목	평 가 방 법 및 배 점 기 준	평 점
총 계 (700점)		
① 사업자의 추진의지 (50점)	○ 강함 50 보통 30 미약 20	
② 친환경농산물 재배 및 취급규모 (50점)	○ 대 50 중 30 소 20 ※ 시군 자체기준 설정	
③ 해당 사업관련 전문성(100점)	○ 친환경농산물 취급(영농) 경력 · 5년이상 50 · 3년~5년미만 30 · 3년미만 20 ※ 친환경농산물 인증서·친환경단체 가입 등 확인 ○ 해당 사업관련 자격증 소지 50	
④ 사업성(200점)	○ 해당사업의 경기전망 · 상 100 · 중 70 · 하 35 ○ 사업자의 사업운영 능력 · 상 100 · 중 70 · 하 35	
⑤ 사업자 신용도 (250점)	○ 자금조달 및 상환능력 · 상 150 · 중 100 · 하 50	
⑥ 도·시군 추진 시책사업 관련성 (50점)	○ 상 50 중 30 하 20	

이와 같이 조사 평가함.

년 월 일

○○시군 ○○○○과 직급 : 성명 : (인)

[서식 4-2]

지원대상자 선정 평가표

(개인 - 3천만원 이상, 단체 - 5천만원 이상)

사업자 주소 및 이름		지원사업명	

평 가 항 목	평 가 방 법 및 배 점 기 준	평 점
총 계 (700점)		
① 사업자의 추진의지 (50점)	○ 강함 50 보통 30 미약 20	
② 친환경농산물 재배 및 취급규모 (50점)	○ 대 50 중 30 소 20 ※ 시군 자체기준 설정	
③ 해당 사업관련 전문성(100점)	○ 친환경농산물 취급(영농) 경력 · 5년이상 50 · 3년~5년미만 30 · 3년미만 20 ※ 친환경농산물 인증서·친환경단체 가입 등 확인 ○ 해당 사업관련 자격증 소지 50	
④ 사업성(200점)	○ 사업계획의 충실도 · 상 50 · 중 25 · 하 10 ○ 해당사업의 경기전망 · 상 50 · 중 25 · 하 10 ○ 부지확보등 사업추진 용이성 · 상 50 · 중 25 · 하 10 ○ 원료조달 및 생산·판매능력 · 상 50 · 중 25 · 하 10	
	시·군 소속 직원 의견	

평 가 항 목	평 가 방 법 및 배 점 기 준	평 점
⑤ 사업자 신용도 (250점)	○ 담보제공 능력 ・상 100 ・중 50 ・하 30 ○ 사업자금 조달능력 ・상 70 ・중 50 ・하 30 ○ 부채규모(신청접수일 현재) ・없음 40 ・1000만원미만 20 ・1000만원이상 10 ○ 해당사업 투자관련 자기자본 비율 ・80%이상 40 ・50%이상 20 ・30%이상 10	
	농협시군지부 의견	
⑥ 도·시군 추진 시책사업 관련성 (50점)	○ 상 50 중 30 하 20	

이와 같이 조사 평가함.

년 월 일

조사평가자

○○시군 ○○○○과 직급 : 성명 : (인)

[서식 5]

2022 친환경농업육성기금 융자사업 신청내역

(단위 : 백만원)

순위	신청자		사업명	사업량	사업비			자금종류	분야	비고(신규, 기존)
	주소	성명			계	융자	기타			

[서식 6]

2022 ( )월분 친환경농업육성기금 자금배정 신청

시군	융자사업자		융자금액(천원)	자금종류	상환조건
	주소	성명			

- 첨부 : 농협의 융자실행가능액 증빙서류 1부.
(사업자 담보능력 등 융자실행 가능액을 농협시군지부 확인후 제출)

[서식 7]

사업 추진상황(기성) 확인서

<table>
<tr><td rowspan="2">사 업 자</td><td>주 소</td><td colspan="3"></td><td>전 화</td><td></td></tr>
<tr><td>성 명</td><td colspan="3"></td><td>생년월일</td><td></td></tr>
<tr><td>사업내용</td><td colspan="6"></td></tr>
<tr><td>육성기금
융자금액</td><td colspan="3">백만원</td><td>중도대출
요구금액</td><td colspan="2">만원</td></tr>
<tr><td>사 업 비
집행 비율</td><td colspan="3">총 사업비의 %</td><td>사 업
추진비율</td><td colspan="2">총 공정의 %</td></tr>
<tr><td rowspan="3">사 업 비
집행명세</td><td colspan="4">계 획(천원)</td><td colspan="3">집 행 실 적(천원)</td></tr>
<tr><td>계</td><td>도비</td><td>시군비</td><td>융자</td><td>자 담
등</td><td>계</td><td>도비</td><td>시군비</td><td>융자</td><td>자 담
등</td></tr>
<tr><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 rowspan="2">사 업
추진상황</td><td colspan="4">계 획</td><td colspan="3">추 진 실 적</td></tr>
<tr><td colspan="4"></td><td colspan="3"></td></tr>
<tr><td colspan="7">친환경농업육성기금 융자사업과 관련 이와 같이 추진하였기 기성확인을 신청합니다.

2022년 월 일

신청인 : (인)</td></tr>
<tr><td colspan="7">위와 같음을 확인함.

2022년 월 일

읍·면·동장 (인)</td></tr>
</table>

♣ 사업비 집행비율과 사업추진비율은 필히 담당공무원이 확인 후 기록할 것

♣ 금융기관에서는 추후 정산 시 **중도대출 했더라도 1인 1건으로 취급**하고 동일인이라도 시설 및 운영자금은 별도 취급(2건)

[서식 8]

친환경농업육성기금 융자사업 운영자금 집행계획서

<table>
<tr><td rowspan="2">사업대상</td><td>주 소</td><td colspan="2"></td><td>전 화</td><td></td></tr>
<tr><td>업체·
농가명
(대표자)</td><td colspan="2"></td><td>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생년월일</td><td></td></tr>
<tr><td>대 출
신 청 액</td><td colspan="5">천원(융자금)</td></tr>
<tr><td rowspan="6">사 업
내 용</td><td>세부사업명</td><td>사업물량</td><td colspan="3">소요액(천원)</td></tr>
<tr><td>계</td><td></td><td colspan="3"></td></tr>
<tr><td></td><td></td><td colspan="3"></td></tr>
<tr><td></td><td></td><td colspan="3"></td></tr>
<tr><td></td><td></td><td colspan="3"></td></tr>
<tr><td></td><td></td><td colspan="3"></td></tr>
<tr><td>추진일정</td><td colspan="5">예시) 구매계약 및 계약금 집행('22. 8월), 원료구입 및 사업비 잔액집행('22. 10월), 사업비 집행 관련 증빙서류 제출('21. 11월)</td></tr>
<tr><td colspan="6">친환경농업육성기금 융자사업의 운영자금을 위와 같이 집행하겠으며, 사업 완료 후에 사업비 집행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할 계획임을 약속드리며, 불이행 시 친환경농업육성기금 융자사업 대상자에서 배제 등 어떠한 행정 제재도 감수하겠으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월 일

신청인 : (인)</td></tr>
<tr><td colspan="6">위와 같음을 확인함.

2022년 월 일

읍·면·동장 (인)</td></tr>
</table>

♣ 담당공무원은 위의 추진일정에 따라 실제 이행여부를 수시 점검 및 기록하고 불이행(목적 외 사용, 증빙서류 미제출 등) 시 행정조치

[서식 9]

친환경농업육성기금 융자사업 완공확인서

<table>
<tr><td rowspan="2">사업자</td><td>주 소</td><td colspan="3"></td><td>전 화</td><td></td></tr>
<tr><td>성 명</td><td colspan="3"></td><td>생 년 월 일</td><td></td></tr>
<tr><td rowspan="3">사업비
투 자</td><td colspan="5">계 획 (천원)</td><td colspan="5">실 적 (천원)</td></tr>
<tr><td>계</td><td>도비</td><td>시군비</td><td>융자</td><td>자담 등</td><td>계</td><td>도비</td><td>시군비</td><td>융자</td><td>자담 등</td></tr>
<tr><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 rowspan="2">주 요
추 진
사 항</td><td colspan="5">계 획</td><td colspan="5">실 적</td></tr>
<tr><td colspan="5"></td><td colspan="5"></td></tr>
<tr><td colspan="11">친환경농업육성기금 융자사업과 관련 이와 같이 추진하였기 확인을 신청합니다.
※ 붙임 : 사업비 집행 증빙서류

2022년 월 일

신청인 : (인)</td></tr>
<tr><td colspan="11">위와 같음을 확인함.

2022년 월 일

읍·면·동장 (인)</td></tr>
</table>

[서식 10]

친환경농업 육성기금 융자사업비 집행 명세

세부시설 (사업) 명	소요자재 (인력)명	규격	단위	수량	단 가 (천원)	금 액 (천원)	기 타
총 계							
○○○○	소 계 ○○○○ ○○○○ ○○○○						

[작성요령]

○ 다음 중 해당하는 사업비집행 증빙서류(사업자등록번호 기재)사본을 붙임

- 사업자등록증 소지자의 자필서명 영수증
- 사업자등록증 소지자의 세금계산서
- 사업자등록증 소지자의 금융기관 거래자료(계좌입금증 등)
- 영농시설로 사용하기 위한 기존 시설물 구입 시 감정평가서 첨부
- 연간사업비 총액이 3천만원 미만인 경우는 직접노무비를 지원대상자가 사업자 등록증 소지자외의 자(지원대상자 본인 및 그 가족 제외)에게 지급하고, 수급인의 자필서명을 받은 때에는 당해증빙에 기재된 금액 중 시장·군수가 정한 금액 범위 내에서 인정

○ 주요공정 및 완성사진, 자재수불부, 작업일지 등 사업추진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서류 첨부

○ 정산담당 공무원은 위 세부내용대로 시설이 완료되었는지를 사업현장에서 지원대상자 입회하에 대조·확인

○ 세부시설(사업)명은 단위사업의 실체가 어떻게 구성되었는지를 쉽게 알 수 있을 정도로 구분하고, 소요자재(인력)명은 자재, 장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가능한 한 상세하게 구분

[서식 11] - 도 제출

친환경농업육성기금 융자사업 포기인정서

□ 사 업 명 :

□ 사 업 자

○ 성　　명 :

○ 주　　소 :

○ 전화번호 :

□ 사 업 비 : 000백만원(융자 000/ 시군비 000 / 자담 등 000)

□ 사업개시일 :　　년　　월　　일(사업기간 :　　)

위 사업에 대하여 상기 명기한 사업 개시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지 않을 시 사업을 포기하는 것으로 인정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사업대상자)　　성명 :　　(서명·날인)

○ ○ 시 장·군 수　귀하

[서식 12]

친환경농업육성기금 정산서

□ 사업 정산내역

(단위 : 백만원)

시군	계 획		융자사업 정산내역				사업포기		비고
			융자금 집행		미집행				
	건수	사업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계									

□ 상환기간별

(단위 : 백만원)

계		2년거치 3년상환		2년거치 6년상환		3년거치 7년상환		10년거치 일시상환	
건	금 액	건	금 액	건	금 액	건	금 액	건	금 액

□ 융자미실행 사유

(단위 : 백만원)

계		담보부족, 신용불량		일부미융자 (일부융자후)		사정변경 (대출포기)		기 타	
건	금 액	건	금 액	건	금 액	건	금 액	건	금 액

[서식 13]

친환경농업육성기금 융자사업 추진실적 보고서(　　분기)

- 2022. 00. 00.현재

□ 친환경농업육성기금 융자금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시군명	융자 계획(A)		융자금 배정액		융자 실행(B)		미배정 사업비	융 자 실행률 (A/B)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 사업대상자별 추진상황

(단위 : 백만원)

성 명 (법인)	융자 계획	융자금 배정액	사업 내용	추 진 상 황					미추진 사 유
				착공 여부	점검기준일 추진 상황	완공 여부	융자 여부	융 자 실행액	

※ 융자 실행액은 금융기관에서 실질적으로 융자를 실행한 금액

□ 문제점 및 앞으로 계획

○

○

4 친환경농업 전문기술지 보급 지원

1. 추진배경

○ 친환경농업을 실천하거나 친환경농업에 관심을 두고 있는 도민을 대상으로 친환경농업 관련 신기술과 유통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제공

2. 근거법령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3.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 1~12월(12개월) * 10,000원/부

○ 사업시행 : 시장 / 군수

○ 사업대상 : 친환경단지대표, 친환경농업인, 기타 친환경농업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청년 농업인

○ 사 업 량 : 2,800부(도 친환경농가 28,000호)

○ 사 업 비 : 336백만원(도비 67^{20}%, 시군비 269^{80}%)

○ 사업내용 : 친환경농업 전문기술지(월간 친환경 등) 구독료 지원

4. 지원 대상자 선정

○ 지원대상자 선정 : 시·군

- 지원대상자 선정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대상자를 선정
- 사업대상자 선정결과를 [서식 1]에 의거 2022. 1. 14.까지 제출

○ **지원대상자 선정 우선순위**

- 사업량이 부족함을 감안하여 친환경단지 대표 및 친환경농업 신규인증 농가, 친환경농업에 관심이 있는 청년농업인 순으로 우선 선정
- 친환경단지대표 ⇒ 신규인증 농가 ⇒ 무농약 인증 ⇒ 유기농 인증

  ⇒ 친환경농업 실천 희망 청년농업인
- 동일조건에서는 인증승인 일자가 늦은 신규 농가 우선

5. 사업이행 및 점검

○ 공급대상자 명단 선정 제출 [서식 1] : ‘22. 1. 14.까지

○ 전문지 공급업체와 계약 추진 : ‘22. 1. 21.까지

○ 지원대상자 확정 개별통보 [서식 2] : ‘22. 1. 31.까지

○ 사업비 집행 : 매월 공급실적에 따라 분기별 집행

○ 공급실적 및 사업비 정산 보고 [서식 3] : ‘22. 12. 15.한

[서식 1]

'22년 친환경농업 전문기술지 지원대상자 선정현황 보고

(시군)

번호	구 분 (개인/단체)	성 명 (대표자)	주 소	인증유형 (유기/무농약)	연락처 (H.P)
	계	명			
1					
2					
3					
4					

[서식 2]

'22년 유기농업 전문기술지 구독 지원대상자 선정통지

귀하는 '22년도 유기농업전문기술지 구독료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구 분	성 명 (대표자)	주 소	인증유형	지원기간
				2022. 1 ~ 12

. . .

시장.군수 ㊞

농업인 귀하

[서식 3]

2022 친환경농업 전문기술지 보급사업 사업추진결과 성과분석 및 보조금 정산 보고

(시군)

계획량		보급실적		예 산 액 (원)			집 행 액 (원)			집행 잔액 (도비)	실적 대비 (%)
명	부수	명	부수	계	도비	시군비	계	도비	시군비		

○ 사업효과

-

○ 사업추진상 문제점

-

○ **건의사항('23년 사업지침 반영)**

-

○ 주요사례(성공사례 또는 실패사례)

-

※ **<횡>** 서식으로 작성(엑셀파일)

5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

1. 목 적

○ 농업인의 농업환경보전 인식 제고 및 지역단위 농업환경 관리방안 추진 등을 통해 농업환경 보전·개선 도모

2. 근거법령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0조, 제11조

3. 추진기간 : 5개년(3년차 2020~2024, 4년차 2019~2023)

4. 사업계획

구 분	사업량	사 업 비(천 원)			
		계	국비 (50%)	도비 (15%)	시군비 (35%)
5개소		750,000	375,000	112,500	262,500
4년차	1개소	150,000	75,000	22,500	52,500
3년차	4개소	600,000	300,000	90,000	210,000

※ (4년차) 함평군, (3년차) 순천시, 담양군, 강진군, 장성군

5. 사업추진 요령

가. 사업대상자

○ (사업 대상지역) 농촌 지역 마을단위(참여농경지 최소 20ha 이상)

- 농촌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
  * 읍·면의 지역 또는 읍·면 외 지역 중 농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
- 마을 :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마을
  * 농촌지역으로서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에 따른 동(洞)·리(里) 또는 동 법 제4조의2제4항에 따른 행정동·리

○ (사업 대상) 사업지 내 마을의 농업인과 주민

- 20인 이상이 참여하고 5명 이상으로 이루어진 주민협의체가 구성된 곳
  * 사업지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사업지에 소재한 농지를 경작하는 자도 활동참여 가능
  * 동일 시·군 내 동일 수계에 위치한 마을은 함께 신청 가능

나. 지원자격 및 요건

○ 주민협의회, 행정담당자 지정 등이 갖춰진 사업대상 지역 마을

- (주민협의회) 본 사업에 대한 이해증진 및 의견수렴 등을 위해 사업대상지 별 “주민협의회” 구성
  * (역할) 사업추진에 대한 의견수렴,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준수하고 참여하도록 유도, 사업에 대한 이견·갈등 조정 등
  * (구성) 의견수렴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에 참여하는 농업인·주민으로 구성(5인 이상 10명 내외)
  * (운영) 시군 담당자, 회장 또는 회원 등이 요청할 경우 개회, 사업 관련 교육, 의견수렴 및 각종 활동 실행방안 등 논의
- (행정담당자) 사업을 신청한 시·도와 시·군에서는 본 사업을 총괄 관리하는 업무 담당부서 및 담당 공무원 확보
  * (역할) 사업성과 제고 위해 환경·문화 등의 부서와 행정협의회를 운영, 주민 대상 활동 이행 독려·사업점검, 예산 집행 등 사업 관리

○ 신청제한

- 과거 농식품부에서 지원한 “농촌지역 개발 및 공동체 활성화 관련 사업 대상자”로서 사업추진과정에서 주민갈등 등으로 인한 사업중단, 사회적 물의 발생에 따른 보조금 환수 등 제재를 받았던 마을은 사업신청 대상에서 제외

다. 지원대상

○ 농업환경보전을 위한 주민 활동비(개인·공동) 및 사업추진을 위한 환경진단, 교육·컨설팅 및 사업계획수립 등 사업관리·운영비, 전문지원조직 운영비

라.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주민 활동 이행비 : 농업환경보전을 위한 활동 중 개인 활동(3개 분야, 16개 세부 활동)과 마을 공동체 활동(5개 분야, 14개 세부 활동) 이행 시 활동별 단가에 따라 주민들에게 지급되는 비용

- 기본적으로 제시되는 공동·개인 활동 이행 시 정해진 단가를 지급
  * 정해진 단가 외 공동 활동 자재 구입, 장비 임대비용 등 실비 지급 가능
- 제시된 활동 외에도 사업지별 여건에 맞는 신규 활동을 발굴하여 지급 단가를 책정하고, 이에 따른 이행 비용 지원 가능
  * 절차 : ①주민의견 수렴(주민협의회) → ②현장 제안(시·군 → 시·도 → 전문지원조직) → ③전문가협의회 심의(시행 가능성, 적정 단가, 적용 범위 등)

○ 사업관리・운영비 : 농업환경진단, 마을주민 대상 교육・컨설팅, 사업시행계획 수립 등에 필요한 비용

- 주민 교육·컨설팅, 농업환경 평가 등을 위한 인건비, 경비 등의 비용
- 토양 투입재 현황과 화학성·물리성, 농업용수 수질, 경관자원·농업유산 현황 등 분야별 농업환경 조사 및 진단 비용

- 농업환경 조사·진단 결과를 분석하여 사업자별 여건에 맞는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비용

※ 지원제외 : 공익직불제 등 각종 직불제, 친환경 농자재, 지역개발 사업 등 타 사업을 통해 기 지원 받는 활동비, 각종 장비 및 시설 등 자산 취득비, 건물 임차비용 등

○ 전문지원조직 운영비 : 성과관리, 교육, 평가지원 등에 필요한 비용

마. 지원형태

○ 재원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지원규모 : 6,325백만원(국고 3,450, 지방비 2,875)

- 주민활동비 및 사업관리·운영비 : 5,750백만원(국고 2,875, 지방비 2,875)
- 전문지원조직 운영비 : 575백만원

○ 지원형태 : 보조 100%

- 주민활동비 및 사업관리·운영비(국고 50%, 지방비 50%)
- 전문지원조직 운영비(국고 100%)

○ 지원기간

- 주민활동비 및 사업관리·운영비(5년/사업지)
- 전문지원조직 운영비(계속)

바.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지원한도 : 사업대상 마을별 5년간 총 650백만원

- 연차별 지원한도

(단위 : 백만원)

구분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총사업비
지원액	50	150	150	150	150	650

* 연차별 사업비는 주민활동(개인·공동) 참여 비중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개인활동 분야 지원 한도 : 200만원/년

○ 편성 기준

- 주민활동비 : 총사업비 대비 개인활동비(2~5년차) 편성은 최소 35% 이상으로 편성하고, 참여 농지면적 또는 개인활동비 편성 비율이 축소될 경우 사업비 총액을 조정할 수 있음
- 사업관리·운영비 : (1년차) 100%, (2~5년차) 30% 이내

○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활동 내용

- 농업환경 개선이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고, 토양·용수·생태·경관 등 다양한 환경보전 활동 시행
- 농업환경 보전활동은 토양·용수·대기·경관·생활·유산·생태 분야별 “개인” 또는 “공동” 활동으로 구성

1 개인활동 : 3개 분야 / 6개 과제 / 16개 세부활동

분야	단위과제	세부활동	구분
토양	1. 적정양분 투입	① 완효성 비료 사용하기	**필수**
	2. 외부양분 투입 감축	① 농사 후 남은 농업부산물 잘라 논.밭에 환원	**필수**
		② 휴경기 녹비작물 재배 및 토양환원	**필수**
	3. 토양침식 및 양분유출 방지	① 볏짚 등 농업부산물로 경사진 밭 덮기	선택
		② 경사진 밭 둘레에 빗물이 돌아가는 이랑 만들기	선택
		③ 경사진 밭 끝에 초생대 설치하기	선택
		④ 경사진 밭 끝에 침사구 설치하기	**필수**
생태	1. 농약사용 저감	① 천적으로 해충 방지하기	선택
		② 제초제 없이 잡초 제거하기	**필수**
		③ 과수원에서 초생 재배하기	선택
		④ 태양열로 토양 소독하기	선택
		⑤ 시설하우스에 방충망 설치하기	선택
	2. 농업생태계 보호	① 둠벙(물웅덩이) 조성 및 관리('22 신규)	선택
대기	1. 온실가스 감축	① 경운 최소화	선택
		② 바이오차 투입('22 신규)	선택
	2. 축산악취 저감	① 축산악취 저감을 위한 미생물 제제 사용하기	선택

2 공동활동 : 5개 분야 / 6개 과제 / 14개 세부활동

분야	단위과제	세부활동	구분
용수	1. 농업용수 수질개선	① 오염된 하천.저수지 청소 및 수생식물 식재	**필수**
	2. 양분유출 방지 등	① 논 배수물꼬 설치 및 물관리	**필수**
생활	1. 생활환경 개선 * 농촌비점 발생 최소화	① 영농폐기물 공동수거 및 분리배출	**의무**
		② 생활폐기물 공동수거 및 분리배출	선택
생태	1. 농업생태계 보호	① 생태계에 유해한 생물 제거	**필수**
		② 둠벙(물웅덩이) 조성 및 관리**	**필수**
		③ 농경지 이용 멸종위기종 조류 먹이공급	**필수**
경관	1. 농촌경관 개선	① 공동공간 관리 및 청소	선택
		② 공동공간에 꽃과 나무 심기	선택
		③ 빈집 및 불량시설 경관 정비	선택
유산	1. 농업유산 보전	① 농경의례 및 공동체문화 전승	선택
		② 전통적 농업기술의 유지 및 계승	선택
		③ 전통적 토지이용 경관의 보전	선택
		④ 전통적 수리관개시설의 활용 및 보전	선택

6. 사업추진 체계

	농림축산식품부	사업시행기관	사업대상자
사업신청	기본계획(사업지침) 수립.시달	세부계획 수립 및 사업신청	사업신청
사업자선정 자금배정	사업대상자 선정 통보	자금배정 요청 및 사업비신청	사업비 수령
이행점검	사업추진실적 및 자금 집행 점검	사업추진 현황, 자금집행 적정여부 등 확인	사업추진
사업평가 및 환류	평가결과 정책 반영	이행실적 검검, 성과측정	사업이행실적 제출

가. 사업신청단계

사업시행지침 통보 → **사업홍보 및 선정공고 [이-나라도움, 홈페이지]** → **사업신청**

농식품부(전년 12월)
*'23년도 이후 : 전년 9월

시군구 등 사업시행기관
(전년 12월)
*'23년도 이후 : 전년 9월

사업대상 마을(12~2월)
*'23년도 이후 : 전년 9~11월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시행지침 통보(농식품부 → 시·도)

사업시행기관

○ **시·도**는 사업시행지침을 시·군에 지체 없이 통보(시·도 → 시·군)하고 시·군은 사업신청자 공개 모집(시·군 → 마을)

- 시·도는 농식품부로부터 통보받은 사업시행지침을 시·군에 통보하여 사업신청방법 등 안내
- 시·군은 사업에 관심이 있는 마을이 사업신청을 할 수 있도록 사업의 개요, 지원요건, 신청기간, 신청방법 등을 시·군 홈페이지 등에 7일 이상 공고

* 필요시 마을 이장 등을 대상으로 사업의 목적, 내용 등 설명·홍보

○ 시·군은 마을별 농업환경을 검토한 후 마을을 선정하여 시·도에 사업신청 (시·군 → 시·도)

* 친환경농업집적지구는 의무적으로 사업 신청

- 시·군은 마을별 농업환경을 진단하는 '시·군 농업환경위원회' 구성

* 농업환경을 진단할 수 있는 시·도 농업기술원, 시·군 농업기술센터, 지역 농어촌공사 토양·수질조사 담당관과 농업·환경 분야 학계·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5인 내외)

- 시·군은 '시·군 농업환경위원회'를 개최하여 사업지 평가

* 마을별 사업신청서와 시·군에서 조사한 농업환경 현황 자료를 상정하여 '사업신청 대상 마을' 평가 요청

* '시·군 농업환경위원회'는 상정된 자료를 평가한 후 검토의견과 함께 마을별 우선순위를 정하여 시·군에 제출

※ 사업신청 마을이 1~2개소(친환경농업집적지구 대상지역 제외) 인 경우 시·군 농업환경위원회 구성 및 평가 불요

- **시·군은** '시·군 농업환경위원회'에서 결정한 1~2순위 마을 및 친환경농업 집적지구 대상지역의 관련 서류를 시·도에 제출

* 시·도에 제출하는 서류 : 1)마을에서 제출한 사업신청서, 2)시·군에서 조사한 농업환경 현황 조사서, 3)그 외 증빙 및 참고자료

* 평가결과에 따라 시·도에 제출 되지 않은 마을은 다음해 신규 사업대상지 공모시 우선순위 부여

○ **시·도**는 시·군에서 제출한 사업신청서 등을 검토한 후 농식품부에 사업신청(시·도 → 농식품부)

* 친환경농업집적지구는 의무적으로 사업 신청

- 시·도는 농업환경을 진단하는 '시·도 농업환경위원회' 구성

* 농업환경을 진단할 수 있는 시·도 농업기술원, 시·군 농업기술센터, 지역 농어촌공사 토양·수질조사 담당관과 시·도 내 연구원, 농업·환경 관련 학계·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5인 내외)

* 평가대상 마을 소관 지자체 관계자, 시·군 농업환경위원회에서 해당 마을을 기평가했던 위원 등은 시·도 농업환경위원회 위원으로 위촉 금지

- **시·도는** '시·도 농업환경위원회'를 개최하여 사업지 평가

* 시·군별로 제출한 마을별 사업신청서와 기 조사된 농업환경 자료를 상정하여 '사업신청 대상 마을' 평가 요청

* '시·도 농업환경위원회'는 상정된 자료를 평가한 후 검토의견과 함께 마을별 우선순위를 정하여 시·도에 제출

- **시·도**는 '시·도 농업환경위원회'에서 결정한 우선순위에 따라 친환경농업 집적지구 대상지역을 포함하여 5개 이내의 마을을 관련 서류와 함께 농식품부에 제출

* 농식품부에 제출하는 서류 : 1)마을에서 제출한 사업신청서, 2)시·군에서 조사한 농업환경 현황 조사서, 3)그 외 증빙 및 참고자료

사업대상자

○ 사업추진 희망 마을은 사업신청서를 시·군에 제출(마을 → 시·군)

- 사업신청을 하고자 하는 마을에서는 사업신청 요건을 갖추고 시·군에 사업신청서 제출

○ 시·군은 사업신청 마을별 농업환경 관련 데이터 확보 및 여건 조사

- (토양) 농경지의 화학성·물리성 등 최근 2년간의 데이터
- (용수) 하천, 지하수, 저수지 등의 수질 등 최근 2년간의 데이터
- (경관/생활/유산/생태) 영농폐기물 방치 상태, 국가중요농업유산 유무, 생태환경 현황 등

나. 사업자 선정단계

신청서류 접수, 평가위원회 구성	→	사업대상 마을 선정 평가	→	사업대상마을 통보
농식품부(2월) *'23년도 이후 : 전년 11월		평가위원회(2월~3월) *'23년도 이후 : 전년 11~12월		농식품부(3월) *'23년도 이후 : 전년 12월

농림축산식품부

○ **농식품부**는 시·도에서 제출한 사업신청 관련 서류 접수

- 농식품부는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않았거나, 일부 서류가 미비한 사업지에 대해서는 평가 보류

○ **농식품부**는 '농업환경사업평가위원회' 구성(전문지원조직 지원)

- '농업환경사업평가위원회'는 농촌진흥청,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농어촌공사, 시·도 내 연구원 관계자 및 학계·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5~10인 내외)

○ 농식품부는 '농업환경사업평가위원회' 평가결과에 따른 사업대상지를 선정·발표하고 해당 시·도를 통해 대상자 통보

평가위원회

○ '농업환경사업평가위원회'는 「서류평가 → 발표평가 → 현장평가 → 종합평가」 절차를 거쳐 사업대상 마을 선정 평가

- (서류평가) 해당지역의 환경관리 시급성, 방안의 적정성 등을 중점 평가

* 농식품부(전문지원조직)는 평가위원이 서면평가를 할 수 있도록 평가위원별 개인 이메일 등으로 자료 송부

- (발표평가) 지자체와 주민의 추진의지와 역량을 중점 평가

* (시·군 및 마을별 참석자 규모) 시·군 업무담당관(2인 이내), 마을 이장 및 주민협의체 참여 주민(3인 이내)

- (현장평가) 사업의 성과 창출 가능성 등을 중점 평가

* 사업신청지가 많을 경우 효율적인 현장실사 위해 평가위원단을 2개 분과 이상으로 나누어 권역별 현장실사 실시

- (종합평가) 그간의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최종 평가, 선정발표

사업시행기관

○ 농식품부의 사업대상지를 선정·발표내용 결과에 따라 사업신청 마을에 대상자 선정여부를 통보

다. 세부계획 수립 및 시행단계

사업기반 구축	→	주민교육, 농업환경조사	→	사업시행 계획(안) 마련
시·군, 사업대상지		시·군, 현장지원조직		시·군, 현장지원조직

사업 기반구축(1년차)

○ **시·군은** 해당 사업대상지에서 시행되는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사업 전반에 대한 지원기능을 수행할 기반을 구축

- (현장지원조직) 농업인·주민 스스로 농업환경 보전활동을 실천하고,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는 환경관리 및 컨설팅 분야 전문가로 구성 (사업대상지 선정 후 2개월 내)

* 민간기관에 위탁 운영 가능하나, 현장과의 긴밀한 소통을 위해 지역주민을 참여시키고, 동 기관이 농업환경조사 역량이 있는지 종합 판단

** 전문지원조직에서 제공한 '현장지원조직으로 활동 가능한 민간기관 풀'을 참고하여 선정

- (현장지원사무소) 현장지원조직이 사업대상지에서 업무수행, 소규모 회의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사무공간 설치(현장지원조직 선정 후 1개월 내)

- (행정협의회) 시·군에서는 지자체 내 유관부서 등과 협력을 위해 부단체장을 의장으로 행정협의회 구성(사업대상지 선정 후 1개월 내)

교육, 농업환경 조사(1년차)

○ **전문지원조직**은 현장지원조직과 지자체를 대상으로 사업계획 수립, 활동 이행 등에 대해 교육, 관리

○ **현장지원조직은** 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사업의 목적, 의의, 주요내용 및 추진방안 등 교육

* 주민협의회 회장 등과 협의하여 농업인·주민 대상 현장 교육 계획 수립

- 농업인·주민들이 스스로 이행 활동을 제안할 수 있도록 간담회, 설명회 등을 통해 주민 의견 수렴

○ 현장지원조직은 사업대상지역의 분야별 농업환경 관련 유관기관, 전문가 등과 협조를 통해 농업환경 조사와 진단 실시

- 농진청 등의 업무 협조를 통해 토양·수질·생물상 현황을 조사하고, 경관·농업유산 등 마을이 보유한 자원도 조사

* 저수지·지하수 등 수질 기초자료는 농어촌공사, 지자체 자료 활용 병행

사업시행계획(안) 작성(1년차)

○ 현장지원조직은 농업환경조사 결과 및 주민 의견 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시행계획(안)을 수립하고, 전문지원조직은 이를 검토·보완하여 확정(~10월)

- 본 사업의 추진 성과를 점검하고 이를 평가할 수 있도록 전문지원조직이 제시하는 성과지표를 참고하여 지역별 성과지표 제시

- 성과 달성이 용이하고, 농업인·주민들이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콘텐츠에 대해 분야별 세부 활동으로 상세화

* 농업환경보전 세부 활동 내용, 활동 이행 일정, 지급단가, 이행증빙 방법 등

- 시·군은 사업성과 제고 위해 타 사업과의 연계방안 등에 대한 내용을 추가

사업시행계획 확정 및 협약 체결(1년차)

○ 시·군은 사업시행계획안을 시·도에 제출, 시·도는 농업환경위원회에 이를 상정·심의(11월)

* '사업신청 가이드라인' 상의 '시·도 농업환경위원회'와 동일

* 농업환경조사 결과와 농업환경보전 활동과의 연관 적합성 및 사업계획 효과성과 실현가능성 등 사업타당성 논의

○ 사업시행계획이 확정된 후 시·군은 사업 참여 농업인·주민들과 농업환경보전을 위한 협약 체결(12월)

* (장소) 마을 회관 등 마을 공동 공간, (참석) (지자체측) 시장 또는 군수(부재시 부단체장), (마을측) 주민대표 또는 주민협의회 회장, 사업 참여 농업인·주민

○ 확정된 사업시행계획과 협약체결 결과를 시·도에 제출하고, 시·도는 이를 농식품부에 제출(12월)

2~5년차 사업이행

○ 수립한 사업시행계획에 따라 개인 및 공동활동 이행 및 평가 등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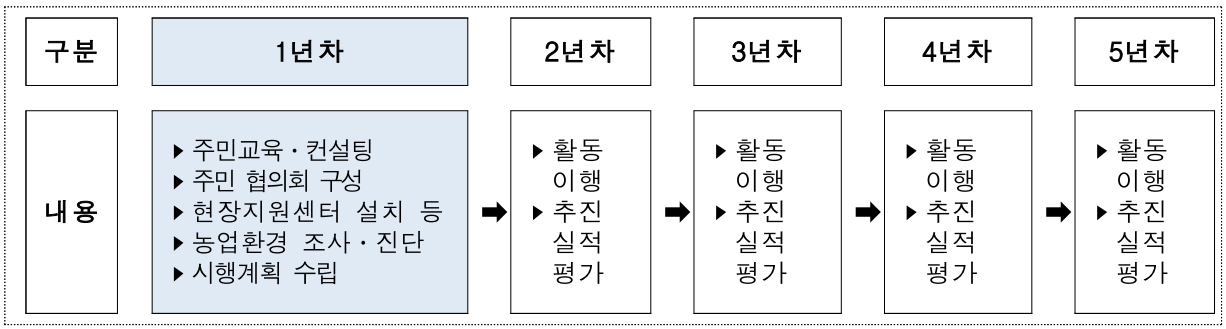

○ 매년 추진실적 및 농업환경조사 결과를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별 성과지표 달성을 위해 이행활동 등 사업시행계획을 변경하여 차년도 사업 추진

《 사업시행계획 변경절차 》

○ 확정된 사업계획의 주요사항을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 협의대상 변경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시·군이 사업참여 농업인·주민들과 자체적으로 변경

○ 확정된 사업계획의 변경사항이 아래의「**협의 대상 변경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농식품부 및 전문지원조직과 **협의**한 후 **시·도 농업환경위원회 심의**를 거쳐 변경 진행

< 협의 대상 변경요건 >

① 개인활동
- 사업시행 농경지 총 면적의 30% 이상이 증감되거나 위치가 변경되는 경우
- 사업참여자의 수가 30% 이상 증감되거나 변경되는 경우
- 특정 분야 활동* 전체가 사업시행계획에 추가되거나 삭제되는 경우
  * 토양 / 용수 / 대기 / 경관 / 생활 / 유산 / 생태

② 공동활동
- 사업참여자의 수가 30% 이상 증감되거나 변경되는 경우
- 특정 분야 활동* 전체가 사업시행계획에 추가되거나 삭제되는 경우
  * 토양 / 용수 / 대기 / 경관 / 생활 / 유산 / 생태

라. 사업비 집행

시·도에 보조금 교부	→	보조금 교부 신청 및 활동이행 자금 지급	→	활동이행비 지급
농식품부		시·도 및 시·군		사업대상지역

농림축산식품부

○ 농식품부는 시·도가 보조금 교부를 신청할 경우 교부 결정 후 해당 시·도에 예산 교부

사업시행기관

○ 시·도는 농식품부에 보조금 교부를 신청하고, 농식품부가 해당 시·도에 예산 교부시 시·도는 교부받은 국비를 시·군에 교부
- 시·도는 농식품부에 상반기 1회(1월, 전체 국비의 50% 이상), 하반기 1회(7월, 나머지 국비 전액) 보조금 교부 신청

○ 시·군은 개인·공동 활동을 이행한 농업인·주민들에게 관련 예산 집행
- 시·군은 주민협의회 회장이 제출한 개인·공동 활동 이행결과 관련 자료를 확인 한 후 특정 시기에 해당 활동 이행자에게 자금 지급
  * 매년 분기말 : 3월말, 6월말, 9월말, 12월말(실집행률 제고를 위해 분기별 지급 철저)
  * 지급대상자 : (개인활동비) 활동에 참여한 개별 농업인·주민, (공동활동비) 활동에 참여한 개별 농업인·주민, (공동활동 시 구매한 자재비 등) 본 사업가이드라인에 따른 공동 활동 추진 대표자
- 시·군은 사업 참여 농업인·주민들에게 자금 지급 시 본 사업가이드라인 상의 '농업환경보전 활동' 지급단가 기준 적용

사업대상지역

○ 주민협의회 회장은 시·군에 예산 지급을 요청하고, 시·군은 해당 사업대상지역 사업 참여 농업인 및 주민에게 예산 지급

- 주민협의회 회장은 개인·공동 활동을 기록한 자료와 활동 증빙 자료 등을 취합(현장지원조직 지원)하여 시·군에 예산 지급 요청

마. 이행 점검 단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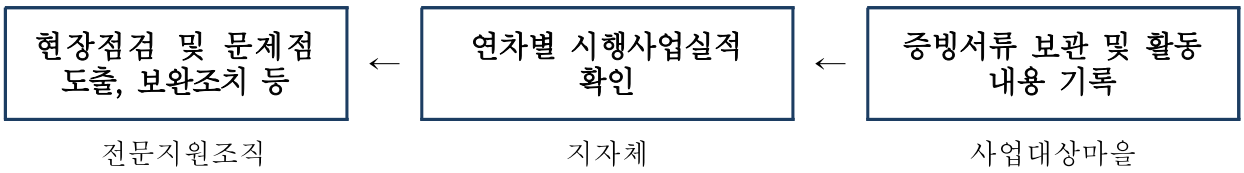

《사후관리》

전문지원조직

○ 시·도별 연 1회 이상 협약 이행의 적절성 등 추진상황 점검

- 시·도에서 제출한 사업이행 점검결과를 통해 사업이행 상황을 서면점검 하거나, 시·도와 공동으로 현장점검 실시
- 사업추진 현장점검을 통해 사업계획 이행, 사업추진상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결과에 따라 사업계획 수정 등 미비사항 보완조치 등

사업시행기관

○ 사업시행기관은「사업추진계획」 및 협약내용에 따라 사업실적 확인 등 사후관리 실시

- 마을별 농업환경 관리계획, 연차별 시행계획, 협약 내용을 토대로 이행점검 대상을 확정하고, 이행점검 실시

* 현장지원조직과 함께 사업성과 분석 등을 위해 사업시행계획 이행 점검 관련 농업환경 분야 모니터링 실시

※ 전제사항

① 사업 2년차부터 동 계획 이행 점검 관련 농업환경 분야 조사
  * 사업 1년차에는 사업시행계획 수립, 사업 2년차부터 사업시행계획 이행

② 농업환경 분야 중 토양·용수·생태의 경우 자연적 조건에 해당하기 때문에 조사 결과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조사 시기가 전년도와 동일해야 함
  * 사업 1년차에 실시되는 토양·용수·생태 조사는 4~6월 경 시행

③ 농업환경 분야 중 경관·생활·유산의 경우 시기의 제약을 받지 않고 관련 활동 프로그램 이행 실적 점검 가능

○ 사업 2년차부터 시·도는 시·군의 사업이행상황을 상·하반기에 점검하고, 그 결과(별지 제3호)를 농식품부에 제출(7월, 12월)

사업대상자

○ 개인 활동은 증빙서류 보관 및 활동 내용 기록, 공동 활동은 마을별로 공동 기록관리자를 지정하여 대표로 기록(현장지원조직 지원)
  - 개인별 활동 기록이 어려울 경우 공동 기록관리자 또는 그룹별로 별도의 기록관리자(모니터링 반장)를 지정하여 기록

유관기관

○ 토양검정 등 토양 관리, 수질 개선 관련 활동 등은 활동의 특성과 전문성을 고려하여 유관기관 활용

《제재 및 처벌내용》

사업시행기관

○ 사업추진기관은 다음의 부당사유 등이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보조금을 회수 조치하여야 함
  -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때
  -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대출을 받은 때
  - 관련 법령을 위반한 때
  - 부도, 폐업, 사업 포기 및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추진하지 아니한 때

○ 기타 보조금의 부당사용 및 법령위반 등과 관련된 대출제한 및 보조금의 회수조치 등은「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정한 바에 따름

바. 성과 측정 단계

* 사업시행가이드라인 內 성과측정 가이드라인 참고(사업대상지역 선정 후 배포 예정)

전문지원조직

○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의 사업성과를 농업환경·보전인식 개선, 생물다양성 증진, 농업분야 온실가스 감축 지표에 따라 평가

- (주민 환경개선 인식도) 4개 분야 29개 항목 조사지표에 따라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사업 참여자의 농업환경에 대한 인식도 및 개선 정도를 평가

* 매년 말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사업대상지역을 선정하여 마을주민 대상 사업 인식도 실시

- (생물다양성 증진) 지표 생물 개체수를 점수화(A~E등급)하여 농업환경 보전프로그램 활동이 생태환경 보전·개선 등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평가
- (온실가스 감축) 환경보전형 영농활동이 농경지 온실가스(CO_2) 감축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

사. 전문지원조직 운영

○ 농식품부는 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전문지원조직'을 지정하여 운영

- 전문지원조직은 지자체 현장지원조직의 운영 지원, 지자체 사업계획 및 활동에 대한 성과점검, 지자체·현장지원조직 대상 교육 등 사업 전반 운영 지원

7. 평가 및 환류

가. 사업평가 및 환류 단계

○ 시·군은 현장지원조직과 사업 참여 농업인·주민들, 관련 기관 관계자와 함께 매년 말 사업이행 추진실적 평가회 개최(12월)

* 농업환경 모니터링 조사와 관련이 있는 기관(시·도 농업기술원, 시·군 농업기술센터, 지역 농어촌공사, 기타 외부 전문기관 등)

* 사업대상지의 사업주체(시·군, 현장지원조직, 사업참여 농업인·주민들)들이 1년간의 사업이행 실적과 성과를 돌아보고 사업을 효율적으로 이행하고 성과를 극대화하는 방안을 논의

○ 시·군은 동 평가회를 통해 사업 참여 농업인·주민들과 사업이행 실적 및 농업환경 모니터링 조사 결과 등을 확인하고 개선방안을 논의, 이를 바탕으로 현장지원조직은 다음연도 사업계획서 보완

나. 보고 및 기타

○ 사업 2년차부터 시·군은 연간 사업이행 실적 평가서(별지 제4호)를 시·도에 제출하고 시·도는 사업대상지별 자료를 취합하여 농식품부에 제출(익년 1월 15일까지)

○ 성과관리 및 환류를 위해 전문지원조직 內 전문가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

[별지 제1호 서식]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사업신청서

<table>
<tr><td>1. 대상지역</td><td colspan="6">시・도 시・군 읍・면 리</td></tr>
<tr><td rowspan="2">2. 참여주민</td><td>주민수(명)
/전체 주민수</td><td></td><td colspan="2">전체경지면적(ha)</td><td colspan="2"></td></tr>
<tr><td>가구(수)</td><td></td><td colspan="2">대표품목(상위5개)</td><td colspan="2"></td></tr>
<tr><td>3. 주민
협의회</td><td>회장명</td><td></td><td colspan="2">참여주민수(명)</td><td colspan="2"></td></tr>
<tr><td rowspan="6">4. 농업환경
현황</td><td rowspan="3">영농방식
*참여주민 기준</td><td colspan="3">친환경농업</td><td colspan="3">관행농업</td></tr>
<tr><td>인증면적(ha)</td><td colspan="2">대표품목(상위3개)</td><td>면적(ha)</td><td colspan="2">대표품목(상위3개)</td></tr>
<tr><td></td><td colspan="2"></td><td></td><td colspan="2"></td></tr>
<tr><td rowspan="2">농업용수</td><td colspan="6">주요용수원</td></tr>
<tr><td>하천명</td><td></td><td>저수지명</td><td></td><td>지하수</td><td>유 / 무</td></tr>
<tr><td>농업유산
/경관</td><td colspan="6">* (유산)국가중요농업유산 또는 마을특유의 농업유산(돌담, 구들장논, 전통농법, 전통마을행사 등)
* (경관) 유형 문화재, 마을 공동공간 관리 상태, 영농・생활폐기물 관리 실태 등 기술</td></tr>
<tr><td>생태자원</td><td colspan="6">*농경지와 마을에 있는 각종 생태 자원 및 보호대상 동식물 등 기술
- (식물) 보호수, 각종 희귀식물 등, (동물) 조류, 양서류, 포유류, 수서생물 등</td></tr>
<tr><td>5. 시·군 농업환경보전 계획 수립 여부
* 증빙자료 첨부(시·군 농업환경보전계획의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 해당 페이지 발췌)</td><td colspan="2">계획 수립 여부</td><td>수립/미수립</td><td colspan="2">계획 內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계획 포함 여부</td><td>포함/불포함</td></tr>
</table>

우리 마을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위와 같이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 사업에 참여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사업신청자 성 명 : (서명 또는 인)
주 소 : (전화 :)

○ ○ 시장・군수 귀하

첨부서류 1. 농업환경 개선사항 및 주민활동 방안
2. 사업참여자 현황
3.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사업신청서 정보이용동의서
4. 사업추진 기반요소 구축현황
5. 사업후보지 농업환경 현황 조사서

[첨부 서류 1]

농업환경 개선사항 및 주민활동 방안

1. 현재 토양, 용수, 대기, 생활/경관, 유산/생태 등 마을의 농업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가장 시급하게 개선이 필요한 부분
2. 사업 참여 시 마을의 농업환경 개선을 위해 추진하고 싶은 활동
3. 기타 사업 참여를 통해 하고자 하는 활동이나 사업 관련 의견
4. 환경 등 타 사업, 유관기관과의 연계 방안

[첨부 서류 2]

사업참여자 현황

연 번	성 명	주 소	서 명(인)	비 고
1				*대표*
2				*사회적 농업 조직*
3				
:				

[첨부 서류 3]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 사업신청서 정보이용 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등에 대한 동의

신청인(농업경영체에 등재된 경영주와 경영주 외 농업인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은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 사업 담당 공무원이 해당 사업의 지급 대상 자격 및 신청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농업경영체 등록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데 동의합니다.

※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또는 농림축산식품부가 관리하는 각종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 사업 참여나 지원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자)	(서명 또는 인)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활용 동의

1.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 사업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농림축산식품부,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 등이 사업을 위한 기초자료로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동의 [ ] 거부

2.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 사업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 등으로부터 사업 정보를 문자메시지로 받아보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동의 [ ] 거부

3.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 사업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사업대상자의 선정, 관리, 지원 기준의 적합성 확인 등을 위한 확인 자료로 활용하는 데 동의합니다.

[ ] 동의 [ ] 거부

※ 위 개인정보 이용 및 제3자 제공·활용 동의는 농업경영체 등록이 말소되는 날까지 유효하며(등록정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은 등록 말소 후에도 사업 추진, 결과 활용 등을 위하여 위 개인정보를 보유·이용할 수 있습니다.

※ 위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활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 사업 참여나 지원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개인정보 이용·제공·활용 동의자)	(서명 또는 인)

[첨부 서류 4]

사업추진 기반 요소 구축 현황

1 주민협의회

○ 구성

• 일시 : '00년 00월 00일, 00시 • 장소 : 000 • 참석 : (지자체) 00시 00과 000 팀장, (사업참여자) 000외 00명	주민협의회 구성회의 현장사진

○ 주민협의회 명단

구분	성명	주소	재배품목	서명
회장	000			
간사	000			
회원	000			

2 행정담당자

○ 시·도

시·도명	000도	부서명	0000과
직위	성명	전화번호	
부서장		사무실) 000-000-0000, 휴대폰)010-0000-0000	
팀장			
주무관			

○ 시·군

시·군명	00시	부서명	0000과
직위	성명	전화번호	
부서장		사무실) 000-000-0000, 휴대폰)010-0000-0000	
팀장			
주무관			

[첨부 서류 5]

사업후보지 농업환경 현황 조사서

OO마을 농업환경 현황 조사결과

- OO도 OO시 OO면 OO리 -

2021. O. OO.

○○시·군

1 사업후보지 현황

□ 일반 현황

○ 마을이름 : 00마을(사업대상지 면적 : 00㎡)

○ 주민현황 : (주민수) 명, (가구수) 호, (농가수) 호

○ 마을위치 : *읍면리 단위까지 기입*

《 위치도 》

<예시>

◈ *장현1리 위치 및 경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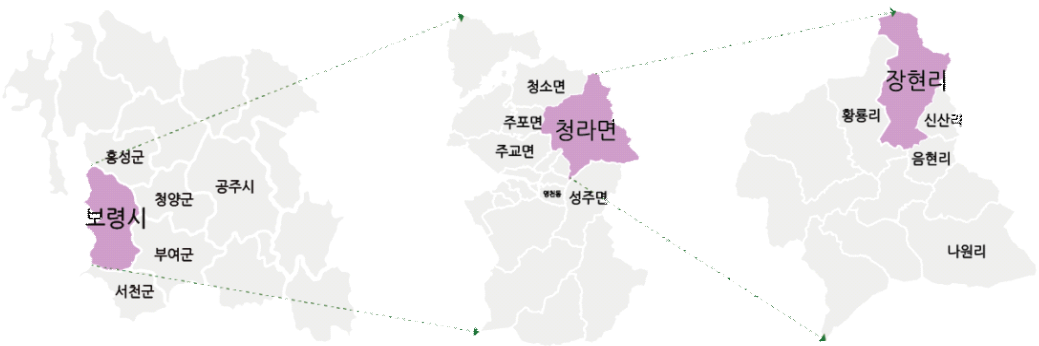

◈ *장현1리 사업대상지 및 법정리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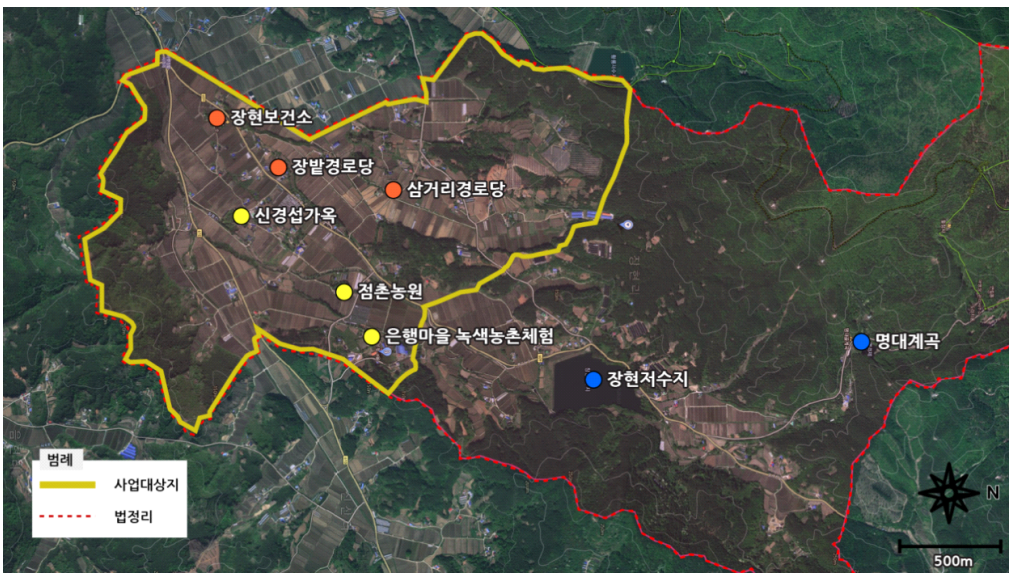

* *지형도(또는 위성사진) 활용하여 해당 마을의 위치가 파악될 수 있도록 표기하며, 공간적 범위의 경계를 표기*

□ 주민 현황

○ 인구 현황 *※ 주민등록부를 통해 확인*

< 마을 전체 >

구분	20세～39세	40세～59세	60세 이상	합계
인구수(명)				
비중(%)				

< 사업 참여자 >

구분	20세～39세	40세～59세	60세 이상	합계
인구수(명)				
비중(%)				

○ 가구 현황 *※ 농지원부, 농업경영체등록서, 축산업등록서 등 관련 공부를 통해 확인*

< 마을 전체 >

구분	경종	축산	경종+축산	일반	합계
가구수(호)					
비중(%)					

< 사업 참여자 >

구분	경종	축산	경종+축산	일반	합계
가구수(호)					
비중(%)					

□ 지역 현황(토지이용실태)

구분	지정현황	비고
용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용도지역 중 기재* *-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예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농림지역* ** 출처 : 시·군 관리계획(00년 확정)*	
지역·구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타법 등에 따라 지정된 지역·구역 중 기재* *- 다음장에 기재된 지역.구역 참고* *예시) 「농지법」 제28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 출처 : 시·군 00계획(00년 확정)*	

※ *해당 지역의 토지이용실태를* 토지이용계획확인서(「토이용규제기본법」 제10조제1항)*를 발급받아 확인하고 이를 위와 같이 작성*

1. *「농지법」 제28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2.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수변구역,*
3.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4. *「자연환경보전법」 제12조에 따른 생태경관보전지역 및 제34조에 따른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
5.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및 제33조에 따른 야생생물 보호구역,*
6. *「산지관리법」 제4조에 따른 보전산지,*
7. *「습지보전법」 제8조에 따른 습지보호지역,*
8. *「토양환경보전법」 제17조에 따른 토양보전대책지역*
9. *「자연공원법」 제4조에 따른 자연공원*
10. *「문화재보호법」 제25조 및 제27조에 따른 명승 및 천연기념물과 그 보호구역*
11. *「물환경보전법」 제54조에 따른 비점오염원 관리지역 등*

위 각종 지역·구역 및 그 외 타법으로 지정된 지역·구역 중에서 기재

2 영농 현황

□ 농업 현황(마을전체)

○ 경지 면적

< 마을 전체 >

구분	논			밭			시설			과수원			합계		
	일반	유기	무농약	일반	유기	무농약	일반	유기	무농약	일반	유기	무농약	일반	유기	무농약
면적(ha)															
비중(%)															
합계 (비중)															

< 사업 참여자 >

구분	논			밭			시설			과수원			합계		
	일반	유기	무농약	일반	유기	무농약	일반	유기	무농약	일반	유기	무농약	일반	유기	무농약
면적(ha)															
비중(%)															
합계 (비중)															

○ 생산 작물

- 일반

< 마을 전체 >

구분	*작물명1*	*작물명2*	*작물명3*	*작물명4*	*작물명5*
면적(ha)					
경지구분					

※ 면적이 넓은 상위 5개 품목 기재(면적이 넓은 순으로)

※ 경지구분란에는 논, 밭, 시설, 과수원 중에서 기재

< 사업 참여자 >

구분	*작물명1*	*작물명2*	*작물명3*	*작물명4*	*작물명5*
면적(ha)					
경지구분					

- 무농약

< 마을 전체 >

구분	*작물명1*	*작물명2*	*작물명3*	*작물명4*	*작물명5*
면적(ha)					
경지구분					

※ 면적이 넓은 상위 5개 품목 기재(면적이 넓은 순으로)

※ 경지구분란에는 논, 밭, 시설, 과수원 중에서 기재

< 사업 참여자 >

구분	*작물명1*	*작물명2*	*작물명3*	*작물명4*	*작물명5*
면적(ha)					
경지구분					

- 유기

< 마을 전체 >

구분	*작물명1*	*작물명2*	*작물명3*	*작물명4*	*작물명5*
면적(ha)					
경지구분					

※ 면적이 넓은 상위 5개 품목 기재(면적이 넓은 순으로)

※ 경지구분란에는 논, 밭, 시설, 과수원 중에서 기재

< 사업 참여자 >

구분	*작물명1*	*작물명2*	*작물명3*	*작물명4*	*작물명5*
면적(ha)					
경지구분					

○ 가축사육현황

구분	소	돼지	닭	오리	기타
가구수(호)					
마리수(마리)					

3 농업환경 현황

1 토양 분야

□ 토양 화학성 및 물리성 적정기준

※ **토양 화학성 적정범위**(출처 : 농진청)

구분	pH (1:5)	EC ($dS\ m^{-1}$)	유기물 ($g\ kg^{-1}$)	유효인산 ($mg\ kg^{-1}$)	치환성양이온($cmol_c\ kg^{-1}$)			유효규산 ($mg\ kg^{-1}$)
					칼륨	칼슘	마그네슘	
논	5.5~6.5	≤2.0	20~30	80~120	0.20~0.30	5.0~6.0	1.5~2.0	157≤
밭	6.0~7.0	≤2.0	20~30	300~550	0.50~0.80	5.0~6.0	1.5~2.0	
시설	6.0~7.0	≤2.0	25~35	300~550	0.50~0.80	5.0~6.0	1.5~2.0	
과수	6.0~7.0	≤2.0	20~30	300~550	0.50~0.80	5.0~6.0	1.5~2.0	

※ **토양 물리성 적정범위**(출처 : 농진청)

기준 지표		논	밭	과수	시설
심토 용적밀도 ($Mg\ m^{-3}$)	사양질 (점토함량 18% 미만)	<1.5	<1.6	<1.6	<1.5
	식양질 (점토함량 18% 이상)	<1.4	<1.5	<1.5	
작토심 (cm)		>20	-	-	-

※ 작토심 : 경운으로 형성된 층위를 말함.

□ 요약 * 평균치 기준

○ 토양화학성

구분		pH (1:5)	EC ($dS\ m^{-1}$)	유기물 ($g\ kg^{-1}$)	유효인산 ($mg\ kg^{-1}$)	치환성양이온($cmol_c\ kg^{-1}$)			유효규산 ($mg\ kg^{-1}$)
						칼륨	칼슘	마그네슘	
논	기준	5.5~6.5	≤2.0	20~30	80~120	0.20~0.30	5.0~6.0	1.5~2.0	157≤
	결과								
밭	기준	6.0~7.0	≤2.0	20~30	300~550	0.50~0.80	5.0~6.0	1.5~2.0	
	결과								
시설	기준	6.0~7.0	≤2.0	25~35	300~550	0.50~0.80	5.0~6.0	1.5~2.0	
	결과								
과수	기준	6.0~7.0	≤2.0	20~30	300~550	0.50~0.80	5.0~6.0	1.5~2.0	
	결과								

○ 토양 물리성

구분		심토 용적밀도		작토심 (cm)
		사양질 (점토함량 18% 미만)	식양질 (점토함량 18% 이상)	
논	기준	<1.5	<1.4	>20
	결과			
밭	기준	<1.6	<1.5	-
	결과			
시설	기준	<1.6	<1.5	-
	결과			
과수	기준	<1.5	<1.5	-
	결과			

□ 논 ※ *논 대표필지(3~5곳 이상)를 선정하여 2개년 토양조사 결과 기재, 가급적 조사 시기는 동일하게 할 것, 부득이하게 1개년 조사결과만 있는 경우 2회 이상 조사결과 수록*

① (필지1) 00리 000-0번지

- 화학성 분야

연도	pH (1:5)	EC ($dS\ m^{-1}$)	유기물 ($g\ kg^{-1}$)	유효인산 ($mg\ kg^{-1}$)	치환성양이온($cmol_c\ kg^{-1}$)			유효규산 ($mg\ kg^{-1}$)
					칼륨	칼슘	마그네슘	
'20.0월								
'21.0월								
평균								

- 물리성 분야 ※ *동일필지 대상 물리성 조사 병행*

연도	기준 지표	적정기준	
		사양질 (점토함량 18% 미만)	식양질 (점토함량 18% 이상)
'21.0월	심토 용적밀도 ($Mg\ m^{-3}$)		
	작토심 (cm)		

* "심토 점토함량" 분석하여 대상 필지 사양질 또는 식양질 구분 필요

□ 밭 ※ *밭 대표필지(3~5곳 이상)를 선정하여 5개년 토양조사 결과 기재, 가급적 조사 시기는 동일하게 할 것*

① (필지1) 00리 000-0번지

- 화학성 분야

연도	pH (1:5)	EC ($dS\ m^{-1}$)	유기물 ($g\ kg^{-1}$)	유효인산 ($mg\ kg^{-1}$)	치환성양이온($cmol_c\ kg^{-1}$)			유효규산 ($mg\ kg^{-1}$)
					칼륨	칼슘	마그네슘	
'20.0월								
'21.0월								
평균								

- 물리성 분야 ※ *동일필지 대상 물리성 조사 병행*

연도	기준 지표	적정기준	
		사양질 (점토함량 18% 미만)	식양질 (점토함량 18% 이상)
'21.0월	심토 용적밀도 ($Mg\ m^{-3}$)		
	작토심 (cm)		

* "심토 점토함량" 분석하여 대상 필지 사양질 또는 식양질 구분 필요

□ 시설 ※ *시설 대표필지(3~5곳 이상)를 선정하여 5개년 토양조사 결과 기재, 가급적 조사 시기는 동일하게 할 것*

① (필지1) 00리 000-0번지

- 화학성 분야

연도	pH (1:5)	EC ($dS\ m^{-1}$)	유기물 ($g\ kg^{-1}$)	유효인산 ($mg\ kg^{-1}$)	치환성양이온($cmol_c\ kg^{-1}$)			유효규산 ($mg\ kg^{-1}$)
					칼륨	칼슘	마그네슘	
'20.0월								
'21.0월								
평균								

- 물리성 분야 ※ *동일필지 대상 물리성 조사 병행*

연도	기준 지표	적정기준	
		사양질 (점토함량 18% 미만)	식양질 (점토함량 18% 이상)
'21.0월	심토 용적밀도 ($Mg\ m^{-3}$)		
	작토심 (cm)		

* "심토 점토함량" 분석하여 대상 필지 사양질 또는 식양질 구분 필요

□ 과수원 *※ 과수원 대표필지(3~5곳 이상)를 선정하여 5개년 토양 조사 결과 기재, 가급적 조사 시기는 동일하게 할 것*

① (필지1) 00리 000-0번지

- 화학성 분야

연도	pH (1:5)	EC ($dS\ m^{-1}$)	유기물 ($g\ kg^{-1}$)	유효인산 ($mg\ kg^{-1}$)	치환성양이온($cmol_c\ kg^{-1}$)			유효규산 ($mg\ kg^{-1}$)
					칼륨	칼슘	마그네슘	
'20.0월								
'21.0월								
평균								

- 물리성 분야 *※ 동일필지 대상 물리성 조사 병행*

연도	기준 지표	적정기준	
		사양질 (점토함량 18% 미만)	식양질 (점토함량 18% 이상)
'21.0월	심토 용적밀도 ($Mg\ m^{-3}$)		
	작토심 (cm)		

* "심토 점토함량" 분석하여 대상 필지 사양질 또는 식양질 구분 필요

2 용수 분야

□ 농업용수 수질 적정기준

※ 농업용수 수질 기준(출처 : 농진청, 농촌공사)

구분	분석항목			
	TOC (mg/L)	T-N (mg/L)	T-P (mg/L)	SS (mg/L)
농업용 하천수	≤ 6.0	≤ 3.5	≤ 0.3	≤ 100
농업용 호소수	≤ 6.0	≤ 1.0	≤ 0.1	≤ 15
농업용 지하수	NO_3-N(mg/L)			
	≤ 20			

□ 요약 * 평균치 기준

○ 수질

구분		분석항목(단위: mg/L)			
		TOC(총유기탄소)	T-N(총질소)	T-P(총인)	SS(부유물질)
하천	기준	≤ 6.0	≤ 3.5	≤ 0.3	≤ 100
	결과				
호소	기준	≤ 6.0	≤ 1.0	≤ 0.1	≤ 15
	결과				
지하수	결과	기준 질산성질소 [NO_3-N(mg/L) ≤ 20]			

□ 하천 *※ 농업용수원으로 이용되는 하천의 수질 검사결과 기재, 조사시기는 동일하게 할 것*

① (하천명) 00천, (위치) 00리 000-0번지 일원

연도	TOC (mg/L)	T-N (mg/L)	T-P (mg/L)	SS (mg/L)
'20.0월				
'21.0월				
평균				

□ 저수지 *※ 농업용수원으로 이용되는 저수지의 수질 검사결과 기재, 조사 시기는 동일하게 할 것,*

① (저수지명) 00천, (위치) 00리 000-0번지 일원

연도	TOC (mg/L)	T-N (mg/L)	T-P (mg/L)	SS (mg/L)
'20.0월				
'21.0월				
평균				

□ 지하수 *※ 농업용수원으로 이용되는 지하수의 수질 검사결과 기재, 조사 시기는 동일하게 할 것,*

① (위치) 00리 000-0번지 일원

구분	'20.0월	'21.0월	평균
NO_3-N(mg/L)			

3 생태 분야

□ 생태환경 실태

○ 마을 권역 환경관련 법적 지위

※ 환경 관련 법령에 따른 자연보호구역 등 기재

○ 논 등 농경지 및 주변 생물 서식 실태

연번	주요개요	
	생물명	▪ *생물명*
	서식처	▪ *농경지 위치, 필지(논, 밭, 시설 등) 기재*
	주요특성	▪ *주요특징 기재* - *천연기념물 00호(2019년 지정) 등 법적 지위 기재 > 해당 없으면 기재 불요* * *법적 근거 : 00법 제00조*
	생물사진	서식처 위치도

○ 생태 교란 생물 서식 현황(※환경부 생태계 교란생물 지정고시 참고)

연번	주요개요	
	생물명	▪ *생물명*
	서식처	▪ *농경지 위치, 필지(논, 밭, 시설 등) 기재*
	주요특성	▪ *주요특징 기재* - *생태교란 생물 지정 개요 및 법적 근거 기재 > 해당 없으면 기재 불요* * *법적 근거 : 00법 제00조*
	생물사진	서식처 위치도

4 경관 분야

□ 농촌 경관자산 및 관리 실태

○ 경관자산명 ※ *각종 문화유산(유형), 마을 공동공간, 빈집·불량시설 등 발굴, 관련 자산 관리 실태 기재*

위치	▪ *00면 00리 00번지 일원*	면적	▪ *00㎡*
소유주체	▪ *등기부등본 상 소유자(개인일 경우 000(마을내 거주 또는 외부 거주로 기재), (지자체 등 공공기관일 경우 명칭 그대로 표기)*		
주요개요	▪ *자산의 연역, 특징, 용도 등 자산에 대한 주요 정보 기재*		
관리실태 및 문제점	▪ *관리상태, 각종 관리상의 문제점 등 기재*		
사진1		*사진2*	

5 생활 분야

□ 생활환경 실태

○ 관련 명칭 ※ *각종 영농·생활폐기물 처리공간, 마을길, 주민 생활 환경 및 정주여건과 관련된 다양한 요소 발굴, 관리 실태 기재*

위치	▪ *00면 00리 00번지 일원*	면적	▪ *00㎡*
관리주체	▪ *소유자 또는 지자체 등 공공기관명 기재*		
주요개요	▪ *시설 등의 연역, 특징, 용도 등 주요 정보 기재*		
관리실태 및 문제점	▪ *관리상태, 각종 관리상의 문제점 등 기재*		
사진1		*사진2*	

6 농업유산 분야

□ 농업유산 실태

○ 농업유산명 *※ 각종 농업유산 * 발굴 및 관리운영 실태 기재*

** 농경유산(유형), 전통농법(무형), 농경문화(농경 유래 축제 및 제례 등)*

< 유형 유산 >

위치	▪ *00면 00리 00번지 일원*	면적	▪ *00㎡*
관리주체	▪ *소유자 또는 지자체 등 공공기관명 기재*		
특정 문화유산 등록/지정여부	▪ *예시) 국가중요농업유산 00호(2019년 지정) 또는 해당이 없으면 '해당 없음'으로 기재* ** 법적 근거 : 00법 제00조*		
주요개요	▪ *유형유산 등의 기원, 연역, 특징, 용도 등 주요 정보 기재*		
관리실태 및 문제점	▪ *관리상태, 각종 관리상의 문제점 등 기재*		
사진1		*사진2*	

< 무형 유산 >

시현장소	▪ *마을 권역 특정 논 또는 당산나무 또는 마을신당*	시현시기	▪ *매년 0월*
전승주체	▪ *개인명 또는 000보전회 등 관련 전승주체 기재*		
특정 문화유산 등록/지정여부	▪ *예시) 00무형유산 00호(2019년 지정) 또는 해당이 없으면 '해당 없음'으로 기재* ** 법적 근거 : 00법 제00조*		
주요개요	▪ *유형유산 등의 기원, 연역, 특징 등 주요 정보 기재*		
관리실태 및 문제점	▪ *시현 및 전승 실태, 각종 운영·관리상의 문제점 등 기재*		
사진1		*사진2*	

7 농업환경 종합 진단

□ 총괄 진단 ※ *상세하게*

○

*

※ 분야별 농업환경 진단 내용, 그에 따른 각종 원인 등 분석 내용 기재

□ 분야별 진단 ※ *상세하게*

분야	주요 내용
토양	▪ (진단내용) – ▪ (원인분석) –
용수	▪ (진단내용) – ▪ (원인분석) –
생태	▪ (진단내용) – ▪ (원인분석) –
경관	▪ (진단내용) – ▪ (원인분석) –
생활	▪ (진단내용) – ▪ (원인분석) –
유산	▪ (진단내용) – ▪ (원인분석) –

4 농업환경 관리방안 ※ *상세하게*

□ 토양환경

○

□ 용수환경

○

□ 농업생태

○

□ 농촌경관

○

□ 생활환경

○

□ 농업유산

○

※ 분야별 마을주민들의 의견을 참고하여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의 이행 활동, 지역 내 타 사업과의 연계 등 농업환경관리 방안을 기술

[별지 제2호 서식]

사업대상지역 선정 평가표

1. 서류심사

항 목	배 점	평 가 기 준	점 수
1. 환경관리의 필요성 (30)	10	○ **토양 화학성, 물리성의 적정 범위 초과 여부** * 1개 지표 이상 초과(10점) / 초과하지 않음(5점)	
	10	○ **농업 용수 수질 기준치 초과 여부** * 초과(10점) / 초과하지 않음(5점)	
	10	○ **농업유산·생태·경관 등 보전가치가 높은 자원 보유 여부** * 보유(10점) / 보유하지 않음(5점)	
2. 환경 관리방안의 적정성 (20)	10	○ **농업환경에 대한 진단 및 원인 분석이 적정한지 여부** - 토양, 용수, 생태 등 분야별 농업환경 진단 및 원인 분석 내용 평가	
	10	○ **분야별 농업환경 관리방안은 적정한지 여부** 1」지역 내 타 사업과의 연계 여부 2」지역별 제시한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이행활동의 적정성 3」기타 주민 주도의 활동방안 제시 여부 등 판단	
3. 주민 참여도 (20)	10	○ **주민 참여율** * (활동 참여 주민 수/전체 주민 수)×100	
	10	○ **참여 농지 규모** * (활동 참여 농지 면적/전체 농지 면적)×100	
4. 시·군 농업환경 보전계획 수립 여부 (30)	15	○ **시·군 농업환경보전계획 수립 여부** * 수립(15점) / 미수립(0점)	
	15	○ **시·군 농업환경보전계획 內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계획 포함 여부** * 포함(15점) / 불포함 또는 미수립(0점)	
5. 타 사업 연계 여부 (가점)	2점	○ **'사회적농업 활성화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마을인 경우**	
	2점	○ **'국가중요농업유산'을 보유한 마을이 사업을 신청한 경우**	
	2점	○ **상수원보호구역 등 법령 등에 따른 비점 오염 관리 및 환경.생태보전 관련 지구에 포함된 마을인 경우**	
합계	100점 (+6점)		

2. 발표심사

항 목	배 점	평 가 기 준	점 수
1. 주민의 추진의지·역량 (30)	15	**○ 주민들이 사업추진의 의지를 갖고 있는지 여부** 1」 농업환경 문제에 대한 인식 정도 2」 농업환경보전에 대한 의지	
	15	**○ 주민들이 제시된 농업환경보전활동 수행하고, 이를 증빙할 역량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	
2. 지자체의 추진 의지 (20)	20	**○ 지자체가 사업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지 여부** **○ 지자체가 사업 추진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 **○ 타 사업과의 연계방안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러한 연계가 적절한지 여부**	
3. 사업의 기대효과 (50)	20	**○ 제시된 농업환경관리방안이 구체적인지 여부** **○ 제시된 활동들을 통해 농업환경 개선 가능성이 높은지 여부**	
	30	**○ 지역별 제시한 성과지표 달성이 가능한지 여부** 1」 주민 인식도 개선 (10) 2」 온실가스 감축 (10) 3」 생물다양성 증진 (10)	
합계	100점		

3. 현장심사

항 목	배 점	평 가 기 준	점 수
1. 성과 창출 가능성 (40)	10점	○ 현장을 반영한 농업환경 진단 및 원인 분석이 이루어졌는지 여부	
	15점	○ 제시한 농업환경 관리방안이 현장에서 실현 가능한지 여부	
	15점	○ 제시한 농업환경 관리방안이 지역의 환경문제 해결에 효과적인지 여부	
2. 주민의 결속력 (30)	10점	○ 사업 전 환경보전과 관련한 주민들의 공동활동이 있었는지 여부 - 영농폐기물 공동수거, 마을 청소 등	
	10점	○ 주민들의 활동 이행에 대한 참여 의지가 높은지 여부	
	10점	○ 지자체와 주민, 주민들 간 의사결정체계가 존재하는지, 그 체계의 운영이 활성화되어 있는지 여부	
3. 사업의 지속 가능성 (30)	20점	○ 동 사업 종료 후 자체적인 농업환경보전 계획이 있는지 여부	
	10점	○ 동 사업을 통해 일반농가의 친환경농업 전환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합계	100점		

[별지 제3호 서식]

OO마을('OO년 ~ 'OO년) **사업이행상황 점검서**('OO년 OO월)

사업대상지	*OO마을(주소 : OO시 · 군 OO면 OO리)*				
사업기간	*'OO년~'OO년*	점검시기	*'OO년 1~6월 또는 'OO년 7~11월*	사업차수	*O년차*

○ 사업이행상황

시기	이행계획	이행 여부	미이행 시 사유 및 향후대책
O월	▪	*이행 또는 미이행*	▪

점검기관 의견	▪ *(시 · 도)* ▪ *(시 · 군)*
점검기관 및 담당관	▪ *OO시 · 도 OO과, 팀장 OOO, 주무관 OOO(사무실 전화번호)* ▪ *OO시 · 군 OO과, 팀장 OOO, 주무관 OOO(사무실 전화번호)*

※ *시군에서 시도로 제출할 경우 '점검기관 의견'과 '점검기관 및 담당관' 부분에 시군 부분만 기재*

※ *시도에서 농식품부로 제출할 경우 시도, 시군 부분 모두 표기*

[별지 제4호 서식]

연간 사업이행 실적 평가서

OO마을('00년 ~ '00년) O년차 사업이행 실적

- 00도 00시 00면 00리 -

2021. 0. 00.

○○시·군

1. `00년도(사업 0년차) 계획 및 사업이행 실적

1 `00년도 사업시행 계획

□

○

*

※ *사업시행계획에 따른 당해연도 사업계획 기재*

- *주민 활동(개인/공동), 사업운영관리사업, 주민대상 교육/컨설팅 등 계획 내용, 일정, 주체 등 기재*

2 `00년도 사업이행 실적

□

○

*

※ *사업시행계획에 따른 당해연도 사업계획의 연말 기준 이행 실적 기재*

- *주민 활동(개인/공동), 사업운영관리사업, 주민대상 교육/컨설팅, 행정협의회, 주민협의회, 등 사업 이행실적, 일정, 장소,, 예산, 사진, 참가자 등*

- *이행을 하지 못한 사업계획과 사유, 향후 대책 등도 기재*

2. `00년도(사업 0년차) 농업환경 모니터링 결과

1 토양·용수·생태 분야

□

○

*

※ *본 사업시행가이드라인(31~32페이지 참조)과 사업시행계획에 따라 모니터링 조사한 토양, 용수, 생태 분야 농업환경조사 결과 기재*

- *동일 필지 등에 대한 직전 5개년치 자료와 수치 비교, 농업환경 추세치를 통한 농업환경 상태 분석,*

2 경관·생활·유산 분야

□

○

*

※ *본 사업시행가이드라인(31~32페이지 참조)과 사업시행계획에 따라 모니터링 조사한 경관, 생활, 유산 분야 농업환경조사 결과 기재*

- 사업시행전 관련 사진과, 관리실태와 사업 후 사진과 관리실태 비교 분석

- 대기분야도 조사결과 기재

3. 사업이행 과정 상 문제점

1 분야별 농업환경 모니터링 조사 결과 상 문제점

□

○

*

※ *농업환경(토양, 용수, 생태, 경관, 생활, 유산 등) 분야 모니터링 조사결과 시 나타난 문제점과 해당 원인 기재*

- *문제점 : (예시) 환경악화, 사업 전후 차이점 불분명*

2 사업이행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

□

○

*

※ 주민 활동(개인 및 공동활동) 등 사업이행 시 도출된 문제점과 해당 원인 기재

- 문제점 : (예시) 사업 참여자들의 사업자체에 대한 이해부족, 주민 활동 및 교육 등 사업 참여 미흡, 사업 참여자 대상 지자체의 현장 지도·컨설팅 미흡 등

4. 농업환경 및 사업이행 개선방안

□

○

*

※ *앞서 논의된 농업환경(토양, 용수, 생태, 경관, 생활, 유산 등) 및 주민활동(개인 및 공동) 등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 방안 기재*

[별지 제5호 서식]

00시·군 00마을('00년 ~ '00년) **사업시행계획 변경 신청서(or 통지서)** (신청일 : '00년 00월 00일)

사업대상지	*00마을(주소 : 00시 · 군 00면 00리)*	사업기간	*'00년 ~ '00년*	사업차수	*0년차*
시 · 도 담당자/연락처	*00과 000주무관 / 000-000-0000*	시 · 군 담당자/연락처	*00과 000주무관 / 000-000-0000*		

당초	변경	사유
▪ –	▪ –	▪ –
▪ –	▪ –	▪ –

* 첨부 : 00마을 농업환경보전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사업시행계획 변경안 함께 첨부)*

※ 변경내용을 알기 쉽도록, 변경사업에 대한 개인/공동, 분야 - 단위과제 - 세부활동 명시, 예산변경 내역, 구체적 사유 등 명시

※ 변경 신청시 또는 변경 완료된 후 본 양식과 사업시행계획 변경안 관련기관에 함께 통보

[별지 제6호 서식]

○○시·군 ○○마을('○○년 ~ '○○년) 활동 제안서

사업대상지	○○마을(주소 : ○○시 · 군 ○○면 ○○리)		사업기간	'○○년 ~ '○○년
시·도 담당자 /연락처	○○과 ○○○주무관 / ○○○-○○○-○○○○	시·도 담당자 /연락처	○○과 ○○○주무관 / ○○○-○○○-○○○○	

<제안 프로그램 개요>

분야		단위과제		세부활동	
제안활동	활동 내용	▪ - ※ 상세하게 작성하되, 활동 단계별 사진 등 별도로 첨부			
	활동 효과	▪ -			
	대체 활동	▪ ※ 기존 사업시행계획서 상의 활동 중 동 활동으로 인해 삭제될 활동 - * 대체 타당성 등 서술			
	활동 시기	▪ ※ 현장 제안 활동이 시행될 시기 기재(예시: '○○년, '○○~'○○년) -			
활동비	지급 받는자	▪ -			
	지급 단가	▪ -			
	산출 근거	▪ -			
	활동 증빙	▪ ※ 활동 증빙 방식 기재 -			

6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시범사업

1. 목 적

○ 미래세대의 건강을 위해 임산부에게 건강한 친환경농산물을 공급하여 국민건강, 환경보전, 지역경제 활성화 등 사회적 가치 제고

2. 근거법령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제7조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9조, 제10조

3. 추진기간 : 2022. 1. ~ 12.

4. 사업계획(시범)

구 분	사업량	건당 (천원)	사 업 비(천원)				
			계	국비 (40%)	도비 (12%)	시군비 (28%)	자부담 (20%)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2,741명	480	1,315,680	526,272	157,882	368,390	263,136

5. 사업추진 요령

가. 지원 자격 및 요건

○ ❶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쇼핑몰**(이하 '통합몰') 비대면자격확인서비스 **검증** 결과 임산부로 **확인**된 자 또는 ❷「의료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른 **출생증명서**,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36호)에 따른 **임신·출산확인서, 산모수첩 등**을 발급받은 임산부

- **2021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 또는 신청일 현재 임신부**
-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영양플러스)의 지원을 받는 중위소득 80% 이하인 임산부는 본 사업의 지원대상에서 제외

* 과거에 영양플러스 사업의 지원을 받았으나 신청 시점에 영양플러스 지원대상자가 아닌 경우 본 시범사업의 지원대상에 포함

나. 지원 품목 등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유기농수산물・무농약농산물**, 같은 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유기가공식품, 같은 법 제5호의2에 따른 무농약원료가공식품 등**

- 임산부의 필요와 기호를 반영하여 품목을 직접 선택하여 주문하거나, 이미 구성된 꾸러미 상품, 정기 공급 프로그램 등도 이용 가능
- 광역시·도는 광역 내에서 생산·공급이 가능한 품목을 우선적으로 공급하며, 부족물량은 인접한 광역 또는 전국에서 조달하여 공급

* 유기농산물, 무농약농산물, 유기축산물, 유기수산물, 유기가공식품, 무농약원료가공식품, 동물복지인증품에 한하여 지원(단, 한우·유정란·돼지고기의 경우 「축산법」 제42조의2에 따른 무항생제축산물 인증품 공급도 가능)

다. 지원 방식

○ 시범사업 지역 내 **임산부**(임신부+출산부)에게 **친환경농산물, 유기가공식품** 등을 꾸러미 형태로 거주지까지 배송 및 공급

- **(시범지역 선정)** 시범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광역시·도(기초지자체 참여 의사 등을 조사하여 시·도 단위로 신청)

*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 **(공급업체 선정)**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광역시·도는 자체 공모 및 심의를 통해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제작 및 공급 능력을 갖춘 광역 유통업체 선정

* 선정된 공급업체는 조속히 생산자 확보, 통합(쇼핑)몰 등록, 포장재 제작 등 준비

- **(지원신청)** ❶ 임산부는 친환경농산물 쇼핑몰(www.ecoemall.com)에 온라인으로 신청, 또는 ❷ 임신·출산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지자체별로 공지된 시·군·구 및 읍·면·동 주민센터에 서면으로 제출·신청, 이후 지자체는 자격 검증 및 확인을 거쳐 고유번호 부여
- **(주문 및 배송)** 임산부는 온라인 통합(쇼핑)몰을 이용하여 원하는 상품을 주문 후 결제, 공급업체는 꾸러미 상품을 제작하여 임산부에게 지체없이 배송
- **(지급 및 정산)** 지자체는 사업 확정(고유번호 부여)된 임산부에 한하여 사업비를 익월 5일까지 공급업체에 선지급하고 공급업체는 예산 집행 후 지자체에 사후 정산

사업계획 수립 및 시달	시범지역/공급업체 선정	사업신청 및 접수
농식품부에서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시행지침 시달	농식품부는 사업수요가 있는 지자체를 시범사업 지역으로 선정, 지자체는 공급업체 선정	임산부는 aT온라인통합쇼핑몰(ecoemall) 또는 시·군·구, 읍·면·동사무소에서 사업 신청

지원자격 확인	친환경농산물 공급	사업비 정산
<1차> ·**(온라인)** ecoemall에서 행안부 '비대면 자격확인 서비스'를 통해 사업 신청자격 확인 ·**(오프라인)** 시.군.구 또는 읍·면·동에서 임신·출산 관련 서류(보건서 또는 산부인과에서 발급한 임신.출산 확인서 등)를 통해 사업 신청자격 확인 <2차> ·시.군.구 또는 읍.면.동에서 관할 보건소에 사업 신청자 정보를 전달하면, 보건소에서 복지부의 영양플러스 사업 대상자와의 중복여부를 최종 확인	임산부가 ecoemall 또는 지자체가 선정한 공급업체 온라인몰을 통해 친환경농산물을 주문하면, 공급업체는 해당 상품을 배송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민원도 해결	공급업체는 친환경농산물 공급 실적 및 사업비 집행 결과를 지자체에 보고하고 정산

라. 지원 조건

* 친환경농산물 공급 15,360, 사업운영비 420

- 지원형태: 국비 40%, 지방비 40%*, 수혜자 부담 20%

* 지방비 분담은 광역시·도 30%, 시·군·구 70%를 원칙으로 하되, 지역별 재정 여건에 따라 조정 가능

❍ 지원한도: 임산부 1인당 친환경농산물 48만원 상당

* 1회 공급 한도금액: 30,000원 이상 100,000원 이하(100,000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자부담) 잔여금액이 30,000원 미만인 경우 마지막 주문에 한하여 잔여 30,000원 미만 주문가능

** 단, 선택형이든 완성형이든 꾸러미 선택 시 꾸러미 구성 금액 중 농산물 비중 금액은 **50% 이상**으로 설정

❍ 지원기간: 대상자 확정(고유번호부여) 후 '22.12.15일까지

- 대상자 확정(고유번호부여)* 후 30일 이내 온라인몰 회원 미가입자와 60일 이내 친환경농산물 미주문 시 사업포기자로 간주
- 지자체는 임산부의 온라인 회원 가입 여부와 미주문자 정보를 확인하고 지자체의 여건에 따라 대상자 취소 여부 최종 결정

* 지역별 주문사이트 오픈이 고유번호 부여일보다 늦은 경우 주문사이트 오픈일 기준

❍ 지원근거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와 제7조, 제55조,「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9조와 제10조

6. 운영원칙

【 기본 원칙 】

◈ 시행주체인 광역시·도의 자율성을 보장하되 **합리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정책의 일관성** 유지

◈ 시범사업의 취지를 살려 **본 사업과 가장 유사하게 설계·추진**하되 예상되는 **문제점을 충분히 진단**하여 향후 사업 확대에 대비

◈ 친환경농산물을 처음 접하는 소비자에게 **'친환경농산물을 소비하는 보람 있는 경험'**이 각인될 수 있도록 가치확산 교육 및 홍보 추진

가. 지원 '명칭' 및 지원한도

○ **(명칭)** '꾸러미'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로 명명

○ **(지원한도)** 1인당 연간 480,000원 이내 지원, 초과 금액은 자부담

- 지원한도, 횟수 등은 농식품부 승인 하에 광역시·도 여건에 따라 조정 가능

나. 공급 제품 관리

○ **(공급제품)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은 **신선 농산물, 축산물**(일부), **가공식품**

○ **(품목구성) 지역 내 생산된 친환경농산물 등**으로 공급이 어려운 품목은 인접한 광역시·도 및 전국 단위 연계를 통해 공급하되 **공통품목*** 적극 활용

* 임산부가 선호하는 신선 과일·채소류 및 축산물, 가공식품 등을 '품목선정위원회'에서 선정

○ **(생산지역) 국내산**으로 하되, 제품준비와 운송물류 등의 기술적 문제가 없는 범위 내 **지역 친환경농산물**(로컬푸드) **공급 권장**

다. 공급 제품의 품질관리

○ **임산부의 기호와 정서**에 맞게 **제철 과일·채소** 등 다양한 종류로 구성하되, 신선도 유지를 위해 신선도 유지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지역 여건에 맞게 배송 및 품질관리

○ 꾸러미 품질 및 안전성 관리는 **생산단계**부터 **보관·포장, 배송 등 전체 과정에서 시행** ▸ 광역시·도는 농관원 협조하여 농장·공급업체에 대한 전담관리제를 실시하고, 점검결과 미흡 사항 등은 지역협의회(월 1회 개최)에서 대응방안 모색 및 시정 개선

라. 식생활교육 등과 연계

○ 예산 범위 내에서 친환경농업의 가치, 윤리적 소비 등 가치확산 교육 병행 → 필요 시 식생활 교육 또는 비만 예방프로그램 등과 연계 추진

7. 공급준비

가. 시범지역 선정

○ 사업 참여를 희망한 **광역시·도** 선정

○ **(참여 신청)** 시범사업 참여를 원하는 광역시·도는 수요조사서 제출(~11월)

- 지역여건, 예산상황, **시·군·구**별 참여의사 등을 고려하여 시·도 참여 결정

나. 지역별 사업량 배정

○ 시도는 시군구별 사업량 배정 시 전년 사업 신청율(대기수요 포함)과 예산 집행 실적 등을 고려하여 실수요에 대한 사업량을 배정

○ 시도는 사업 신청을 완료하고 시군구별 신청량과 대기수요 발생량, 사업잔량 등을 파악하여 농식품부에 보고

- 농식품부는 시도별 잔여수량 및 대기수요에 따라 시도간 사업량 재배정

- 시도는 배정된 사업량 내 대기수요가 발생한 시군에 사업량을 전배하고 대기자 선정 등 추진

다. 공급업체 선정

○ **(선정신청)** 시범사업 참여를 원하는 유통업체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관할 광역시·도에 선정 신청서(서식#6)를 제출

* 사업신청서, 친환경농산물 유통 역량), 작업장 보유 및 관리 현황, 주문·판매시스템, 생산자조직(친환경집적지구 등)과의 연계, 친환경농식품 안전관리 등

○ **(선정심의)** 광역시·도는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서면(50%) 및 현장평가(50%) 결과 상위 점수를 획득한 산지유통조직, 유통업체를 공급업체로 선정(서식#7 공급업체 평가지표 안 참조)

- 단, 공모신청접수 결과 선정업체수의 2배수 이상일 경우 서면평가를 통해 2배수 이내 1차 선정 후, 1차 선정업체 중에서 현장심사를 통해 최종 선정할 수 있음

- **(심의위원회)** 광역시·도는 지역의 생산자·소비자 단체, 유통공사 지역본부, 유통공사에서 추천한 전문가 등을 포함하여 심의위원회 구성

* 유통업체 선정 시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농수산식품유통공사, 지자체, 지역주민(생산자·소비자단체)이 참여하는 협의체(10인 이내) 구성

- **(서면평가)** 광역시·도는 작업장 인증 여부(취급자, GAP, HACCP), 시설·장비 현황, 사업조직역량, 친환경농식품 안전관리, 품목다양화 역량 등을 기준에 따라 평가

- **(현장평가)** 심의위원회는 실제 시범사업 시행 역량이 충분한지 사업계획서, 발표 및 면담, 현장방문 등을 통해 파악하여 현장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

○ **(공급계약)** 광역시·도는 심의 결과에 따라 선정된 공급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농식품부에 그 결과를 제출

라. 시행 준비

○ **(주문시스템)** 유통공사의 온라인 통합(쇼핑)몰을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선정된 공급업체는 통합몰 등록 및 주문 건에 대한 신속한 공급체계 구축

- 광역시·도와 공급업체는 사업 시행 전까지 통합몰 등록, 포장재 제작 등 사업에 필요한 준비 완료

○ **(통합쇼핑몰 등록)** 입점신청(www.ecoemall.com/mim/login.do) → 담당자 신청서 검토 후 연락 → 상품등록(품목, 가격, 배송정책 등) → 상품승인 후 상품판매

- 유통공사는 시범사업 공급업체 대상 쇼핑몰 운영 및 주문관리, 민원처리 등에 대한 교육을 사업 시행 전 실시

* 모든 공급업체는 통합몰 입점이 원칙. 단, 시스템 문제로 불가능한 곳은 예외 적용

○ **(포장재 등)** 공급업체는 사업 시행 전까지 필요한 포장재 제작 완료

- 유통공사는 적절한 포장재 규격, 디자인, 공통로고 등을 정하여 제품에 통일성을 기할 수 있도록 조치

○ **(홍보·교육)** 유통공사는 시범사업 효과 확대를 위해 홍보 및 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광역시·도와 함께 추진

- 필요 시 전문업체를 통해 수혜자의 기호에 맞는 꾸러미 상품 개발, 홍보물 및 콘텐츠 제작 등 실시

8. 공급절차

가. 지원 신청 및 접수

○ **(지원대상)** 2021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와 신청일 현재 임신부 중 통합(쇼핑)몰에 사업 신청 또는 구비서류*를 지자체별로 공지된 시·군·구 또는 읍·면·동에 제출한 자

* 「의료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른 **출생증명서**,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19-136호)에 따른 **임신·출산확인서** 또는 **산모수첩**

- **2021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 또는 신청일 현재 임신부가 지원대상**에 해당하며, 임신·출산확인 및 지원신청서를 제출해야 지원 가능

  * 국내 거주 외국인: 외국인등록 등을 통해 국내 주거지가 분명하며 지방세를 납부하는 외국인에 한하여 지원 가능

- 2022년 사업기간은 1.1일부터 12.15일까지

- 유산 등으로 인해 임신·출산 상태가 중단 또는 종료된 경우에도 지원 가능

- 다만 아래의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영양플러스)의 지원을 받는 임산부

  * 과거에 영양플러스 사업의 지원을 받았으나 신청 시점에 영양플러스 지원대상이 아닌 경우 본 시범사업의 지원대상에 포함

❍ **(지원 신청) 통합(쇼핑)몰 온라인 신청을 우선하나, 보완적(오프라인)으로 신청서**(서식#1) 및 구비서류를 지자체별로 공지된 시·군·구 또는 읍·면·동에 서면으로도 제출 가능

- **(온라인)** 통합쇼핑몰(www.ecoemall.com) 중 지원사업 소개 - 신청방법 메뉴에서 지원신청서 작성 → (회원정보입력) 회원자격검증(행안부 비대면자격검증 등)을 통해 신청서에 작성된 이름, 생년월일 등의 정보를 임산부 관리시스템으로 전송

- **(오프라인)** 신청서는 지자체별로 고지된 주민등록지의 시군구 또는 읍·면·동에서 접수하고 접수기관은 임신·출산확인서, 출생증명서 등을 통해 임신·출산 여부를 확인

- 해당 시·군·구를 기준으로 지원하되, 지원기간 중 주민등록지 또는 실제 거주지가 변경되는 경우에도 최초 접수한 시·군·구에서 지원

- 지자체는 사업 예산범위 내에서 신청일로부터 **선착순** 모집 가능하며, 중도에 사업 포기자 발생 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추가 모집** 가능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에코이몰을 통한 사업신청 시 지원기간 및 사업포기자 기준 등 관련 내용을 신청자가 확인하고 동의에 체크할 수 있도록 시스템 구현

❍ **(수혜대상 검증)** 통합(쇼핑)몰 온라인 신청 시 건강보험관리공단 시스템과 연계된 임신·출산 정보 등과 대조하여 적격성 확인

- 시·군·구(읍·면·동)은 적격성이 확인된 사업 신청자 명단을 시·군·구 보건소에 제공

- 시·군·구 보건소는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영양플러스) 등의 수혜 여부를 시·군·구(읍·면·동)에 제공하여 중복수혜 등 자격 검증 추진

○ **고유번호 부여 및 선정 통보**

- **(온라인)** 임산부 관리시스템에서 지자체 담당자가 검증 및 확인 후 임산부 고유번호번호 부여(각 지역 담당자용 ID/PW 설정) → 이메일 또는 문자로 임산부에게 고유번호 전송

  * 접수수량은 사업량의 120%까지 접수, 100%는 고유번호 부여, 20%는 대기자 관리

- **(오프라인)** 최종 자격이 확인된 신청자에게 시군구 또는 읍·면·동에서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선정결과 및 고유번호를 통보, 필요시 관리대장(서식#2)에 기록하여 관리

  * 총 16자리로 본 고유번호 양식은 반드시 준수해야 함: 연도(00) - 시·도(00) - 시·군·구(000) - 읍·면·동(000) - 식별번호(00000) - 지원 횟수(0) 예시) 20-11(서울)-110(종로구)-650(혜화동)-00001-1

○ **(임산부 회원가입)** 발급된 임산부 고유번호 검증 후 쇼핑몰 회원가입 진행

- 임산부는 고유번호 발급일로부터 30일 이내 쇼핑몰 회원으로 가입하고, 고유번호 발급일로부터 60일 이내 1회 이상 농산물을 주문하여야 함(조건 미충족 시 사업포기자로 간주하고 지자체 여건에 따라 최종 사업대상자 취소 여부 결정)

- 사업포기자는 당해연도 및 이후 동일 임신 또는 출산으로 재신청 불가(다른 아이 임신 또는 출산 시는 신청 가능)

○ **(대상자별 사업종료 기준일)** 사업 지원기한은 '22년 12월 15일까지이나, 지원기한이 도래하기 전 지원대상자의 지원금이 소진되는 경우에는 그 시점을 사업종료 기준일로 함

나. 꾸러미 상품 주문 및 배송

【 지원한도 】

○ **임산부 1인당 친환경농산물 48만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을 사업대상자 확정일(고유번호 부여일)로부터 '22년 12월 15일까지 지원

- 배송 횟수는 월 4회(연 16회) 이내를 기본으로 하되 수혜자의 기호 및 주문에 따라 조정 가능

  * 1회 공급 한도금액: 30,000원 이상 100,000원 이하

  * 다만, 단품으로 생산지에서 직접 배송하는 과일·쌀 등은 3만원 이하 주문가능(가능품목은 공급업체가 aT통해 등록)

- 임산부 1인당 총 지원금액은 물류비(배송), 공급업체 수수료 등이 포함

【 농산물 주문 및 결제 】

○ **(회원가입)** 발급된 임산부 고유번호 검증 후 쇼핑몰 회원가입 및 로그인

- 공급업체는 임산부의 회원 가입 내용과, 시·군·구(읍·면·동)에서 제공한 신청서 접수 현황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여 구입 권한 등을 조정

○ **(주문)** 임산부가 품목을 ①**자유롭게 선택**하여 꾸러미를 구성하거나 ②**이미 구성된 꾸러미**, ③**공급 프로그램** 선택 가능

① (선택형) 임산부가 그때그때 필요한 품목을 가상의 장바구니에 담아 주문

② (완성형) 이미 완성된 꾸러미를 임산부가 가격대, 품목 등을 고려하여 선택

* 예) 임산부 과일 꾸러미, 임산부 채소 꾸러미, 임산부 기력 보충 세트, 임산부에게 좋은 흑임자 죽 만들기 세트, 임산부 몸보신 삼계탕 만들기 세트

③ (프로그램형) 한번에 3~12개월치 친환경농산물 공급 프로그램을 신청하여 해당기간 동안 별도의 주문 없이 배송 받는 방식

* 예) ○○○박사가 권하는 임산부 건강식(12개월), 출산 후 붓기에 좋은 산모 영양 프로그램(6개월), 우리 아기 이유식 첫걸음(3개월)

○ **(결제)** 인터넷 상거래에서 사용하는 모든 결제수단*을 사용하여 결제하되 **수혜자 부담액은 결제 시마다 분할납부**하는 방식을 권장

* 무통장입금, 신용카드, 전자지불, 휴대폰 소액결제 등

- 업무 여건상 수혜자 부담액을 분할 납부하기 어려울 경우 일괄 납부 허용

【 꾸러미 상품 제작 및 관리 】

○ **(제작기준)** 공급업체는 소비자의 기호에 따라 **선택형·완성형·프로그램형** 꾸러미를 구성하여 공급 추진

- **가격대는 3만원 이상 10만원 이하로 하되, 완성형·프로그램형 꾸러미의 경우** 사업비의 원활한 정산을 위해 **5,000원 단위**로 제작 권장

- **선택형으로 공급하는 단품**은 개별 품목별 원활한 사업비 정산을 위하여 **250원 단위**로 공급 권장

- 광역시·도는 가능한 범위에서 해당 광역 내에서 생산한 친환경농산물 구매 장려, 필요 시 **지역 특산물 등 필수 구성 품목 지정** 가능

- 꾸러미 구성 상품의 가격은 유통공사가 조사·발표하는 친환경농산물의 소매가격을 참고하여 광역시·도와 공급업체가 '지역협의회' 에서 협의하여 결정

- 공통품목은 생산 시기 미도래·자연재해 등에 따른 수급불안 시기 등을 제외하고 상시 구비 하여야 함

○ **(농산물 확보)** 농산물 원물은 친환경 집적지구, 생산자단체 등에서 생산한 농산물 사용을 우선 권장

* 어떤 공급업체가 A지역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 그 외 B, C, D 시군 지역의 임산부에게도 공급할 경우 B, C, D 지역의 친환경 농가의 생산물도 공급될 수 있도록 공급처를 다양화할 것

○ **(가공)** 친환경농산물 **취급자 인증, HACCP 지정** 등 적정한 **품질·위생관리 체계**를 갖춘 업체에 한하여 전처리(선별, 세척, 1차 가공 등) 실시

- 공급업체 자체 전처리가 어려울 경우, 전처리가 가능한 전문업체를 통해 공급 가능하며, 이 경우에도 친환경농산물 취급자 인증을 받아 유기적 순수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되어야 함

○ **(포장)** 공급업체는 친환경농산물의 유기적 순수성을 훼손하지 않으며, 위생과 신선도를 유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포장

- **포장재**는 외부와 효과적으로 차단하여 신선도를 유지할 수 있는 소재를 사용해야 하며, 과도한 포장으로 인한 쓰레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친환경 소재, 회수 가능한 용기** 및 주머니 등 활용 권장

○ **(안전관리)** 공급업체는 친환경농산물의 안전관리를 위해 신규 납품 농가의 원물과 기존 납품농가의 신규납품 품목에 대해 안전성검사성적서를 반드시 확인하고 필요 시 자체 검사를 통해 적합품임을 확인하여야 함

【 배송 】

○ 공급업체는 직접 배송 또는 계약한 택배업체 등을 통해 꾸러미 제품을 지체 없이 거주지 또는 수혜자가 지정한 장소로 배송(배송방식 지자체 지정 가능)

- 배송업체는 공급업체가 지정하고 광역시·도가 동의한 택배업체 등을 활용하되, 배송 중에도 위생 및 신선도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함
- 공동주택 등 인구밀집 지역의 경우 지역 여건에 따라 거주지 외의 중간 배송지를 지정할 수 있음
- 임산부가 수혜기간 동안 주민등록지 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임산부가 원하는 실제 거주지로 배송할 수 있음

다. 품질관리

○ **광역시·도**는 공급업체의 농산물 **이력관리** 및 **품질·위생관리** 수준을 전담자를 통해 **모니터링**하고 잔류농약 등 유해물질에 대한 **안전성 검사** 실시

- 광역시·도는 농관원(생산·유통단계), 유통공사, 농진청(농업기술센터), 지역보건환경연구원(유통단계) 등 관련기관과 연계하여 안전성 관리* 추진

  * 취약 시기 및 품목을 고려하여 생산자별로 연 1회 이상 안전성 검사 추진

○ 유통공사는 광역시·도와 협조하여 공급업체를 정기·수시 점검하고 특히 공급계약 시 약속한 준수사항*을 이행하는지 확인 및 조치

  * 친환경농산물 취급자 인증, HACCP사업장 지정 등의 행정처분, 품질 및 위생 기준, 친환경 포장재 사용, 광역지역 농산물 우선 사용, 반품 및 환불처리, 민원사항 등

○ **공급업체는**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상품 제작 및 제공을 위해「별표1」의 공급조건을 준수하여야 함

- 공급업체는 꾸러미 상품에 이상(배송착오, 변질 등)이 있거나 품질에 문제가 발생 시, 교환 및 환불 등 즉각 처리

- 특히, 안전성 검사 결과 잔류농약이 검출되었고 해당 농산물이 임산부에게 공급된 경우 즉시 임산부에게 고지하고 교환 및 환불 실시 후 해당 조치사항을 시·도 및 유통공사에 보고(발생일 후 5일 이내)

○ 점검반은 공급업체 품질관리 결과 미흡사항에 대해 문서에 의한 시정 및 지적을 할 수 있음

라. 공급비용 정산

○ 시·군·구는 매월 말 고유번호를 발급한 확정 인원수 기준으로 자부담분을 제외한 농산물공급비(사업비)를 공급업체에 집행하고, 공급이 완료되는 시점에서 공급업체로부터 최종 공급실적 및 사업비 집행 결과를 제출받아 최종 정산하고 집행잔액은 반납

○ 유통공사는 공급업체가 광역시·도(시도 또는 시·군·구)에 사후 정산할 수 있도록 전산상의 주문 및 공급실적을 바탕으로 공급 비용을 정산하여 자료 제공

- 공급업체는 본사업을 위한 전용계좌를 개설하고 관리하여야 하며, 지자체가 선지급한 사업비 중 지자체 확인을 거쳐 확정된 전월 꾸러미 공급대금에 대한 정산액을 인출

마. 홍보 및 교육

❍ 지자체는 사업대상자가 사업신청 정보를 다양한 채널에서 알 수 있도록 온라인(지자체 홈페이지, 맘카페 등)과 오프라인(지역보건소와 읍면동주민센터 홍보자료 비치 및 안내, 현수막 게시, 시군 이장회의 및 마을방송 등)을 통해 홍보

- 특히 취약계층 등 사회적 약자가 동 사업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시군구 복지부서와 지역보건소 등과 협력하여 홍보 실시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자체 계획을 수립하여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하되, 필요 시 전문성을 갖춘 업체를 조기에 선정하여 추진

- (홍보) 시범사업 도입 초기 신청률 제고를 위해 임산부가 자주 접하는 매체(임산부 관련 포털사이트, 맘카페 등) 대상 중점 홍보 추진
- (교육) 친환경농산물을 처음 접하는 임산부가 향후 적극적 소비자가 될 수 있도록 친환경농업의 가치 등 교육 추진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전문기관을 통해 강사진을 구성, 시·도는 시범지역(시·군·구)별로 일정을 수립하여 분기 1회 이상 교육

❍ 시범지역 내 임산부를 대상으로 친환경농업의 환경 가치, 윤리적 소비, 바른 식생활 등 소비자 가치확산 교육 및 홍보 추진

바. 제재 및 보고

❍ 공급업체의 친환경농산물 인증조건, 위생 및 안전 관리 등 관리 미흡, 공급계약 시 준수사항 위반 등 발생 시 **공급계약을 중단**하거나 향후 **참여 대상에서 배제**

  * 공급업체는 농산물을 다룰 때「식품위생법」에 따라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다루어야 하며 이를 위반 시 동법 시행규칙 별표 27에 따른 과태료 등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음

❍ 친환경농산물에 잔류농약 검출 등 인증기준 위반사항 발생 시 관련 인증의 취소 등 행정처분 의뢰

- 공급업체 고의 또는 과실로「친환경농어업법」에 따른 친환경취급인증 취소 시 계약 해지
- 공급업체 고의 또는 과실과 상관없이 최근 2년 내 잔류농약검사 결과「친환경농어업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 (1차) 주의+차년도 공급업체 선정 시 감점 5, (2차) 경고+차년도 공급업체 선정 시 감점 10, (3차) 계약 해지+ 향후 2년간 공급업체 선정 배제

사. 성과측정

○ (지표①)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수혜자 수**

- 조사시기 : 시범사업 기간 종료 후('22.12월~'23.1월)
- 조사방법 : 시스템 추출, 광역시·도 자료 수집
- 조사항목 : 시범지역 내 사업량 사업 신청 임산부 비율

○ (지표②) 서비스 수혜자 **만족도**

- 조사시기 : 매년 11.1. ~ 익년 1.31.
- 조사방법 : 인터넷 설문조사
- 조사항목 : 구성된 품목의 선호도, 농산물의 품질 및 신선도, 배송의 신속성, 사업 프로세스의 합리성, 사업의 필요성 평가

  * 리커트 5점 척도(매우만족, 만족, 보통, 미흡, 매우미흡)

아. 사업 평가 및 환류

○ (사업평가) 시범사업을 통해 적정한 지원금액, 지원방식, 품목별 선호도 등을 분석하여 본 사업 도입 여부 검토

- 예산 투입 대비 효과 분석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 병행

○ (포상) 시범사업 추진 우수 광역시·도, 우수 공급업체 등에 대해 표창 수여

별표 1 공급업체 준수사항

이 준수사항은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사업 공급업체가 준수해야 할 사항으로, 공급 계약의 일부로서 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을 경우 위반내용에 따라 공급계약 중단 및 차기 공급업체 선정에서 배제될 수 있습니다.

1. 공급업체는 친환경인증 제품만을 공급하여야 하며, 선별·세척·포장 등의 과정은 인증 받은 작업장(위탁사업장 포함)에서 이루어져야 함

2. 공급업체 제품은「친환경농어업법」에 따른 인증품 표시 규정에 따라 표시사항이 정확히 표기되어야 함

3. 공급업체는 제품 입고 시마다 표시사항과 납품서 등을 통해 친환경인증 제품인지를 확인하고, 점검기록과 제품 입·출고 자료 등을 보관해야 함

4. 공급업체는 잔류물질(농약 또는 동물용의약품) 검사 대상, 검사 주기, 검사 방법 등이 포함된 품질관리 계획을 세워 이행하여야 함

5. 공급업체는 자체 품질관리 계획에 따라 제품에 대한 잔류 물질 검사를 실시하여 인증기준에 적합한 제품만 공급해야 함

6. 공급업체는 제품 공급과정에서 잔류물질 검출 등 부적합 제품이 확인될 시 공급을 즉각 중단하고, 해당 제품을 회수·폐기하는 한편, 임산부에게 교환·환불·보상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또한, 조치 후 3일 이내 그 결과를 지자체 및 aT에 보고해야 함

7. 공급업체는 상품 공급과정에서 발생한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민원 내용·발생 원인·조치 결과 등을 기록해두어야 함

8. 공급업체는 사업점검 기관의 자료 요구, 현장점검 등에 적극 협조해야 함

서식제1호 |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신청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시범사업 신청서개인정보 수집 및 조회·제공·이용동의서

임산부	이름		주소		연락처(휴대폰)	
	생년월일		임신·출산	＊임신확인일 : ＊출산예정일 : ＊출 산 일 :	e-mail	
자녀	이름	[ ] 미출생	생년월일	202 년 월 일 (출생신고일 :)		
꾸러미 사업 신청 내역		- 신청액 : 48만원(국비 192,000원, 지방비 192,000원, **자부담 96,000원**) ※ 세부금액은 지자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지원기간: 사업자선정(고유번호발급) 이후 '22.12.15 까지				

개인정보 제공 등 동의사항	정보를 제공받는 기관	해당 읍·면·동, 시·군·구, 시·도 및 시·군·구에서 지정한 친환경농산물 공급업체, 지역 보건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본사업 만족도 등 설문조사 기관
	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 대상자 확정 및 사업 추진 및 보조사업 성과분석 등을 위함
	개인정보의 항목	주소, 전화번호, 이름, e-mail, 생년월일, 임신 및 출산일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2022. 01. ~ 2026. 12. **< 보유기간 경과 시 파기 >**
	※ 귀하는 개인정보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영양플러스) 지원 여부 확인을 위해 보건소에 조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본 사업 지원이 제한됩니다. ※ 사업자선정(고유번호발급) 후 30일 이내 쇼핑몰 미가입 시, 사업자 선정(고유번호 발급) 후 60일 이내 꾸러미 미주문 시 사업대상자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신청인은 위 내용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기재 내용이 허위인 경우 지원금 전액 회수 등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18조, 제2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의 제공 활용과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시범사업」신청을 위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 ] 동의 [ ] 동의안함**

2022. . .

신청인 : (인 또는 서명)

읍·면·동장 귀하

※ 위임인(신청인)은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시범사업의 보조금 교부 신청, 청구, 정산 등 관련 사항을 수임인(공급업체명)에 위임하며, 위 정보는 본 시범사업의 신청 및 보조금 지급, 정산 자료로 활용할 것임을 확인함.

2022. . .

위임인(신청인) (인 또는 서명)

ㅇㅇ시장(군수) 귀하

읍·면·동 확인내용	확 인 자	
■ 시군 거주자 여부: 여( ), 부( ) ※ 신청일 기준	직 성명	(인)
■ 임신·출산확인서, 산모수첩, 출생신고 확인 결과: 적정( ), 부적정( )		
■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영양플러스) 수혜 여부(신청일 기준): O / ×		

서식 제2호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신청 관리대장

구분	임산부 고유번호(16자리)						지원대상 임산부								
	연도 (2)	시도 (2)	시군구 (3)	읍면동 (3)	식별번호 (5)	지원횟수 (1)	이름	생년월일	임신부/산모	임신확인일 (또는출생신고일)	주소				연락처
											시도	시군구	읍면동	세부주소	
1	20	43	111	580	00001	1	홍길동	850301	산모	2021.01.02.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낭성면	000로 0000번길 00, 000동 00호(00아파트)	010-0000-0000
2															
3															
4															
5															
6															
7															
8															
9															
10															

서식 제3호 **보조금 청구서**

보조금 청구서

(공급업체 → 시군 제출용 / 월별 청구 서식)

❑ 사업명 : ’22년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시범사업

❑ 청구금액 : 금 원 (금 원)

청구금액	금 원(금 원) 국비 원 / 도비 원 / 시군비 원
거래은행	
계좌번호	
예 금 주	

※ 구비서류 : 청구서, 개인별 자부담 입금 및 세부 사업내역, 택배송장(또는 택배송장번호), 꾸러미 제작 내역 등

위와 같이 2022년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시범사업 보조금을 정히 청구합니다.

2022년 월 일

보조사업자 주 소 :
단 체 명 :
사업자번호 :
대 표 이 사 : (직인)

ㅇㅇ시장.군수 귀하

서식 제4호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시범사업 공급실적 및 보조금 집행실적

※ 엑셀파일 통보

❑ 공급업체명(00월)

【2021년 사업】

공급지역(시군구)	확 정					실 적						
	확정인원(명)	사업비(천원)				공급실적(건)			사업비(천원)			
		계	국비	시도비	시군구비	계	전월까지	금월	계	국비	시도비	시군구비
계												

【2022년 사업】

공급지역(시군구)	확 정					실 적						
	확정인원(명)	사업비(천원)				공급실적(건)			사업비(천원)			
		계	국비	시도비	시군구비	계	전월까지	금월	계	국비	시도비	시군구비
계												

보조금 정산서

(공급업체 → 시군구 제출용)

❑ 사업명 : ‘22년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시범사업

❑ 공급기간 : 2022. . . ~ 2022. . .

❑ 공급인원

시군구	확정인원(명)	공급인원(명)	미공급인원(명)
합계			

❑ 공급실적

(공급연도)

(단위 : 건)

시군구	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1월	12월
합계												

❑ 사업비 집행실적

(단위 : 천원)

시군구	사 업 비				집 행 액				집행잔액			
	계	국비	시도	시군구	계	국비	시도	시군구	계	국비	시도	시군구
합계												

❑ 사업비 집행잔액 발생 사유

구 분	회원 미가입	꾸러미 등 미주문	영양플러스사업 전환	기타
인원(명)				
금액(천원)				

위와 같이 2022년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시범사업 보조금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2022년 월 일

보조사업자 주 소 :
단 체 명 :
사업자번호 :
대 표 이 사 : (직인)

ㅇㅇ시장.군수 귀하

서식 제6호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공급업체 신청서

<table>
<tr><td rowspan="8">신
청
자</td><td>생산자단체 등 명칭</td><td></td><td>법인등록번호</td><td colspan="3"></td></tr>
<tr><td>이름
(대표자명)</td><td></td><td>대표자
생년월일</td><td></td><td>농업경영체
등록번호</td><td></td></tr>
<tr><td>친환경농산물
취급자 인증번호</td><td></td><td>참여농가
(인증농가)</td><td>명
명</td><td>재배면적
(인증면적)</td><td>ha
ha</td></tr>
<tr><td>사업장 주소</td><td colspan="5"></td></tr>
<tr><td>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작업장 주소</td><td colspan="5"></td></tr>
<tr><td>전화번호</td><td colspan="5">사무실: (휴대폰:)</td></tr>
<tr><td>생산자단체
등의 형태</td><td colspan="2">농업협동조합,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협동조합, 기타</td><td rowspan="2">주 재배품목
및 유통품목</td><td colspan="2"></td></tr>
<tr><td>친환경농산물
매출액</td><td colspan="2">(2020년) 천원
(2021년) 천원</td><td colspan="2"></td></tr>
</table>

2022년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시범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공급업체 선정을 신청하며 본 신청과 관련하여 선정기관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아래와 같이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 ○ 시장·군수 귀하

사업 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 제공 및 수집·이용 동의 사항)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시범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시범사업 공급업체 선정 및 사업관리
3. 수집하려는 개인정보 항목: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시범사업 추진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또는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시범사업 공급업체 참여가 제한될 수 있음

서식 제7호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공급업체 평가 기준(안)

1. 서류심사

평가요소	평가항목	평가지표	점수
필수사항		❍ **친환경농산물 취급자 인증** ❍ **온라인 통합쇼핑몰과 연계 가능** - 임산부친환경농산물 쇼핑몰(www.ecoemall.com)에 등록하여 주문, 결제, 정산 등이 가능해야 함 ❍ **품질 및 신선도 유지가 가능한 배송 체계**를 갖추어야 함 - 보냉박스, 냉장직배, 저온배송 등의 운영으로 입증	
시설장비 현황 (25)	작업장 (15)	❍ **친환경농산물 전용 작업장 보유(5점)** - 친환경농산물을 위한 전용 작업장을 보유한 경우 : 5점 - 일반농산물과 함께 사용, 교차오염 방지 대책이 있는 경우 : 2점 ❍ **GAP 또는 HACCP 시설 지정(10점)** - GAP, HACCP을 둘 다 받은 경우: 10점 - GAP, HACCP 중 한 가지만 받은 경우: 5점 - 모두 지정받지 않음: 0점	
	공급능력 (10)	❍ **꾸러미 전용 작업공간(5점)** - 100㎡ 이상인 경우 : 5점 - 50㎡ 이상 100㎡ 미만인 경우 : 4점 - 20㎡ 이상 50㎡ 미만인 경우 : 3점 - 20㎡ 미만인 경우 : 2점 - 꾸러미 전용 작업공간이 없는 경우 : 0점 ❍ **꾸러미 전담 작업자 확보 여부(5점)** - 5명 이상 확보 : 5점 - 3명~4명 확보 : 4점 - 1명~2명 확보 : 3점 - 꾸러미 작업자가 없는 경우 : 0점	
사업조직 역량 (30)	참여 유통조직 (10)	❍ **친환경농업 집적지구가 참여하고 있는가?(6점)** - 친환경농업 집적지구가 공급업체 : 6점 - 친환경농업 집적지구와 납품계약 체결 : 5점 - 참여하고 있지 않음 : 0점 ❍ **지역내 공급선을 다양하게 확보하고 있는가?(4점)** - 모든 시군구 소재 공급선과 거래 : 4점 - 일부 시군구 공급선 확보 : 2점 - 공급선 없음 : 0점	
	참여농가 (10)	❍ **공급계약 등을 통해 참여하는 인증농가 수(5점)** - 100농가 이상 : 5점 - 80농가 이상~100농가 미만 : 4점 - 60농가 이상~ 80농가 미만 : 3점 - 40농가 이상~ 60농가 미만 : 2점 - 40농가 미만 : 0점 ❍ **참여 인증농가의 인증면적(5점)** - 300ha 이상 : 5점 - 250ha 이상~300ha 미만 : 4점 - 200ha 이상~250ha 미만 : 3점 - 150ha 이상~200ha 미만 : 2점 - 100ha 이상~150ha 미만 : 1점 - 100ha 미만 : 0점	

평가요소	평가항목	평가지표	점수
	친환경농산물 유통경력 (10)	❍ **친환경농산물 유통 역량(10점)** - 전년도 친환경농산물 매출액 100억원 이상 : 10점 - 70억원 이상~100억원 미만 : 8점 - 50억원 이상~ 70억원 미만 : 6점 - 3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 4점 - 30억원 미만 : 2점	
관리실태 (20)	저온위생관리 (10)	❍ **저온 물류집배송장, 냉장창고, 냉장배송 차량 등 콜드체인 확보 여부(10점)** - 전체 유통단계에서 콜드체인 확보 : 5점 - 일부 단계에서 콜드체인 확보 : 3점 - 해당 없음 : 0점	
	불만사항·사고처리 (10)	❍ **불만사항 발생 시 항시 대응·처리 체계 구축(5점)** - 잔류물질 검사 부적합품 처리 매뉴얼 별도 운영 : 5점 - 매뉴얼은 있으나 구체성 결여 : 3점 - 대응매뉴얼 없음 : 0점 ❍ **음식물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5점)** - 보험 가입 : 5점 - 보험 미가입 : 0점	
	안전성관리 (10)	❍ **친환경농산물 안전성관리를 위한 '품질관리계획' 수립 여부(10점)** - 잔류물질 검사 대상, 검사 주기, 검사 방법 등이 포함된 구체적인 '품질관리계획' 수립 : 10점 - 품질관리계획은 수립되어 있으나 구체성 결여 : 5점 - 품질관리계획 미수립 : 0점	
품목 다양화 (15)	품목구성 (10)	❍ **현재 취급 중인 친환경농산물 품목 수(10점)** - 200개 이상 : 5점 - 150개 이상~200개 미만 : 4점 - 100개 이상~150개 미만 : 3점 - 70개 이상~100개 미만 : 2점 - 50개 이상~ 70개 미만 : 1점	
	상품조달체계 (5)	❍ **원활한 상품 조달 체계 구축 여부(5점)** - 해당 시.도 내에서 상품 수급이 곤란할 경우, 타 시.도로부터의 상품 수급 체계가 구축되어 있음 : 5점 - 해당 시.도 내 상품 수급만 가능 : 0점	
가.감점		❍ **공급업체 종합 만족도: ±3점** - 상위 5개소: +3점, 하위 5개소 : -3점 ❍ **관할 全지역 냉장 직배 체계 구축 : +5점** ❍ **소비자 대상 친환경교육, 홍보 등 실적 : +5점** - 연 10회 이상 : +5점 - 연 7회 이상~10회 미만 : +4점 - 연 5회 이상~ 7회 미만 : +3점 - 연 3회 이상~ 5회 미만 : +2점 - 연 1회 이상~ 3회 미만 : +1점	
제한사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이 아닌 업체 ❍ 최근 2년간「식품위생법」관련 행정처분 등을 받지 않은 업체	

* 평가 지표를 기준으로 하되, 지자체 여건에 따라 세부기준 변경 가능(서면 및 현장)

2.현장심사

평가요소	배점	평가지표	점수
사업 이해도 및 시설·장비 적정성 (30)	10	❍ **사업 목적과 공급업체의 역할 이해 정도** ❍ **사업 전담 관리자 지정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여부**	
	10	❍ **상품 제작·공급 능력** 1」 임산부 꾸러미 전담 작업장 규모 확인 2」 임산부 꾸러미 전담인력 확보 여부 확인	
	10	❍ **온라인 유통.판매시스템 구축 여부 및 역량** 1」 임산부 통합쇼핑몰과 연계 할 수 있는 주문시스템 구축 2」 고도화된 자체 온라인 주문시스템 구축 여부 3」 자체 온라인 주문시스템 활성화 정도(주문량, 품목수 등)	
공급업체 역량 (70)	20	❍ **공급품목 수급계획** 1」 임산부 선호 품목 및 공통품목 상시 조달 가능성 2」 구체적인 품목 수급계획 수립 여부 및 타당성 3」 관할 지역내 친환경농업 집적지구 참여 여부 및 향후 협력 계획	
	20	❍ **콜드체인시스템, 위생 및 안전성 관리** 1」 관계 법령에 따른 행정조치 이력 여부 확인 - 최근 2년내 관계기관 위생 점검 시 시정 등을 받은 적이 있으면 1회당 5점 감점 ❍ **창고 및 작업장은 청결하며, 방충 시설 등이 구비되어 있는지**	
	20	❍ **관계 법령에 따른 행정조치 이력 여부 확인** - 과거 1년간 관계기관 점검 시 시정조치를 받은 경우 1회당 5점 감점 ❍ **친환경농산물 안전성관리를 위한 '품질관리계획' 수립.운영 여부** 1」 잔류물질 검사대상, 검사주기, 검사방법 등이 포함된 구체적인 '품질관리계획' 수립 여부 및 유통물량 대비 적정성 2」 잔류물질 검사 부적합품 발생 시 처리 매뉴얼 구비 여부	
	10	❍ **소비자 불만사항 발생 시 처리 및 대처 능력** 1」 민원 처리 담당자, 대응 매뉴얼 구비 2」 매뉴얼에 따라 민원처리 기간 내에 적정한 방법으로 민원 처리 여부	

※ 5단계 평가 : 매우 우수(20/10), 우수(16/8), 보통(12/6), 미흡(8/4), 매우 미흡(4/2)

【 심의위원 의견 】

소속 : **직위 :** **이름 :** **(서명)**

친환경관리 분야

7 친환경농산물 인증비 지원

1. 목 적

○ 친환경농산물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지원으로 농가의 경영비 부담 해소 및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 실천기반 구축

2. 지원근거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 「제4차 친환경농업육성 5개년 계획('20~'24년)」

3. 사업계획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 (천원)			
		계(100%)	도비(15%)	시군비(65%)	자담(20%)
친환경농산물 인증비 지원	21,000건	13,650,000	2,048,000	8,872,000	2,730,000

4. 사업추진

가. 시행주체 : 시장·군수

나. 사업기간 : 2022. 1.~10.(10개월간)

* 사업기간은 전년도 11. 1.부터 당해연도 10. 31.까지 1년간으로 하되, '22년에 한하여 사업기간을 1. 1.～10. 31.로 정함

○ 사업대상자 사업신청 : 2022. 1. 1.~10. 31.

- 친환경농산물(유기·무농약) 인증을 받은 농업인 및 생산자단체(작목반, 법인 등) 중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 납부자*

* 지원제한 근거 :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 도내 타 시·군 경작자의 경우 농지소재지 읍·면·동에 신청

○ 지원대상자 확정 : ’22. 11. 30.까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에서 발급하는 친환경농산물 인증서에 의거 확정(인증기관 전산시스템을 통해 확인 가능)

○ 사업비 정산 및 결과 보고 : ’23. 1. 15.까지

다. 사업시행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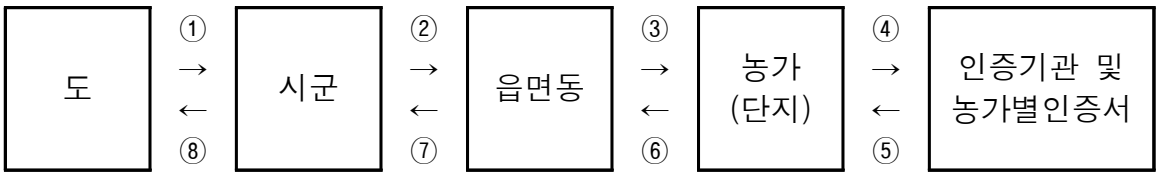

① 사업계획수립시달, ② 사업추진, ③ 시행지침 홍보·안내

④ 인증신청, ⑤ 인증심사비 청구·수납, 인증관련 세부내역 심사

⑥ 사업신청, ⑦ 추진상황보고, ⑧ 사업비 집행·정산(항목별 청구내역 확인)

5. 세부사업 추진요령

가. 사업내용

○ 지원대상 :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에서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가(단지)

○ 지원내용 : 개인·단체인증 비용 실소요액(지원한도*)의 80%지원

- (개인인증) 친환경농업 실천농가의 친환경농산물 인증(신규·갱신)에 따른 인증 신청비, 심사원출장비, 심사관리비, 잔류농약 검사비 총액의 80% 지원

* 지원한도 : 개인인증 2ha 미만 570천원 이내, 2ha 초과시 ha당 50천원씩 추가

- (단체인증) 신청비, 출장비, 심사관리비, 표본농가 잔류농약 검사비 총액의 80% 지원

구성원수(호)	~ 15	16~24	25~35	36~48	49~63	64~80	81~99	100~120	121 이상
표본농가	4	8	10	12	14	16	18	20	20%
기준단가	310천원		300천원					290천원	

* (심사관리비) 농가 구성원별 지원한도,(잔류농약 검사비) 표본 농가수로 한정지원

○ 지원제한 : 개인농가 기준 유기, 무농약 인증단계 구분 없이 최대 2건 지원

- (개인인증) 농가기준 인증단계 구분 없이 최대 2건 지원 가능
- (단체인증) 지원 건수 제한 없음

○ 지원항목 : 4개 항목(신청비, 출장비, 심사관리비, 잔류농약 분석비)

- 보조지원 : 항목별 지원총액(실 소요비용 ~ 지원 한도액)의 80%
- 자 부 담 : 항목별 지원총액의 20%, 미지원(토양·수질·기타분석비) 항목의 소요비용 등

< 친환경농산물 인증비 지원항목 산출 예시 >

구 분		세 부 내 용
신 청 비		건당 최대 50천원 이내
출 장 비		건당 최대 50천원 이내
심 사 관 리 비		(개인) 2ha미만 320천원 이내, 초과시 ha당 50천원씩 추가(이내) (단체) 전체 농가 수 × 구성원별 지원단가(이내)
검사비	잔류농약	(개인) 건당 최대 150천원 이내 (단체) 표본농가 수 × 건당 최대 150천원 이내
	토 양	미지원
	수 질	미지원
	기 타	미지원

나. 지원방법

○ 인증비용 지원 : 친환경농업을 실천하여 인증을 받은 농가(단지)

- 친환경농산물 신규·갱신 인증농가(단지), 인증단계 상향 농가(단지) 등에 지원
- 시·군은 예산절감을 위해 단지 단위 인증신청을 홍보하고, 인증기관별 인증비용 공개를 통해 예산절감, 단체인증농가 자부담 완화를 위한 예산의 효율적 운용방안 모색
- 개인·단체 인증 시 불필요한 분할인증으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지도·감독 철저
- 본 지침의 지원대상·항목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은 시·군 상황에 따라 추가지원 가능

다. 지원기준

○ 지원비용 : 친환경농산물 인증에 필요한 항목별 지원총액(한도액)의 80%

○ 지원기준 : 도비 15%, 시군비 65%, 자부담 20%

○ 인증단계별 유효기간 준수 : 유기·무농약 1년

라. 부정수급 관리

○ 부정수급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 즉시 도에 보고

○ 해당 친환경인증기관에 대해서는 1년간 친환경농산물 인증비 지원 등 관련 보조사업 참여를 즉시 제한하고, 지원된 보조금 회수 등 조치

6. 사업비 집행 및 정산 보고

○ 시장·군수 책임 하에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수하여 사업비를 집행하고 관리

○ 인증비는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적법하게 획득한 농가에 직접 지원

* 인증기관에 직접집행 불가

7. 행정사항

○ 친환경농산물 인증비 지원사업 신청내역 보고 : 2022. 9. 30.(별지 제4호 서식)

○ 인증비용 지원 및 정산결과 보고 : 2023. 1. 15.(별지 제4호 서식)

참 고 개인/단체별 인증비 지원 세부단가 예시

○ 개인인증 지원금액 산출 예시(농가당 최대 2건 지원)

(단위 : 천원)

면 적 별	항목별 예시(소요액의 80% 보조, 20% 자부담)				
	소요액 합 계	신청비	출장비	잔류농약 검사비	심사 관리비
~2ha 미만	570	50	50	150	320
2~3ha미만	620	50	50	150	370
3~4ha미만	670	50	50	150	420
4~5ha미만	720	50	50	150	470
5~6ha미만	770	50	50	150	520
6~7ha미만	820	50	50	150	570
7~8ha미만	870	50	50	150	620
8~9ha미만	920	50	50	150	670
9~10ha미만	970	50	50	150	720
10ha이상	1,020~	50	50	150	770~

○ 단체인증 지원금액 산출 예시

(단위 : 천원)

인원 수	표본 기준	항목별 예시(소요액의 80% 보조, 20% 자부담)				
		소요액 합 계	신청비	출장비	잔류농약 검사비 (표본 수 기준)	심사 관리비 (농가 수 기준)
5~15호	4	2,250~5,350	50	50	600	농가 수×310
16~24호	8	6,260~8,740	50	50	1200	농가 수×310
25~35호	10	9,100~12,100	50	50	1500	농가 수×300
36~48호	12	12,700~16,300	50	50	1,800	농가 수×300
49~63호	14	19,900~21,100	50	50	2,100	농가 수×300
64~80호	16	21,700~26,500	50	50	2,400	농가 수×300
81~99호	18	27,100~32,500	50	50	2,700	농가 수×300
100~120호	20	32,100~37,900	50	50	3,000	농가 수×290
121호이상	20%	38,690~00,000	50	50	20%×150	농가 수×290

＊참여농가 중 인증면적 2ha이상인 경우 ha당 50천원씩 반영

《단체인증 구성원(수)별 적용내역》

구성원수(호)	~ 15	16~24	25~35	36~48	49~63	64~80	81~99	100~120	121 이상
표본농가	4	8	10	12	14	16	18	20	20%
기준단가	310천원/인		300천원/인					290천원/인	

[별지 제1호 서식-앞면]

친환경농산물 인증비 지원 신청서

신청인	농가(조직)명		대표자		
	주 소		전화번호		
인증내역	인증구분	유기, 무농약/신규, 갱신	인증품목	외 품목	
	인증면적	㎡	인증유효기간	~	
	인증번호		인증취득일자		
	인증농가 수		인증기관		

인증비 수수료 납부내역	계	신청비	심사원 출장비	심 사 관리비	잔류농약 검사비
	원				
인증비 지 급 산출액	계	신청비	심사원 출장비	심 사 관리비	잔류농약 검사비
	원				

보조금 청구액	**천원**(지급대상 산출 금액의 80%)					
입 금 계 좌	은행명		예금주		계좌번호	

구비서류 1. 인증비 납부확인서(별지 제2호 서식) 또는 완납 증빙서류(통장사본, 입금표 등) 1부.
2. 인증비 세부내역서 1부(별지 제3호 서식)
3. 필지별 내역 포함된 인증서(전·후) 사본 각 1부.
4.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 납부 영수증 사본 1부.

1. 상기와 같이 친환경농산물 인증비 지원사업을 신청하며, 사업신청 및 안전성 관리와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처리·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상기 개인정보(계좌번호 등)의 수집·이용
☑ 친환경농산물 안전관리와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상기 개인정보(전화번호, 주소)의 수집·이용

2. 친환경농산물 인증기준 준수 관리를 목적으로 보조사업을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신청인의 인증품 생산·유통 등 전 과정에 대해 시료채취 및 잔류농약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기관(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에 통지할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위와 같이 2022년도 친환경농산물 인증비 지급을 신청합니다.

2022. . .

신청자 주소 :
조직명 :
대표자(성명) : (서명 또는 인)

00 시장·군수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인증비 납부확인서

□ 인증번호 :

□ 인증단계 :

□ 인증품목 :

□ 인증면적 : ㎡(인증농가수 : 호)

□ 인증농가(조직) 주소 :

성명(대표자) :

□ 인증비 납부액

납부금액	납부자	납부일자	납부방법
금 원			* 계좌이체, 무통장입금 현금 등으로 기재

상기와 같이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0조 규정(별표23)에 의한 인증수수료가 납부되었음을 확인합니다.

2022. . .

인증기관의 장 (직인)

[별지 제3호 서식]

인증비 세부내역서

□ 인증농가(조직) 주소 :

성명(대표자) :

□ 인증비 세부내역

(단위 : 원)

구 분	비 용(원)	세부내역	비 고
계			
○ 인증신청비			
○ 인증심사원 출장비		인원 : 명	
○ 심사관리비			
○ 검사비용		기관명 :	
- 농약잔류			
- 토양			
- 수질(용수)			
- 기타 검사			

인증비 세부내역이 상기와 같음을 확인합니다.

2022. . .

인증기관의 장 (직인)

붙임. 단체인증 시 농가별 세부 청구내역 1부.

[붙임 1]

□ 단체인증 시 농가별 세부 청구현황(심사관리비, 잔류농약검사비)

(단위 : 원)

농가명	표본 여부	인증심사비 청구액 현황							
		합 계 (A+B)	심사관리비(A)						잔류농약 검사비(B)
			소계	서류심사	현장심사	심사보고	생산과정 조사	기타	
계									
홍길동	표본	470,000	320,000	100,000	100,000	50,000	70,000	0	150,000
김전남	-	320,000	320,000	100,000	100,000	50,000	70,000	0	0

[별지 제4호 서식]

1. 친환경농산물 인증비 지원사업 신청내역 : 2022. 9. 30.

사업량(건수)	지원실적					사 업 비(천원)			
	농가수	면 적			필지수	계	도비	시군비	자담
		계	유기	무농약					
		ha			필지				

2. 인증비용 지원 및 정산결과 : 2023. 1. 15.

- 인증비용 지원 내역

사업량(건수)	농가수	면 적(ha)			필지수
		계	유기	무농약	
					필지

- 사업비 집행실적

사업량(건수)			예 산 액(원)				집 행 액(원)				도비 집행 잔액
계획	실적	%	계	도비	시군비	자담	계	도비	시군비	자담	

- **개인** 인증비용 지원 내역(건별로 작성)

농가명	농가수	인증기관	인증구분		인증면적(㎡)	농가 실제 소요비용					지원한도액					지원액
			인증단계	신규/갱신		계	신청비	출장비	관리비	검사비	계	신청비	출장비	관리비	검사비	
합 계																

- **단체** 인증비용 지원 내역(건별로 작성)

단체명(대표명)	농가수	인증기관	인증구분		인증면적(㎡)	농가 실제 소요비용					지원한도액					지원액 (지원한도액×80%)
			인증단계	신규/갱신		계	신청비	출장비	관리비	검사비	계	신청비	출장비	관리비	검사비	
합 계																

8 친환경농산물 잔류농약검사 지원

1. 목 적

○ 친환경농산물 인증확대에 따른 안전성 검증체계 확립으로 소비자 신뢰 확보

○ 도내 공급되는 퇴비 품질검사 강화로 미부숙·기준미달 등 불량퇴비 유통 근절

2. 지원근거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 「제4차 친환경농업육성 5개년 계획('20~'24년)」

3. 사업계획

사 업 명	사 업 량	사 업 비 (천원)		
		계(100%)	도비(25%)	시군비(75%)
잔류농약검사지원 (퇴비 품질검사)	5,330건	800,000	200,000	600,000

4. 사업추진

가. 시행주체 : 시장·군수

나. 사업기간 : 2022. 1.~12.(1년간)

다. 검사 기관

- (잔류농약)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시군 농업기술센터, 민간검정기관*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99조에 따라 지정 받은 검정기관

- (퇴비분석)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또는 비료 시험연구기관

라. 검사대상

○ 시·군 친환경농산물 부정인증·유통 신고센터에 접수된 단지와 친환경 인증 농산물 생산과정에서 농약사용이 의심되는 필지의 농산물

- 잔류농약 분석용 시료 채취는 시·군 담당자, 민간인증기관 등이 합동 실시를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시군 담당자가 직접 채취

○ 명예감시원 등 현장지도 과정 중 적발되어 농가와 분쟁이 발생한 필지의 농산물

○ 수요가 많은 수도권지역 급식업체에 납품하는 농가(품목)의 생산물 등

○ 적격품 출하를 위해 생산단계 및 출하 전 잔류농약 검사가 필요한 농산물

○ 친환경 공공비축미 매입 전 안전관리를 위해 사전 검사가 필요한 경우

○ 품질의심 등 도내 유통·공급되고 있는 퇴비제품 중 검사가 필요한 경우

○ 기타 도·시군에서 잔류농약 검사·퇴비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잔류농약 검사기관은「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제126조에 따른 검정증명서 발급

마. 검사(분석)기관 선정 방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찰 또는 수의계약(다만, 시·군 자체 분석실을 이용하는 경우 예외)

* 사업목적이 같은 시군 유통부서의 “학교급식 농산물 안전성검사”, “로컬푸드 납품농산물 안전성검사“ 등과 일괄 발주 예산절감 방안 강구

바. 지원방법

○ 잔류농약검사

- 지원내용 : 친환경농산물 잔류농약검사에 필요한 검사 비용
- 지원단가 : 150천원 내외/건
- 지원비율 : 도비 25%, 시군비 75%

* 잔류농약 검사 증가 등으로 배정사업비를 초과한 경우 시·군비(또는 농가 부담)으로 추진

○ 퇴비(비료)검사

- 지원내용 : 비료 품질검사에 필요한 검사 실 소요비용
- 지원단가 : 200~300천원/점
- 지원비율 : 도비 25%, 시군비 75%

사. 사업비 집행 및 정산 보고

○ 시장·군수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라 친환경농산물 잔류농약검사(비료 시험연구기관 등) 분석기관에 직접 집행

- 친환경농업인이 안전관리 목적으로 잔류농약 검사를 의뢰한 경우 농업인에게 보조금 집행 가능

○ 사업완료 후 사업비 정산결과 도에 보고

5. 사업시행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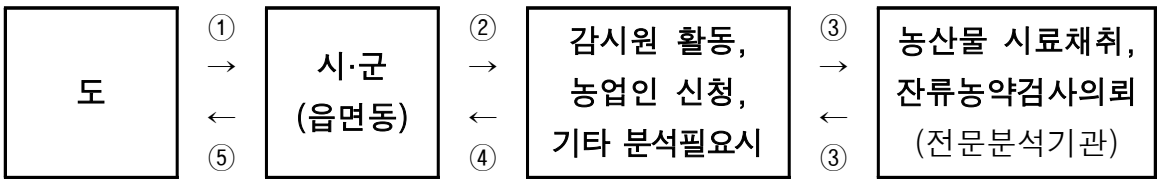

① 사업계획 수립 대내외 홍보　　② 사업추진(신고 접수, 계획 수립)

③ 의심·신고 농산물, 생산단계·출하 전 농산물, 안전관리 점검용 등

④ 인증취소 통보 및 보조지원 중단, 사후관리, 추진상황 보고

⑤ 추진상황 보고, 사업비정산, 결과분석

6. 행정사항

가. 추진상황 보고 : 2회(9월말 기준, 12월말 기준) - 다음 달 5일까지 보고

나. 사업비 정산결과 보고 : ’23. 1. 15.

다. 사후관리

○ 잔류농약 검사결과 농약 검출 시에는 그 내역을 농산물품질관리원과 민간인증기관 등에 통보하여 처분 요청

○ 퇴비검사 후 부적합 업체에 대해서는 비료 관련법에 따라 조치

[보고 서식]

1. 잔류농약 검사실적 및 조치사항 : 2회(9월말, 12월말)

- 잔류농약검사 실적

사업량 (건수)	검 사 실 적								검사기관명
	신 고 (명예감시원 외)		적 발 (명예감시원)		의 심 (행정기관)		기 타 (해당농가)		
	정상	부적합	정상	부적합	정상	부적합	정상	부적합	

- 부적합 조치사항

위 반 자			위 반 상 황			조치사항
성 명	주 소	연락처	품목	위반내용	위반일자	

2. 퇴비(비료) 검사실적 및 조치사항 : 2회(9월말, 12월말)

- 퇴비(비료)검사 실적

구 분	사업량 (건수)	검사일자	검 사 실 적			비 고
			계	적 합	부적합	
합 계						
교차단속검사						
수시검사						

- 부적합 조치사항

구 분	위 반 자			위 반 상 황		조치사항
	성 명	주 소	연락처	품목	위 반 내 용	

3. 사업비 정산실적 보고 : 2023. 1. 15.

(단위 : 건수, 천원)

세부사업	사업량			예산액			집행액			도비 집행 잔액
	계획	실적	%	계	도비	시군비	계	도비	시군비	
계										
잔류농약검사										
퇴비검사										

9 논벼 재배농가 왕우렁이 공급사업

1. 목 적

○ 저비용 무제초제 농업 실현으로 농업환경 보전 및 친환경 전남 이미지 제고

○ 벼 재배 농가의 제초비용을 지원하여 노동력 및 생산비 절감에 기여

2. 지원근거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0조

○ 「제4차 친환경농업육성 5개년 계획('20~'24년)」

3. 사업계획

사 업 명	지원 항목	사업량 (ha)	사 업 비 (천원)			
			계	도비	시군비	자담
논벼 재배농가 왕우렁이 공급	**합 계**	**41,320**	**5,000,000**	**500,000**	**3,568,000**	**932,000**
	친환경	32,000	3,840,000	384,000	3,072,000	384,000
	일반답	9,000	1,080,000	108,000	432,000	540,000
	예방자재	320	80,000	8,000	64,000	8,000

4. 사업추진

가. 시행주체 : 시장·군수

나. 사업기간 : 2022. 1.~12.(1년간)

다. 사업비 지원

○ 사 업 량 : 41,320ha(친환경 32,000, 일반답 9,000, 예방자재 320)

○ 사 업 비 : 5,000백만원 / 도비 500, 시군비 3,568, 자담 932

○ 지원비율 : 친환경·예방자재 - 보조 90%, 자부담 10%

일반답 - 보조 50%, 자부담 50%

-사업별 지원비율은 준수하되, 시·군 여건에 따라 부득이한 경우 조정 가능

○ 지원대상 : 친환경·일반 벼 재배농가

○ 지원내용 : 친환경・일반답 왕우렁이 및 예방자재 공급

○ 10a당 왕우렁이 공급(지원) 기준

- 공 급 량 : 1.2㎏ 이내(1,200마리 내외)
- 지원단가 : 12,000원 이내(㎏당 10,000원 이내)
- 지원대상 : 벼 재배 농경지(친환경답, 일반답)

○ 10a당 예방자재(지원) 기준

- 예방자재(개량물꼬, 그물망 등) 및 방제약제(유기농자재)별 면적 등 사용기준에 맞춰 시군에서 자율 적용 지원 가능(시군 자체 지원계획 수립)
- 긴급 피해발생 시 왕우렁이 지원비를 활용하여 예방·방제 비용지원(1개월 내 사후보고)

○ 항목별 사업비 전용

- “친환경 답”과 “예방자재”는 상호 전용은 가능하나, “친환경 답과 예방자재”를 일반 답으로 전용 불가(시·군 자체 전용계획 수립, 1개월 내 사후보고)

라. 사업추진요령

1) 사업신청·접수

○ 사업신청 : 기한 내 사업신청서를 작성 후 시·군(읍·면·동)에 제출

- (개인) 사업신청서 작성(신청면적·공급 희망량 반영)하여 읍·면·동 제출
- (단지) 사업신청서 작성 시 참여농가별 신청확인을 받은 첨부서류를 제출

○ 사업접수 : 사업신청서 접수 시 농가별 적정면적·적정량 신청여부 점검

- (읍·면·동) 농가별 친환경 벼 인증취득내역, 경영체 등록정보 등을 점검하여 적정량 여부를 점검하고, 농가별 공급 희망일을 파악하여 업체선정 시 활용

○ 사업신청 안내 시 왕우렁이 사용 후 수거, 동계작물 재배 또는 깊이갈이를 미실시한 농가는 사업신청 제한

2) 왕우렁이 공급업체 선정 및 안정적 공급

○ 단지별로 신청농가 등이 참여하는 선정위원회 구성(5~6인), 가격 비교 등을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방식으로 공급업체 선정

- 계약 시 공급대상 농가별로 공급 시기를 명시하고, 적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추진

○ 공급량은 10a당 1~1.2㎏ 기준으로 공급하되, 원거리 수송 시 왕우렁이 폐사, 잡초 방제효과 제고 등을 감안 가급적 공급이 용이한 도내 업체로 선정

- 공급업체간 과열경쟁 방지 및 기술지도 강화 등을 위해 시·군 여건에 맞게 추진

○ 왕우렁이 공급업체는「내수면어업법」또는「양식산업발전법」등에 따라 직접 생산하는 등록(허가)된 업체로 한정

3) 왕우렁이 공급 점검

○ 왕우렁이 공급업체는 단지(농가)별로 왕우렁이를 공급하고, 공급확인서를 농가(단지대표) 등에게 제출

- 농가는 크기, 신선도, 공급량 등 검수하고 살포요령 및 수거방법 숙지
- 단지대표는 왕우렁이 검수 및 농가별 적기 입식 지도, 사용농가 의무사항 안내

○ 시·군은 공급업체에서 제출한 공급계획서에 따라 행정지도를 실시하고, 읍·면 담당공무원은 공급상황 수시 지도·감독

- 시·군별 실정에 맞게 왕우렁이 현지 적정크기·정량공급 등 추진상황 지도·점검

4) 왕우렁이 사후관리

○ **(의무사항)** 왕우렁이 농법 실천농가는 투입한 왕우렁이를 수거하고, 벼 수확 후 동계작물 재배 또는 논 갈이 등을 반드시 실시

《 관리의무 부여사유 》

환경부의 '생태계 교란생물' 지정 검토 종으로 전남 지역에서 월동이 가능하고, 일부 피해도 발생됨에 따라 친환경농업에 지속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사용 후 수거 등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

○ 왕우렁이 농법실천 농가가 관리의무(수거, 동계작물 재배 또는 갈이)를 불이행한 것이 확인될 시에는 사업비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음.

- 왕우렁이 알 제거(5~7월) 및 왕우렁이 수거(7~8월) 할 수 있도록 실시
- 벼 수확 후 수거(10~11월) 및 동계작물 재배(10~11월), 논 갈이(10월~) 실시

5) 사업비 집행·정산

○ 단지대표 또는 담당공무원의 공급확인 후 사업비를 집행하되, 영농초기에 공급되는 점을 감안 예산의 조기집행 등 탄력적 운용

○ 고령화 등 농업인의 집행·정산 등 불편해소를 위해 보조사업자가 희망하는 경우에 한하여 직접 생산·공급한 업체에 보조금 지급을 위임할 수 있음

- 지불위임장 제출 시 왕우렁이 공급확인서를 대체하여 활용 가능

○ 개인농가가 공급업체로 지불위임하는 경우 별첨 2의 보조금 지불위임서에 본인서명 또는 도장 날인 후,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신분증 사본 첨부

- 본인수령을 희망하는 경우 본인명의 통장사본 및 공급업체 수납확인서(증빙포함) 제출

○ 단지에서 지불위임 신청하는 경우 참여농가별 보조금 지불위임서를 작성하고 본인서명 또는 도장 날인 후,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신분증 사본 첨부

- 단지대표 직접수령은 불가하며, 단체 신청의 경우 참여농가 전원의 동의서 작성·제출

○ 왕우렁이의 경우 직접 생산·공급하는 업체(등록·허가업체)에 한하여 보조금 지불위임이 가능함

6) 부정수급 관리

○ 부정수급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 즉시 도에 보고

○ 해당 공급업체와 농업인에 대해서는 각각 2년간 우렁이공급 지원 및 사업 참여 제한하고, 지원된 보조금 회수 등 조치

5. 담당기관(단체)별 역할

가. 전라남도

○ 왕우렁이 공급사업 계획 수립·시행 및 안전관리 종합계획 추진

○ 왕우렁이 월동 등 피해현황 조사 및 시기별 왕우렁이 일제수거 추진·관리

나. 시·군(읍·면)

○ 논 제초 왕우렁이 공급·지원계획 추진 및 시연회 등 일제수거 지도·관리

○ 왕우렁이 월동관리 안전관리 대책 추진

- 월동피해 우려 지역의 일반 답, 간척지 등에 대한 공급 여부는 시·군 책임(재이앙, 방제, 민원처리 등)하에 결정

○ 왕우렁이 공급 시 농가별 공급일자, 공급량, ㎏당 개체수, 공급단가 등 철저한 검증과정을 거쳐 공급계약이 체결되도록 지도

- 부정수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급업체·농업인 교육·홍보 및 지도·점검 실시

○ 농가(단지대표)공급 시, 담당공무원의 공급확인 절차이행 후 사업비 집행
- 영농초기 적기 공급을 위해 공급업체 생산현황·공급 상황 등을 상시 점검·확인
- 논 제초가 가능한 적정크기·양의 왕우렁이가 공급될 수 있도록 공급상황 관리·감독

○ 왕우렁이 사용농가 사후관리 등 의무사항 이행관리 철저
- 왕우렁이 사용 후 수거(입식 1개월 후), 벼 수확 후 동계작물 재배 또는 깊이갈이 등 이행 지도

다. 왕우렁이 생산·공급업체

○ 공급업체 선정 시 단지(농가) 대표와 공급 일자, 공급량, 공급단가 등에 대해 사전 공급계약을 체결한 후 공급계약에 따른 생산계획 수립

○ 생산계획 및 단지·농가별 공급계획서를 시군(읍면), 농업인에 제공

○ 왕우렁이 공급 시 적정밀도 유지를 위해 일정크기(㎏당 900 ~ 1,100마리)로 선별·출하

○ 농가 희망지역에 우량품을 공급하고 공급확인서를 단지(농가)에 제출

○ 왕우렁이 공급 과부족시 타지역 생산물량 확보 등 (사)전남우렁이생산자연합회와 적정 수급대책을 마련하고, 신속한 조치를 통해 차질없이 공급

○ 왕우렁이 도피 방지망 설치안내 및 수거 등 사용농가 의무사항 홍보·안내
-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불식을 위해 공급업체에서 솔선하여 홍보·안내

○ 왕우렁이 농법 실천요령 등 단지별로 현장교육, 시연회, 수거한 왕우렁이 폐기 등 공급 후 사후관리 지원

6. 관리 요령

< 왕우렁이 관리 주요 추진 일정 >

구 분	관리 내용	추진일정(월)												비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논 관리	용·배수로 차단망 및 포집망 설치				■	■								왕우렁이 유출방지
	차단망 및 포집망 보수						■	■	■	■	■			
	논뚝 관리					■	■	■	■	■	■	■		
재배 중 관리	논 왕우렁이 적정밀도 유지						■	■						왕우렁이 수거작업
	용배수로 유출 왕우렁이 수거							■	■	■	■			
	배수로 물길조성 및 왕우렁이 수거			■	■						■	■		
수확 후 관리	논 말리기									■	■	■	■	왕우렁이 월동방지
	심경 작업	■	■											
	용·배수로 물빼기										■	■		

가. 이앙 전·후

○ 벼 이앙논의 물 담수 깊이 조절, 논바닥 균평 작업으로 벼 피해 사전 방지

○ 왕우렁이 입식 전 차단망 및 울타리 등을 용수로 및 배수로에 설치하고 논둑을 높여 왕우렁이가 이동할 수 없도록 방지

○ 왕우렁이 적정 투입 시기는 이앙 5일 또는 써레질을 기점으로 하여 7일 이내에 약 1~1.2kg/10a(치패 기준)을 넣는 것이 논 잡초방제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법

※ 성패의 경우 약 5kg/10a 적정량

○ 왕우렁이농법 인근 미실천 농지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용·배수로 주변에 유실된 왕우렁이 및 알 제거 철저

<배수구 왕우렁이 차단망>

<용수구 차단망 및 통발>

<논둑을 넘는 왕우렁이>

나. 수확 후

○ 관개용수 유입구와 배출구 등에 울타리(차단망) 및 포집망(통발) 설치

○ 수확 전 배수로 부근 물길조성 및 먹이 주기로 왕우렁이 유인 및 수거

※ 수위가 낮아지면 물길로 왕우렁이가 이동해 쉽게 포살 가능

○ 벼 수확 후 왕우렁이 동사를 위해 동계작물 재배, 깊이갈이(11월~), 논 말리기 등 실시

※ '22년부터 보리, 녹비 등 동계작물 재배, 깊이갈이 미실시 농가 지원 제한

○ 왕우렁이 월동 우려가 높은 용수로 등의 물을 빼고 물이 흐르는 깊은 물속 적극 수거

7. 예찰 및 방제 기술

가. 예찰 기술

○ 왕우렁이 월동 의심 지역에 배추 잎을 스티로폼에 묶어 부착 여부 확인

※ 스티로폼 조각(5×10×0.8cm)을 배추에 부착해 물웅덩이나 수로에 설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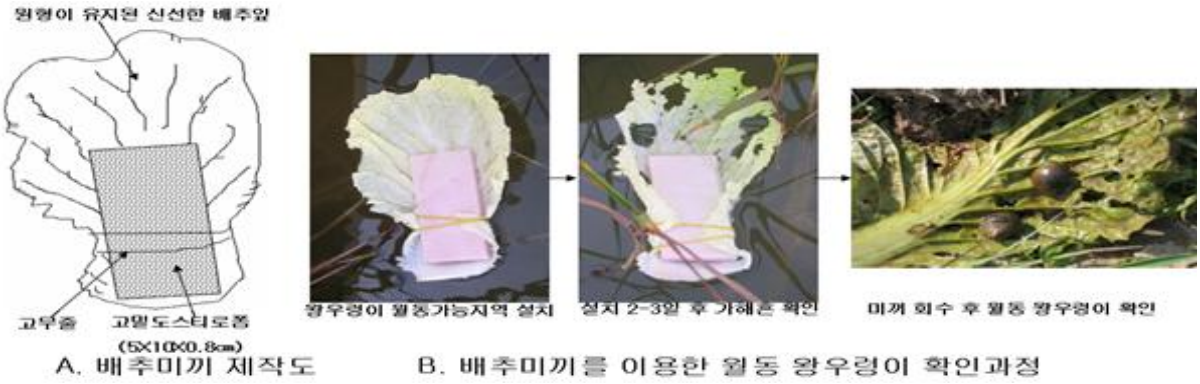

A. 배추미끼 제작도　　B. 배추미끼를 이용한 월동 왕우렁이 확인과정

나. 방제 기술

☞ 물리적 수거를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 방제자재 사용

○ 벼 이앙 시기(5월)에 농수로에 오리 방사*(상류에서 하류로 이동)

* 농수로의 왕우렁이를 제거하기 위해 30㎡당 4마리 오리 방사

<그림> 농수로의 왕우렁이와 오리 방사 장면

○ 논 및 주변 물 웅덩이 등에 왕우렁이 방제자재 살포

- 친환경답 : 유기농업자재 목록공시 등록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사용(1~2kg/10a)
- 관 행 답 : 이프로벤포스입제 6kg/10a(방제효과 93.6%) * 인근 친환경답 주의하여 살포

8. 교육 및 홍보

○ (교육) 친환경 인증사업자(벼 인증농가) 의무교육 시 관리방안 교육 편성 및 왕우렁이 농법실천 관행 농업인 대상 교육 강화

- (보완교육 내용) 왕우렁이 관리요령 및 방제기술(벼 재배농가 대상)
- 배수로에서 올라온 왕우렁이가 왕우렁이농법 미 실천답 필지에 피해를 유발하므로 농업인에게 수거 교육 강화하고, 깊이갈이·동계작물 재배 등 월동대책 적극 실시 안내
- 왕우렁이농법 실천 농가가 솔선하여 의무 수거토록 교육
- 왕우렁이 수거 시, 토종 논 우렁이를 수거하지 않도록 교육내용에 반드시 반영

○ (홍보) 투입한 왕우렁이를 의무적으로 수거해야 함을 사전에 공지하고, 사용농가 대상 관리요령 및 방제기술 등 홍보 강화

- 매 체 : 유관 기관·단체 홈페이지, 반상회보 및 이장단 회의자료 등에 게시
- 현수막 : 농관원, 읍면·동 사무소, 지역농협 등 농업인 방문이 많은 지역에 게시 홍보

『왕우렁이』 활용도 중요하지만 관리(수거)가 더 중요합니다!
- 자연 유출 차단망 설치, 농수로 왕우렁이(알) 제거 필수 -

9. 행정사항

○ 사업계획서 제출 : 2022. 4. 10.(보고서식)

○ 「왕우렁이 전국 일제 수거기간」 적극 참여 및 시·군 자체 수거기간 운영·실시

- 필지별, 들녘별(용·배수로 포함)로 수거계획 수립 및 사용농가 적극참여 추진

○ 공급실적 제출 : 2022. 7. 31.(보고서식)

○ 사업추진 실적 및 정산결과 보고 : 2023. 1. 15.

- 사업지침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수하여 사업비 집행 및 정산

〈 의무사항 미이행 시 지원제한 〉

○ **'22년부터 동계작물 재배 또는 논 깊이갈이 미이행 농가(논)는 사업신청 불가**

- 벼 수확 후 **동계작물 재배(10월~) 또는 논 깊이갈이(10월~이듬해 2월) 이행**

[보고 서식]

1. 사업계획서

(단위 : ha, kg)

단 지 명	계획면적 (ha)	왕우렁이 소요량(kg)	공급계획		
			업체명	업체 소재지	공급량(kg)
계					

※ 10a당 왕우렁이 소요량 1.2kg 기준

2. 왕우렁이 공급실적

① 농업인 교육·홍보실적

○ 교육실적 : 회, 명

- 일자별 :

○ 홍보실적(홍보매체별)

-

-

② 왕우렁이 실적

(단위 : ha, kg)

단 지 명	공급면적 (ha)	왕우렁이 소요량(kg)	공 급 내 역		
			업체명	업체 소재지	공급량(kg)
계					

③ 기타 특이사항

○

3. 사업비 정산 : 2023. 1. 15.까지

○ 사업비 집행

(단위 : ha, 원)

단지명	사 업 량			예 산 액			집 행 액			도비 집행 잔액
	계획	실적	%	계	도비	시군비	계	도비	시군비	
계										

○ 세부사업별 집행내역

단지명	공급면적 (ha)	공급량 (kg)	단가	사업비(천원)			
				계	도비	시군비	자담
	계						

[참 고]

농법별 제초비용 절감효과(10a)

구 분	왕우렁이	큰 왕우렁이	제초제
살포시기	써레질 직후	모내기 후 5일 이내	모내기 후 7~10일
살 포 량	1~1.5kg(**평균 1.2kg**) ※ kg당 900~1,100마리	3~5kg(평균 4kg) ※ kg당 250마리	제제별로 상이
소요비용 (구입비)	10,000~15,000원 (평균 12,000원)	15,000~25,000원 (평균 20,000원)	24,000원 (초·중·후기, 3회 살포)
제초비용 절감효과	○ **큰 왕우렁이** 대비 8,000원(40%) 낮고 ○제초제 대비 12,000원(50%) 절감가능	○ **제초제** 대비 4,000원(17%) 낮고 ○ **왕우렁이** 대비 8,000원(40%) 추가소요	○ 왕우렁이 대비 2배 이상 추가 소요 ○ 큰 왕우렁이 대비 20% 추가 소요
비 고	○ **제초효과 99%** 이상 입증('09 농업기술원) ○ 큰 왕우렁이 제초효과(95%) 보다 좋아 농가에서 호응	○ 양식기간이 50일 이상으로 길어 사료 투입량 증가 등 양식 비용 과다 소요 ○ **제초효과 95%**	○ 화학적 제초제에 내성이 강한 일명 '**수퍼잡초**'방제 제초효과 낮음

[사업신청서식]

2022년 논벼 재배농가 왕우렁이 지원사업 신청서

<table>
<tr><td rowspan="6">신 청 자</td><td>신 청 자(단체)명</td><td colspan="2"></td><td>회 원 수</td><td>호</td></tr>
<tr><td>대 표 자</td><td colspan="2"></td><td>생년월일</td><td></td></tr>
<tr><td>주 소</td><td colspan="2"></td><td>전화번호</td><td></td></tr>
<tr><td colspan="2">인증여부 : 친환경 / 일반</td><td colspan="3">인증(재배)면적(㎡) :</td></tr>
<tr><td colspan="2">인증번호 :</td><td colspan="3">인증유효기간 :</td></tr>
<tr><td>신청농지(지번)</td><td colspan="4">시·군 읍·면·동 리 번지 외</td></tr>
<tr><td rowspan="3">신청내역</td><td colspan="5">사 업 비 : 천원(보조 , 자부담)</td></tr>
<tr><td>공급기준량</td><td>기준단가</td><td>신청면적(㎡)</td><td>신청량(kg)</td></tr>
<tr><td>12kg/1만㎡</td><td>9천원/kg
5천원/kg</td><td></td><td></td></tr>
</table>

1. 상기와 같이 2022년도 논벼 재배농가 왕우렁이 지원사업을 신청하며, 사업 대상자 선정기관 및 공급업체에서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귀하의 사업신청, 보조금 지불위임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합니다.

☑ 귀하의 사업신청과 관련된 고유식별번호(전화번호, 주소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2. **왕우렁이 수령 시 수거, 동계작물 재배** 또는 **깊이갈이**는 **수혜농가 의무사항임을 확인하고 미실시 할 경우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 의무사항 미이행 시 차년도 사업신청이 제한될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2022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또는 서명)

□□ 시장·군수 귀하

※ 구비서류 : 친환경인증서(사본), 지불위임 시 신청농가 본인서명사실확인서(신분증 사본)
- 일반 농업인인 경우 농가등록 여부 확인(농업경영체등록증 등)
- 단체일 경우, 참여농가 현황(별첨1) 제출
- 공급업체에 보조금을 지불 위임하는 경우 지불위임장(별첨2) 제출
- 본인수령 희망 시 본인명의 통장사본 제출 및 공급업체 수납확인증 제출
- 신청내역의 보조사업비는 업체 입찰선정 등에 따른 단가확정 시, 변동될 수 있습니다.

[별첨 1]

□ (단체일 경우) 참여농가 현황 * 농가별 인증서 사본, 자불위임 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신분증 사본) 제출

구분	농가명	연락처	재배지	지번	신청면적 (㎡)	인증내역	신청확인
계							
1	예)홍길동	010-0000-0000	삼향읍 남악리	000-00	1,000	유기농	

[별첨 2]

2022년 논벼 재배농가 왕우렁이 지원사업 지불 위임장

(단위 : kg, 원)

공급업체 (소재지)	공급일자	공급단가 (원/kg)	공급량 (kg)	지원내역		
				계	보 조	자부담

□ **위임자(보조사업자)**

왕우렁이를 위와 같이 정히 인수하였으므로 보조금 수령을 다음 피위임자에게 위임하니 지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 소 :

○ 생년월일 : 성명 : (인 또는 서명)

□ **피위임자(공급업체)**

왕우렁이 공급에 따른 수혜자 자부담금 납부를 확인하고, 아래의 계좌로 보조금 지불위임을 청구하오니 송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 급 업 체 명 :

○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성명 : (인 또는 서명)

○ 지불위임 계좌번호

예금주	계좌번호	은행	금액(원)

붙임 : 1. 공급 · 수령 증빙서류(입금내역, 공급증빙 사진 등) 각 1부.
2. 위임자 · 피위임자 본인서명사실확인서 각 1부.

2022년 월 일

□□시장·군수 귀하

[공급업체 보관용]

왕우렁이 확인서

(No :)

공급업체	업 체 명	
	대 표 자	성명 (연락처)
	양식장 소재지	
공급농가	주 소	(성명)
	공급가격(kg/원)	왕우렁이 , 기타
	공 급 량	kg(왕우렁이 , 기타)
	공급일자	2022. . .

---------- (절취선) ----------

[단지(농가)제출용]

왕우렁이 확인서

(No :)

공급업체	업 체 명	대표 (인)
	대 표 자	성명 (연락처)
	양식장 소재지	
공급농가	주 소	(성명)
	공급가격(kg/원)	왕우렁이 , 기타
	공 급 량	kg(왕우렁이 , 기타)

위와 같이 제초용 왕우렁이를 공급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22. . .

귀하

10 친환경농업단지 조성 지원(지침 변경예정)

1. 목 적

○ 친환경농업 실천지역을 마을 및 들녘, 수계단위로 단지화하여 품목별로 다양한 형태의 친환경농업 실천기반 구축

○ 과수·채소 품목별 사업비 차등지원으로 친환경농업 내실화 및 인증 품목 다양화 추진

2. 지원근거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16조(친환경농수산물 등의 생산·유통·수출 지원)

3. 사업계획

(단위 : 천 원)

사 업 명	사업량	총사업비		
		계(100%)	도비(20%)	시군비(80%)
친환경농업단지 조성 지원	46,500ha	40,000,000	8,000,000	32,000,000

4. 사업추진

가. 사업주체 : 시장·군수

나. 사업기간 : 2022. 1.~12.(1년간)

○ 사업대상자 선정 교육 및 사업주체와 협약체결 : 2022. 1.~3.

○ 세부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추진 : 2022. 3.~12.

○ 사업비 정산 : 2023. 1.~2.

다. 지원대상

○ 대상작목 : 벼, 원예·특용작물, 임산물 등 친환경농산물 인증 가능한 작물

○ 대상지역

- 마을 및 들녘단위 단지화 조성으로 무농약 이상 인증 획득 지역
- 단지규모는 지역 여건을 감안 시군 자율 적용

  * 주변 여건 및 작물 특성에 따라 단지화가 어려울 경우 개별농가 지원 가능

○ 지원대상자 : 친환경농업을 실천하여 인증(유기, 무농약)을 받은 농가

○ 단지조성

- 친환경농업기술과 경영마인드를 갖춘 선도 1농가 이상을 단지대표(생산관리자)로 지정하고, 협의체를 구성하여 효율적 운영
- 단지대표는
  - 소속 농가에게 인증기준에 적합하게 작성된 생산지침서 등 제공
  - 소속 농가에게 인증기준과 인증농가가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에 대해 교육
  - 소속 농가의 인증품 생산과정이 인증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고 심사결과 기록관리
  - 친환경농업 실천 및 인증취득과 관련하여 총괄 지도 관리

○ 지원제외 대상

- 친환경농업 실천 과정에서 제초제 사용 등으로 친환경 인증취소 농가
- 친환경농업 인증기간 동안 인증포기 후 다시 신규로 인증을 받은 농지

라. 사업비 지원

○ 지원조건

- 친환경 농자재 자가제조 또는 구매하여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획득한 농가 지원
- 보조금 지급 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운영 친환경인증관리 정보시스템 사이트를 활용하여 인증 취소여부 재확인
- 병해충 방제를 위해 공동 방제하는 경우 공동방제 수행자의 **사전 공동방제 신고** 및 **공동방제 확인서 제출** 의무화
- 친환경농업단지 내 농약비산 예방을 위한 **친환경농업단지 안내 깃발 설치** 의무화

※ 효율적인 단지운영 및 인증관리를 위해 생산단지별 협의 결정에 따라 농자재 공동구매 비용에 대해서는 단지대표 등에게 일괄 지급 가능

○ 인증단계별 1㏊당 지원한도

(단위 : 천 원)

구 분	유기농	무농약	비 고
벼·특작·기타	1,200	500	'전환기' 인증 농산물은 무농약에 준하여 지급
채소	1,600	1,000	
과수	1,800	1,200	

※ 무농약 벼 5년차 이상은 2022년까지만 지원하고, 2023년부터 지원 중단할 계획임

* 2023년부터는 '유기농 벼' 지원한도를 ㏊당 1,000천원으로 인하할 계획임

○ 사업비 지원에 따른 유의사항

- **시·군**은 유기 및 무농약 실천에 따른 투입 비용 등을 감안하여 **지원한도 내에서 자체 지원기준을 마련하여 품목별로 지원 단가를 차등 적용**하여 지급
- 친환경농업 실천을 위한 공동작업비, 단지대표(생산관리자) 활동비, 컨설팅, 교육(강사비 포함)·홍보비 등으로 집행 가능
- 저비용 친환경농업 실현을 위해 유용미생물 구입비, 토착미생물 자가제조 활용을 위한 플라스틱 용기, 천일염, 설탕 등 구입비 지원 가능

마. 사용가능 농자재

○ 친환경농자재 사용기준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1조(유기농업자재 공시의 기준)에 적합한 자재(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목록공시)
- 공시 등 기관으로부터 약효, 약해 검정을 받아 「품질인증」 제품으로 등록된 유기농업 자재 우선 구매 사용
- 친환경농자재의 검증체계 확립 및 공신력 있는 제품
  - 농가에서 사용한 결과 제품의 우수성이 인정된 농기자재
  - 농촌진흥청, 농업기술원, 대학 등 연구기관에서 실험 검증된 농기자재

※ 도내 농가에서 선호하는 농자재에 대해 실증시범포 운영 등 제품의 특성과 효능에 대한 검증시험 공표(농업기술원)

○ 주요 사용농자재

<병해충 관리용>

- 목초액, 키토산, 산화전위수, 활성수, 현미식초, 천혜녹즙, 한방영양제, 토착미생물 배양체, 유산균, 담배추출물 등

<토양개량 및 생육촉진용>

- 지렁이분변토, 목탄(왕겨탄), 피트모스, 맥반석, 수용성인산, 그린칼슘, 아미노산, 청초액비, 미네랄A,B,C,D, 과일효소, 바로돈, 천연식초 등
- 발효깻묵, 해조류추출물, 쌀겨 등 자가제조 친환경농자재

<친환경 농기자재>

- 과원 및 논두렁 잡초방지용 생분해 논둑시트, 화염방사기 등
- 단지 해충방제를 위한 해충유인 포획기, 유아등, 천적 등
- 기타 연구기관 등에서 친환경농자재로 인정 또는 특허를 받은 포트묘이앙기용 포트, 미생물배양기, 이온수·산소수·미네랄활성수 제조기 등

※ 일반 관행농업에서 사용되는 상토, 육묘상자 등 농기자재는 사용 제외

○ 농자재 가격결정

- 제품별 원가산정(원재료비+제조비+유통마진)에 따른 제품의 적정가격을 제시받아 공개하고, 제품별로 제시된 소비자가격 이내에서 구매 사용
- 소비자 가격이 없는 농자재는 유사제품, 정부 물가정보, 비교견적 등으로 결정
- 농가에서 자가제조·생산 사용하는 검증된 친환경농자재는 동일 농법을 실천하는 단지의 농가별 자재가격 준용
- 농자재 대리점 및 농협에서 적정마진과 수수료를 받도록 지도권장

○ 농자재 구매 시 준수사항

- 농자재는 농법에 따라 단지 참여농가 의견을 수렴하여 선택하되 지역경제 활성화 등 차원에서 도내 생산업체 제품 50% 이상 사용

※ '유기농 중심의 친환경농업 내실화를 위한 친환경농자재 공급체계 운영방안' 준수

- 단지에서 공동구매시는 제품의 효능과 회사별 가격 등을 비교하여 공개입찰 등 여건을 감안 자율적 선정 구입
- 농자재는 친환경농업단지 또는 농가에서 자재업체와 직접계약을 체결토록 하여 공급 수수료 등 절감

바. 저비용 친환경농법 실천 확대

○ 유용미생물 공급, 토착 미생물 자가 제조 활용 등으로 생산비 절감

○ 단지에 대한 공동방제를 추진할 경우는 공동방제 수행자는 반드시 공동방제 신고서를 사전에 시군에 제출하고, 단지대표(또는 단지대표가 지정한 대리인)가 입회하여 사용 약제(재제)를 샘플을 채취하고 확인하여야 한다.
- 친환경농업단지 운영실태 점검·진단으로 단지별 조직화 및 활성화 추진

○ 단지별 품종단일화 및 실천농법별 육묘에서 재배관리, 농자재 사용 시기(기준) 등에 대한 사전 기술교육으로 친환경농업 실천체계 정립
- 친환경농업인단체, 전문가와 연계 선진지 견학, 자문 등을 통해 부실 최소화

사. 홍보 및 판로대책 추진

○ 단지별 지역농협, 대규모 전문유통업체, RPC(미곡종합처리장), 대량소비처, 학교급식업체 등과 계약재배로 고정 소비처 확보를 통한 안정적 판로 대책 마련
- 대도시 백화점, 할인마트, 전문매장 등과 약정을 통한 고정납품

○ 개별농가 단위로 판매망을 확보할 농가는 생산제품의 상품가치를 높여 대도시 소비자와 직거래 등 판매대책 적극 강구
- 그린투어리즘과 연계 대도시 소비자 초청 체험기회 제공 등

○ 친환경농산물 품질보증 등 가격 차별화로 부가가치 제고
- 생산지, 생산자, 상품특성 등 생산이력추적관리제 등록으로 소비자 신뢰확보
- 생산, 수집, 선별, 포장, 출하 등 품질관리를 위한 공동작업 추진

○ 무농약 이상 인증쌀 택배비 우선지원 및 각종 지원사업 인센티브 부여

5. 행정사항

가. 사업계획서 제출 : 2022. 3. 31.까지(보고서식)

○ 단지조성(협약체결) 현황, 공동영농단 결성, 책임운영모델구축 등

나. 사업비 집행

○ 농가별 사업추진 여부를 수시점검 확인하고, 친환경농업을 성실하게 실천하여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가에게 사업완료 즉시 인증단계별 사업비 집행

○ 친환경장려금 형태의 직불금 지급 시 친환경농산물 인증서 확인 후 집행가능

다. 사업추진 결과 및 정산보고 : 2023. 2. 28.까지

○ 시장·군수는 사업지침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규정을 준수하여 사업비 집행 및 정산

[보고 서식]

1. 사업계획서 : 2022. 3. 31.까지 제출

○ 단지 현황

단 지 명	주재배 작목	면 적 (ha)	재배 농법	단지대표		참여 농가 (호)	인증단계
				성 명	전 화		
계							

○ 개별농가 현황

농 가 명	주 소	주재배 작목	면 적 (ha)	재배 농법	인증단계
계					

○ 공동영농단 결성

단지명	대표자	참여 농가 (호)	면적 (ha)	보유농기계 수					
				계	트랙터	이앙기	방제기	콤바인	기타
계									

○ 책임운영모델 구축

단 지 명	운영주체	인증계획(ha)			참 여 농가수	협약내용
		계	유기	무농약		

※ 협약내용 : 벼 수매, 단가계약 사항 등을 기재

2. 사업비 정산 : 2023. 2. 28.까지

구분	사업량(ha)			집행액(원)			도비집행 잔액(원)
	계	유기	무농약	계	도비	시군비	
계							
벼							
채소							
과수							
식량							
임산물							
특작							
기타							

[서식 1]

친환경농업단지 공동방제 신고서

공동방제 수행자	법인명(상호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소재지			
	대 표 자		전화번호	

공동방제 예정사항	단 지 명			단지 대표 (연락처)	( )	
	공동방제 면적 (㎡)			방제 예정일		
	공동방제에 사용할 자재	제품명 (자재원료)	공시번호	사용예정량		기 타
				규격	개수	

위와 같이 친환경농업단지 공동방제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2022년 월 일

공동방제 수행자 : (서명 또는 인)

공동방제 요청자 : (서명 또는 인)

00 시장·군수 귀하

유 의 사 항

1. 신고된 내용의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사항을 방제 전 관할 시·군에 제출합니다.
2. 공동방제에 사용할 자재는 개봉하지 않은 상태로 운반하여 방제현장에서 단지 대표(인증농가 등) 입회하에 개봉하여 혼합 살포합니다.

[서식 2]

친환경농업단지 공동방제 확인서

공동방제 수행자	법인명(상호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소재지			
	대 표 자		전화번호	

공동방제 내 용	단 지 명			단지 대표		
	공동방제 면적	㎡		방 제 일		
	공동방제에 사용된 자재의 명칭(공시번호) 및 사용량	제품명 (자재원료)	공시번호	사 용 량		기 타
				규격	개수	
	합성농약 등 허용물질 이외의 물질 혼합 여부 [ ]혼합함【 해당물질 및 사용량 작성란 】 [ ]혼합하지 않음 ※ 혼합으로 표시(√)한 경우 해당물질 및 사용량 기재					

위와 같이 친환경농산물 재배지에 공동방제를 실시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22년 월 일

공동방제 수행자 : (서명 또는 인)

공동방제 요청자 : (서명 또는 인)

00 시장·군수 귀하

첨부서류	1. 유기농업자재 구매 영수증 2. 공동방제 대상 재배지 세부내역 3. 사용한 자재 사진자료 4. 공동방제 사진

유의사항

1. 위 자료는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제공되어 인증심사 자료로 사용되며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재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도록 도와준 경우「친환경농어업법」제60조에 따른 벌칙이 적용됩니다.

2. 유기농업자재에 허용물질이 아닌 물질을 섞어 넣은 경우「친환경농어업법」제60조에 따른 벌칙이 적용됩니다.

3. 주성분, 함량, 등 유기농업자재의 표시사항이 표기되어 있지 않은 자재, 제품 출고 이후 다른 물질이 혼합된 자재는 사용하지 않아야 하며, 사용 전 공동방제 입회자(생산자 대표, 생산관리자 등)의 확인을 받아 현장에서 개봉하고 입회자는 이를 확인하고 서명합니다.

[별표 1]

친환경농업 실천 협약서(안)

○ ○ 시장·군수
○ ○ 단지(작목반)

환경 친화적인 영농을 실천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농업을 가능하게 하고, 국민에게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 시장·군수를 “갑”이라 하고 ○○○단지·작목반을 “을”이라 하여 다음과 같이 약정을 체결한다.

Ⅰ. 약정기한 : 년 월 일부터 사업종료 시까지

Ⅱ. 약정내용

제1조(구성원의 자격) ① “을”의 구성원은 친환경농업단지 참여농가로 한다.
② 단지대표는 본 단지(작목반)를 대표하며, 동 단지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신청, 이행 여부의 점검, 교육 등 마을의 제반사항을 총괄하며, 친환경농업단지조성사업과 관련된 “갑”의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2조(책임과 의무) ① “을”의 각 구성원은 “갑”이 제시하는 친환경적 영농실천 등 다음 각 호의 의무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친환경적인 영농실천
   가. 화학비료와 유기합성농약은 친환경농산물 단계별 인증기준에 맞춰 사용하여야 한다.
   나. 친환경농업 관련 농업인 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 농업경영, 농업자재의 사용현황 등 영농상황을 기장(영농기장 실천)하여야 한다.
2. 친환경적 영농 실천
   가. 토양개량제(규산, 석회, 볏짚 등)를 사용하여 지력을 높인다.
   나. 겨울철 녹비작물 재배를 통한 친환경농업에 적극 참여한다.
   다. 폐비닐, 농약병 등의 농업환경 오염물질 수거 및 처리
   라. 미생물 자가 제조 활용을 통해 저비용 농업을 실천한다.

② 사업추진과정에 반드시 친환경농업을 실천하여 가급적 단지별(작목반별)로 인증을 받아야 한다.

③ 단지대표는 구성원 개개인이 각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고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을”의 각 구성원은 단지대표와 합심하여 의무이행사항을 준수하고 의무이행여부 점검에 적극 동참·협조하여야 한다.

⑤ 의무이행사항을 위반하였거나, 친환경인증을 받지 못할 시에는 당해년도 보조금 지원 중단 및 금후 3년간 지원대상에서 제외시킬 수 있다.

위 협약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고 “갑”과 “을”이 서명 날인하여 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갑” 시 장 · 군 수 : 인
“을” 단지대표 성명 : 인
운영위원 성명 : 인
운영위원 성명 : 인
운영위원 성명 : 인

Ⅲ. 협약대상농지 및 구성원 현황

연번	읍·면	리·동	성 명	연령	면적(㎡)	서명(인)
계						

* 본 표는 마을대표 및 운영위원을 포함하여 작성
* 단지별로 협약대상 농지에 대하여 필지별로 조서 작성

[별표 2]

친환경농업 공동영농단 결성 및 운영규약(안)

제1조(목적) 이 규약은 친환경농업단지의 영농과정에서 노동력이 많이 들고 공동 작업이 효과적인 논갈이, 모내기, 논두렁 조성, 논두렁 풀베기, 농자재 살포, 수확 등 농작업 지원을 위하여 공동영농단 결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동영농단 결성) ① 공동영농단은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마을 및 단지 또는 작목반단위로 결성한다.

② 공동영농단은 대형 농기계를 보유하고 있는 농가와 농기계 조작능력이 있는 젊은 농가 등을 중심으로 지역실정에 따라 3~10명 내외의 인원으로 결성한다.

제3조(명칭 및 대표 선정) ① 본 공동영농단은 "○○친환경농업공동영농단"이라고 칭한다.

② 공동영농단에는 단원들이 협의를 통해 대표 1인과 총무 1인을 선임한다.

③ 단지대표는 공동영농단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관장하며, 총무는 단지대표를 보좌하여 공동영농단을 성실하게 운영한다.

제4조(운영) ① 본 공동영농단은 친환경농업단지 및 작목반 등의 농작업을 공동으로 지원한다.

② 친환경농업 실천과정에서 노동력이 많이 들고 공동작업이 필요한 농작업은 공동작업이 되도록 지원한다.

③ 친환경농업단지 및 작목반 등의 참여농가들이 공동작업을 요청하는 경우 지원한다.

제5조(공동작업비용 산정 및 청구) ① 공동영농단의 공동작업 비용은 인건비, 농기계 이용료, 작업량 등을 감안하고, 지역 내의 통상적인 인건비 등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② 공동작업 비용은 친환경농업단지 및 작목반 대표 또는 개별농가 등 사업주체에게 청구한다.

제6조(유권해석) 본 규약의 유권해석과 규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단원들이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약은 공동영농단이 구성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동영농단 구성현황)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보유 농기계	서명(인)	비고
계					

※ 본 규약은 준칙이므로 시군 실정 및 공동영농단 단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운영에 따른 필요사항을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명시하여 활용

[별표 3]

친환경농업단지 책임운영 및 의무이행 협약서(안)

"친환경농업 ○○단지"를 추진함에 있어 사업주체(농협, 작목반, 농업회사법인 등)를 "갑"이라 하고, 단지참여 농가의 대표(○○○)를 "을"이라 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분야) 친환경농업 ○○단지를 시행함에 있어 생산에서 판매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인 일련의 과정으로 단지조성은 아래와 같이 한다.

1. 재배작물은 ○○으로 한다.
2. 사업대상 면적은 ○○ha, 참여 농가수는 ○○명으로 한다.
   (개별 참여농가 내역 별첨)
3. 품종은 ○○이며, 실천농법은 ○○으로 한다.
4. 사업비는 ○○원(국비 ○○, 도비 ○○, 시군비 ○○, 자부담 ○○) 으로 한다.

제2조(세부계약사항)

① 소요농자재 공급

1. 친환경농법 실천에 따른 농자재는 ○○ 등 ○종류이며, 소요량은 ○○으로 한다.
2. 소요농자재 공급은 "갑"책임하에 "을"의 협조를 받아 영농기 이전 적기에 확보·공급해야 하며, "을"은 검수할 책임이 있다.

② 영농기술지도

1. "갑"은 "을"과 협력하여 단지 참여농가가 파종할 종자선택, 종자확보, 파종시기, 파종면적, 파종방법 등에 대한 사항을 사전에 확정하여야 한다.
2. "갑"은 "을"의 친환경농산물 생산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상품화 할 수 있도록 기술보급, 공동작업 등 단계별 영농의 총괄관리와 브랜드 등 상품화를 유도한다.
3. "을"은 "갑"의 지도 및 협력하에 단지 참여농가를 대상으로 친환경농산물 생산에 있어 품질관리기준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하는 등 농가 이행사항을 책임 지도해야 한다.

③ 친환경농산물 인증

1. “갑”은 단지 참여농가가 영농기록을 주기적으로 기장할 수 있도록 지도하며, 인증신청 및 인증획득을 책임지고 지도한다.
2. “을”은 “갑”의 지도하에 참여농가의 영농기록, 인증신청 및 획득과정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 작성해야 한다.
3. 인증에 따른 비용부담은 “을”이 한다.(참여농가 부담)

④ 판로확보

1. “갑”과 “을”은 친환경농산물 생산과 수매의 주체로서 신의의 원칙에 입각하여 계약내용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2. “을“은 ”갑“과 정한 친환경농산물 생산에 있어서 성실영농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당 ○톤 기준)
3. “갑”은 생산된 물량의 수매와 판로확보를 책임감 있게 추진해야 하며, “을”은 “갑”의 승낙없이 생산된 물량을 타인에게 판매해서는 안되며, “갑”과 공동으로 판로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4. 수매(판매)가격은 ○월 ○일 기준 시중형성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조곡 40㎏당 무농약 ○○원, 유기농 ○○원으로 한다.
5. 수매시기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하되, 수확시기로부터 ○월 이내에 실시하는 것으로 하며, 수매규격 및 수매요령은 정부공공비축수매 기준 등을 참고하여 결정한다.

제3조(협의회 운영)

① “갑”과 “을”은 협의회를 만들어 생산에서 판매까지 수시로 협의회를 개최하여 상호 협력 하에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협의회의 성격상 중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양측의 요청으로 시군 관계공무원이 입회할 수 있다.

제4조(보조금 지급시기 및 방법)

① “을”은 “갑”이 제2조 세부계약내용의 책임과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것을 확인한 후 보조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한다.(보조금 지급 위임장 제출 등)

②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갑”과 “을”은 서로 협력하여 농가 자부담분을 우선 집행하도록 하고, 보조금 지급은 매년 12월 이내로 하며, 협약서 내용의 충족 여부를 감안하여 중간지급도 할 수 있다.

③ 농가 자부담과 보조금 지급은 “갑”이 신고한 은행의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한다.

제5조(유권해석)

① 이 협약에 대하여 유권해석과 협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한 결정은 관례에 따른다.

② 법적인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을"이 속한 법원에서 관할·조정한다.

제6조(기타) 이 협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협약서 3부를 작성하여 날인 후 "갑"과 "을", 그리고 해당 시군에서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본 협약서는 ○○년 ○월 ○일부터 효력이 발생된다.

년 월 일

"갑"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 (생년월일 :)
연락처(휴대전화 또는 일반전화) :

"을" 주 소 :
성 명 : ㊞ (생년월일 :)
연락처(휴대전화 또는 일반전화) :

※ 본 협약서는 표준안이므로 사업주체와 단지대표 및 참여농가의 의견에 의거 변경이 가능함

[별표 4]

道내 생산업체 친환경농자재 사용내역

○ 사 업 명 :

○ 사업비 정산내역(작물명 : , 인증단계 : , 인증면적 : ha)

구입처 내역			친환경농자재 사용내역					비 고
업체명	주소	대표자	사용 자재명	규격	단가 (원)	구입량	구입액 (원)	

※ 단지별 또는 농가별 단위로 작성

붙임 : 증빙자료(영수증 등) 1부. 끝.

위와 같이 道내 생산업체 친환경농자재 사용내역을 제출합니다.

. . .

주 소 :

단지대표(농가명) :

시장·군수 귀하

11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1. 사업개요

가. 목 적

○ 일반농가와 비교해 친환경농가의 초기 소득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를 보전하여 친환경농업 확산에 기여

나. 사업내용

○ 인증단계, 농지유형에 따라 면적에 비례하여 지급(국비 100%)

다. 지원 자격 및 요건

○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고 지자체 및 인증기관의 이행점검 결과 인증이 유효한 것으로 통보받은 자

라. 지원내용 및 예산

○ 지급단가

구분		유기	무농약	유기지속
논		700천원/ha	500천원/ha	350천원/ha
밭	과수	1,400천원/ha	1,200천원/ha	700천원/ha
	기타	1,300천원/ha	1,100천원/ha	650천원/ha

○ 지급한도: 0.1～5.0ha/농가

○ 지급기한: 유기 5년(무농약 3 + 유기 2), 무농약 3년

○ ’22년 예산 : 22,832백만원(국비 22,832)

마. 사업 신청

○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

바. 대상자 선정

○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고 직불금 사업 기간(전년 11월～당년 10월) 중 친환경농업을 충실히 이행*한 농업인

* ①시·군·구에서 신청자의 농업경영체 등록 여부, 지급한도 초과 여부 등을 확인하고, ②인증기관에서 인증기준 준수 여부, 인증 변동사항 확인, 위반 의심농가에 대한 현장점검

2. 주요내용

가. 사업대상자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농업인으로서 신청일 현재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친환경농어업법"이라 한다)」 제19조,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유기·무농약 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임업인 및 법인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임업인 및 법인

나. 지원자격 및 요건

○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고 인증기관의 이행점검 결과 인증이 유효한 것으로 통보받은 자

다. 지원대상

○ 지원대상 농산물: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친환경농산물" 일체

○ 지원대상 농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 2022년도 사업기간('21.11.1.~'22.10.31.) 중 친환경농업을 충실히 이행하고 인증기관의 이행점검 결과 적격으로 통보받은 농지등

- 사업기간 중 친환경농어업법 제24조에 따라 친환경농산물 인증이 취소된 농지등과 인증이 유효함에도 불구하고 아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지급대상에서 제외

• 토양이 아닌 인공적으로 조성된 배지(培地)나 재배용기·장치 등에서 생산하는 수경·양액재배, 버섯재배, 또는 이에 준하는 재배에 이용되는 농지등(다만, 토양을 관리하면서 종균을 나무에 접종하여 버섯을 재배하는데 이용되는 농지등은 지급대상에 포함한다)
• 산림 등 자연 상태에서 자생하는 식물(식재 후 상당 기간이 경과 되어 외관 상 자생하는 것과 같은 상태를 유지하는 식물을 포함함)을 굴취· 채취하는데 이용되는 농지등
• 정상적인 경작 및 관리 흔적이 없는 농지등, 인증 품목이 아닌 수목, 풀 등과 혼재되어 외관상 작물재배지로 식별할 수 없는 농지등
• 인증면적을 초과하는 농지등

라.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의 초기 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에 대한 일부 지원

마. 지원형태 및 사업범위

○ 자금재원 : 농업·농촌공익기능증진직접지불기금

○ 지원형태 : 지자체 보조(시장·군수·자치구청장), 국고 100%

○ 지급단가 (단위 : 천원/ha)

인증단계	논	밭	
		과수	채소·특작·기타
유기	700	1,400	1,300
무농약	500	1,200	1,100
유기지속	350	700	650

* 기본형직불제에서 논으로 지원받은 대상 농지는 친환경직불도 논단가로 지급. 그 외 농지는 농지의 이용에 따라 구분하여 지급

바.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농가(경영체)당 지급한도 면적 : 0.1~5.0ha

- 생산자단체가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 각 구성원의 신청 면적 합이 5ha를 초과할 수 있음. 이 때 각 구성원의 지급한도는 5ha를 초과할 수 없음

* 예시) 법인에 소속된 개별 생산자 A(7ha), B(6ha), C(4ha)의 경우 법인 대표가 14ha를 신청, A, B, C는 각각 5ha, 5ha, 4ha에 대한 직접지불금 수령

○ 지급 기간 및 방법 : 친환경농산물을 계속하여 생산하는 경우 최초 지급 연도로부터 필지별로 3~5년간만 지급(불연속인 경우 3~5회만 지급)

* '10년까지 이미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을 3회 수령한 필지는 유기 5회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며, 유기지속직접지불금은 수령 가능

- 같은 필지가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인증단계(유기·무농약)를 달리하는 경우에도 총 3년(3회) 지급, 유기인증의 경우에는 추가 2년(2회) 지급

* 최초 인증필지(유기·무농약 인증 종류 무관) 3년(3회) + 유기는 추가 2년(2회) 지급

- 신청기간 이후(당해년도 사업기간 중)에 인증종류가 변경된 경우(무농약→유기 또는 유기→무농약)에는 변경된 인증 지급단가로 직접지불금 지급

* 이행점검 종료일(10.31.)을 기준으로 함

- 유기지속직불금은 유기농산물을 생산하여 직접지불금을 최장 5년(5회)간 지급 받은 필지에 대해 유기직불금의 50%를 기한 없이 지속 지급

3. 사업 신청 및 선정

가. 사업 홍보 및 신청

[사업시행지침]		[홈페이지]		[지자체]
사업 추진방향 통보	→	사업신청 홍보	→	사업신청
농식품부(12월～익년1월)		사업시행기관(1～3월)		농업인 등(3월～)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재정투입계획, 지급요건 및 사업추진 절차 등을 반영한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사업시행지침을 수립하여 시·도 및 농관원, 인증기관 등에 시달('21. 12.～'22. 1.)

○ 시장, 군수, 자치구청장 등은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사업시행지침을 농업인 등이 알기 쉽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22. 1～3월)

- 지자체 홈페이지 안내, 게시판 공고(시·군·구, 읍·면·동), 반상회보 게재 등

  * 사업신청 후 사업대상자, 인증기관, 인증종류, 농지현황 등이 변경된 경우, 사업신청 변경신고서[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신청기관(읍·면·동)에 제출하도록 하고, 사업기간 중 인증 종료 예정인 농업인에게는 인증이 종료되기 전에 인증이 갱신되어야 한다는 내용을 반드시 공지

1) 사업신청

○ (개인)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신청서 및 첨부서류(필요시)를 갖추어 관할 읍·면·동에 신청서 제출

* 신청서류: ①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② 친환경농산물인증서(친환경인증정보시스템 조회로 대체 가능)

○ (생산자단체) 단체인증을 받은 생산자단체의 경우 구성원의 신청내역을 종합하여 단체 명의로 공동 신청 가능

* 신청서류 : ①, ②와 신청인 정보, 입금계좌, 인증종류, 품목, 농지 소재지, 재배면적이 포함된 신청 세부현황

2) 사업신청 기간: 3. 1.~4. 30.(전산입력 기간: 3. 1.~5. 10.)

3) 사업신청 장소: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

○ 신청 농지가 동일 시·군·구 내의 2개 이상 읍・면・동에 있는 경우에는 면적이 가장 넓은 농지 소재지 읍·면·동에 신청서 제출

* 신청 농지가 시·군·구를 달리하는 경우 각각의 농지 소재지 읍·면·동에 신청서 제출
* 전년도 10월 이전 신규 인증을 받은 필지는 금년도 사업 신청이 가능하며 금년도 중 반드시 인증갱신을 통해 사업기간 동안 인증기관의 관리가 지속되어야 함

나. 사업 선정 및 이행 단계

1) 사업대상자 선정

○ 시장·군수 등은 농업인이 제출한 신청서류 및 구비서류 등을 검토한 후, 사업대상자를 선정하고 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5.10. 까지)

- 신청 자격, 논·밭 구분, 인증단계별 지급단가, 농가당 지급면적 한도, 지급횟수 초과여부 등을 검토하여 부적격자 제외 및 지원단가 조정

  * 읍·면·동 담당자는 인증기관의 장이 교부한 친환경농산물인증서를 참고하여 인증기간, 인증필지·면적 등을 반드시 확인

2) 사업 선정내용 변경

○ 변경대상

- (사업대상자)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농업인의 사망, 농지의 매도·임대차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증 지위 일체를 타인에게 승계한 경우

  * 인증기관에 인증 지위 승계 사실을 신고하여 승계가 승인된 경우에 한하며, 직접지불금은 사업기간내에 승계를 받은 농업인에게 지급

  ** 인증사업을 승계 받은 농업인은 직접지불금 이행점검만료일(10.31.)까지 인증정보 변경과 농업경영정보 등록을 완료하여야 함.

- (인증기관) 사업 신청 후 인증기관을 달리하여 인증을 취득한 경우
- (인증종류) 사업 신청 후 인증종류(유기·무농약)가 변경된 경우
- (농지현황) 신청 농지의 주소(지번) 변경, 필지 수 및 면적 감소 등의 사유로 인증서 상의 농지 현황이 변경된 경우

  * 인증대상자, 인증기관 등 인증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기존의 인증 유효기간과 변경된 인증서 상의 유효기간이 지속되어야 함

○ 변경신청 기간: 변경 및 승계 승인일로부터 30일 이내

○ 변경신청 방법: 해당 시·군·구청장(읍·면·동)에게 인증기관에서 교부한 변경된 인증서 사본을 첨부하여 사업대상자 변경신고서[별지 제3호 서식]를 제출

- 변경신청을 받은 시·군·구청장은 AgriX 운영기관(1588-6830)에 변경기능 허용 요청 후 자료 입력(AgriX 운영기관은 시·군·구의 요청 시 즉시 조치할 것)

2) 사업량 배정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시도별 사업대상자 선정 결과를 종합하여 사업량 배정(농림축산식품부 → 시·도, 5. 20.까지)

3) 사업대상자 선정 결과 통보

○ 사업대상자 선정 결과를 농업인에게 통보(시·군·구 → 신청인, 5. 31.까지)

- 시·군·구에서는 배정된 사업량에 따라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을 신청한 농업인에게 사업대상자 선정 여부를 통지[별지 제2호 서식]

  * 단, 이행점검 결과 등에 따라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반드시 고지

4) 이행점검 단계

○ 시·군·구 및 인증기관에서는 친환경농업직접지불 사업 대상자가「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제11조와 제54조 인증기준에 따른 친환경농업 이행 여부 및 인증 변동사항 유무 등을 확인

○ 기관별 점검 사항

- (인증기관) 인증정보의 유효성 전산 검증

  * 인증정보(인증번호, 인증사업자, 인증면적 및 필지 등과 직접지불금 신청정보를 비교하여 일치 여부를 지자체에 전송

- (시·군·구) 농업경영체 등록 및 지급한도(면적·횟수) 초과 여부, 중복신청 등

  * 인증기관이 전송한 정보를 최종적으로 확인, 인증기준 위반 의심 농가는 현장점검 의뢰

○ 이행점검 요청(시·군·구 → 인증기관)

- 시·군·구에서는 친환경농업직접지불 사업대상자의 신청정보에 대해 인증기관 전산검증 요청(5.21. 까지) / 신청정보 변경시 수시 요청

  * 전산(Agrix) 운영기관(1588-6830)에서 수정 권한 부여 후 이행점검기간 중 입력 가능

○ 이행점검 기간: 5. 21.~10. 31.

- (시·군·구) 인증기관에서 회신한 전산검증 결과 확인 후 조치

- (인증기관) 인증기준 위반이 의심되는 농가 발생 시 생산과정조사 등 추진(실경작자 의심 등 중요 불일치 사항은 농관원과 협조하여 추진)

○ 이행점검 결과 통보(인증기관 → 시·군·구)

- 인증기관에서는 인증의 유효성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시·군·구에 통보(정기/수시, 10.31. 까지)

- 필요시 현장 확인을 통하여 인증번호, 인증종류, 인증면적과 신청면적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전산(Agrix)으로 입력(통보)

4. 사업 시행 및 관리

가. 교부결정 및 사업시행단계

[온·오프라인]		[e-나라도움]		[온·오프라인]
사업대상자 확정	→	교부신청 및 교결정검	→	사업시행 집행점검
사업시행기관(~11.10.)		농식품부, 사업시행기관(11월)		사업시행기관(11~12월)

○ 농식품부는 시·도가 보조금 교부를 신청할 경우 교부 결정 후 해당 시·도에 예산 교부

1) 사업대상자 확정 및 사업비 요청

○ 시·군·구청장은 인증기관의 이행점검 결과를 참조하여 전산시스템(Agrix) 이행점검을 마감하고 최종 지급대상자를 확정

- 인증 취소, 인증기간 종료, 신청 포기, 면적 불일치 등 부적격자(필지) 제외

○ 사업비(직불금) 지급대상자 확정 후 지자체별로 지급소요액을 농림축산식품부에 요청(11. 10.까지)

- 지급소요액 확정시 전산시스템(Agrix)을 마감한 금액*을 반영

* 전산시스템(Agrix) 통계/보고서 별지7호 서식(종류별 10원미만 절사) 활용

2) 사업비 배정 및 직불금 지급

○ 농림축산식품부는 각 시도별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 소요예산액 교부(11월)

○ 각 시·도(시·군·구)는 친환경농업인에게 보조금 지급(11~12월)

나. 정산 및 사후관리단계

[e-나라도움]		[e-나라도움]		[e-나라도움]
정산/실적보고서 제출	→	정산/실적보고서 확정	→	사후관리
사업시행기관		농식품부, 사업시행기관		사업시행기관

○ 시도 및 시·군·구는 사업이 완료된 회계연도가 끝나고 2개월 이내 e나라도움에 정산/실적보고서를 등록

○ 농식품부는 사업시행기관의 정산보고서 접수 및 보조금의 확정

○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 신청자가「친환경농어업법」제24조에 따라 인증이 취소되거나 인증을 자진 포기하는 등 인증품 생산을 중단한 경우에는 직불금을 지급하지 않음

- 보조금 지급 후에도 당해 사업기간 내(전년 11.1.~10.31.) 인증취소, 인증종료, 인증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직불금 회수 조치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및 인증기관에서는 이행점검 종료(10.31.) 후에도 당해연도 말(12.31.)까지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대상농가에 대한 인증 취소 등 행정처분 여부를 해당 시·군·구에 통보

○ 농업인 등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을 받은 것으로 판명된 경우에는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26조에 따라 직불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그 사유가 발생한 기간 동안 이미 지급한 직불금은 회수 조치하고, 해당 농업인은 향후 3년간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사업 선정을 제한

○ 각 시·도지사는 친환경농업직접지불 보조금 부당수령자 현황 및 부당수령금 환수실적을 보고하고 회수 조치된 직불금은 국고(공익증진직불기금) 세입금으로 반납 조치

* 환수절차: 반납고지서 발급(시·군·구) → 농업인 등 반납 → 시·군·구 계좌 → 시·도 계좌 → 공익증진직불기금회계 반납계좌(농협 301-0286-2705-71)로 반납

[별표]

사업 추진 체계

< 세부계획 >	< 시기 >	< 주요내용 >
① 지침시달 및 홍보	('21.12.~'22.1.)	·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사업시행지침 시달 · 사업지침 설명, 공고·홍보(시·군·구, 읍·면·동)
② 사업신청	(3. 1.~4. 30.)	·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 신청(농지소재지 읍·면·동)
③ 사업대상자선정 및 결과보고	(4. 30.~5. 10.)	· 사업대상자 선정(시·군·구, 4. 30.) · 선정결과 보고(시·도 → 농식품부, 5. 10.)
④ 사업량 배정통보	(5. 11.~5. 20.)	· 시·도별 사업량 배정 통보(농식품부, 5. 20.) · 사업대상자 선정 결과 농업인 통보 (시·군·구 → 신청인, 5. 31.까지)
⑤ 이행점검	(5. 21.~10. 31.)	· 지자체에서 인증기관에 이행점검 요청 (시·군·구 담당자, 5. 21.까지) · 이행여부 확인결과에 따른 확인·수정 후 이행점검 재차 요청(읍면동 담당자) · 인증기관에서 이행점검 결과 통보(인증기관 → 시·군·구, 10. 31.까지)
⑥ 사업대상자 확정 및 소요예산 신청	(11. 1.~11. 10.)	· 부적격대상자 검토 후 이행마감 조치를 통한 소요액 신청(시·도 → 농식품부, 11. 10.까지)
⑦ 직불금 지급	(11. 15.~11. 30.)	· 소요예산액 교부(농식품부 → 시·도, 11월) · 보조금 지급(시·군·구 → 농업인, 11월말)

[별지 제1호 서식]

■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3쪽 중 제1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60일

신청인	성명(법인명)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휴대전화)
입금 계좌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구분	인증 종류	품 목		농 지 소 재 지				재배 면적 (㎡)	기본직접지불금 대상여부 (O,X)	과거 지급 현황 (횟수)
		대분류	소분류	시·군·구	읍·면	리·동	지번			
논										
밭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선정하여 줄 것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확인	읍장·면장·동장

첨부서류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른 친환경농산물인증서 사본 1부	수수료 없음
제출 및 처리기관	농지 소재지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작 성 방 법

1. 문자는 흑색을 사용하여 한글로 명확히 적어야 합니다.
2.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란에 개인은 생년월일을 법인은 법인등록번호를 적어야 합니다.
3. "주소"란에는 주소를 시·도, 시·군·구, 읍(면)·리(동) 및 번지까지 적어야 합니다.
4. "계좌번호"란에는 반드시 신청인의 계좌번호를 적어야 합니다.
5. "인증종류"란에는 유기, 무농약 중 하나를 적습니다.
6. "품목"란에 대분류에는 곡류, 채소, 과수 기타 중 하나를 적고, 소분류에는 실제 경작 품목명을 적습니다.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신청서 접수	→	대상자 선정/통보	→	이행점검	→	지급대상자 확정	→	친환경농업 직접지불금 지급
신청인		농지 소재지 관할 읍·면·동장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농지 등 소재지 관할 읍·면·동장)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행정정보 공동이용 등에 대한 동의

신청인은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 담당 직원이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요건 및 신청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담당 직원 확인사항 중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친환경농산물 인증정보,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직접지불금 지급 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담당 직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 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농업경영정보시스템을 통하여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활용 동의

1. 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농림축산식품부의 맞춤형 농정지원, 농정안내 서비스, 지방농정 지원, 농업·농촌 사회 안정망 지원, 전업농 등 육성·지원, 농산물의 안전생산 및 유통관리, 융자·보조금 등의 관리 등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 등을 위한 기초자료로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동의 [ ] 거부
2. 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농림축산식품부·농촌진흥청 및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 공공기관, 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농업경영체정보의 등록·변경등록, 공익직접지불금 등 농업보조금 정보, 그 밖의 농정안내 정보를 문자메시지 또는 우편으로 받아보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동의 [ ] 거부
3. 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직접지불금 등의 지급대상자 **신청, 등록(선정) 심사, 공개, 보조금의 부정·중복 지원 방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등록정보의 확인,**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본법」 제10조에 따른 **농지은행사업 등을 위해 제공·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동의 [ ] 거부

※ 위의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활용 동의는 **농업경영체 등록이 말소되는 날까지 유효**하며(등록정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하 같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지방자치단체 및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등록 말소 후에도 보조금 등 수령 정보 관리 등을 위하여 위의 개인정보를 보유·이용할 수 있습니다.

※ **위의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활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융자·보조금의 지원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 세부현황

신청인 이름	생년 월일	농업 경영체 등록번호	구분	인증 종류	품목	농지 소재지				재배 면적 (㎡)	계좌 번호
						시·군 ·구	읍· 면	리· 동	지 번		
			논								
			밭								

[별지 제2호 서식]

■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 통지서**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선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인적사항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2. 지급대상 농지

구분	인증 종류	실제경작 품목	농지 소재지				지급대상 면적(㎡)	기본직접지불금 대상여부 (O,X)	예상 금액 (원)
			시·군·구	읍·면	리·동	지번			
논									
밭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 예상액 합계									

※ 1ha=10,000㎡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3호 서식]

(앞쪽)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 사업신청 변경신고서

①신청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대표자명		경영체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②신청 변경사항 : ( )사업대상자, ( )인증기관, ( )인증종류, ( )농지현황

구분		당초	변경	변경일자
사업대상자	성 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인증기관	인증기관			
	인증번호			
인증종류	인증종류			
	인증번호			
농지현황	농지 주소			
	농지 면적			

* 사업대상자, 인증기관 등 변경에 따른 신청 농지 변경내용은 별지로 작성 가능

③입금계좌	은행명 :	예금주 :	계좌번호 :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 신청내용(사업대상자, 인증기관, 인증종류, 농지현황)이 변경되었음을 신고하며,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과 같이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과 같이 상기 고유식별번호(생년월일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과 같이 상기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 귀하

※ 구비서류	수수료
1. 친환경농산물인증서 사본 1부. 2. 사업대상자 승계 관련 서류(사업대상자 변경에 한함)	없 음

(뒤쪽)

작 성 방 법

① 신청인: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 변경 신청인(법인 포함)의 인적사항을 기재

* 법인의 경우 법인등록번호 및 대표자의 생년월일 동시 기재

② 신청 변경사항

- 사업대상자: 당초 신청한 농업인의 사망, 농지의 매도·임대차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증 지위 일체를 승계한 경우
- 인증기관: 사업신청 후 인증기관을 달리하여 인증을 취득한 경우
- 인증종류: 사업신청 후 인증종류(유기·무농약)가 변경된 경우
- 농지현황: 신청농지의 주소변경, 필지수, 면적 감소 등의 사유로 인증서상 농지현황이 변경된 경우

③ 입금계좌: 신청내용 변경에 따라 직접지불금을 수령할 농업인의 계좌를 기재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신청서 접수	→	대상자 선정/통보	→	이행점검	→	지급대상자 확정	→	보조금 지급
신청인		읍 · 면 · 동		시 · 군 · 구		시 · 군 · 구 인증기관(농관원)		농식품부 시 · 도		농식품부 시 · 군 · 구

행정정보 공동이용 등에 대한 동의

신청인은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 담당 직원이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 지급대상 자격 및 신청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담당 직원 확인사항 중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친환경농산물 인증정보,「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직접지불금 지급 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담당 직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전자정부법」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농업경영정보시스템을 통하여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활용 동의

1. 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전업농 등 육성·지원, 농림축산식품부의 맞춤형 농업정책 지원, 농업정책 안내 서비스, 지방 농업정책 지원, 농업·농촌 사회 안정망 지원 등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초자료로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동의 [ ] 거부
2. 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직접지불금 등 농업보조금 정보 및 그 밖에 농업정책 안내 정보를 문자메시지로 받아보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동의 [ ] 거부
3. 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 친환경축산물직접지불금, 경관보전직접지불금, 논활용직접지불금 등의 지급대상자 등록 심사, 보조금의 부정·중복 지원 방지,「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본법」에 따른 농지은행사업 등을 위해 제공·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동의 [ ] 거부

※ 위 개인정보 이용 및 제3자 제공·활용 동의는 약정이 종료 또는 해제(해지)되는 날까지 유효하며, 약정 종료 또는 해제(해지) 후에도 보조금 등 수혜 정보 관리 등을 위하여 위 개인정보를 보유·이용할 수 있습니다.

※ 위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활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의 지급,「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융자·보조금의 지원이나 맞춤형 농업정책 지원, 농업정책 안내 서비스 제공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주요 질문 및 답변 사례(Q&A)

1.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 지급단가 산출근거는?

○ 관행농업과 친환경농업의 소득차이를 보전하기 위해 재배 품목별 평균 소득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를 감안하여 지급단가를 산정하였음

2. '12년도에 무농약을 제외한 유기만 지급기간을 연장한 이유는?

○ 무농약 인증의 경우 일반 관행농업과의 소득차를 해소하는 데 약 3년의 소요시간이 걸리는 반면 유기인증은 최소 4~5년 소요됨.

- 유기농가의 소득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를 보전하고, 무농약인증 농가가 유기로 전환하도록 유도하기 위함

3. '12년부터 유기직접지불금 지급기간을 연장하면서 그 대상에 '10년까지 직접지불금을 3회 수령한 농가를 제외한 이유는?

○ 친환경농업이행에 따른 초기 소득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를 지원하는 것이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도의 근본적인 취지임

○ 그러나 '10년까지 직접지불금을 3회 수령한 농가는 4~5년 이상 친환경농업을 이행하여 재배기술이 향상되어, 관행농업에 비해 소득수준이 떨어진다고 보기 어려워 지급기간 연장 대상에서 제외함

4. '15년부터 지속직접지불금을 도입하면서 그 대상을 유기 농가로 한정한 이유는?

○ 공익적 가치가 높은 유기재배 지속실천을 유도하기 위하여 지속직접지불금 지급 대상을 유기재배 실천 농가로 한정하였음

5. 유기지속직접지불금 지급 대상은?

○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 5년 또는 5회(무농약 3회+유기 2회) 지급이 완료된 필지에서 계속해서 유기농산물을 생산하는 필지

○ '10년까지 친환경직접지불금 3회 수령 한 필지에서 유기농산물을 생산하고 있다면 유기지속직접지불금 신청이 가능함

6. 산양삼, 밤, 잣 등 임야에서 재배하는 품목도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 지급대상에 해당되는지?

○ 임야 필지의 경우「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에 따라 임업경영체 등록*을 필한 필지에서 임산물 재배하는 경우에 한해서 직불금을 지급함

* 농어업경영체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

7. 친환경인증 필지가 여러 시.군에 걸쳐있는 경우 어디에 직접지불금을 신청해야 하는지?

○ 신청농지가 시・군・구를 달리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농지 소재지 읍・면・동에 직접지불금을 신청해야 함

- 다만 신청농지가 같은 시・군・구 내의 2개 이상 읍・면・동에 있는 경우 인증농지 합계 면적이 가장 넓은 소재지의 읍・면・동에 신청서 제출

8. 농가당 지급한도 면적이 5ha인 이유는?

○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이 대규모 농가에 집중되는 문제를 방지하는 등 수급자간 형평성을 유지하고, 재정 여건 하에서 친환경농업을 이행하는 대다수 농업인에게 직접지불금을 지원하여 친환경농업을 지속적으로 유지·확산하도록 지급면적 상한을 정해 운영하고 있음

- 지급 상한이 없을 경우 밤, 잣 등 임야에서 재배하는 친환경 인증농가의 경우 직접지불금을 과다하게 지급받을 수 있으며, 다른 품목의 경우에도 직접지불금을 더 받기 위해 무리하게 인증면적을 늘려 부실인증의 우려가 있음

* 경영주와 배우자(경영주 외 농업인 등록)가 별도로 인증을 받고, 각각 직접지불금 신청하더라도 경영체당 5ha를 초과할 수 없음

9. 기본형직불제 등 타 직접지불금과 중복 수령이 가능한가?

○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은 기본형직불제와 중복 수령이 가능하나 경영이양직불금과는 중복지급 불가함

10. 농외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사람도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을 신청하고 지급받을 수 있는가?

○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은 친환경농가의 초기 소득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를 보전하는 것으로 친환경인증을 유지하고 있다면 신청 및 지급할 수 있음

11. '22년 3월에 친환경인증을 처음 받은 자가 '22년 친환경농업 직접지불금 신청이 가능한가?

○ 다음 연도 사업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친환경농업직접지불 사업기간(전년 11.1.~10.31.) 안에 친환경 인증을 유지해야 함

13. 사업기간 중 인증단계가 변경되었을 경우 직불금 단가 적용은 어떻게 되는가?

○ 변경된 인증단계의 지급단가로 직접지불금 지급

- 농업인은 읍·면·동 사무소에 인증종류가 변경된 인증서 사본을 첨부하여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 변경신청서를 제출

* (예시) 신청 당시 인증종류 무농약이었으나 당해 10월 유기인증으로 전환하여 변경신청을 한 경우 유기 지급단가로 직접지불금 지급

** (자료입력) 직접지불제 신청 시 무농약으로 Agrix시스템에 입력하고, 향후 변경신청서 등을 통해 유기인증 확인 후 Agrix시스템 수정·지급

14.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를 신청한 대상자가 사업기간 중간에 사망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증사업을 승계 또는 양도 한 경우 상속 또는 양수인에게 직접지불금 지급이 가능한가?

○ 가족 또는 타인에게 인증을 승계한 후 관할 읍·면·동에 사업대상자 변경신고서를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제출한 경우 직접지불금 지급

15. 사업기간 중 인증기간이 종료되었다가 다시 인증을 받은 경우에도 직접지불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가?

○ 친환경농업직불금은 사업기간 동안 인증의 지속성이 성립되어야 하므로 인증기간 안에 인증이 갱신되어야 함

*「친환경농어업법」 제21조(인증의 유효기간 등) 및 시행규칙 제17조(인증의 갱신 등)

16. 친환경직접지불금 지급 완료 후, 친환경인증이 취소, 종료 등 경우에 직접지불금을 환수해야 하는가?

○ 사업 대상자에게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 지급이 완료되었더라도 해당 연도 사업기간 내(전년11~10월) 인증취소, 인증기간 종료, 인증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조금을 회수해야 함

17. 인증농가가 2,000㎡(직불금 수령완료) 외 추가로 500㎡를 인증받고, 직접지불금 신청 시 지급이 가능한가?

○ 지급할 수 없음. 친환경인증직접지불금 지급한도 면적은 0.1ha ~5ha로 지급면적은 0.1ha 이상이어야 함

18. '17년 무농약, '18년 유기, '19년 무농약직접지불금을 지급받은 농가가 '22년 무농약 직접지불금 신청 및 지급 가능한지?

○ 무농약직접지불금 신청할 수 없음.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은 기본적으로 3회 지급이 원칙이므로 '22년도 무농약직불금 신청은 불가함. 다만, 유기에 한해 2회 추가 지급하므로 해당농가가 유기 인증을 취득하고 유기지불금은 신청이 가능함

19. 10.31일까지 인증농가에 대한 인증취소 등의 행정처분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

○ 인증기관은 10.31일까지 인증취소 등의 행정처분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적합으로 회신하고 이후 인증취소 등의 행정처분이 완료되면 그 결과를 해당 시·군·구로 통보함

- 시·군·구에서는 행정처분 결과를 확인하여 보조금 회수 조치 등을 하여야 함

12 유기·무농약 지속 직불제

1. 사업개요

가. 목 적

○ 정부의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지원액의 차액을 유기 지속 직불금으로 지원(6회차부터)하여 유기농업 지속 실천 유도

○ 정부의 무농약 직불금 지원 중단에 따른 자체 지원(4회차 부터)을 통해 친환경농업 지속 실천 유도

나. 지원근거

○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

○ 「전라남도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 제10조

다. 사업계획

(단위 : 천 원)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		
		계	도 비	시·군비
유기·무농약 지속 직불제	18천ha	4,285,000 (100%)	857,000 (20%)	3,428,000 (80%)

2. 2022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가. 사업대상자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농업인으로서 신청일 현재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유기·무농약 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임업인 및 법인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임업인 및 농업법인

나. 지원대상

○ 지원대상 농산물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친환경농산물” 일체

○ 지원대상 농지 : 2022년 사업기간('21. 11. 1.~'22. 10. 31.) 중 친환경농업을 충실히 이행하고 인증기관의 이행점검 결과 적격으로 통보받은 농지

○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는 유기·무농약 지속 직불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

- 사업기간 중「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제24조에 따라 친환경농산물 인증이 취소된 농지
- 사업기간 중 인증이 유효함에도 불구하고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되지 않은 농지
- 친환경 무농약 벼 인증 5년차 이후인 농지
- 자연 상태에서 채취하거나 시비 등 재배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필지
- 토양을 직접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생산하는 수경(양액)재배, 버섯재배 필지 (토양관리가 이루어지는 원목재배 형태 버섯재배는 지급대상에 포함)
- 경운 등 경작 흔적 또는 울타리 등 경계표시에도 불구, 인증필지의 경계를 눈으로 식별하기 어려운 필지. 인증필지 내에서도 식재 예정지 등 재배에 이용하지 않는 면적은 제외

다.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유기농은 5년(이후 50% 지원), 무농약은 3년 이후 국비 지원이 중단됨에 따라 친환경농업 기반 유지·보전을 위해 지방비로 국비 지원 직불금의 50% 지원

라. 지원형태

○ 재원비율 : 도비 20%, 시·군비 80%

○ 지급단가

(단위 : 천 원/ha)

구 분	품 목	유기지속(6년부터)	무농약지속(4년부터)
논	벼	350	250(4년차)
밭	채소·특작·기타	650	550
	과수	700	600

마.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농가(경영체)당 지급한도 면적 : 0.1~5.0ha

- 친환경농업 직불제 지급면적과 무농약 지속직불 지급면적을 합한 면적은 5.0ha를 초과할 수 없음

  * 동일 농가 경영체에서 2명 이상이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은 경우에도 경영체당 지급한도(5.0ha)를 초과하여 지속 직불금을 신청할 수 없음

○ 지급 기간 및 방법

- (유기지속) 친환경농업 직불금을 5년간 지급(불연속인 경우 5회 지급)받은 필지에 대해 6년차부터 매년 국비 유기 직불금의 50% 차액 지급
- (무농약지속) 친환경농업 직불금을 3년간 지급(불연속인 경우 3회 지급)받은 필지에 대해 4년차부터 매년 국비 무농약 직불금의 50% 지급 * 단, 무농약 벼는 4년차 1회만 지급

바. 사업신청 및 대상자 선정

○ 유기·무농약 지속 직불금을 받으려는 농업인은【별지 1호 서식】의 신청서 및 인증서 사본 등을 관할 읍·면·동에 제출

  * 단, 유기 지속 직불금은 정부의 유기 지속 직불금 신청서로 대체

○ 신청기간 : ’22. 3. 1. ~ 4. 30.

○ 대상자 선정 : 유기인증 농가는 정부의 유기 지속 직불금 대상자와 동일하며, 무농약인증 농가는 사업신청자 중 적격자를 선정

사. 사업비 집행 및 정산 보고

○ 시장·군수는 논, 밭 등 품목별 지급단가를 적용하여 유기농・무농약 실천 농업인에게 보조금 지급 : ’22. 11. ~ 12.

○ 사업종료 시 사업비 집행실적(정산)을【별지 2호 서식】에 따라 보고 : ’23. 1. 15.

아. 사후관리

○ 신청자가「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제24조에 따라 인증이 취소되거나 인증을 자진 포기하는 등 인증품 생산을 중단한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음

- 보조금 지급 후에도 당해 사업연도 내 인증취소, 인증만료, 인증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보조금 회수 조치

바. 기타 세부적인 사업 추진사항은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준용

[별지 제1호 서식]

(앞쪽)

무농약 지속 직불금 지급신청서

처리기간
60일

① 신청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		
	대표자명					
	주 소			전화번호		
② 인증현황	인증구분		인증번호		인증기관	

③ 신청농지 현황

구분 (논·밭)	인증 종류	품 목		농지소재지				지목 (공부상)	재배 면적 (㎡)	기본형 공익직불제 지급여부 (○, ×)	농업 경영체 등록여부 (○, ×)	과거 지급 횟수
		대분류	소분류	시·군	읍·면	리·동	지번					
논												
밭												
합계												

④ 입금계좌	은행명 :	예금주 :	계좌번호 :

전라남도 유기농·무농약 지속 직불금 사업지침에 따라 무농약 지속 직불금 지급대상자로 선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아래의 사항을 동의 또는 확인 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상기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 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상기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은 친환경농업 이행 실천농가 본인이며, 부정청구한 경우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당이득금에 추가하여 부정이익 가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제재부가금 부과됨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읍면동장) 귀하

※ 구비서류	수수료
1. 친환경농산물인증서 사본 1부 2. 농지 등을 적법하게 인증기간동안 점유, 사용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없음

(뒤 쪽)

작 성 방 법

① 신청인 : 보조금 신청인(법인 포함)의 인적사항을 기재

* 법인의 경우 법인등록번호 및 대표자의 생년월일 동시 기재

② 인증현황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또는 민간인증기관에서 친환경농산물 인증 받은 현황을 기재

③ 신청농지 현황

- 논·밭 구분 : 기본형공익직불제에서 논으로 지원받은 대상농지는 논으로, 그 외의 농지는 밭
- 인증종류 : 유기, 무농약 중 하나를 기재
- 품목별 분류 : (대분류)곡류, 채소, 과수, 기타 중 하나를 (소분류)는 인증서 상 품목명 기재
- 기본형공익직불제 지급여부 : 당해연도 기본형공익직불제 지급여부를 기재
- 농업경영체등록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농업경영정보 등록여부를 기재

④ 입금계좌 : 보조금을 수령할 신청 농업인(법인)의 계좌를 기재

처 리 절 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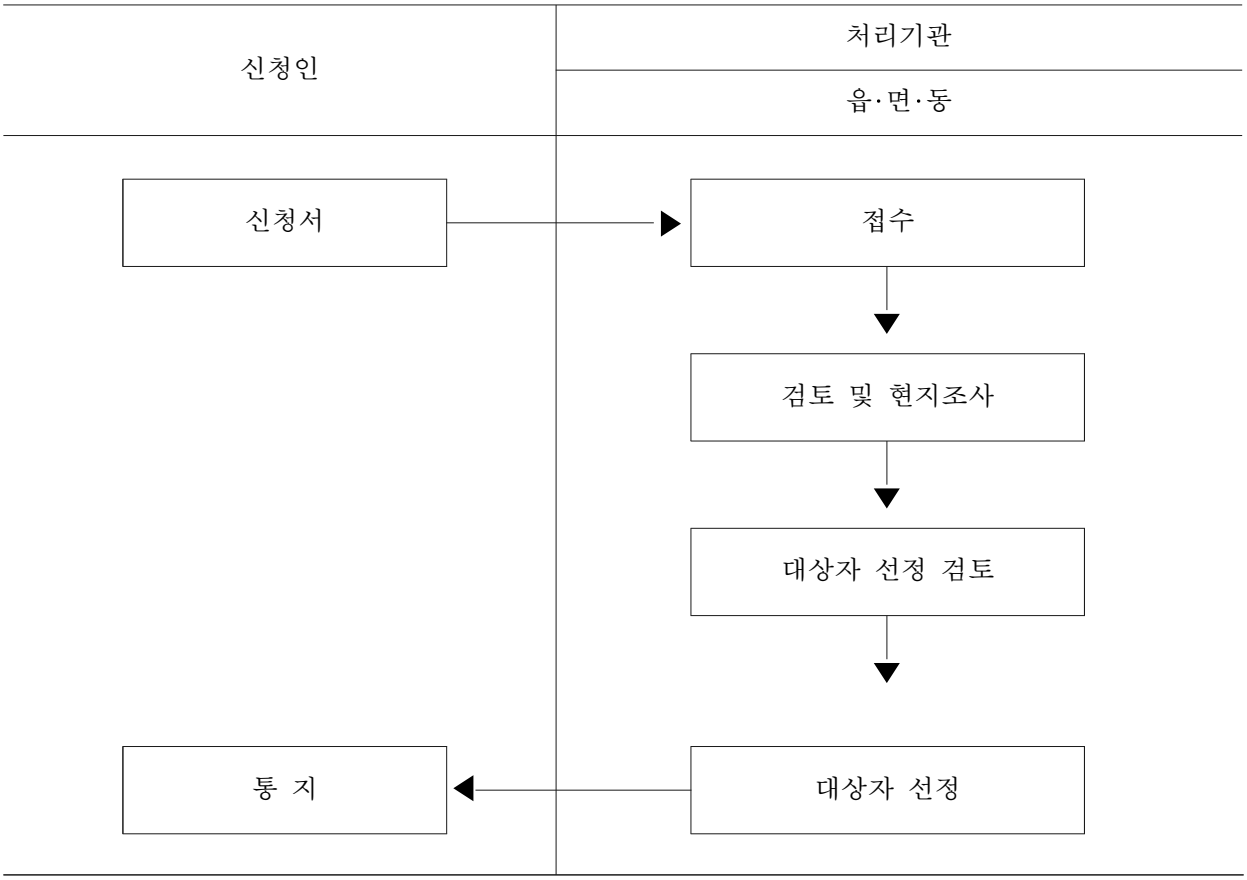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 서식]

유기·무농약 지속 직불금 집행실적(정산) 보고

(단위 : 호, ha, 원)

구분	농가수	면적	사 업 비						
			예 산 액			집 행 액			도비 집행 잔액
			계	도비	군비	계	도비	군비	
합 계									
유기 지속									
무농약 지속									

13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1. 사업개요

가. 목 적

○ 농림축산 부산물의 재활용·자원화를 촉진하고 토양 비옥도 증진 및 토양 환경 보전을 통해 지속 가능한 친환경농업 육성

○ 환경 친화적인 자연순환 농업의 정착 및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 유도

나. 근거법령

○ 「비료관리법」 제7조, 「농지법」 제21조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

다. 성과목표 및 지표

○ 유기물 함량(부지표) : 논, 밭 등 농지 유기물 함량을 2~3% 유지

성과지표	2021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 산출 시기	측정방식
		'19	'20	'21		
▪ 유기물 함량 (%, 부지표)	2~3	·논·밭: 2.0 이상 ·과수·시설: 2.5이상	·논·밭: 2.0 이상 · 과수 · 시설: 2.5이상	·논·밭: 2.0 이상 ·과수·시설: 2.5이상	매년 1월	흙토람을 통해 조사된 전국 농경지 토양검정 결과 유기물 함량(%)

2. 2022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가. 사업대상자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 (농업인·농업법인)

나. 지원자격 및 요건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서 본인의 농업경영체 정보에 등록된 농지를 부산물 비료(유기질비료, 부숙유기질비료)를 사용하여 농산물을 생산하는 자

- 친환경인증농가, 친환경단지농가, 들녘별 경영체육성사업 참여농가에 대해서는 우선순위를 부여

- 전년도에 녹비작물 종자대를 지원받은 농업경영체의 경작필지는 당해연도 유기질비료지원을 지원기준의 50% 이내로 제한
- 2022년도에 비료를 공급받을 때에도 농업경영체 등록을 유지해야 함

다. 지원대상

○ 유기질비료(3종) : 혼합유박·혼합유기질·유기복합비료

○ 부숙유기질비료(2종) : 가축분퇴비·퇴비

- 부숙유기질비료는 1개 업체 1개 비종 공급이 원칙이나 발효시설, 후숙시설 등 주요시설이 구분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2개 비종 동시 공급 가능(비료생산업 등록을 한 시·군에서 조사하여 인정하는 경우에 한함)

라.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지역농업협동조합, 지역축산업협동조합, 품목농업협동조합 및 엽연초생산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함)을 통해 구입하는 지원대상 비료 구입비의 일부 보조

마. 지원형태

○ 재　　원 : 지방비(보전금+시·도비+시·군비)

○ 지원조건 : 보조(보전금 700원~1,000원/20kg + 지방비 600원/20kg 이상), 자부담 비료가격의 20% 이상

* 재원보전금 외의 시·도비와 시·군·구비 분담액(비율)은 종전의 지방비 매칭금액(600원/20㎏ 이상)에 대한 기존 분담액(비율) 수준을 유지하여야 함

○ 지원단가(보전금)

(단위 : 원/20kg)

구 분	특등급	1등급	2등급
유기질비료	1,000		
부숙유기질비료	1,000	900	700

- 지방비(시·도비, 시·군·구비 또는 시·도비+시·군·구비)로 포대(20㎏)당 600원 이상을 정액 의무부담하여야 하며, 자체 예산으로 지역산(관내업체 생산제품) 유기질비료·부숙유기질비료에 대해 우대(추가) 지원하고자 하는 경우 타지역산(관외업체 생산제품)과의 단가 차액은 300원/20㎏을 초과할 수 없음

* (예시1) 지역산 : 600원(의무) + 300원(추가) = 900원, 타지역산 : 600원 + 300원 = 900원
* (예시2) 지역산 : 600원(의무) + 300원(추가) = 900원, 타지역산 : 600원 + 0원 = 600원
* (예시3) 지역산 : 600원(의무) + 600원(추가) = 1,200원, 타지역산 : 600원 + 300원 = 900원

※ 지자체는 600원 이상 추가 지원 시 사업물량 등이 전년도 보다 감소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함

바. 지원한도

○ 사업대상자가 본인의 농업경영정보에 등록된 농지를 대상으로 신청한 물량에 대하여 사업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 다만, 부숙유기질비료는 10a당 2,000kg를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음

3. 사업추진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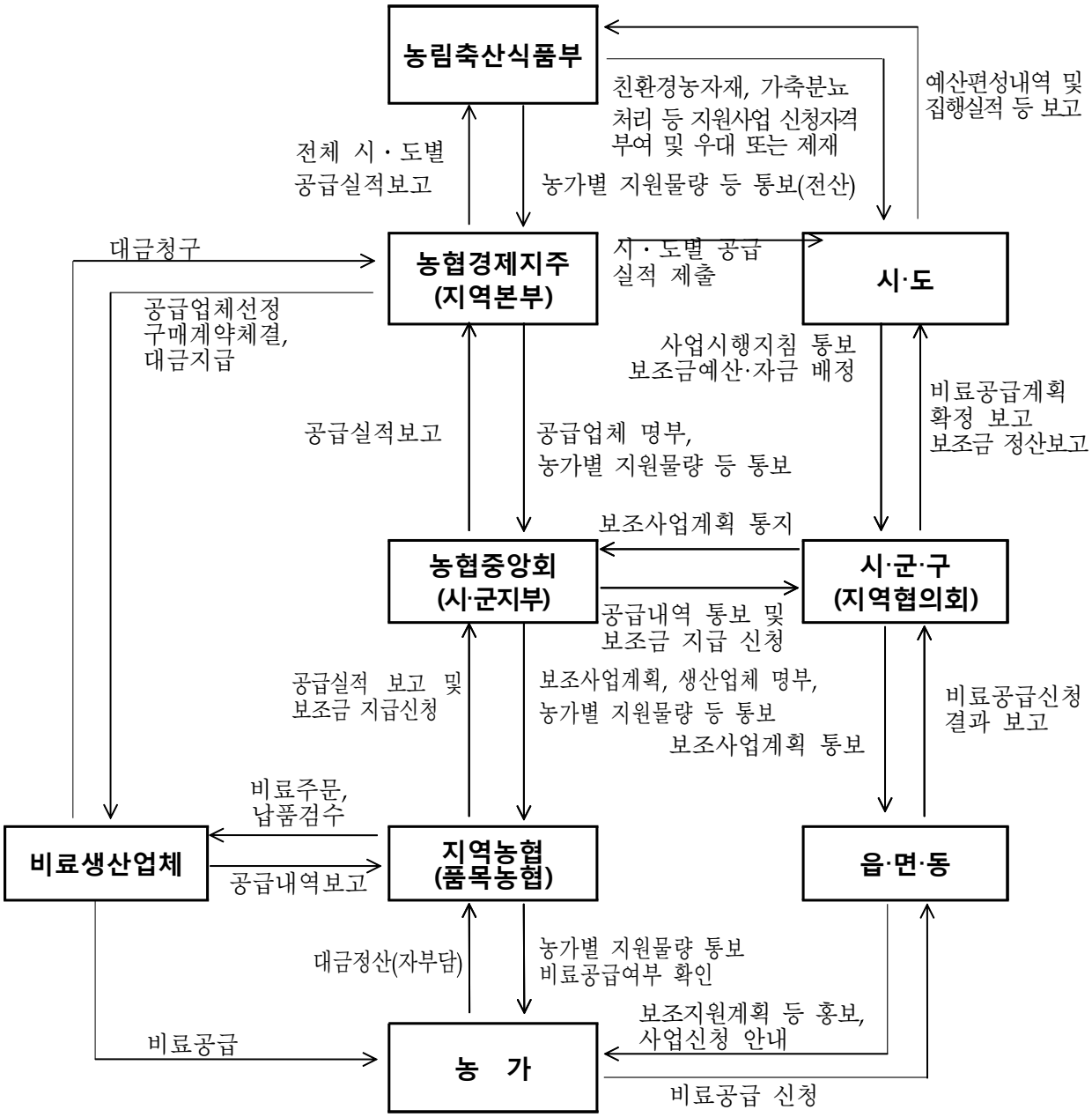

※ 담배 경작용 퇴비 공급의 경우 농협경제지주의 기능은 엽연초조합중앙회가, 농협중앙회 시·군지부 및 지역농협의 기능은 엽연초조합이 수행

4.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가. 사업신청단계

시·군·구

○ 시·군·구는 보전금, 시·군·구비, 사업물량을 확정하여 시·도에 보고(10월말)

시·도

○ 사업물량, 시·군·구별 예산 배정(안)[1], 시·도, 시·군·구비 분담액(비율) 및 사업신청기간 등이 포함된 익년도 사업 기본계획을 시·군·구에 통보(11월초)

* 사업신청기간은 본 사업이 체계적·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농림축산식품부의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변경 및 추가 신청기간(11월초~12월초)과 동일한 시기로 적용

시·군·구(읍·면·동), 농협중앙회(경제지주, 조합)

○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의 기본계획을 반영하여 익년도 사업계획을 수립, 읍·면·동, 농협 시·군지부 및 조합 등에 통보(11월초)

○ 읍·면·동장은 시·군·구의 사업계획과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으로부터 통보받은 보조사업 참여업체[2]별 생산비종과 품질등급, 제제형태, 제조원료, 배합비율, 판매(예정)가격 및 신청기간·방법 등을 농업인에게 홍보 및 안내(11월 중)

○ 각 조합은 농업인 등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사업안내 홍보물(포스터, 리플렛 등) 부착 및 비치, 농업인 대상 안내문 발송 등 협조

농업경영체

※ 지원(공급)대상 비료의 종류, 품질등급, 신청물량(포) 및 공급시기(월) 등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신청기간내에 해당 읍·면·동에 신청

○ 신청기간 : 2021. 11. 9.~12. 8.(30일간)

○ 신청자격 : 농업경영체로 등록하였거나 등록 예정인 자만 신청할 수 있음

---

1) 기초직접사업으로 시·군·구에서 사업물량 및 예산을 확정하는 경우, 시·군·구의 사업물량 및 예산확정 상황을 확인하여 시·도의 기본계획에 반영토록 함

2) 보조사업 참여업체란 농협경제지주가 별도의 공급업체 선정기준에 따라 지원대상 비료를 공급할 업체를 선정하여 유기질(기타)비료 구매납품계약을 체결한 업체를 말하는 바, 농협경제지주는 매년 1회(9~10월중) 각 지역본부(생산업체가 지역농협인 경우) 또는 한국유기질비료산업협동조합·가축분유기질비료협동조합(일반 업체)의 추천을 받아 공급업체 지정신청을 한 생산업체를 대상으로 심사(필요시 현장확인)를 거쳐 계약대상 공급업체를 선정, 계약을 체결하고 업체의 명단(생산제품 정보 포함)을 Agrix에 제공하고 있음

○ 신청서 작성방법

- 신청서는 농지 소재지 시·군·구별 1건으로 작성하되, 동일 시·군·구내에서 농산물과 엽연초를 모두 재배할 경우에는 작목별로 신청서를 각각 작성 (농산물 1건, 엽연초 1건)

  * 신청내용이 전년과 동일한 경우에는 신청서에 “전년 동일”로 표기하여 신청할 수 있음

- 신청물량은 경영체가 필요로 하는 비종별, 품질등급별 비료량을 포대단위(포/20㎏)로 기재(단, 가축분퇴비·퇴비는 10a당 2,000㎏을 초과할 수 없음)

  * 품질등급을 기재하지 않을 경우 1등급(기준등급)을 신청한 것으로 간주

- 공급시기는 작물재배 시기 등을 감안하여 1~12월까지 월단위로 지정

- 공급희망업체는 경영체가 희망하는 업체가 있는 경우에 직접 기재하며, 기재하지 않거나 업체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시·군·구에서 선정

  * 당해 업체에서 공급하는 비료량이 50포 미만(마을단위 합계)이거나 운송거리가 먼 경우, 신청물량이 당해 업체의 공급능력을 초과하거나 행정처분을 받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업체가 변경될 수 있음

- 경영체는 신청서에 유기질비료 구입비 중 자기부담금을 납부할 ‘공급희망조합’을 지정하여야 함(Agrix시스템에서 지원하는 조합정보 참고)

  ▪ 조합원인 경우에는 신청농지 소재지와 동일 시·도에 소재하는 조합(품목농협 포함) 중 자신이 가입한 조합을 지정. 다만, 타 시·도 소재 조합의 조합원 가입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해당 조합을 공급희망조합으로 지정 가능

  ▪ 조합원이 아닌 경우에는 접근성, 조합 이용 편리성 등을 고려하여 신청농지 소재지와 동일 시·군·구(읍·면·동) 소재 조합 지정

  ▪ 엽연초조합원의 경우 공급업체와의 계약을 엽연초조합중앙회가 체결하고 조합별 조합수가 많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타 시·도 소재 엽연초조합을 공급희망조합으로 지정 허용

○ 신청서 제출

- 작성한 신청서는 농지 소재지 관할 읍·면·동에 직접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전자우편(이메일), 팩스 등으로 제출(이장, 작목반장, 공급희망조합 등을 통한 대리 제출도 가능)

- 경작농지가 2개 이상의 지역에 소재하는 경우로서 경작농지 소재지 행정구역이 시·군·구는 같고 읍·면·동만 다를 경우에는 그중 하나의 읍·면·동에 제출하고, 시·군·구(시·도)가 다를 경우에는 각각의 시·군·구(읍·면·동)에 제출하여야 함

  * 시·군·구(읍·면·동) 담당자는 관내 경작지에 한하여 신청 접수

- 신청인의 주소지와 농지 소재지 행정구역이 다른 경우에도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읍·면·동)에 제출하여야 함. 이 경우 신청서를 접수한 읍·면·동장은 이를 관내 경영체(신청농지 소재지와 동일 시·군·구내에 주소를 둔 신청인)와 동등한 기준으로 처리하여야 함

나. 사업자 선정단계

시·도

○ 시·군·구에 익년도 사업시행지침 및 확정예산 통보(12. 15.까지)

시·군·구(읍·면·동)

○ 읍·면·동장은 유기질비료 지원신청 내역을 Agrix시스템에 입력 및 검증을 완료한 후 신청마감<확정> 처리하고 시·군·구에 신청결과 보고

○ 시장·군수·구청장(특·광역시는 시·도지사)은 유기질비료공급관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함)를 구성하고 지원대상 경영체, 공급물량 및 공급업체 등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확정(12월말까지)

- 협의회 구성 및 운영 방법

▪ 구성 : 시·군·구 담당공무원, 농협 시·군지부 및 조합 담당직원, 농업인, 관계 전문가 등 6명 이내로 구성(사업실시 연도 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부숙유기질비료 생산업체 관련자 제외)

▪ 운영 : 협의회 위원 위촉기간은 1년으로 하며, 유기질비료 지원 신청물량 및 공급업체의 적정성 검토, 공급단계 비료 품질점검 등 업무 수행

- 농업경영체 등록이 되어있는 신청인(농지)을 지원대상자(농지)로 선정

▪ 귀농인 등이 신규로 농지를 구입 또는 임차하여 농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하지 못한 상태에서 신청한 경우 영농계획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경영체 미등록 신청인(필지)도 지원대상으로 잠정 선정. 단, 비료 공급시기 이전에 경영체 등록이 되어있어야 비료를 공급받을 수 있음(조합에서 확인 후 공급)

* 영농계획 관련 서류 : 농지취득자격증명(농업경영계획서), 농지임대차계약서 등

▪ 신청농지에 농지처분명령을 받은 필지가 포함되어있는 경우 해당 필지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경영체별 공급물량은 신청농지 면적, 재배작목 및 관련 통계(품목별 단위면적당 전국평균 사용량) 등을 고려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물량 결정

▪ 신청물량이 품목별 단위면적당 전국평균 사용량 이내인 경우에는 전량 반영, 전국평균 사용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예산 범위에서 조정 반영

▪ 가축분퇴비·퇴비는 품질등급별 신청물량이 업체의 공급능력을 초과 또는 미달하는 경우 수급 여건에 맞게 등급을 조정하거나 공급업체 변경

* Agrix 자료 마감 시 신청인의 사망 여부, 농업경영체 및 필지 등록 여부, 농지처분명령 여부 최종 확인

- 신청인이 경영체별 공급물량 확정 전에 비료 공급을 희망하는 경우 지자체의 신청정보에 기초하여 신청물량 범위 내에서 우선공급 가능

* 각 조합은 우선공급 물량이 공급확정물량을 초과한 물량에 대하여는 보조금이 지원되지 않음을 사전 설명 후 공급(필요시 확인서 징구)

- 공급업체는 경영체가 신청한 공급희망업체의 생산여건, 제품의 품질, 주문물량 공급가능 여부, 운송거리, 공급능력 초과 여부 등을 검토한 후 확정하되, 원활한 공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급업체를 다른 업체로 변경 가능

▪ 협의회가 공급업체를 결정할 때에는 업체별 총공급량이 생산능력을 초과하지 않도록 업체별 공급한도물량 대비 누계신청량, 잔량 등 현황자료를 활용하여 농가별 공급업체 결정

* Agrix시스템 관리자는 부숙유기질비료 생산업체별 생산능력을 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 협조

○ 시장·군수·구청장은 경영체별 공급물량 및 공급업체 확정결과를 시·도에 보고하고 읍·면·동에 통보(12월말까지)

○ Agrix시스템 관리자는 시·군·구의 사업자 선정내역(전산자료)을 농림축산식품부를 경유하여 농협경제지주(엽연초조합중앙회)에 송부 협조

* 농협경제지주(엽연초조합중앙회)에서 경영체별 공급물량 등 전산자료를 시·군지부 및 조합에 전파

다. 사업시행단계

농협(경제지주, 지역본부), 연엽초조합중앙회

《공급업체 선정 및 공급가격 결정》

○ 선정주체 : 농협경제지주(지역본부) 및 엽연초조합중앙회

○ 선정기준

- 「비료관리법」에 따라 비료생산업 등록을 하고 '지원대상 비료'를 생산하는 업체로서 다음의 제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체(수입업체 제외)

* 농협경제지주 및 엽연초조합중앙회는 시·도 및 비료협동조합의 의견을 들은 후 유기질비료 공급업체 선정기준(비료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사용원료 등 품질관리 기준, 공급업체별 생산능력 등 포함)을 정하여 공지

< 제 외 대 상 >

- 임원 또는 대표자가 보조금을 횡령하여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공급계약 체결 시까지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업체
- 공급계약체결일로부터 3년 이내에 관계기관에 허위 자료를 제출하여 보조금이 부당하게 지급되도록 한 업체
- 국세 및 지방세 등 세금 미납업체
- 「비료관리법시행령」 제12조에 따른 비료생산업의 시설 기타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업체
- 2021. 12월말 까지 [별표1]의 공급업체 보조사업 참여 제한기준에서 정한 제한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업체

* 농협경제지주 및 엽연초조합중앙회는 회계질서 문란행위 방지와 불량 비료의 유통으로 인한 토양오염 및 농업인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제외대상을 정할 수 있음

- 2021년도에 농촌진흥청장(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하는 품질검사를 받지 않은 업체

* 부숙유기질비료의 경우 2021년도에 농촌진흥청장이 실시하는 품질등급 평가를 받지 않은 업체(2022년도 신규 참여업체 제외)

- 농업관련전문교육기관, 농협중앙회(경제지주), 한국유기질비료산업협동조합 및 가축분유기질비료협동조합(이하 “비료협동조합”라 함)이 실시하는 유기질비료생산업체 품질관리교육을 4시간 이상 받지 않은 업체(신규 참여업체 제외)
- 발효시설(통풍식 또는 교반식)에서 유기물을 미생물에 의한 충분한 발효(부숙)과정과 후숙시설에서 후숙과정을 거치지 않고 생산한 부산물비료(부숙유기질비료 생산능력 조사 기준에 따라 제품생산) 생산업체와 작물의 영양공급과 토양에서 화학적 변화와 토양의 물리성 개선조건에 맞지 않는 부산물비료를 생산한 업체

* 예) 생석회를 혼합, 안정화하여 생산한 부산물비료

○ 선정절차 등

- 사업 참여 공급업체 지정 신청자격, 신청서류, 선정절차, 선정업체의 권리·의무 등에 관한 사항은 농협경제지주 및 엽연초조합중앙회가 정하는 바에 따름

* 필요한 경우 사전에 공급업체 또는 공급을 희망하는 업체에 대해 신청자격, 생산능력 등에 대해 현장 확인 실시

- 농협경제지주(지역본부) 및 엽연초조합중앙회는 사업 신청 개시 10일전까지 공급업체 선정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를 경유하여 Agrix시스템에 반영하여야 함(공급 업체명, 소재지, 비종, 생산능력, 공급가능 잔량 등 신청 시 참고자료 포함)

  * 업체의 생산능력은 [별표2]의 발효시설 및 후숙장 생산능력 산출방법에 따라 산정하며, 생산능력 조사는 별지 제2호 서식의 부숙유기질비료 생산능력 조사(양식)으로 실시함

  * 생산능력은 농협경제지주 또는 비료협동조합 관계자가 관할 시·군·구 담당자 입회하에 조사 실시

○ 농협경제지주(지역본부) 및 엽연초조합중앙회는 구매가격(업체 납품가격) 및 공급가격(조합 판매가격) 결정방법과 절차를 따로 정하여 시행

- 비료업체에서 공급한 제품에 품질위반, 등급하락 및 원료별 투입비율 위반이 발생하는 경우 세부적인 배상 및 환수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계약서에 명시하여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조치

  * 지방비, 자부담에서 각각 동일비율로 배상 및 환수되도록 관리

농협(시·군지부, 조합)

○ 각 조합은 시·군·구의 사업자 선정내역 등을 경영체에 공지(인수 날짜 및 장소 등 확인)하고 비료 공급 실시(1~12월)

- 신청인이 제출한 유기질비료 공급 신청서에 명시된 공급희망조합이 공급

  * 신청인이 신청서에 공급희망조합을 잘못 기재한 경우에는 신청서를 접수한 읍·면·동에서 수정한 후 그 내용을 해당 신청인에게 통지

- 공급과정에서 공급업체의 폐업이나 납품거부, 경영체의 변경공급 신청 등 사유 발생 시 근거자료를 토대로 해당 경영체에 배정된 지원금액 범위 내에서 변경 공급(단, 경영체 변경은 사전에 시·군·구와 협의하여 처리)

  ▪ 매월 변경조치 결과를 정리하여 해당 시·군·구에 제출

- 1~9월 신청물량 중 경영체가 9월말까지 공급받지 않은 물량은 포기물량으로 간주하고 그 현황을 지체없이 시·군·구에 통보

  ▪ 당초 10~12월 공급을 요청한 물량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수령포기 의사를 밝힌 경우에도 동 물량을 포기물량에 포함하여 시·군·구에 통보

《공급요령》

○ 각 조합은 공급업체가 다음 요령에 따라 비료를 공급하도록 조치

- 조합은 공급업체에서 직접 경영체에 납품하도록 발주하고, 조합 담당자가 실물공급 검수 확인

* 공급업체가 농협의 전산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비료 배송정보를 입력하고 조합에서 배송정보에 기초하여 공급대상 농가에 대한 비료 공급내역 기록 등의 업무 처리는 농협경제지주가 정하는 바에 따름

- 공급업체는 배송 완료 시 경영체의 인수증을 받아 조합에 제출

* 경영체당 500포(20㎏ 기준)이상 공급되는 경우에는 조합 담당자가 현장을 확인하고, 500포 미만 공급 확인은 인수증 및 자부담금 수납으로 확인

- 모든 비료는 포대(10㎏, 15㎏, 20㎏) 또는 톤백(500㎏, 1,000㎏)으로 공급

* 톤백으로 공급을 요구하는 경우 500㎏, 1,000㎏ 이외의 단위 공급을 요구할 수 없음
* 살포차량(경영체 보유차량 포함)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경영체 및 조합에서 공급업체를 방문하여 톤백에 담겨진 비료의 품질, 중량 등을 확인 검수한 후 해당 차량에 담아 운반하는 것은 가능(검수확인서, 계량증명서, 사진 등 첨부)

- 톤백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자체계량기를 이용하여 계량하거나 공인된 계량업소의 계량증명서 첨부

* 자체계량기는 매 2년마다 1회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정기검사를 받아야 함

- 신청인이 공급시기 이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동거인 또는 상속인의 수령(구매) 의사 및 농업경영체 승계 여부를 확인한 후 공급

○ 부숙유기질비료 공급 시 유의사항

- 포장지 또는 톤백에 품질등급과 주의사항(아주까리유박을 함유한 가축분퇴비 또는 퇴비에 한함)을 확인할 수 있도록 표기(포장지 또는 톤백 표기방법은 [별표3]과 같음)

* 톤백의 경우 비료생산업자 보증표를 톤백의 우측 상단에 부착하여 보관·판매

- 공급업체별 총 공급량(시판물량 포함)은 연간 생산능력을 초과할 수 없음

- 1개 부산물비료 생산업체에서 2개 비종(가축분퇴비, 퇴비)을 공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아래 절차(방법)에 따라 비료생산업 등록을 한 시·군·구의 조사 확인을 받아야 함

▪ 가축분퇴비와 퇴비 2비종을 공급하고자 하는 업체는 각 생산시설 현황을 8월 25일까지 비료협동조합에 제출

▪ 비료협동조합은 업체의 생산시설 현황(업체명, 제조장 소재지, 연락처, 생산량 등)을 8월말까지 시·군·구에 통보

▪ 시·군·구는 비료협동조합으로부터 통보받은 업체에 대하여 [별표4]의 생산시설 조사기준에 따라 조사한 후 그 결과를 비료협동조합 및 농협경제지주에 통보하고, 농협경제지주는 통보받은 조사결과에 따라 조치

▪ 생산시설 조사는 농협경제지주 또는 비료협동조합과 합동으로 실시하며, 조사표 양식은 [별지 제3호 서식]과 같음

- 업체별 연간 생산능력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직접 생산하지 않은 제품(OEM 제품 등)은 공급(납품)할 수 없음
- “지원대상 비료” 생산업체는 [별지 제4호 서식]의 비료의 제조 원료 장부, [별지 제5호 서식]의 생산일지, [별지 제6호 서식]의 판매대장을 비치하고 성실하게 기재하여야 하며, 이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함

○ 유기질비료 OEM 공급 시 유의사항

- 생산업자와 판매업자는 공정규격 미달, 유통단속 및 품질불량 등 제품의 하자에 연대 책임을 짐
- 공급업체로 선정되어 농협과 계약한 업체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 OEM 공급 가능

라. 자금배정단계

시·도

○ 시·군·구별 자금 배정계획에 따라 시·군·구에 시·도비 교부

농협(시·군지부, 조합)

○ 농협중앙회 시·군지부는 매 분기 익월 10일까지 각 조합의 비료 공급내역을 취합(경영체별 공급실적 전산자료 첨부)하여 관할 시·군·구에 보조금 지급 신청

- 엽연초조합은 관할 시·군·구에 직접 신청

시·군·구

○ 조합별 비료 공급내역을 확인한 후 분기 익월 25일까지 농협 시·군지부와 엽연초조합에 보조금 지급

마. 이행점검단계

《품질관리 및 유통단속》

1) 품질검사 및 품질등급 평가

가) 품질검사

○ 검사기관 : 시·도(주관) 및 시·군·구(실행)

○ 대상업체 :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비료생산업체(공급업체로 선정되어 농협경제지주 및 엽연초조합중앙회와 계약한 업체)

- 최근 3년 동안 품질기준을 위반한 적이 있는 업체 또는 현장점검 결과 부적합으로 의심되는 업체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검사할 수 있음

○ 검사시기 : 1/4분기, 4/4분기(연 2회 시·도 주관 정기검사 실시)

- 다만, 비료의 품질과 관련된 민원이 발생한 경우, 현장점검 결과 의심되는 경우, 업체가 신청한 경우 등 필요시 수시검사 실시

* 시·도(시·군·구)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협의하여 '유기질비료 특별 품질검사 계획을 수립한 후 정기 및 수시 품질검사를 실시할 수 있음, 이 경우 소요 예산은 시·도(시·군·구)에서 부담함

* 시·도(시·군·구)는 지자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합동점검을 정기검사에 갈음할 수 있음

- 시·군·구는 자체 품질검사 및 유통단속을 연 2회(2·3분기) 이상 실시

○ 검사사항

- 사용원료의 적정 여부, 보증표시 등의 적정 여부, 제조원료 장부·생산일지·판매대장 기록·보존 여부 및 기재내용 적정 여부
- 비료 공정규격 등 적합 여부(이화학적 검사) 등

○ 시료 채취 및 송부

- 시·군·구의 담당공무원이 「비료의 품질검사방법 및 시료채취기준」(농촌진흥청고시)에 따라 시료를 채취하여 농촌진흥청장이 지정·고시한 비료의 시험연구기관(이하"시험연구기관"이라 함)에 검사 의뢰
  - ▪ 시료는 포장(톤백 포함)이나 산물로 보관·진열·판매·유통·공급하는 완제품 중에서 채취
- 2022년도에 생산실적이 없거나 그 밖의 이유(AI·구제역 발생에 따른 출입제한 등)으로 품질검사를 받지 않은 공급업체는 비료 생산일정, 공급일정 등을 '22. 8. 31.까지 관할 시·군·구에 제출하여야 함
  - ▪ 생산일정 등을 통보받은 시·군·구는 '22. 9. 14.까지 시료를 채취하여 시험연구기관에 검사를 의뢰하여야 함

나) 검사성적 등 통보

○ 시험연구기관의 장은 검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검사를 의뢰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함

○ 시장·군수·구청장은 시험연구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검사결과가 부적합이거나 품질등급이 낮아진 경우에는 해당 업체 명단과 부적합 등 내역을 농협경제지주 또는 엽연초조합중앙회와 비료협동조합에 즉시 통보

* 검사성적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시료채취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통보하여야 함
* 검사성적 등을 통보할 때에는 농협경제지주 및 엽연초조합중앙회에서 신속·투명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부적합 업체 명단, 판정결과 및 품질등급 평가결과 등을 구체적으로 통보하여야 함

○ 농협경제지주 또는 엽연초조합중앙회는 시·군·구로부터 검사결과 부적합 및 품질등급 격하 내역을 통보받는 즉시 위반업체의 비료를 공급 중단·회수하고 사업 참여제한 기준에 의거 조치

* 참여제한 기준은 [별표1] 참조

다) 품질등급 평가

○ 평가대상 : 2022년도 부산물비료 지원 사업시행지침에 따른 지원대상 가축분 퇴비 및 퇴비

○ 평 가 자 : 시장·군수·구청장

○ 평가방법 : 품질검사(정기검사를 갈음하는 합동검사 포함) 결과에 따른 유기물함량·유기물대질소비·수분함량을 평가

○ 평가기준 : 품질등급별 평가항목 세부기준은 [별표5]와 같음

* 평가기준이 변경될 경우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시·도에 문서 통보

라) 품질등급 재평가 방법 및 절차

○ 품질등급이 격하된 업체는 평가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1회에 한하여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품질등급 재평가(이하 “재평가”라 함)를 신청할 수 있음

○ 시장·군수·구청장은 재평가 신청이 있는 때에는 시료의 검사를 의뢰한 시험연구기관에 재검사를 요청하여 1차 평가 때와 같이 재검사 결과에 따른 유기물함량·유기물대질소비·수분함량을 재평가

○ 시장·군수·구청장은 재평가결과를 최종 품질등급으로 함

○ 위의 재평가용 시료는 농촌진흥청고시 「비료의 품질검사방법 및 시료채취기준」 제11조제2항에 따라 보관하고 있는 품질검사용 시료를 사용하여야 함. 다만, 재평가가 불가능할 때에는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함

○ 품질검사에 사용한 보관용 시료는 품질등급 평가결과 통보일부터 3개월간 보관하여야 함. 다만, 재평가가 완료된 시료는 보관하지 아니함

2) 부숙유기질비료 공급업체의 자체 품질검사

○ 공급업체는 부숙유기질비료 출하 전에 반드시 유기물함량 및 부숙도 검사를 필수적으로 실시하고, 그 외 우려되는 1항목 이상 추가로 검사하여 관련 기준에 적합한 제품만 출하하고, 검사결과를 2년간 보존

- 주문물량이 많은 성수기(1~4월)에는 월 1회 이상 의무 실시

3) 공급단계 품질 현장점검

○ 시·군단위 유기질비료공급관리협의회가 농업경영체 공급단계 비료의 품질 현장점검 실시

- 점검시기 : 비료 공급량이 많은 1/4분기, 4/4분기 중 실시
- 점검대상 : 가축분퇴비·퇴비를 1회 500포(20kg) 이상 공급받는 경영체 중에서 무작위로 추출한 20~30개 경영체
  - ▪ 관내 경영체의 비료 사용 규모(구매물량), 부적합품 발생 빈도 등을 감안하여 점검대상 경영체수 조절
- 점검반 편성 : 협의회 구성원 중심으로 2인 1조 편성(비료협동조합이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3인 1조 편성 가능)
- 점검방법 : 품질 점검에 필요한 장비(수분·부숙도측정기)를 지참하여 점검대상 농업경영체에 배송된 가축분퇴비·퇴비의 수분함량, 부숙도 및 악취 여부를 간이검사
- 점검장비 : 점검에 필요한 수분측정기와 부숙도측정기는 농협이 구비 (시·군·구별 1~2대 이상)

* 농협경제지주(지역본부)는 주요 지역농협에 검사를 위한 공간과 장비를 구비하고 담당자를 지정하여 관리 협조

- 점검결과 후속조치
  - ▪ 간이검사 결과 부적합으로 의심되는 경우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검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조합에 해당 제품의 발주 및 납품 보류조치 요청

○ 비료협동조합은 회원사(지원대상 비료 공급업체)를 대상으로 자체 품질점검 실시 협조

- 점검결과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현장 계도하고, 사용가능 원료 외 재료 사용 등 중대한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또는 관할 지자체에 신고

4) 유통단속

○ 시장·군수·구청장은 비료의 품질검사와는 별도로 「비료관리법」 및 본 사업시행지침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는 유통단속 실시

○ 시장·군수·구청장은 부정·불량 비료의 신고 접수 및 단속을 위한 관계기관·단체와의 핫라인 구축 운영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 관계기관과 상시 연락체계 구축 및 협조

5) 비료품질관리시스템을 활용한 비료 품질관리

○ 비료업체는 비료품질관리시스템에 제조원료 장부·생산일지·판매대장 등의 변경 내용을 주기적(10일 이내)으로 입력

○ 시·군·구에서는 비료업체정보 등 새올행정시스템의 연계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자료를 현행화하고, 영업정지 등 행정제재처분과 비료 판매 중지·회수·폐기 등의 조치 실적을 처리 후 3일 이내에 입력

○ 시·군·구에서는 시스템에 입력된 자료를 업체 점검 자료로 활용하여 비료 품질단속 실시

○ 농협경제지주는 시스템에 사업 참여제한 현황을 주기적으로 입력 보완 협조

6) 공급업체 보조사업 참여제한기준

○ 공급업체 보조사업 참여제한기준 적용은 품질검사, 품질등급 평가 또는 유통단속검사 결과를 [별표1]의 위반사항에 적용하여 제한

- 시장·군수·구청장의 행청처분 등 조치결과를 적용하지 않고, 위반사항 자체를 반영하여 참여제한기준을 적용함

7) 유기질비료 생산업체 품질관리교육

○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유기질비료・부숙유기질비료)에 참여하는 업체는 아래와 같이 전문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 교육기관 : 농업관련전문교육기관, 농협경제지주, 비료협동조합
- 교육내용 : 비료관련법규, 사업지침, 유기질비료 비료품질관리 등
- 교육대상 : 비료생산업체 대표 또는 소속업체 임직원
- 교육주기 및 시간 : 연 1회 이상 (1회 4시간 이상)

○ 농협경제지주는 교육을 관리(교육일정 사전 공지·통지, 교육내용 적절성, 출석점검 등)하고 교육결과(교육시간, 수료업체 명단 등)를 생산업체 소재지 각 시·도에 통보협조

《사후관리》

시·도

○ 비료 공급 및 보조금 집행 상황 점검(필요시 관계기관 합동점검 실시)
- 대상기관 : 시·군·구 및 조합
- 점검주기 : 반기별 1회 이상
- 점검항목 : 비료 공급 상황, 보조금 지급 적정성, 품질검사 현황 등

시·군·구

○ 비료 적기공급 여부, 지원물량의 적정 여부, 부산물비료 지원사업에 대한 경영체 만족도 등 점검(반기별 1회 이상)
- 점검결과는 시·도에 보고하고, 익년도 공급업체·지원물량 결정 등에 참고

농협경제지주

○ 농협경제지주 및 엽연초조합중앙회는 비료를 공급하는 조합에 대하여 자체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반기별 1회 이상 비료의 공급상황 등 현장점검 실시
- 농협경제지주는 이행전담점검반을 별도 운영할 수 있음

《제재조치》

시·도(시·군·구)

○ 시·도 및 시·군·구는 보조금이 부적정하게 지급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반행위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여야 함

○ 비료 품질단속 결과 중대한 위반행위를 한 업체에 대하여는「비료관리법」에 따라 행정제재처분을 하고, 이와는 별도로 공급업체 지정 취소 등 조치

○ 10~12월 공급 신청한 경영체(추가공급 대상 포함)가 수령을 포기하는 경우 익년도 사업 지원 시 페널티 부과(당년도 공급확정물량 보다 축소 지원)

《추가신청 및 공급》

시·군·구(읍·면·동)

○ 시·군·구(읍·면·동)에서는 각 조합의 사업포기물량 조사결과(9월말 기준)를 반영하여 사업 추가신청 접수

○ 추가신청결과는 Agrix시스템에 입력하고, 추가공급 대상 경영체 및 물량 등을 농협경제지주에 통보

농협(시·군지부, 조합)

○ 시·군·구의 사업 추가신청결과에 따라 비료를 확보하여 공급

바. 평가 및 환류

《사업평가》

○ 시·도는 사업종료 다음 해 상반기 중 각 시·군·구의 전년도 사업성과 평가

- 평가항목 : 계획 대비 추진실적, 사업수행의 적정성, 시·군·구비 분담액(비율) 등

○ 시·도는 사업종료 후 사업예산 편성내역 및 집행실적을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

《환류》

○ 시·도는 사업성과 평가결과를 전환사업 성과평가 자료 작성에 활용

○ 농림축산식품부는 시·도의 사업예산 편성 및 집행실적에 따라 익년도 연관사업 신청자격 부여 및 우대 또는 제재

* 연관사업 : 친환경농자재지원, 친환경퇴비생산시설현대화지원, 유기농산업복합서비스지원단지조성,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 등

사. 재검토기한 등

○ 본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표준사업시행지침(이하 "표준사업시행지침"이라 함)은 2022년 1월부터 지방자치단체 전환사업에 대한 재원보전이 종료될 때까지 적용

○ 본 표준사업시행지침은 지방자치단체·농협·농업인단체·비료생산자단체 등이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유기질비료지원사업 시·도 협의체'에 개정을 요청하는 경우 시·도 협의체에서 표준사업시행지침 변경(안)을 마련, 농림축산식품부를 경유하여 행정안전부에 제출

* 농림축산식품부는 표준사업시행지침 변경(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행정안전부에 제출

아. 경과조치

○ 이전의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시·도(시·군·구)로부터 사업제재를 받는 농업인이나 농협경제지주로부터 사업참여 제한을 받는 비료공급업체에 대하여 행하여진 제재조치는 이 지침에 따라 행하여진 제재조치로 본다.

5. 2023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가. 2023년도 사업수요조사

○ 시장·군수·구청장은 2022년도 사업신청 물량을 바탕으로 추정한 2023년도 사업수요를 시·도에 제출('22. 3.)

○ 시·도는 시·군·구 수요를 기초로 예산안 편성('22. 8.)

나. 2023년도 사업신청 안내 및 신청 접수

○ 시·도지사는 시·군·구별 예산배정안 가내시('22. 10.)

○ 시·장군수·구청장은 2023년도 사업신청 안내 및 신청 접수('22. 11.~12.)

다. 협조 요청사항

○ 농협경제지주와 엽연초조합중앙회는 2023년 유기질비료 공급업체 선정·계약을 완료한 후 업체 정보를 농림축산식품부를 경유하여 Agrix에 제공하여 주시기 바람('22. 10. 31.까지)

- 공급업체 정보 : 업체명, 소재지, 생산비종, 품질등급, 제제형태, 제조원료, 배합비율, 생산(공급)능력 등

○ 농협경제지주는 2023년도 사업신청 10일전까지 조합 정보를 Agrix에 제공하여 주시기 바람

[별표 1] 공급업체 보조사업 참여 제한기준(부산물비료)

위 반 사 항	사업참여 제한기준	비 고
1. 정당한 사유 없이 검사시료 채취 또는 자료 및 서류의 제출 요구를 거부 하거나 방해한 때	- 1회 : 1년 - 2회 : 2년	
2. 유해성분량 기준초과 - 1% 이상 10% 미만 - 10% 이상 20% 미만 - 20% 이상	 - 1년 - 2년 - 3년	
3-1. 주성분량 또는 보증성분량(용(중)량 포함) 기준미달 - 1% 이상 10% 미만 - 10% 이상 30% 미만 - 30% 이상	 - 6개월 - 1년 - 2년	
3-2 그 밖의 규격(수분) 기준초과 - 1% 이상 10% 미만 - 10% 이상 30% 미만 - 30% 이상	 - 6개월 - 1년 - 2년	
3-3 그 밖의 규격(염분, 유기물대 질소의비, 염산불용해물 등) 기준초과 - 1% 이상 10% 미만 - 10% 이상 30% 미만 - 30% 이상	 - 경고 - 6개월 - 1년	
4-1. 부숙도 측정결과 "비료 공정규격 설정 및 지정"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한 경우	- 1회 : 6개월 - 2회 : 1년	확인는 위반 후 1년기준
4-2. 부숙 유기질비료를 최소 15일 이상의 발효과정과 60일 이상의 후숙 과정을 거치지 않고 생산한 경우	- 1회 : 6개월 - 2회 : 1년	확인는 위반 후 1년기준
5. 비료공정규격 및 본 사업시행지침에서 정하는 원료외의 물질을 보관하거나 사용하여 제조한 비료를 보관·양도·진열·판매·유통 또는 공급한 때 * 사업시행지침에서 정하는 원료외의 물질 : 폐수처리오니	- 2년	「비료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 제2항 적용
6. 등록한 제조원료 외의 물질을 사용하여 제조한 비료를 양도·진열·보관·판매·유통 또는 공급한 경우	- 1년	〃
7. 비료생산업 등록기준 미달	- 1년	〃
8. 유해성분·주성분 및 그 밖의 규격 외의 사항 위반	- 1년	〃
9. 사업참여 신청시 허위서류를 제출한 때	- 1년	
10. 부산물비료 생산업체가 직접 생산하지 않은 부산물비료를 보관 또는 공급한 경우(부산물비료를 공급한 업체도 동일하게 적용)	- 1년	가축분퇴비 및 퇴비에 한함
11. 공급한 비료의 품질이 불량하여 사용한 농작물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 2년	
12. 가축분퇴비와 퇴비를 동일 장소(발효 및 부숙)에서 생산한 경우 - 가축분퇴비와 퇴비의 장소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	- 2년 - 6개월	
13. 품질등급 기준 위반에 대한 제한기준을 위반한 경우 - 품질등급을 표시하지 않거나 계약한 등급과 다르게 표시한 경우 - 품질등급 평가결과, 1개 등급(특등→1등급, 1등급→2등급) 격하할 경우 - 품질등급 평가결과, 2개 등급(특등급 → 2등급) 격하할 경우	 - 1년 - 6개월 - 1년	

위 반 사 항	사업참여 제한기준	비 고
14. 부산물비료의 제조과정을 거치지 않고 부산물비료를 생산 또는 공급한 경우 (석회처리 안정화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2년	
15-1. 판매대장, 원료장부(전자화된 장부 포함), 생산일지 작성 - 동 대장을 전부 기재하지 않거나, 거짓 기재 또는 3년간 보존하지 않은 경우 - 동 대장의 기재사항을 일부 기재하지 않은 경우	 - 1회 : 1년, 2회 : 2년 - 1회 : 6개월, 2회 : 1년	횟수는 위반 후 1년 기준
15-2. 비료품질관리정보시스템을 통한 판매대장, 원료장부, 생산일지 작성 - 시스템에 접속하여 기재사항을 일체 기재하지 않은 경우 - 기재사항을 일부 기재하지 않거나 거짓 기재한 경우	 - 1회 : 6개월, 2회 : 1년 - 1회 : 경고, 2회 : 6개월	횟수는 위반 후 1년 기준
16. 무포장(벌크 형태 등) 형태로 판매하는 경우	- 2년	
17. 보증표시 위반 가. 보증표시를 하였으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표시하지 아니한 비료를 생산하여 보관·양도·진열·판매·유통 또는 공급한 경우 1) 생산년월일 2) 사용상·보관상 주의사항 3) 생산업자 주소 및 명칭 나. 보증표시를 거짓으로 하였거나, 전부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표시하지 아니한 비료를 생산하여 보관·양도·진열·판매·유통 또는 공급한 경우 1) 등록번호 2) 비료의 종류 및 명칭 3) 실중량 또는 실용량 4) 보증성분량 * 등급제에 따라 실제 성분량을 표시한 경우 참여제한 6개월 5) 원료명 및 배합비율 6) 제조장의 소재지 및 명칭	- 6개월 - 1년	
18. 부산물비료 품질검사결과 공정규격이 설정되어 있는 병원성미생물이 검출된 경우	- 1년	
19. 톤백 포장시 표시방법 위반 - 비료생산업자 보증표를 톤백에 부착하지 아니한 경우	- 1년	
20. 제품출고전 자체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업체 - 제품 출고전 부숙도, 수분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그 결과를 보존(2년)하지 않은 경우	- 1회 : 경고, 2회 : 1년	
21. 비료업체(판매원 포함)가 이장, 작목반장, 농업인 등에게 재물 또는 이익을 제공하여 처벌을 받거나, 불공정거래 행위로 처벌을 받은 경우	- 3년	
22. 아주까리유박을 원료로 제조한 부숙유기질 비료 및 유기질비료의 포장지 전면에 적색 네모박스 안에 붉은색 주의문구 미표시 업체 - 주의문구 : 개, 고양이 등이 먹을 경우 폐사할 수 있으니 살포 후 반드시 토양과 잘 섞으세요. 어린이 손에 닿는 곳에 놓거나 보관하지 마세요. 농업용 외에는 사용하지 마세요.	- 6개월	

※ 이 사업 참여 제한기준은 위반업체가 기존 비료생산업을 변경(법인명칭, 대표자, 제조장 소재지 등) 또는 추가로 비료생산업을 등록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됨(다만, 위반업체의 제조장이 여러 개이고 제조장별로 농협경제지주와 납품계약을 한 경우에는 사업지침을 위반한 당해 제조장에 대해서만 적용)

※ 부숙유기질비료(가축분퇴비 및 퇴비) 중 1종이 참여 제한되면 해당 업체의 부숙유기질비료 전체가 참여 제한되고, 유기질비료(혼합유박, 혼합유기질 및 유기복합) 중 1종이 참여 제한되면 해당업체의 유기질비료 전체가 참여 제한함

※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참여제한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참여제한 기준에 따름

※ 유기질비료의 생산을 수탁 받은 업체가 생산을 위탁받은 비종이 위반행위로 제재를 받을 경우에는 수탁 받은 업체의 유기질비료(3종) 전체에 본 사업 참여 제한기준을 적용하되, 위탁업체는 생산을 위탁한 비종(3종中1종)에 한해 참여 제한함. 또한, 위반업체 및 수탁업체는 사업 참여 제한기준이 해제될 때까지 OEM을 할 수 없음

[별표 2] 발효시설 및 후숙장 생산능력 산출방법

1. 발효시설

○ 교반식

- 발효조 규격 : 길이 80m 미만과 80m 이상으로 구분 (높이는 2m 이내)
- 연간 회전수 : 길이 80m 미만은 20회전, 80m 이상은 18회전 적용
- 계산식 : (길이 x 폭 x 높이) ÷ 2 x 회전수 x 시설 수 = 톤 x 50 = 포대 수
  * ÷ 2 는 퇴비의 비중을 0.5로 보기 때문에 적용함

○ 통풍식

① 강제통풍식

- 발효조 규격 : 길이(7m), 폭(5m), 높이(2m), 옹벽(20cm) 기준 이내
- 표준설계도에 의한 생산시설(송풍라인 배열 간격 : 60cm이내, 송풍라인 폭 : 15cm 이내)은 규격 기준 초과 인정(높이 : 2m 이내, 전면차단문이 없는 경우 20% 차감)
- 연간 회전수 : 규격기준(70㎥ 이하)은 20회전, 규격기준 초과는 15회전 적용

② 자연통풍식(대패밥, 수피를 80%이상 주원료로 사용)

- 발효조 규격 : 길이(6m), 폭(3m), 높이(2m) 이내, 시설자재는 시멘트블럭(8인치)를 사용하여 양쪽 벽에 공기순환 구멍이 있어야 하며, 발효조와 발효조 사이는 30Cm의 간격을 두어 산소공급을 원활히 해야 함
- 규격 기준 초과 불인정, 전면차단문이 없는 경우 20% 차감
- 연간 회전수 : 브로워 및 송풍시설 없으므로 4회전 적용

③ 계산식(공통) : (길이 x 폭 x 높이)÷ 2 x 연간 회전수 x 발효조 수 x 차단문(유,무) = 톤 x 50 = 포대 수

2. 후숙장(교반식, 강제통풍식)

○ 후숙장 기준 : 비 가림 시설과 바닥시설을 갖춘 시설

○ 높이 산정 기준

- 콘크리트 등 벽이 있는 경우 : 콘크리트 등 벽 높이 + 추가벽면 높이
  * 추가벽면(판넬, 강판 등)은 콘크리트 벽 높이의 2배까지 인정
  * 산정 높이는 4m 미만은 4m로 인정하고, 4m 이상은 1.2까지 인정

○ 연간 생산능력 : 계산식에서 산출된 후숙장 생산능력의 4배(연간 4회전)로 산정

○ 계산식

① 콘크리트 등 벽 높이가 4m 이상이거나, (콘크리트 벽 + 추가벽면)높이가 4m 이상인 경우
= (길이 x 폭 x 높이 x 1.2) ÷ 2 = 톤

② 콘크리트 등 벽 높이가 4m 미만이거나, (콘크리트 벽 + 추가벽면)높이가 4m 미만인 경우
= (길이 x 폭 x 높이(4m) x 1.0) ÷ 2 = 톤

③ 콘크리트 등의 벽이 없는 경우 = (길이 x 폭 x 기둥 높이 ÷ 2) ÷ 2 = 톤

○ 후숙 시설은 그 외 시설과 구획으로 구분되어야 함
  * 후숙시설 증설은 공장부지 내가 아닌 경우 당해공장(농장) 경계선 내에서 인정함
  * 현장 실사 시 충분히 후숙장 기능을 발휘할 수 있을 것

○ 후숙 시설에 기계장치 등이 있을 경우에는 기계장치 등으로부터 2m를 제외함

3. 조사결과 생산능력 산정

○ 생산능력조사(신규 및 변경)는 농협경제지주는 농협계열 업체 등, 비료협동조합은 회원사 등의 생산능력을 조사한 후 상호 점검하여 확정

[별표 3]

포장지 또는 톤백 표기방법

1. 가축분퇴비 또는 퇴비

가. 일반포장지 표기방법

(1) 비 종 명: 전면 상단 중앙에 “가축분퇴비 또는 퇴비”로 표기한다.

(2) 등　　급: (가)의 비종명 우측에 “0등급”으로 표기한다.

(3) 글씨크기: 48포인트 이상, 굵기는 1mm 이상으로 표기한다.

< 포장지 표기 예시 >

전　면

등록번호 :

가축분퇴비 0등급

(상표　　)

(중량)

생산업체명 ○ ○ ○ ○

뒷　면

가축분퇴비

○ 특성(특징)
○ 사용량, 사용방법
○ 보관상 주의사항

생산업자 보증표

※ 포장지에 인쇄하여야 하며, 인쇄된 비종명・등급표시・생산업자 보증표는 수정할 수 없음(스티커 부착, 수기 표기 등 불가). 다만, 등급표시 또는 주의문구는 스티커로 수정할 수 있음

나. 톤백 표기방법

(1) 등　　급 : 생산업자 보증표의 2. 비료의 종류 및 명칭 우측에 “0등급”으로 표기한다.

(2) 글씨크기 : 생산업자 보증표 및 등급표시는 20포인트 이상, 굵기는 1mm 이상으로 한다.

< 톤백 표기 예시 >

<우측상단>

생산업자 보증표(부산물비료)

1. 등록번호 :
2. 비료의 종류 및 명칭 : 가축분퇴비 0등급
3. 실중량 또는 실용량 :
4. 보증성분량 :
5. 원료명 및 배합비율 :
6. 생산연월일 :
7. 유통기간 :
8. 제조장의 소재지 및 명칭 :
9. 사용상·보관상의 주의사항 :

생산업자

주 소 :

전화번호 :

성명 또는 명칭 : (서명 또는 인)

※ 생산업자 보증표는 톤백에 인쇄하거나, 용지, 아크릴판 등에 인쇄하여 톤백에 부착하여야 하며, 인쇄된 생산업자 보증표는 수정할 수 없음(스티커 부착, 수기 표기 등 불가). 다만, 등급표시 또는 주의문구는 스티커로 수정 할 수 있음

2. 아주까리유박을 함유한 가축분퇴비 또는 퇴비

가. 일반포장지 표기방법

(1) 비 종 명 : 가축분퇴비 또는 퇴비와 동일함

(2) 등　　급 : 가축분퇴비 또는 퇴비와 동일함

(3) 글씨크기 : 가축분퇴비 또는 퇴비와 동일함

(4) 주의사항 : 피마자(아주까리)유박 함유 비료의 주의문구 표기방법

○ 농촌진흥청 고시「비료 공정규격설정 및 지정」별표3. 가축분퇴비 및 퇴비의 그 밖의 사항. 4호에 따라 표기

< 포장지 표기 예시 >

전　면

등록번호 :

가축분퇴비 0등급

(상표　　)

(중량)

생산업체명 ○ ○ ○ ○

- 개, 고양이 등이 먹을 경우 폐사할 수 있으니 살포 후 반드시 토양과 잘 섞으세요
- 어린이 손에 닿는 곳에 놓거나 보관하지 마세요
- 농업용 외에는 사용하지 마세요

뒷　면

가축분퇴비

○ 특성(특징)

○ 사용량, 사용방법

○ 보관상 주의사항

생산업자 보증표

나. 톤백 표기방법

(1) 등　　급 : 가축분퇴비 또는 퇴비와 동일함

(2) 글씨크기 : 가축분퇴비 또는 퇴비와 동일함

(3) 주의사항 : 피마자(아주까리)유박 함유 비료의 주의문구 표기방법

○ 농촌진흥청 고시「비료 공정규격설정 및 지정」별표3. 가축분퇴비 및 퇴비의 그 밖의 사항. 4호에 따라 표기

< 톤백 표기 예시 >

<우측상단>

생산업자 보증표(부산물비료)

1. 등록번호 :
2. 비료의 종류 및 명칭 : 가축분퇴비 0등급
3. 실중량 또는 실용량 :
4. 보증성분량 :
5. 원료명 및 배합비율 :
6. 생산연월일 :
7. 유통기간 :
8. 제조장의 소재지 및 명칭 :
9. 사용상·보관상의 주의사항 :

- 개, 고양이 등이 먹을 경우 폐사할 수 있으니 살포 후 반드시 토양과 잘 섞으세요.
- 어린이 손에 닿는 곳에 놓거나 보관하지 마세요
- 농업용 외에는 사용하지 마세요

생산업자

주　　소 :

전화번호 :

성명 또는 명칭 :　　(서명 또는 인)

[별표 4]

생산시설 조사기준

1. 발효시설 : 발효시설이 설치된 건축물을 기준하여 분리된 건축물에 각각 설치되어야 한다. (동일한 건축물 내에 발효시설이 2개 이상 설치된 경우에는 1개 비종의 생산시설로 인정)

2. 후숙시설 : 분리된 건축물에 각각 설치되어야 한다. 다만, 동일한 건축물 내에 설치할 경우에는 칸막이로 명확하게 구분하여야 한다.

3. 생산시설 표시 : 가축분퇴비 및 퇴비 각각의 생산시설 전면에 생산시설명(가축분퇴비 발효시설·가축분퇴비 후숙시설·퇴비 발효시설·퇴비 후숙시설)을 아크릴판 또는 플라스틱판에 인쇄하여 부착하여야 한다.

[별표 5]

품질등급별 평가항목 세부기준

구 분	평가항목 세부기준		
	유기물함량(%)	유기물대질소비	수분함량(%)
특등급	40 이상	35 이하	35 이상 ~ 50 이하
1등급	33 이상	35 이하	55 이하
2등급	30 이상	45 이하	55 이하

※ 3개 항목 모두 만족이어야 함

[별지 제1호 서식]

유기질비료 공급 신청서 (□ 농산물용 / □ 엽연초용 <택1>)

신청인	주 소	시·군·구 읍·면·동 리·통 번지			마을명	
	성 명(법인명)	( )	전화번호	자택 :	핸드폰 :	
	생년월일/성별 (사업자등록번호)	년 월 일 / □ 남 □ 여 ( )	전년동일	□ 동일	경영체등록 (등록번호)	□ 등록완료 □ 등록예정 ( )
	공급 희망조합	조합 가입(□ 시도 내 □ 시도 외)	□ 조합 미가입(시군 내 조합 기재)		조합명	

신청 농지										신청 내용						
순번	읍·면·동	리·통	지번	지목	지적(㎡)	신청면적(㎡)	재배예정 작물,과수	노지/시설	수령	비료의 종류(순번별로 택 1)	품질등급 (특/1/2)	신청물량 (포/20kg)	공급시기 (월)	공급희망업체 (생략가능)	상품명 (생략가능)	비고
1										□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 □가축분퇴비 □퇴비						
2										□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 □가축분퇴비 □퇴비						

주 1) 지번별로 1개의 비종을 신청. 다만, 동일 필지(지번)에 2개 이상 비종이 필요한 경우는 동일 필지를 중복 기재하고, 기재된 각 란에 비종별로 신청면적을 나누어 기재 (단, 신청면적은 본인 농업경영체 등록면적을 초과할 수 없음)
주 2) 전년 신청서와 동일한 경우 체크하고 신청농지 및 신청내용 작성 생략(기존 3~5년간으로 신청한 농가도 반드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주 3) 농업경영체로 등록하였거나 등록 예정인 경우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농가 공급단계에서 경영체 등록여부를 확인하고, 미등록 된 경우는 정부지원 제외
주 4) 수령은 영년생 작물(사과, 배 등)에 한해 기재하고, 연초의 경우에는 황색종 및 버어리종으로 구분 표시
주 5) 비료의 종류는 순번별로 1개만 선택, 가축분퇴비·퇴비는 등급선택(신청등급에 공급물량이 부족한 경우는 다른 등급으로 변경 가능, 등급 미기재는 1등급으로 간주)
주 6) 공급희망업체 및 상품명은 공급받기를 희망하는 상품을 기재(생략 가능), 업체별 생산능력 초과 등 부득이한 경우 달라질 수 있음
주 7) 신청물량은 실제 필요량을 기재하되, 확보 예산, 면적 등을 감안하여 공급관리협의회에서 최종 결정됨에 따라 농가 신청량 보다 공급량이 적을 수 있음
주 8) 조합에 가입한 경우 신청 농지를 관할하는 시도(가급적 시군구)내에 소재하는 자신의 가입 조합을 지정(타 시도 조합을 지정하는 경우는 해당 조합가입 확인서 제출), 엽연초 농가는 인근 시도의 엽연초 조합지정 가능, 조합 미가입자는 시군구내에 소재하는 조합 선택
주 9) 공급 시기는 농업인이 공급을 희망하는 월을 기재(단, 공급 시기 1~9월 신청자가 9월말까지 공급받지 않은 물량은 포기물량으로 간주)
주10) 필지수가 많은 경우는 상기 신청농지 및 신청내용을 별지로 작성하여 첨부 가능
주11) 농산물과 엽연초를 모두 재배하는 경우는 동 신청서를 2부(농산물용 1부, 엽연초용 1부)를 작성 제출
주12) 신청물량은 10a당 2,000㎏을 초과할 수 없음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26조제1항의 규정 및 친환경 농자재 지원사업(유기질비료 지원 지침)에 의하여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 및 비료공급 기관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고유식별번호(생년월일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상기와 같이 친환경농자재 지원사업(유기질비료 지원)의 비료를 신청하며, 비료공급 후 자부담금 납부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날인)

○○읍·면·동장 귀하

신 청 농 지										신 청 내 용						
순번	읍·면·동	리·통	지번	지목	지적(㎡)	신청면적(㎡)	재배예정 작물,과수	노지/시설	수령	비료의 종류(순번별로 택 1)	품질등급(특/1/2)	신청물량(포/20kg)	공급시기(월)	공급희망업체(생략가능)	상품명(생략가능)	비고
3										□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 □가축분퇴비 □퇴비						
4										□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 □가축분퇴비 □퇴비						
5										□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 □가축분퇴비 □퇴비						
6										□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 □가축분퇴비 □퇴비						
7										□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 □가축분퇴비 □퇴비						
8										□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 □가축분퇴비 □퇴비						
9										□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 □가축분퇴비 □퇴비						
10										□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 □가축분퇴비 □퇴비						

<붙임> :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업인 지원을 위한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추진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유효 기간 내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고육식별번호(생년월일 등) 수집·이용 동의 사항 >

1.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업인 지원을 위한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추진시, 신청자의 본인확인, 신청대상물에 대한 소유권 등 확인, 년차별 지원내역 확인 및 농림축산식품사업 지원내역확인 등의 관리
2. 수집하려는 고유식별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생년월일, 성별, 사업자등록번호, 농업경영체등록번호
3. 고유식별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유효 기간 내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농림축산식품사업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농림축산식품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 기간 내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별지 제2호 서식]

부숙유기질비료 생산능력 조사(양식)

1. 일반현황

업체명(업체코드)	성명(대표자명)	부지면적 m^2
주소	전화	건물면적 m^2

* 사진 : 건물, 발효장, 후숙장 등 3매 첨부

2. 발효장 규모

교반식	길이 × 폭 × 높이/2 × 연간회전수 × 시설수 = ( )
강제 통풍식	길이 × 폭 × 높이/2 × 연간회전수 × 발효조수 × 문(유무) = ( )
자연 통풍식	길이 × 폭 × 높이/2 × 연간회전수 × 발효조수 × 문(유무) = ( )

3. 후숙장 규모

콘크리트벽이 있는 경우	길이 × 폭 × 높이 = ( )
콘크리트벽이 없는 경우	길이 × 폭 × 높이/2 = ( )

4. 기 타

특이사항 등	

20 . . .

생산업체 : (서명 또는 날인)

조 사 자 : (시.군) (서명 또는 날인)

(농협) (서명 또는 날인)

(비료협동조합) (서명 또는 날인)

[별지 제3호 서식]

가축분퇴비 및 퇴비 생산시설 조사표

업체	상호명			
	대표자		전화번호	
	주소			

평가항목		조사기준	조사결과	비고
발효시설	시설기준	- 분리된 건축물에 설치되어야 함 ・동일한 건축물내에 발효시설이 2개 이상일 경우 1개 비종의 생산시설로 인정 ・발효시설이 설치된 건축물을 기준으로 평가	- 가축분퇴비 : 동 - 퇴 비 : 동	
	발효기수	- 교반식, 통풍식, 기타	- 가축분퇴비 ・교반식 : 기 ・통풍식 : 기 - 퇴비 ・교반식 : 기 ・통풍식 : 기	
후숙시설	시설기준	- 분리된 건축물에 설치되어야 하나, 동일 건축물일 경우에는 칸막이로 명확히 구분되어야 함 ・칸막이는 출입구가 2개 이상인 건축물의 벽과 벽 사이를 완전히 차단한 경우만 인정		
생산시설 표시		- 가축분퇴비 및 퇴비의 각 생산시설 전면에 생산시설명을 아크릴판 또는 플라스틱판에 인쇄하여 부착		

상기 가축분퇴비 및 퇴비 생산시설 조사결과를 확인함

20 년 월 일

조사자 소속 : 성명 : (인)

확인자 소속 : 성명 : (인)

[별지 제4호 서식]

비료의 제조 원료 장부(비료생산업자용)

원료 구입·수입 연월일	비료의 종류	원료의 종류	원료의 구입처				원료의 수량 (kg 또는 ℓ)	비고
			업체명	주소	전화번호	생산국가		

장부 기재방법

1. '원료 구입·수입 연월일'은 원료를 구입, 무상확보하거나 수입할 때마다 그 일자(예 : 2021. 1. 1.)를 기재하되,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통관 연월일을 기재하고, 이를 기준으로 나머지 항목을 작성합니다.
2. '비료의 종류'는 구입하거나 수입한 원료를 사용하여 제조하는 비료의 종류(예 : 가축분퇴비, 퇴비, 혼합유박, 혼합유기질 등)를 기재합니다.
3. '원료의 종류'는 짚류, 왕겨, 톱밥, 돈분뇨, 우분뇨, 골분, 채종유박 등 구입하거나 수입한 원료의 종류를 모두 기재합니다.
4. '원료의 구입처'는 원료의 공급 업체명, 그 주소와 전화번호, 생산 국가명을 기재합니다.
5. '원료의 수량'은 구입하거나 수입한 원료의 수량을 각 원료별로 기재합니다.
6. 다른 업체가 생산한 발효과정이 끝난 완제품은 비료의 제조 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료 구입서류는 별도 보관

[별지 제5호 서식]

생 산 일 지

□ 비종명 : ○ ○ ○ ○

(단위 : 톤)

원료 투입 년월일	구분	원료투입					부숙 및 후숙기간			생산량 (생산일자)	비 고
		우분	톱밥	원료 C	원료 D	계	부숙기간 (소요일수)	후숙기간 (소요일수)	합계 (총소요일수)		
2021. 9.10	투입량(톤)	4	3	2	1	10	9.15~9.30 (15)	10.1~11.29 (60)	9.15~11.29 (75)	5톤 ('21.11.29)	
	투입비율 (%)	40	30	20	10	100 %					
	투입량(톤)						~ ( )	~ ( )	~ ( )	~ ( )	
	투입비율 (%)										
	투입량(톤)						( )	( )	( )	( )	
	투입비율 (%)										
	투입량(톤)						( )	( )	( )	( )	
	투입비율 (%)										

주) 1 원료투입량은 원료장부의 반입량

2 유기질비료는 부숙 및 후숙기간 대신 생산기간을 적을 것

[별지 제6호 서식]

판 매 대 장

□ 제품명 : ○○○○

(단위 : 원, 포)

제품생산			출 하					납품처 (공급지역)	재고량 (포)
생산일자 (포장일자)	생산량		출하일자	포장단위 (kg)	출하단가 (원)	출하량 (포)	출하금액 (원)		
	톤	포							
’21.8.14	7	350	11월20일	20	3,000	100	300,000	○○농협	250
			11월25일	20	3,000	250	750,000	○○농협	0
’21.8.15	10	500	11월21일	20	3,000	250	750,000	○○농협	250
			11월22일	20	3,000	250	750,000	○○농협	0
월 계									
누 계									

주) 1. 출하단가는 운송비 제외가격임

2. 생산량의 “톤”란은 생산일지의 생산일자(포장일자)별 생산량(포장량)과 일치

3. 톤백으로 판매 시 포란에 20㎏ 단위로 환산하여 기입, 포장단위 란에는 톤백판매로 기입

4. 판매대장은 생산일자(포장일자)를 기준으로 작성(표 안의 예 참조)

14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1. 사업개요

가. 목 적

○ 유효규산 함량이 낮은 농경지 및 산성토양에 토양개량제(규산·석회)를 공급함으로써 토양을 개량하고, 지력을 유지·보전하여 친환경농업 실천 기반 조성

나. 근거법령 :「농지법」제21조(토양의 개량·보전)

다. 성과목표 및 지표

○ 2022년까지 전국 논토양의 유효규산 함량을 157ppm으로 높이고, 밭 토양의 산도를 pH6.5로 토양을 개량하여 친환경농업 실천기반 조성

성 과 지 표	2022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 정 방 식
		'19	'20	'21		
▪ 논토양의 유효규산 함량(ppm)	157	157	157	157	매년 2월	전국 시·군 농업기술센터의 해당년도 토양검정결과(농과원 흙토람 토양검정결과 활용)
▪ 밭토양의 토양 산도(pH)	6.5	6.5	6.5	6.5	매년 2월	전국 시·군 농업기술센터의 해당년도 토양검정결과(농과원 흙토람 토양검정결과 활용)

2. 2022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가. 사업대상자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본인의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된 농지를 대상으로 토양개량제를 신청한 농업경영체

나. 지원자격 및 요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서 토양개량제(규산, 석회) 공급신청서를 작성하여 농지 소재지 읍·면·동에 토양개량제 공급을 신청한 자

다. 지원대상

○ 규산 및 석회질비료

- 규산 : 유효규산 함량이 157ppm미만인 규산 부족 논 및 화산회 토양의 밭
- 석회 : 산도(pH) 6.5미만의 산성 밭(과수원 등 포함) 및 중금속 오염농경지

* 토양검정결과 논에도 석회(패화석 포함) 공급이 필요한 경우 공급 가능함

** 예산여건을 감안하여 국가관리 간척지 중 석회포화도 60% 미만인 간척지구의 농업을 목적으로 임대된 농지에 '부산석고'를 지원할 수 있음(시범사업에 한함)

※ 부산석고의 경우 '22년 1월경 수요조사 예정

라.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농가신청에 의한 규산·석회질비료 구입, 공급 및 공동살포에 소요되는 제비용

* 개별살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마. 지원형태 및 사업 의무량

○ 지원형태 : 지자체 경상보조

○ 지원조건(안)

- 토양개량제 : (규산) 국고보조 60%, 지방비 40%, (석회) 국고보조 80%, 지방비 20%
- 공동살포 : 국고보조(최대지원단가) 400원/20kg + 지방비 등 000원/20kg

* 지역농협, 농업경영체도 여건 등에 따라 공동살포 일부 비용 부담

* 공동살포 국고보조는 전체 살포비용의 50% 초과 지원될 수 없음

예) 공동살포비 500원/20kg인 경우, 국고보조 250원/20kg + 지방비 등 250원/20kg

1,000원/20kg인 경우, 국고보조 400원/20kg + 지방비 등 600원/20kg

바.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토양개량제 공급량은 시·군 농업기술센터의 법정 리·동 단위 토양검정 결과에 따라 단위면적당 소요량을 산정

○ 농가별 공급량은 산정한 법정 리·동별 단위면적당 소요량과 농가신청의 면적을 산정하여 결정

○ 단위면적당 소요량에 대해 이견이 있는 시·도(시·군·구)는 농식품부에 조정을 요청하고 농식품부는 예산사정을 감안하여 전문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확정

3.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가. 사업신청단계

시·도(시·군·구)

○ 지자체는 농업경영체(농업인과 농업법인)에게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을 안내하고 직접 또는 마을이장을 통해 토양개량제 공급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배부함

○ 중금속 오염 농산물이 생산된 농지 및 중금속 오염농지의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농지 소유자 또는 경작자에게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을 신청하도록 하고, 신청된 농지를 지원대상지로 우선 선정

농업 경영체

○ 농업경영체(농업인과 농업법인)는 토양개량제 공급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농지소재지 읍·면·동 또는 마을이장에게 제출. 마을이장이 농업인의 편의를 위해 토양개량제 공급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 읍·면·동에 제출하여야 함

○ 토양개량제는 농업경영체의 신청을 받아 공급하므로 농업경영체가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농업경영체 등록(주소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을 해야 함

- 본인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된 농지를 대상으로 지원하므로 경작면적이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경영체 등록정보 현행화 지속 필요

○ 변경 및 추가 신청

- 대상 사업연도 : 2022년
- 변경 및 추가신청 기간 : 사업 전년도 11. 9.~12. 8.(30일간)

* 변경 및 추가신청은 농업인이 연중 제출한 신청서(변경)를 읍·면·동(시·군)별로 보관하고 있다가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 개방 기간에 입력토록 함

*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 운영기관은 읍·면·동(시·군)에서 시스템 입력에 차질이 없도록 시스템 관리 및 운영 협조

나. 사업자 선정단계

농협경제지주(지역조합)

○ 농협경제지주는 토양개량제 구매 및 공급계약 체결

- 구매계약 체결에 따른 공급단가를 결정하여 시·도별 공급물량 확정

* 석회 구매업체 조건 : 석회질비료의 품질관리 및 우수제품 공급을 위하여 석회고토(입상)는 우수단체 표준제품(입상)을 우선 구매·공급

* 패화석은 GR인증제품(입상)을 우선 구매·공급

< 제 외 대 상 >

- 임원 또는 대표자가 보조금을 횡령하여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공급계체결 시까지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업체
- 공급계약체결일로부터 3년 이내에 관계기관에 허위 자료를 제출하여 보조금이 부당하게 지급되도록 한 업체
- 국세 및 지방세 등 세금 미납업체
- 「비료관리법시행령」 제12조에 따른 비료생산업의 시설 기타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업체
- 2021. 12월말 까지 [별표 1]의 사업 참여 제한기준에서 정한 제한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업체

다.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농협(경제지주, 지역조합)

○ 농협경제지주는 적기에 공급이 가능하도록 사전 준비 철저

- 지역별 공급계획량에 대한 토양개량제의 종류별(비종별), 월별 소요량을 근거로 적기에 공급
- 토양개량제 공급가격은 종류별(비종별)로 전국 동일가격으로 공급함
- 친환경인증농가에게는 친환경인증농가가 사용 가능한 물질을 조립제로 사용한 제품을 공급

· 친환경인증농가에 신청물량이 차질 없이 공급될 수 있도록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공급

○ 지역농협장은 지역별(읍·면·동, 리별, 마을별 등) 공급계획량을 농협중앙회 시·군지부에서 통보받아 농가에 토양개량제 공급

- 공급단위 : 포대(20kg), 톤백(500, 1,000kg)

* 톤백 공급 시 비료생산업자 보증표를 톤백 우측상단에 부착하여야 함

○ 운송업자 및 공급업자는 물품을 현지에 수송, 해당지역의 마을이장에게 인계하고, 이장으로부터 토양개량제 공급 확인서를 받아 지역농협장에게 제출

- 지역농협은 세부 착지별 300포(20kg기준) 이상 공급할 경우에는 반드시 현장 확인을 하고, 300포 이하 공급할 경우의 인수확인은 조합자체 계획을 수립하여 확인(톤백 공급일 경우 반드시 현장 확인)

* 마을 이장 등이 지역농협에 스마트폰 등을 이용하여 사진 전송한 것도 현장 확인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음. 단, 지역농협 담당자는 전송사진을 출력하여 증거로 확보

○ 마을이장은 공급업자로부터 인수받은 물량을 신청자별 공급대상면적 및 공급계획량에 의거 배분하고, 농가별로 인수물량과 서명을 받은 공급확인서[별지 제2호 서식]를 지역농협장에게 제출

- 농가 개별살포의 경우, 마을이장은 농가 살포여부를 점검하여 살포 확인서[별지 제2-1호 서식]를 6월말, 11월말까지 지역농협장에게 제출

- 공동살포의 경우 공동살포 대행자가 살포여부에 관해 농가의 확인을 받은 후 공동살포확인서[별지 제2-2호 서식]를 지역농협장에게 제출

- 관외 거주자에 대한 공급 물량도 공동살포를 적용하되, 관외 거주자가 공동살포를 원하지 않을 경우 지역농협장(또는 마을이장)에게 인도하고, 경작자는 비료를 수령하여 개별살포 실시

농촌진흥청(농과원), 시·도(시·군·구)

○ 토양개량제 공급량은 시·군농업기술센터에서 토양검정 실시결과에 따라 입력된 흙토람 자료를 활용하여 농진청(농과원)에서 법정리·동 단위로 토양개량제 소요량을 산정하고 시·군 농업기술센터와 협의를 거쳐 Agrix에 제공

○ 단위면적당 소요량에 대해 이견이 있는 시·도(시·군·구)는 농식품부에 조정을 요청('22년 사업, 11월말)하고 농식품부는 예산사정을 감안하여 전문기관과 협의를 거쳐 확정

* 2023(2024)년도 공급대상지역에 대한 법정리·동별 토양개량제 소요량은 농진청(농과원)에서 2022(2023)년 11월 초순까지 소요량을 산정하여 Agrix에서 활용토록 제공

(단, 2024년 토양개량제 소요량은 흙토람 정보화 사업 반영결과에 따라 2023년 10월 초순까지 산정할 수 있음)

○ 지자체는 지역별(읍·면·동, 리별, 마을별 등) 공급계획량을 농협중앙회 시·군지부에 유선 또는 공문 통보하여 지역농협을 통한 토양개량제 공급 협조

○ 지자체는 농협에 신청물량 전달 시 지역별로 친환경인증농가의 신청물량이 전달되어 공급될 수 있도록 협조

○ 각 농업기술센터는, 농진청의 협조를 받아, 대표필지를 선정하고, 매년 익년도 공급대상지역을 대상으로 검정실시

- 각 시군에서는 매년 초 익년도 토양개량제 공급대상지역(읍・면・동)을 확정하고, 시군 농업기술센터에 송부하여 토양검정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

  * 농촌진흥청(식량산업기술팀 및 토양비료과)에서는 토양개량제 공급지역의 검정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지도 및 교육 추진

  * Agrix 운영팀은 기본**소요**량이 적용된 지역과 검정을 통한 적정 소요량이 추천된 지역을 구분하여 토양개량제 소요량 추천 결과를 농식품부에 보고

○ 시장・군수・구청장은 토양개량제 살포와 관련하여 공동살포계획을 수립하고, 원활한 토양개량제 살포를 위하여 토양개량제가 농업경영체에 공급되기 전에 공동살포운영위원회가 정한 공동살포 대행자 선정방법에 따라 대행자 선정

- 공동살포계획은 공동살포 및 개별살포 대상 필지의 확인, 공동살포 비용 결정, 공동살포운영위원회 구성, 공동살포 추진일정 등을 포함
- 시장・군수・구청장은 공동살포계획, 공동살포 운영위원회가 결정한 공동살포 지역의 구획 및 공동살포대행자 선정결과를 농협중앙회 시・군지부 및 지역농협장에게 통보
- 마을이장 등 경작자 대표는 시・군・구청장이 주관하는 토양개량제 공동살포 작업 및 지역농협장이 담당하는 살포작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 시장・군수・구청장은 공동살포와 관련한 주요 의사결정을 위하여 토양개량제 공동살포운영위원회를 구성

- 공동살포운영위원회는 지자체 및 농업기술센터 공무원, 농협 임직원, 이장, 작목반장 등으로 구성하고 구성인원은 7명 이상으로 함.
- 공동살포운영위원회의 결정사항은 토양개량제 공동살포 지역(2~5개 구역) 구획, 관내 특정 지역농협의 공동살포 인정여부 및 대행자 선정방법 등을 결정

* 공동살포 지역의 구획은 반드시 인근 지역을 묶어서 구획할 것을 요하지 아니하며, 관내의 살포작업이 어려운 필지가(예. 밭) 구획된 지역에 골고루 배분되도록 노력

* 관내 특정 지역농협이 관할지역의 공동살포를 계획하고 공동살포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 지역 구획대상에서 제외.

* 관내 특정 지역농협에서 공동살포를 하고자 할 경우 관할지역 내 토양개량제 공급 필지(개별살포 필지 제외)를 모두 포함해야 하고, 공동살포 대상 필지는 당해 시군의 논면적 대비 밭면적 비율에 해당하는 밭 면적을 공동살포 대상으로 확보하여야 함(관할구역내 밭 면적이 부족할 경우, 공동살포 운영위원회의 협조 하에, 타 지역을 포함하여 공동살포 밭 면적 확보 필요). 다만 공동살포운영위원회가 지역여건상 밭면적을 확보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밭면적 확보 조건은 제외 가능

- 공동살포 대행자는 농축협, 영농법인, 농업회사법인, 작목반, 공급업체, 기타 살포업체 등에서 선정하되 살포능력, 지역농업인의 선호도, 작업단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

* 공동살포율을 높이기 위해 지역내 규산질·석회질 토양개량제 모두를 살포할 수 있는 공동살포대행자를 선정해야 함

** 단, 공동살포 지원물량은 공동살포 대행자를 구성하는 개인이 개별살포 하여서는 아니됨

라. 자금배정 및 살포 단계

시·도(시·군·구)

○ 시・군・구는 분기별 토양개량제 공급계획에 따라 농협중앙회 시・군지부와 협의하여 읍・면・동 및 지역농협을 통하여 토양개량제를 농가에 공급하고, 공급결과에 따라 농협중앙회 시・군지부에 보조금 지급

- 시장·군수·구청장은 토양개량제 보조금을 교부할 경우에는 농협에서 토양개량제 공급확인서(농가별 물량과 서명이 모두 확인된 경우에 한함)를 공동살포 관련 보조금을 교부할 경우 공동살포확인서를 제출토록 함

-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농협이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한 토양개량제 공급확인서 수령・확인 후 토양개량제 보조금을 지급하고, 공동살포 확인서 수령·확인 후 공동살포 보조금 지급

- 시·군·구는 지방비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불가피하게 지방비 확보가 지연될 경우에는 국고보조금 우선 지급가능

농협(경제지주, 지역조합)

○ 농협중앙회 시·군지부장은 농협 전산시스템의 토양개량제 비종별 공급자료[토양개량제 공급확인서(농가별 물량과 서명이 모두 확인된 경우에 한함)]를 첨부하여 매 분기 익월 15일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조금 지급 신청

<공동살포>

○ 지역농협장은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공동살포계획, 공동살포 운영위원회가 결정한 공동살포 지역의 구획 및 선정된 대행자를 반영한 공동살포지원 세부계획을 수립 또는 확인하여 토양개량제 적기공급 추진

* 지역농협에서 공동살포를 계획하여 시·군·구의 공동살포 구획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지역의 구획 및 대행자 선정의 내용은 적용받지 아니함

○ 공동살포 대행자는 공동살포 완료후 공동살포확인서[별지 2-2호 서식]에 살포 대상 농업경영체 및 현장확인 가능한 자로부터 살포확인을 받아 지역농협장에게 제출

○ 지역농협장은 공동살포 대행자로부터 제출 받은 공동살포확인서에 따라 실제 살포여부를 최종 확인한 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조금 지급 신청

마. 이행점검단계

《제재》

시·도(시·군·구)

○ 시장·군수·구청장은 상·하반기 현장점검 후 반기별로 공동살포 및 개별살포 결과 등에 관한 이행점검 결과를 농식품부에 보고

* 상반기 살포 점검 시 농식품부의 계획에 따라 지자체간 교차점검 실시

<공동살포>

○ 시장·군수·구청장은 토양개량제 공동살포 대행자(지역농협 공동살포의 경우 지역농협 포함)로부터 주기적으로 살포 진행여부를 보고 받음

- 토양개량제 공동살포 대행자가 살포여부를 허위보고 하였을 경우 해당 살포 대행자는 향후 3년간 살포대행자 선정에서 제외

<개별살포>

○ 토양개량제를 미살포(방치)하거나 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농업인은 다음 주기(3년 주기) 공급대상자에서 제외

- 1차 확인(방치 우려) : 농가와 협의하여 살포기간을 지정하여 살포하도록 조치(살포예정일 확정)

* 다음 작기 사용을 희망하는 등 살포기간이 길어지는 경우 기한(6개월 이내)을 정하여 분실·훼손되지 않도록 보관·포장 등을 하도록 조치(보관·포장 예정일 확정)

- 2차 확인(조치사항 미이행) : 살포 기간 내에 살포하지 않거나, 조치사항 미 이행시 다음 주기 지원 대상에서 제외

○ 미살포(방치) 물량에 대한 처리

- 미살포(방치)된 물량은 다음 연도 살포대상 농지에 살포하거나 기존 농가 중 추가살포를 희망하는 농가에 제공하여 살포

○ 미살포(방치) 확인, 해당 물량에 대한 처리 등은 토양개량제 미살포(방치) 확인서 [별지 제3호 서식] 활용

○ 미살포(방치) 농가에 대한 이력관리 기능을 Agrix 시스템에 반영하여 다음 주기 공급 시 지원에서 제외하도록 조치

- 상반기 및 하반기 토양개량제 살포시기 이후에 현장 확인 등 조치(5월, 11월)

《품질 및 유통단속 검사》

1) 품질검사

○ 검사기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 지방자치단체(시·군·구)

○ 대상업체 : 공급업체로 선정되어 농협과 계약한 업체

○ 검사내용 : 비료공정규격 준수여부 등 적합여부

○ 검사시기 : 업체별 연 1회(비료 생산 및 판매 성수기) 이상. 단, 민원 발생 등 필요시 수시로 검사할 수 있음

○ 시료채취 및 송부

- 시장·군수·구청장은 대상업체의 검사용 시료를「비료의 품질검사방법 및 시료채취기준」(농진청고시)에 따라 채취하여 농촌진흥청장이 지정·고시한 비료의 시험연구기관(이하“시험연구기관”이라 한다)에 검사 의뢰

- 필요시 농관원에서 직접 시료를 채취하여 검사할 수 있음

○ 검사성적 통보

- 시험연구기관의 장은 검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검사를 의뢰한 농관원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함
- 농관원장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검사성적이 부적합할 경우에는 해당 업체 명단과 부적합 내역을 농협경제지주에 즉시 통보

* 농협경제지주에 통보 시 기준미달업체 명단 및 판정결과 등 내역을 구체적으로 알려줌으로써 신속·투명한 조치를 하도록 함

○ 비료공정규격 등 위반 시 조치사항

- 시장·군수·구청장은 위반업체에 대하여 「비료관리법」에 따라 행정처분 등 조치
- 농협경제지주는 농관원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부적합 내역을 통보 받은 즉시 위반업체의 비료를 공급중단·회수하고, 사업참여 제한 등 조치

2) 유통단속 검사

○ 농관원장, 시장·군수·구청장은 비료의 품질검사 이외에 「비료관리법」 및 본 사업 지침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는 유통단속검사를 실시

○ 유통단속검사는 「비료관리법」 및 본 사업 지침에 따라 실시 및 조치

○ 농관원장, 시장·군수·구청장은 유통단속검사 실시결과, 위반사항을 적발할 경우에는 농관원장 및 농협경제지주에게 지체 없이 통보

3) 공급업체 보조사업 참여제한기준

○ 공급업체 보조사업 참여제한기준 적용은 품질검사 또는 유통단속검사 결과를 [별표1]의 위반사항에 적용하여 제한

- 시장·군수·구청장의 행청처분 등 조치결과를 적용하지 않고, 위반사항 자체를 반영하여 참여제한기준을 적용함

《사후관리》

농림축산식품부

○ 토양개량제 공급 및 살포 등 제반업무에 대한 평가실시

시·도(시·군·구)

○ 토양개량제 신청농가에 토양개량제를 공급하고, 공급된 토양개량제가 신청 농지에 살포될 수 있도록 현장지도 및 점검 실시

- 현장 점검에서 문제점과 건의사항 등 의견을 수렴하여 현장조치하고, 필요시 개선방안 검토

○ 읍·면·동장은 토양개량제 신청농가가 공급을 받았는지, 공동살포 대행자가 정상적으로 살포를 하였는지, 개별살포 농가가 토양개량제를 신청농지에 살포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미살포 시 살포대책 마련 및 추진

《추가신청 및 공급》

○ 농업인의 미수령 및 미살포 방치물량 살포를 위한 사업 추가 신청 및 공급

*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과 농협시스템을 연계하여 사업 추가 신청 및 공급

○ 시·군·구(읍·면·동)에서는 농협의 토양개량제 공급결과를 확인하고 미수령 및 미살포 방치물량은 회수하여 추가신청을 받아 공급

- 사업 추가신청결과는 Agrix시스템에 입력하고 추가공급대상 및 물량을 농협에 통보

농협(경제지주, 지역조합)

○ 농협(지역조합)에서는 사업대상자의 경작관계 변경 등으로 미수령 물량은 지자체에 통보하여 추가신청을 받아 공급토록 통보

- 시·군·구청의 사업 추가신청결과에 따라 비료 공급

바. 성과측정단계

《성과지표측정》

○ 토양개량제 살포결과에 대한 토양개량성과 측정은 전국 농경지 중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검정하여 흙토람 시스템에 입력한 결과를 근거로 산정

- (측정항목) 규산의 경우는 유효규산함량, 석회(패화석)의 경우 산성도
- 전국 농경지의 토양개량을 위해 전 농경지를 대상으로 농업경영체의 신청을 받아 토양개량제를 공급함을 감안할 때 개량의 목표는 전국 농경지 개량 효과 평균으로 설정

○ 각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촌진흥청(기술보급과)의 협조를 받아 농경지 토양검정을 실시하고 검정결과를 흙토람 시스템에 입력

○ 농촌진흥청(토양비료과)에서는 흙토람의 전년도 토양검정결과를 토대로 토양개량효과 산정(익년 2월말까지)

○ 농협경제지주는 토양개량제 공급에 대한 만족도 등 의견수렴

- 농가, 토양개량제 공급 담당 공무원 및 농협직원을 대상으로 11월에 실시

《익년도 토양개량제 공동살포비 차등지원》

○ 시·도별 친환경농업 확대를 위한 의지·노력·성과에 대한 종합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비 차등지원

-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의 사업비 규모(전년대비 증감율), 토양의 유기물함량, pH, 유기물 공급량, 토양검정·시비처방, 유기물 토양 환원 등 토양환경 개선 및 비료품질관리 개선관련 추진 실적과 노력 평가(당해년도 세부 평가지표 변경에 따라 일부 조정 가능)

○ 기관별 평가 협조사항(당해년도 세부 평가지표 변경에 따라 일부 조정 가능)

- 시·도(시군구) :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의 사업비 규모(전년대비 증감율), 교육·홍보실적, 지자체의 노력(볏짚환원율, 녹비작물재배면적) 등을 제출
- 농촌진흥청(농과원) : 토양환경 적정성(유기물, pH), 토양검정시비처방서 발급비율 등
- 농협경제지주 : 토양검정 시비처방서 발급비율, 유기질비료 공급증가율, 화학비료 사용량 절감율 등

사.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사업평가》

○ 전년도 규산시용 필지에 대하여는 유효규산함량, 전년도 석회(패화석)시용 필지에 대하여는 토양산도를 측정하여 목표치 달성여부 평가

《환 류》

○ 토양개량제 신청 및 공급이 집중되는 시기에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문제점, 건의사항 등 의견을 수렴하여 현장조치하고 필요시 개선방안 검토

4. 2023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가. 2023~2025년(3년 1주기) 사업 신규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 안내

○ 신규신청 기간 : 2022. 1.～4. *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지원대상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서 자신의 농업경영체 정보에 등록된 농지를 대상으로 토양개량제를 신청한 농업경영체

나. 2023년 사업 변경 및 추가 신청

○ 변경 및 추가신청 기간 : 2022. 11. 9.~12. 8.(30일간) *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토양개량제 공급량은 시・군농업기술센터의 지역별 토양검정결과를 활용하여 농진청(토양비료과)에서 흙토람 시스템을 통해 법정리・동별 토양개량제 소요량을 산정하여 Agrix시스템에 지원

○ 기타 사항은 2022년도 농림사업시행지침서에 의함

[별표 1]

공급업체 보조사업 참여 제한기준(토양개량제)

위 반 사 항	사업참여 제한기준	비 고
1. 정당한 사유 없이 검사시료 채취 또는 자료 및 서류의 제출 요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때	- 1회 : 1년 - 2회 : 2년	횟수는 위반 후 1년 기준
2. 유해성분량 기준초과 - 1% 이상 10% 미만 - 10% 이상 20% 미만 - 20% 이상	 - 1년 - 2년 - 3년	
3-1. 주성분량 또는 보증성분량(중량 포함) 기준미달 - 1% 이상 10% 미만 - 10% 이상 30% 미만 - 30% 이상	 - 6개월 - 1년 - 2년	
3-2 그 밖의 규격(분말도, 붕괴도, 염분, 입도, 수분 등) 기준미달 - 1% 이상 10% 미만 - 10% 이상 30% 미만 - 30% 이상	 - 6개월 - 1년 - 2년	
4. 비료공정규격에서 정하는 원료외의 물질을 사용하여 제조한 비료를 공급한 때	- 2년	「비료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제2항 적용
5. 등록한 제조원료 외의 물질을 사용하여 제조한 비료를 양도·진열·판매·유통 또는 공급한 경우	- 2년	〃
6. 비료생산업 등록기준 미달	- 1년	〃
7. 사업 참여 신청 시 허위서류를 제출한 때	- 1년	
8. 공급한 비료의 품질이 불량하여 사용한 농작물에 피해가 발생한 때	- 1년	
9. 무포장(벌크 형태 등) 형태로 판매하는 경우	- 2년	
10. 보증표시 위반 가. 보증표시를 하였으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표시하지 아니한 비료를 생산하여 보관·양도·진열·판매·유통 또는 공급한 경우 1) 생산년월일 2) 사용상·보관상 주의사항 3) 생산업자 주소 및 명칭	-6개월	

위 반 사 항	사업참여 제한기준	비 고
나. 보증표시를 거짓으로 하였거나, 전부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표시하지 아니한 비료를 생산하여 보관·양도·진열·판매·유통 또는 공급한 경우 1) 등록번호 2) 비료의 종류 및 명칭 3) 실중량 또는 실용량 4) 보증성분량 5) 원료명 및 배합비율 6) 제조장의 소재지 및 명칭	- 1년	
11. 톤백으로 공급할 경우 - 비료생산업자 보증표를 톤백에 부착하지 아니한 경우	- 1년	

※ 이 사업 참여 제한기준은 위반업체의 법인명칭 또는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됨(위반한 당해 제조장에 대하여 적용)

※ 2개 비종 이상의 비료(토양개량제)를 공급하는 업체에서 한 가지 비종의 비료가 위반되더라도 사업 참여 제한은 2개 비종 이상 비료에 모두 적용함

※ 위 제한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이라도「비료관리법」에 위반하는 사안으로「비료관리법」의 처분이 영업정지 1월·2월·3월인 경우는 각각 1년·2년·3년의 사업 참여 제한을 적용함

※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참여제한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참여제한기준에 따름

※ 사업참여 제한기간이 6개월 이내인 업체로서 다음연도 사업의 계약대상이 되는 경우 해당업체의 전년 계약물량의 30%를 축소하여 계약할 수 있음(다음년도 사업계약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적용하지 않음)

[별표 2]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추진 체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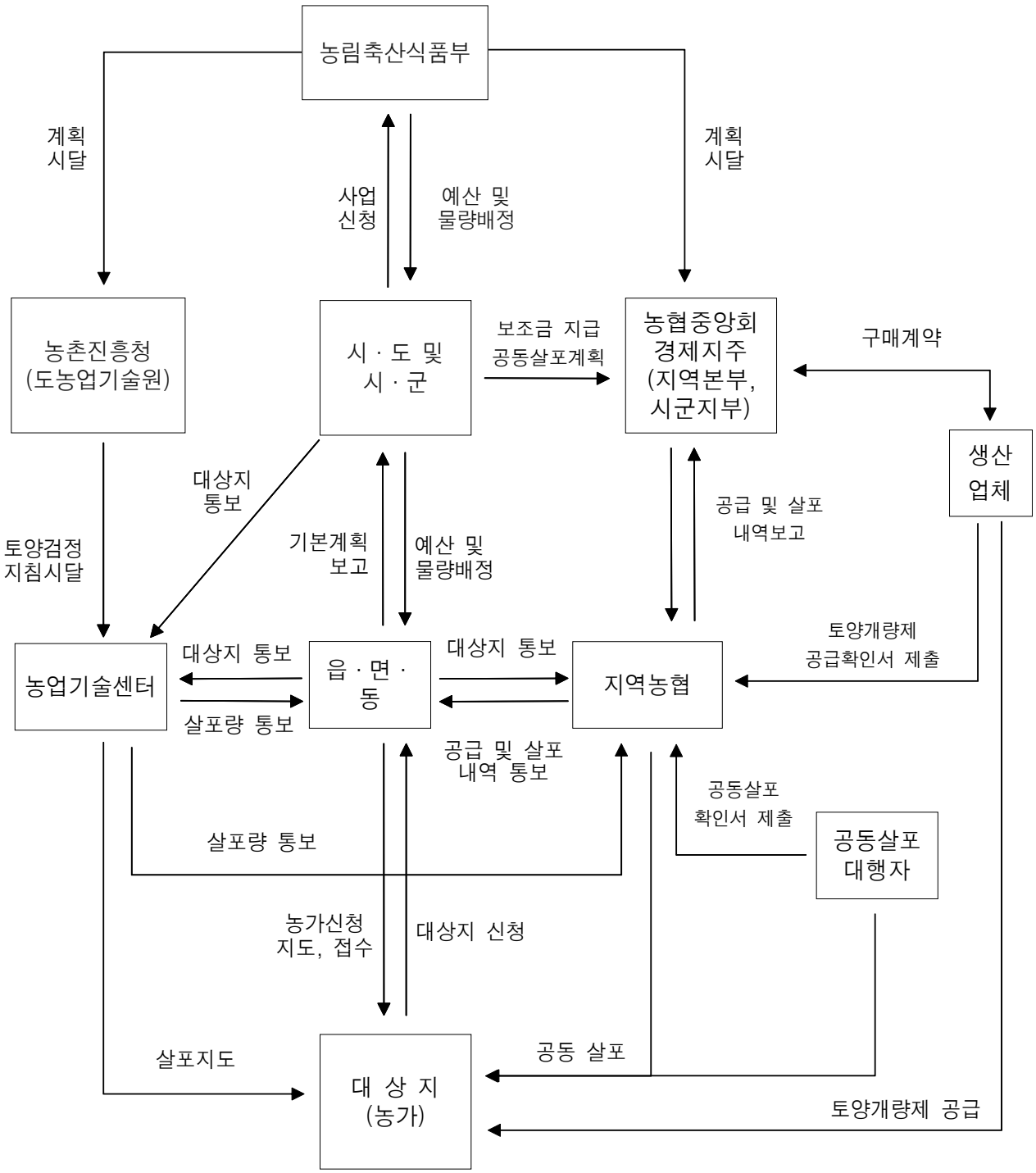

〔별지 제1호 서식〕

<앞면>

토양개량제 공급 신청서

신청인	주 소	시·군·구 읍·면·동 리·통 번지	마을명	
	성 명(법인명)	( )	전화번호	자택 : 핸드폰 :
	생년월일/성별 (사업자등록번호)	년 월 일 / □ 남 □ 여 ( )	경영체등록 (등록번호)	□ 등록완료 □ 등록예정 ( )

신 청 농 지									신 청 내 용	
순번	읍·면·동	리·통	지번	지목	지적(㎡)	신청면적(㎡)	재배예정 작물,과수	공급희망(월)	비료의 종류(순번별로 택 1)	공동살포 여부
1									□규산질 □석회고토 □패화석	□
2									□규산질 □석회고토 □패화석	□
3									□규산질 □석회고토 □패화석	□
4									□규산질 □석회고토 □패화석	□
5									□규산질 □석회고토 □패화석	□
6									□규산질 □석회고토 □패화석	□
7									□규산질 □석회고토 □패화석	□
8									□규산질 □석회고토 □패화석	□
9									□규산질 □석회고토 □패화석	□
10									□규산질 □석회고토 □패화석	□
11									□규산질 □석회고토 □패화석	□
12									□규산질 □석회고토 □패화석	□
13									□규산질 □석회고토 □패화석	□

주 1) 신청면적은 본인 농업경영체 등록면적을 초과할 수 없음

주 2) 농업경영체로 등록하였거나 등록 예정인 경우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농가 공급단계에서 경영체 등록여부를 확인하고, 미등록 된 경우는 정부지원 제외

주 3) 공급은 농지기준 마을단위로 공급하며, 시기는 농업인이 공급을 희망하는 월을 기재

주 4) 공급 시기는 농업인이 공급을 희망하는 월을 기재

주 5) 지자체 공동살포 미시행 시 신청자 개별살포 실시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26조제1항의 규정 및 친환경 농자재 지원사업(토양개량제지원 지침)에 의하여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 및 비료공급 기관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고유식별번호(생년월일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상기와 같이 토양개량제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날인)

○○읍·면·동장 귀하

<뒷면>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업인 지원을 위한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추진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유효 기간 내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고육식별번호 수집·이용 동의 사항 >

1.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업인 지원을 위한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추진시, 신청자의 본인확인, 신청대상물에 대한 소유권 등 확인, 년차별 지원내역 확인 및 농림축산식품사업 지원내역 확인 등의 관리
2. 수집하려는 고유식별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고유식별정보(생년월일)
3. 고유식별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유효 기간 내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농림축산식품사업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농림축산식품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 기간 내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작성 요령】

- 지자체는 “토양개량제 공급신청서”를 Agrix 시스템에서 읍·면·동 담당자가 출력하여 직접 또는 마을이장에게 제공하여 농업인 신청 접수

［별지 제2호 서식］

토양개량제 공급 확인서(읍·면·동단위)

○ 토양개량제 신청지역 : ○○읍·면·동

<규산질 비료>

성명①	신청농지 주소 및 지번②	신청면적 (㎡)③	기준 소요량 (kg)④	신청량 (kg)⑤	확정량 (포)⑥	월별공급 희망시기 (월)⑦	농가 서명⑧
홍길동	○○면 ○○리 ○○번지						서명 (포)
소계	○○리						
김민국	○○면 ○○리 ○○번지						
소계	○○리						
합 계	○○읍·면·동						

<석회질 비료>

성명①	신청농지 주소 및 지번②	신청면적 (㎡)③	기준 소요량 (kg)④	신청량 (kg)⑤	확정량 (포)⑥	월별공급 희망시기 (월)⑦	농가 서명⑧
홍길동	○○면 ○○리 ○○번지						서명 (포)
소계	○○리						
김민국	○○면 ○○리 ○○번지						
소계	○○리						
합 계	○○읍·면·동						

【작성 요령】

①~⑦번까지는 "토양개량제 공급신청서"에 따라 Agrix 시스템에서 읍·면·동 담당자가 출력하여 마을이장 또는 지역조합장에게 제공

* 토양개량제 공급 희망 시기는 법정리·동 단위 확정(우기 7~8월 제외)

⑧ 농가서명 : 토양개량제 공급 시 마을이장이 공급한 농가에게 서명을 받고 인수물량 기재

* 공급이후 지역조합에서 이장 등의 협조를 받아 작성한 공급확인서를 읍·면·동에 제출

［별지 제2-1호 서식］

토양개량제 살포 확인서(읍·면·동단위)

○ 토양개량제 신청지역 : ○○읍·면·동

<규산질 비료>

성명①	주소②	신청면적(㎡)③	공급물량④	살포방식(개별,공동)⑤	공급시기(월)⑥	미살포시 향후살포 시기(월)⑦	살포 확인⑧
홍길동	○○면 ○○리 ○○번지						서명 (포)
김민국	○○면 ○○리 ○○번지						
합 계	○○읍·면·동						

<석회질 비료>

성명①	주소②	신청면적(㎡)③	공급물량④	살포방식(개별,공동)⑤	공급시기(월)⑥	미살포시 향후살포 시기(월)⑦	살포 확인⑧
홍길동	○○면 ○○리 ○○번지						서명 (포)
김민국	○○면 ○○리 ○○번지						
합 계	○○읍·면·동						

【작성 요령】

①~⑤번까지는 토양개량제 공급결과에 따라 읍·면·동 담당자가 출력하여 마을이장 또는 지역조합장에게 제공하여 확인

⑥~⑧번은 지역농협이 마을이장의 협조를 받아 작성하여 읍·면·동에 제출

* 지역농협은 반기별로 확인하여 읍·면·동에 제출(상반기 6월, 하반기 11월까지)

* 읍·면·동에서는 상기 자료를 받아 미살포 농가는 확인을 하여 살포토록 하고, 동 자료는 반드시 지역농협에서 받아 1년간 보관

［별지 제2-2호 서식］

토양개량제 공동살포 확인서

○ 토양개량제 공동살포지역 : ○○읍·면·동

성 명①	주 소②	살포비종 ③	살포면적 (㎡)④	살포 물량⑤	살포일자 (월/일)⑥	살포 확인⑦
홍길동	○○면 ○○리 ○○번지					서 명
김민국	○○면 ○○리 ○○번지					
합 계	○○읍·면·동					

확인자⑧ 소 속 :

성 명 : (인)

살포자 주 소 :

성 명(법인명) : (인)

【작성 요령】

①~⑤번까지는 “공동살포운영위원회” 결정에 따라 읍·면·동 담당자가 마을이장과 지역조합장에게 제공

⑦ 살포확인 : 토양개량제 신청 농가

⑧ 확인자 : 현장 확인 가능한 자(마을이장, 지자체, 농협 담당자 등 1명 이상)

* ⑦살포확인자와 중복 불가

* 살포자는 공동살포 완료 후 공동살포 확인서를 작성하여 지역농협에 제출

［별지 제3호 서식］

토양개량제 미살포(방치) 확인서

신청인	주 소	시·군·구 읍·면·동 리·통 번지		마을명	
	성 명 (법인명)	( )	전화번호	자 택 : 핸드폰 :	
	생년월일/성별 (사업자등록번호)	년 월 일 / □ 남 □ 여 ( )	사업연도 (살포연도)	( )	

☞ 토양 개량제 미살포(방치)시 조치사항 안내

* 살포 기간 내에 살포하지 않거나, 조치사항 미 이행시 다음 주기 지원대상에서 제외
* 미살포(방치)된 물량은 다음연도 살포대상 농지에 살포하거나 기존 농가 중 추가살포를 희망하는 농가에 제공하여 살포

미살포(방치) 장소			1차 확인(방치우려)					
읍·면·동	리·통	지번	확인일	비종	물량 (포)	보관·포장 예정일	살포 예정일	비고
성환읍	신방리	122						

○ 보관·포장방법 등 관리방안 :

상기와 같이 토양개량제 미살포(방치) 사실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확인자 : (서명 또는 날인)

입회자 : (서명 또는 날인)

미살포(방치) 장소			2차확인(이행확인)					
읍·면·동	리·통	지번	확인일	비종	물량 (포)	보관·포장 여부 (○,×)	살포 여부 (○,×)	비고
성환읍	신방리	122						

○ 미살포(방치) 물량에 대한 처리방안 :

상기와 같이 토양개량제 미살포(방치)에 따른 조치결과를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확인자 : (서명 또는 날인)

입회자 : (서명 또는 날인)

* 입회자는 신청인이 확인되지 않거나 조치 등을 거부하는 경우 관계공무원, 이장 등을 대상으로 확인받는 경우에 활

15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

Ⅰ. 사업개요

1. 목 적

○ 유기농업자재, 녹비작물 종자 등 구입비와 토양검정컨설팅 비용을 친환경농업인 등에게 지원하여 경영비 부담을 줄이고, 지력증진, 농약·화학비료 사용감소를 유도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농업 구현

2. 근거법령

○ 「친환경농어업법」 제10조, 제13조제3항, 제16조

3. 사업 주요내용

○ 친환경농업인 등에게 유기농업자재, 녹비 종자 등 구입비 일부 지원

- 녹비작물 종자(5종) : 헤어리베치, 녹비(청)보리, 호밀, 자운영, 수단그라스(조중생종, 만생종)
- 유기농업자재 : 「친환경농어업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공시 자재

○ 토양검정(관행농가)과 및 컨설팅(친환경인증 및 관행농가) 비용 지원

Ⅱ. 2022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공통요건 >

- **「농업경영체육성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변경등록 포함)**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이하 '농업인 등')**
- 다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28조제8항 및 제63조에 의거 보조금의 부당사용 사유 등으로 지원제한 기간에 포함되는 농업경영체는 사업대상에서 제외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제9항 관련 [별표6] "농업법인 지원조건 및 사후관리기준"에 정한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농업법인은 제외. 다만, [별표6] 1. 공통지원조건 "②의3호(설립후 운영실적 1년 이상)" 규정은 미적용

① 녹비작물 종자, 유기농업자재 및 자재원료

○ 2021년도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발급받은 토양검정 결과를 제출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에 한해 지원(없는 경우 2020년 토양검정결과 제출 가능)

- 다만, 유기농업자재(녹비작물 종자 및 자재원료 제외) 지원을 신청하는 농업인 등으로서 사업신청 기간에 토양검정 결과 제출이 어려운 친환경인증을 받지 않은 일반농가의 경우, 사후 제출 가능(단, '22년 6월까지 제출)

* 동일한 생산자가 인접한 여러 필지에 같은 품목을 동일한 자재를 투입해 관리 시, 해당 인접 필지는 1개의 필지로 간주하여 토양검정결과 제출 가능

② 토양검정 및 시비처방 등 컨설팅

○ (토양검정) 친환경인증을 받지 않은 일반 농업인 등

○ (시비처방 등 컨설팅) 시비처방 등 컨설팅을 희망하는 농업인 등

2 지원자격 및 요건

< 공통요건 >

「농어업경영체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농업경영체육성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등록된 농지**(「농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토지)

① 녹비작물 종자

< 예 외 >

다만, 농업경영정보 등록이 불가한 임야·대지(경작지로 이용) 등에서 유기·무농약농산물 인증 중인 농지(친환경농산물인증서 첨부)와 농업경영정보 등록이 불가한 임야(경작지로 이용) 등에서 인삼경작을 위해 인삼농협에 예정지 관리 신고 된 농지(별지6호 서식 인삼경작예정지확인서 첨부)는 지원 대상에 포함

○ 선정 우선순위 : 유기인증 농지 〉 무농약인증 농지 〉 일반 농지(지자체 자율 결정)

- 당해 연도 녹비작물 종자를 지원받은 농지는 다음 연도에 ① 토양개량용·작물생육용·토양개량 및 작물생육용 유기농업자재, ② 토양 개량 및 작물생육 목적의 자재원료, ③ 유기질비료지원 사업에 따른 "유기질비료"를 50% 이내로 지원

○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농지는 지원대상 농지에서 제외

- 2022년도 '경관보전직접지불제', '조사료용 종자 구입비 지원 사업' 신청 농지는 녹비작물 종자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발급받은 토양검정 결과 유기물 함량이 「농업·농촌공익직불제 비료 사용기준 준수 이행점검 기준에 관한 규정」 [별표1] 의 유기물 상한을 초과하는 농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② 유기농업자재 및 자재원료

○ 선정 우선순위

- (「친환경농어업법」에 따른 친환경인증 농지) 유기인증 농지 〉 무농약인증 농지
- (그 외 농지) '22년 친환경농업기반구축 사업에 포함된 일반농지 〉 '11~'21년 친환경농업기반구축 사업에 포함되었던 일반농지 > 지자체 자율 결정

○ 「친환경농어업법」에 따라 친환경인증을 받은 농지는 2021년도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1]을 성실 납부한 유기·무농약 농산물 인증사업자에 한해 지원

* 다만, 친환경농산물의무자조금 납부 제외자 및 면제자는 지원대상에 포함, 농업경영정보 등록이 불가한 임야·대지(경작지로 이용) 등에서 친환경 인증 중인 농지는 가능(친환경농산물인증서 첨부)

※ 친환경농산물의무자조금 납부자의 사업 신청이 저조한 경우 상반기 내에 추가 신청접수 (유기농업자재 및 자재원료에 한함)

《 사업 신청접수 단계도 》

본 신청접수	➡	상반기 추가신청접수	➡	추가접수 후 예산이 남은 경우
자조금 납부자		자조금 납부자		자조금 미납 인증농업인 포함

< 친환경농산물의무자조금 조성규정(2016.6.30. 제정) >

□ 친환경농산물의무자조금의 납부대상 및 제외자 범위

▸ **(납부대상)** 「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친환경 인증면적 1천㎡이상 농업인으로 한정

– 다만, 비닐하우스 등 농업용 재배시설을 이용하여 콩나물, 숙주나물, 버섯류, 채소류 등을 재배하는 친환경인증농업인은 인증면적 330㎡이상을 대상에 포함

▸ **(납부면제)** 1천㎡(농업시설재배는 330㎡) 미만의 소규모 농업인과 가축사료용 조사료만 생산품목으로 인증받은 농업인 제외

○ 천적은 농업용재배시설(유리온실, 비닐하우스 등)에 한해 지원

○ 자재원료는 「친환경농어업법」에 따라 친환경인증을 받은 농지에 한해 지원

○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농지는 지원품목 제한

- '유기질비료지원사업' 신청농지는 '토양개량 및 작물생육' 목적의 자재원료와 유기농업자재로 공시된 유기질비료·부숙유기질비료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1) 친환경농산물의무자조금 관련 문의 : 친환경농산물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 044-863-6202)

- ‘토양개량제지원사업’ 신청농지는 ‘토양개량’ 목적의 자재원료와 유기농업자재로 공시된 토양개량제(석회질비료, 규산질비료)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발급받은 토양검정결과 유기물 함량이 「농업·농촌 공익직불제 비료 사용기준 준수 이행점검 기준에 관한 규정」 [별표1] 의 유기물 상한을 초과하는 농지는 토양개량용 유기농업자재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전년도 녹비작물 종자를 지원받은 농지는 당해 연도 ① 토양개량용·작물생육용·토양개량 및 작물생육용 유기농업자재, ② 토양개량 및 작물생육 목적의 자재원료, ③ 유기질비료지원 사업에 따른 “유기질비료”를 50% 이내로 지원

※ 단, 녹비작물의 생육상태 등에 따라 유기질비료 추가 지원 신청이 가능하도록 탄력성 부여

– 일정 녹비 생체량(500kg 이상/10a) 확보가 어려울 경우 시·군 농업기술센터 등의 확인서(시비처방서 포함)를 첨부하여 유기질비료 지원 신청 가능

* 농가가 추가 신청할 수 있는 유기질비료량은 시비처방서를 따르거나 일반 농지(해당 품목) 기준의 50% 이내로 제한하여 토양 관리 효율성 제고

③ 토양검정 및 시비처방 등 컨설팅

○ (토양검정)「친환경농어업법」에 따라 친환경인증을 받은 농지는 제외

○ (시비처방 등 컨설팅) 토양검정 결과가 있는 농지에 대해 한해 지원

3 지원 내용

① 녹비종자(5종) : 헤어리베치, 녹비(청)보리, 호밀, 자운영, 수단그라스(조중생종, 만생종)

○ 다만 수단그라스(조중생종, 만생종)는 인삼 재배농가에 한해 지원

② 유기농업자재 :「친환경농어업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공시 자재

○ 상토는 유기농업자재로 공시된 제품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

○「친환경농어업법」제43조제1항 및 제49조제7항에 따른 공시의 취소 등의 처분을 받은 유기농업자재 등에 대해서는 위반행위 시정 시까지 사업 참여를 제한할 수 있음

* 유기농업자재 행정처분 현황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https://www.naqs.go.kr) → 업무소개 → 유기농업자재 → 공시 유기농업자재 조회 → 행정처분현황 조회에서 확인

③ 자재 원료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제3조 제1항 [별표 1]의 제1호 가목에 따른 사용 가능한 허용물질

④ 천적(25종) : 갈색반날개, 굴파리좀벌, 담배가루이좀벌, 담배장님노린재, 무당벌레, 뱅커플랜트, 복숭아혹진디벌, 숨이애꽃노린재, 싸리진디벌, 쌀좀알벌, 아큐레이퍼응애, 어비진디벌, 오이이리응애, 온실가루이좀벌, 유럽애꽃노린재, 으뜸애꽃노린재, 잎굴파리고치벌, 지중해이리응애, 진디면충좀벌, 진디혹파리, 칠레이리응애, 캘리포니쿠스응애, 콜레마니진디벌, 호랑풀잠자리, 황온좀벌

○ 「친환경농어업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유기농업자재로 공시된 천적 생산업체 제품에 한하며, 화분매개곤충(뒤영벌, 호박벌 등)은 지원 제외

⑤ 토양검정 및 시비처방 등 컨설팅

○ (토양검정) 시·군 농업기술센터(우선 활용) 또는 시도별로 지정된 토양검정기관을 활용한 토양검정 비용 지원

○ (시비처방 등 컨설팅) 토양검정결과에 따른 시비처방 관련 자문, 유기농업자재 사용, 기타 친환경인증 기준 등 관련 컨설팅 비용 지원

④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지역농업협동조합 및 인삼조합을 통하여 구입하는 지원대상 녹비작물 종자, 유기농업자재로 공시된 천적 및 자재, 자재원료 구입비의 일부 보조

○ 농가의 토양검정 비용 및 토양검정 결과에 따른 시비처방 등 컨설팅 비용 지원

수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 재원 : 국고, 지방비, 농협 지원금 등

○ 지원조건

- (녹비종자, 유기농업자재, 자재원료) 국비 20%, 지방비 30%, 자부담 50%

  * 지자체 또는 농협 등에서 추가 지원할 경우 자부담 20% 이상 유지(예시: 국고 20% + 지방비 30% + 추가 지방비 또는 농협지원금 등 + 자부담(20% 이상))

- (토양검정·시비처방 등 컨설팅) 국비 100%

  * 컨설팅 내용은 시·군 농업기술센터 또는 시도(시군)에서 토양검정기관으로 지정한 토양검정기관에서 받은 토양검정 결과에 따른 시비처방 관련 자문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에 한해 지원

○ 사업 의무량

- 녹비작물 종자는 농경지에 파종한 후 지력증진 위해 작물을 당해 농지에 반드시 작물체를 환원하여야 하며, 유기농업자재 및 자재원료는 당해 연도에 사용될 분량만큼만 신청

숙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녹비작물 종자(ha당) : 헤어리베치 60kg, 녹비(청)보리 140kg, 호밀 160kg, 자운영 50kg, 수단그라스(조중생종, 만생종) 50kg

- 신청 농업경영체 단위로 품목별 최소 신청량은 녹비(청)보리·호밀·자운영·수단그라스(조중생종, 만생종)는 20kg, 헤어리베치 5kg으로 제한
- 품질기준은 종자관리요강(보급종 기준)에 따르며 발아율 80% 이상 종자 공급
- 최종 공급단가는 농협경제지주에서 종자공급 완료 후에 제반비용을 토대로 산정하여 알림(사업년도 11월 중)

○ 유기농업자재 및 자재원료(ha당, 총 구입비 기준) : 유기인증 200만원, 무농약인증 150만원, 관행농업 100만원

- 신청 농업경영체의 신청 농지 기준으로 지원한도액이 적용되며, 초과금액은 자부담하고, 품목별 지원 단가는 객관적인 자료(농협경제지주 계통구매단가, 납품계약서, 견적서 등)에 근거한 농가 신청금액과 공시가격*을 비교하여 '낮은 가격'으로 결정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https://www.naqs.go.kr) → 업무소개 → 유기농업자재 → 공시 유기농업자재 조회 → 유기농업자재 공시정보에서 확인

○ 토양검정 및 시비처방 등 컨설팅 비용

- 지자체별 신청 수요, 토양검정기관 유형(시군농업기술센터 또는 친환경농업연구센터 등 민간기관 등), 컨설팅 지원 형태 등을 고려하여 지원 단가·한도 매년 산정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 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대상자 선정기준 등을 반영한 사업시행지침을 시·도에 시달

시·군·구(읍·면·동)

○ 읍·면·동은 시·군·구의 사업계획과 사업시행지침에서 정한 지원품목, 사업신청기한, 신청방법 등을 농업인에게 홍보 및 안내하고, 시·도, 시·군·구에 소요예산 등 협조(10~11월)

○ 시·군·구는 사업신청자의 자격요건 등을 심사(필요 시 현장 확인)하여, 사업대상자를 선정, Agrix에 입력한 후, 그 결과를 시·도에 제출(1월 초)

- 사업대상자가 제출하는 사업신청서에는 신청품목을 상세히 기재하게 하되, Agrix 입력 시에는 녹비작물 종자는 '헤어리베치, 녹비(청)보리, 호밀, 자운영, 수단그라스(조중생종), 수단그라스(만생종)'로, 천적은 '천적종류'로, 유기농업자재는 '상표명', 자재원료는 '사용가능 물질명'으로 입력

○ 시·도는 시·군·구의 선정결과에 대해 적합 여부를 검토한 후 사업예산 요구서 등을 작성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1월 중)

- 특히, 토양검정 및 시비처방 등 컨설팅 지원은 시도별 토양검정 및 컨설팅 사업 수행기관(시·군 농업기술센터를 우선적으로 활용하되 불가피한 경우 친환경농업연구센터 등 민간기관 활용)의 유형과 사업신청 수요 등을 고려하여 단가 등을 산정해 농식품부에 소요예산 제출

사업대상자

○ 신청기간 : '21. 11. 1. ~ '21. 12. 31.(2개월)

* 친환경농산물의무자조금 납부자의 사업 신청이 저조한 경우 상반기 내에 추가 신청접수를 실시(유기농업자재 및 자재원료에 한함)

○ 녹비작물 종자, 유기농업자재, 자재원료 등을 지원 받으려는 자는 당해 연도에 소용될 자재의 종류, 수량, 가격 등을 정확히 기재하여 농지 소재지 관할 시·군·구(읍·면·동)에 사업신청서(서약서 첨부)를 제출 [별지 1호 서식]

- 농지소재지의 관할 행정구역이 다른 경우 : 동일 시·군·구내에서는 경지면적이 가장 넓은 읍·면·동에 신청, 시·군·구가 다른 경우 각각의 시·군·구에 신청

- '녹비작물 종자 지원'을 희망하는 자는 신청서에 녹비작물 종자대 자부담 부분을 납부할 '공급 희망조합'을 지정하여야 하며, 공급 희망조합은 신청서를 제출하는 광역 시·도의 관할 구역에 소재하여야 함

  * 단, 수단그라스는 '인삼농협' 중 한 곳을 공급 희망조합으로 지정 : 참고 1 참조

② 사업자 선정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시·도가 제출한 사업예산 신청내역 등 사업물량을 검토하여 확정한 후, Agrix 등록 및 각 시·도별 사업량 통보(녹비종자는 농협경제지주에 통보, 2월초)

- 녹비작물 종자 품목별 사업량 등은 예산한도 내에서 녹비효과, 경제성, 국산화 정도, 농가선호도 등을 고려하여 조정될 수 있음

  * 시도별 확정 사업량은 원칙적으로 AgriX로 통보하되, 필요한 경우 문서 시행

시·도(시·군·구)

○ 시·도는 농식품부의 시·도별 확정 예산범위 내에서 시·군·구(읍·면·동)별 사업량 배정 통보 및 사업대상자 확정(2월)

- 시·군·구는 사업신청자의 지원자격 심사 및 평가 등을 통해 정해진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대상자를 확정하여 Agrix에 등록하고, 그 결과를 [별지 3호 서식]에 따라 사업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녹비작물 종자는 각 농협경제지주 시군농정지원단에, 토양검정 및 시비처방 등 컨설팅 지원은 해당 사업 수행 기관에도 통보(필요 시 사업자 선정위원회를 구성·운영)

- 지자체 자체사업으로 지원하고 있는 농지는 제외

○ 시·군·구는 선정된 사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포기하거나 사업내용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예산범위에서 시·도와 협의하여 사업대상자, 지원 품목 등 변경 가능

- 사업대상자는 사업신청 내용 등 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시·군·구에 신고

- 특히 녹비종자는 사업대상자(사업량 포함) 변동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확정된 사업량에 맞게 사업이 이행될 수 있도록 사업대상자 조정 등 철저

농협경제지주

○ 각 시·군·구로부터 확정된 녹비작물 종자 지원 사업량을 통보받는 즉시 관할 조합에 통보하여 농협전산시스템과 대조(3월)

  * 시·군·구 사업량과 농협전산시스템에 등록된 사업량의 일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일치하지 않는 경우 시·군·구의 자료를 근거로 수정 조치

3 세부계획 수립 및 시행 단계

농협경제지주

○ 녹비종자별 예정 공급단가를 포함하여 국내외 조사를 통해 녹비작물 종자 확보·공급계획 수립·보고(1월)

- 사업물량의 안정적 확보·공급계획 수립을 위한 국내외 사전조사 실시(12월~1월)

* 국내·외 녹비용 작물종자 생산, 확보가능 예상량(보증·비보증 구분) 및 가격동향 등

- 녹비종자 확보·공급계획서에는 품목별 물량 확보방안(국가별 수입량, 월별 도입량 및 자금집행 계획 등), 보증종자 확보 계획, 녹비종자 도입·공급 방식 및 절차(국산·수입산 구분), 전년도 녹비종자 공급 계약 위반자에 대한 조치결과 및 사업년도 계약위반자에 대한 조치계획(국산·수입산 구분), 단계별 세부추진일정, 기관별 조치·협조사항, 기타 예상 문제점 및 대책 등을 포함

- 녹비작물 종자의 품질기준(발아율 80% 이상) 부적합 물량 발생 시 적기에 계획 물량을 농가에 공급할 수 있도록 대응 매뉴얼 작성

* 특히 품목별 보증종자 확보계획, 녹비종자 전량 입찰제에 따른 계약절차 및 추진일정, 구매·공급계약 위반자에 대한 조치계획 등은 구체적으로 작성

○ 녹비작물별 적정 파종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녹비종자 구매 및 품목별 적기 공급 추진(농가 공급은 **'22.10.10.까지 완료)**

* 품목별 공급기간 : (수단그라스) 4.10.~4.30. / (헤어리베치, 자운영) 8.10.~9.5. / (녹비보리, 호밀) 9.1.~10.10.

- 녹비종자는 정한 기한 내에 지역(인삼)농협 또는 신청농가에 배송

시·도(시·군·구)

○ 시·도는 토양검정 및 시비처방 등 컨설팅 수행기관 및 운영방안 등을 확정하여 농림축산식품부 및 시·군·구에 통보하고(2월까지) 시·군·구는 토양검정 대상 농가의 토양을 일괄적으로 채취하여(2월~3월까지) 지정된 토양검정 기관에 송부

- 토양검정 결과 및 시비처방 등 컨설팅 지원 결과는 해당 수행기관을 통해 '22.6.30.까지 제출받고 그 결과에 따라 농가의 지원 품목 변경이 필요한 경우, 시·도와 협의하여 지원품목 변경('22.7.31.까지 완료)

○ 시·군·구에서는 농진청(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 농협경제지주와 협조하여 농가대상 교육·홍보·지도 실시(연중)

- 녹비종자의 적정 파종시기, 파종방법, 월동관리 요령 등 교육·홍보
- 천적을 활용한 방제, 유기농업자재 이용방법 등 농가 교육

사업대상자

○ 녹비작물 종자를 공급희망조합으로부터 수령하는 경우에 공급 예정단가를 기준으로 한 자부담 금액을 지급하고 수령증을 교부받아야 함

4 자금배정 및 집행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시·도에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 및 자금 교부

시·도(시·군·구)

○ 시·도는 사업대상자가 확정되면 농림축산식품부에 보조금 교부 신청

- 녹비작물 종자 국고보조금은 농협경제지주(시군농정지원단)로부터 보조금 지급요청을 받아 농식품부에 교부 신청(e-호조)
- 시·도는 국고보조금을 교부받아 시·도비를 합하여 시·군·구에 교부결정
- 시·군·구는 국비와 시·도비에 시·군·구비를 합하여 농협경제지주(시군농정지원단)에 녹비종자 보조금을 지급하되, 녹비종자 도입 및 공급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개산급 지급(시·군·구별 사업비의 70% 이내)

○ 자금 집행·관리에 관한 사항은 「보조금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등 관계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름

- 천적, 유기농업자재 및 자재원료는 사업비 중 자부담액을 먼저 집행하게 하고, 그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확인한 후 보조금 지급하되, 구매 증빙자료(카드 영수증, 세금계산서, 계좌이체 및 관련 증명서류 등) 등을 통해 실제 구매 여부 확인

* 증빙서류(간이영수증 등)가 의심되면 해당업체 등에 조회하여 사실 확인

** 다만 토양검정 결과를 사전 제출하지 못해 사후로 제출하는 농가 등에 대해서는 토양검정 결과 제출 전 기간에 지출한 유기농업자재 구입비에 대해서는 지원 예정인 총 배정 예산의 일정 비율까지만 지원 한도 설정(예 : 50% 이내, 다만 작물 특성 등을 고려해 지자체별로 조정 가능)

- 토양검정 및 시비처방 등 컨설팅 지원은 시도별로 지정된 기관에서 받은 토양검정 결과나 시비처방 등 컨설팅 내역(별지 제5-2호 서식)을 확인 후 보조금 집행

* 컨설팅의 경우 토양검정 결과에 따른 시비처방 자문내용을 필수로 포함

- 사업기간(사업신청부터 자재구입 사용시기까지로 하되, 타당한 사유로 일시적 인증 공백**(1개월 이내)은 예외 적용) 중에 친환경 인증이 유효한 건에 한해 보조금 지원(친환경 인증정보관리 시스템을 통해 인증 유효여부 확인)

* 세금계산서, 자재구입 영수증, 영농일지 등을 근거로 자재 구입·사용 시기 확인

** 인증기관 지정취소에 따른 불가피한 인증기관 변경, 갱신 도래시기에 입원 등으로 일시적 인증 공백 기간에 구입·사용한 유기농업자재는 지원에서 제외

○ 시·도(시·군·구)는 회계연도가 종료되거나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검정 및 사업비 정산을 실시, 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 [별지 제4호 서식]

- 검정 및 정산서에는 지원 품목별 국고, 지방비, 자부담으로 사업비 구분 명시

○ 시·도(시·군·구)에서는 유기농업자재 사업자 선정 결과, 자금집행내역 등을 Agrix 시스템에 '21.12.31.까지 입력 완료

○ 시·도는 배정예산을 집행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 하는 등 사업계획 변경 필요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와 사전협의

농협경제지주

○ 농협경제지주(시군농정지원단)는 녹비작물 종자공급을 최종 완료한 후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군·구에 잔여 보조금 지급 요청

- 상반기 중에 시·군·구별 보조 사업비의 70% 이내에서 개산급 지급 요청

○ 농협경제지주(시군농정지원단)는 녹비작물 종자 공급예정단가와 최종 공급단가의 차액이 발생한 경우 시·군·구 및 농업인 등에게 차액을 청구 또는 반환

사업대상자

○ 천적, 유기농업자재 및 자재원료 등의 구매를 확인할 수 있는 카드 영수증, 사업대상자명의 예금계좌에서 업체계좌로 직접 이체한 증명서, 세금계산서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구매 30일 이내에 시·군·구에 제출

- 자재원료는 인증을 받은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의 확인을 거친 후 확인서(별지 제5호 서식) 첨부하여 시·군·구에 보조금 신청

* 본인이 인증 받고 있는 인증기관에 자재원료 확인을 요청하되, 인증기관이 지정취소 등 사유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관할 농관원 사무소에 확인 요청

** 민간인증기관 현황은 친환경 인증관리 정보시스템(www.enviagro.go.kr) → 인증신청 도우미 → 인증기관조회에서 확인

○ 토양검정 및 시비처방 등 컨설팅 지원사업 대상자는 사업년도 상반기까지 시도별로 지정된 토양검정 및 컨설팅 수행기관에서 토양검정 및 컨설팅 실시

- 그 결과에 따라 유기농업자재 지원 품목 변경이 필요한 경우 시·군·구 담당자에게 품목 변경을 요청('22.6.30.까지)

민간인증기관(농관원 사무소 포함)

○ 민간인증기관에서는 지원받고자 하는 자재원료에 대해 금지물질 여부, 허용물질의 사용가능 요건 충족 여부 등을 확인하고 사용 가능한 물질인 경우 "자재사용 내역 확인서" 발급

토양검정 및 시비처방 등 컨설팅 수행 기관

○ 토양검정 결과 및 시비처방 등 컨설팅 지원내역(별지 5-2호 서식)을 해당 시·군·구에 제출('22.6.30.까지)

- 컨설팅 지원내용에는 토양검정 결과에 따른 시비처방 관련내용을 필수로 포함

수 이행점검 단계

사후관리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 추진상황 및 자금 집행현황 점검(반기 1회)

○ 지자체 및 민간인증기관의 현장점검 대상자 명단 작성·제공(반기 1회)

* 지역별로 구입량이 많은 농업경영체 우선하되, 신청농가의 6% 내외 선정

시·도(시·군·구)

○ 시·도(시·군·구)는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자재 공급상황, 자금 지급상황, 실제 공급가격, 사용실태, 품질만족도, 자부담 편취 등 부정수급 사례 및 녹비용 작물종자 공급·파종상황, 녹비작물 생육·이용현황 등에 대해 점검(조사완료 후 10일 이내 제출)

- 사업신청 및 보조금 청구서류 등을 통해 지원 품목 및 공급가의 적정성 등 검토(전수조사*)

* 주요 점검사항 : ① 사업지침에 정한 지원품목 외 지원 여부, ② Agrix 시스템을 통해 유사사업과 동일필지 중복지원 여부 확인, ③ 공시가격과 집행단가 비교, ④ 사업신청 및 보조금 청구 서류의 미비점 등

- 서류점검 결과, 부정수급 의심농가 및 농식품부 제공 점검대상자 현장조사(표본조사)

* 단, 녹비종자의 경우 파종, 작물체의 토양 환원 여부에 대해 조사(4～6월, 9～11월)

- 농가 방문조사 과정에서 부정수급 등이 확인되면 상세 경위를 조사한 후, 시·도를 통해 농식품부에 결과 제출

민간인증기관

○ 민간인증기관은 천적, 유기농업자재 및 자재원료를 지원받은 인증농가 중 농식품부가 제공하는 점검대상자에 대해 현장조사

- 대상농가 인증사후관리 시 영농일지(자재사용내역서)를 확인하여 자재 구입·사용·보관실태와 보조내역을 비교·점검(친환경인증기관협회는 조사결과를 취합하여 제출)

농림축산식품부

○ 거짓으로 보조금을 신청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등 부정수급 사례에 대해서는「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련 규정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보조금 환수 명령, 제재부과금 부과 등을 실시하고, 부정수급 관련 정보 공표 및 사업 참여 제한 등 조치

○ 공급업체의 부당행위가 확인된 경우 사업 참여 제한 등 조치

시·도(시·군·구)

○ 시·도(시·군·구)는 부정 수급자 등에 대해 관계법령에 따라 사업자 선정 취소,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보조금 환수 등을 실시하고 관련 내용을 농식품부 제출

- 사업대상자의 신청서 접수 시 서약서 징구[별지 제2호 서식]

○ 공급업체와 농업경영체의 위반행위에 대해 사업 참여 제한

- 또한 녹비작물 종자는 당해 농지에 파종하지 않거나, 생육 후 조사료로 사용하여 토양에 환원하지 않는 경우 다음 연도 지원대상에서 제외

숙 성과측정 단계

○ 사업성과 지표인 유기물함량은 사업시행 다음연도 3월 중에 농촌진흥청을 통해 산출된 경지이용별(논·밭·과수·시설) 유기물 함량(%)을 토대로 성과목표 달성 여부 측정

［별지 제1호 서식］

유기농업자재지원사업 신청서

〈유기농업자재, 자재원료용〉

신청자	생산자단체 등의 명칭		법인등록번호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성 명 (대표자명)			생년월일		
				성 별	*남, 여*	
	주 소			전화번호	(자택)	
					(휴대폰)	
				이메일		
	농업법인 형태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자조금 납부여부	*납부영수증 첨부*
	본인명의 환급계좌	(은행명)		(계좌번호)		

신청농지(필지)							세부 신청품목						
읍·면·동	리·통	지번	지목	지적 (㎡)	시설 여부	인증 구분	신청 품목	제조 업체명	신청면적 (㎡)	포장 단위	신청 물량	신청품목 단가(원)	품목 소계
			1. 논 2. 밭			1. 유기인증 2. 무농약인증 3. 관행농업						* 공시가격과 농가 구입 예정가격 중 낮은 가격을 기재	* 신청물량 ×공급단가

신청 소계	총 신청면적(㎡)	
	총 사업량(원)	* 단위면적당 지원기준 참고(유기 200만원/ha, 무농약 150만원/ha) - 신청품목의 공급단가 기준으로 사업량 산출
첨부서류	1. 친환경농산물인증서 사본 1부 - 친환경 인증관리 정보시스템(www.enviagro.go.kr)에서 인증현황 확인 가능 2. 친환경농산물의무자조금 납부 확인 영수증 3. 토양검정결과 및 비료사용처방서 1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4조에 의하여 상기와 같이 유기농업자재지원사업을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22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읍·면·동장 귀하

※ 작성 요령

- 생산자단체등의 명칭 : 단체는 '단체명', 개인은 '개인'으로 기재
- 법인등록번호, 농업법인의 형태, 참여 농가수는 농업법인만 기재
- 신청품목 : 천적은 천적종류, 유기농업자재는 상표명, 자재원료는 사용 가능 물질명 기재
- 포장단위 : 신청품목별 포장단위(예시: 500㎖, 5ℓ, 20㎏ 등)를 기재
- 신청품목 단가 : 신청품목별 공시된 가격과 농가 공급 예정가격 중 '**낮은 가격**'을 기재

［별지 제1-2호 서식］

유기농업자재지원사업 신청서

〈녹비작물 종자용〉

신청자	생산자단체 등의 명칭		법인등록번호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성 명 (대표자명)			생년월일		
				성 별		남, 여
	주 소			전화번호		(자택) (휴대폰)
				이메일		
	농업법인 형태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참여농가수		호
	본인명의 환급계좌	(은행명)		(계좌번호)		

신청농지(필지)						신청 내용						
읍·면·동	리·통	지번	지목	지적 (㎡)	인증 구분	신청 품목	포장 단위	예정가격 (원/kg)	신청면적 (㎡)	신청물량 (포)	신청금액 (원)	파종시기 (월)
			1. 논 2. 밭		1. 유기인증 2. 무농약인증 3. 관행농업					* {(신청면적 ×품목별 ha당 지원도)/10,000 ㎡}/포장단위	* 포장단위 × 예정가격 (원/kg) × 신청물량(포)	

공급희망 조합	조합명 : 농업협동조합 지점(연락처 :) * 수단그라스 녹비종자 지원을 희망하는 자는 '인삼농협'을 공급 희망조합으로 지정
첨부서류	1. 친환경농산물인증서 사본 1부 - 친환경 인증관리 정보시스템(www.enviagro.go.kr)에서 인증현황 확인 가능 2. 별지6호 서식 인삼경작예정지확인서 1부 - 농업경영정보 등록이 불가한 임야(경작지로 이용) 등에서 인삼경작을 위해 인삼농협에 예정지 관리 신고 된 농지를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3. 토양검정결과 및 비료사용처방서 1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4조에 의하여 상기와 같이 유기농업자재지원사업을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22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읍·면·동장 귀하

※ 작성 요령

- 생산자단체등의 명칭 : 단체는 '단체명', 개인은 '개인'으로 기재
- 법인등록번호, 생산자단체등의 형태, 참여농가수 : 단체만 기재
- 신청품목 : 헤어리베치, 녹비(청)보리, 호밀, 자운영, 수단그라스(조중생종), **수단그라스(만생종)**로 구분 기재
- 포장단위 : 최소 포장단위 기재(녹비(청)보리·호밀·자운영·수단그라스 20kg, 헤어리베치 5kg)
- 예정가격 : 품목별 포장단위별 예정가격(원)을 기재
  *** '21년 공급예정가격(원/kg) : 녹비보리(1,938), 호밀(2,361), 자운영(6,055), 수단그라스 조중생종(4,653), 수단그라스 만생종(5,644), 헤어리베치(6,298)**
- 지원 한도(ha당) : 헤어리베치 60kg, 녹비(청)보리 140kg, 호밀 160kg, 자운영 50kg, 수단그라스 50kg

［별지 제1-3호 서식］

유기농업자재지원사업 신청서

〈토양검정 및 시비처방 등 컨설팅 지원〉

신청자	생산자단체 등의 명칭		법인등록번호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성 명 (대표자명)			생년월일		
				성 별	*남, 여*	
	주 소			전화번호	(자택)	
					(휴대폰)	
				이메일		
	농업법인 형태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본인명의 환급계좌	(은행명)		(계좌번호)		

신청농지(필지)								신청 항목	
읍·면·동	리·통	지번	지목	지적 (㎡)	시설 여부	인증 구분	작물	토양검정	시비처방 등 컨설팅
			1. 논 2. 밭			1. 유기인증 2. 무농약인증 2. 관행농업		□	□
								□	□
								□	□
								□	□

구분	토양검정 신청 필지수(개) /총면적(㎡)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4조에 의하여 상기와 같이 유기농업자재지원사업을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22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읍·면·동장 귀하

※ 작성 요령

- 생산자단체등의 명칭 : 단체는 '단체명', 개인은 '개인'으로 기재
- 신청 항목 : 토양검정이나 시비처방 등 컨설팅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각각 체크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업인 지원을 위한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추진 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성명,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기간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농림축산식품사업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농림축산식품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기간 및 사후관리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별지 제2호 서식］

서 약 서

○ 성명(생년월일) :

○ 주 소 :

○ 연 락 처 :

상기 본인은 녹비작물 종자, 천적, 유기농업자재 및 자재원료를 구입·사용하고 토양검정 및 컨설팅 지원을 받는 과정에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등 부당행위가 확인된 경우「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 관리 기본규정」및 사업 시행지침에 의거 보조금 반환 명령, 제재 부과금 부과, 농림사업 참여 제한 등 행정처분에 응할 것을 서약합니다.

사업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시장, 군수, 구청장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유기농업자재지원사업 선정결과

〈시·군·구 → 사업대상자 통보용〉

수 신 : ○○○ 귀하 22 년 월 일

발 신 : ○○○ 시장, 군수, 구청장 (인)

<table>
<tr><td rowspan="3">선 정 자</td><td>주 소</td><td colspan="3"></td></tr>
<tr><td>농가명
(대표자)</td><td></td><td>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td><td>. . .</td></tr>
<tr><td>법 인 명</td><td></td><td>연 락 처</td><td></td></tr>
<tr><td rowspan="5">지원
항목</td><td rowspan="3">녹비종자,
유기농업
자재 등</td><td colspan="4">사업비</td></tr>
<tr><td>합계</td><td>국 비</td><td>지방비</td><td>자부담</td></tr>
<tr><td></td><td></td><td></td><td></td></tr>
<tr><td colspan="5">* 기타 조건: 유기물함량 기준 초과시 토양개량제 지원 제외 등</td></tr>
<tr><td rowspan="2">토양검정·
시비처방
등 컨설팅</td><td colspan="4">지원 세부내역</td></tr>
<tr><td colspan="2">토양검정·컨설팅 기관</td><td>지원기간</td><td>시비처방서
사후제출 대상여부</td></tr>
<tr><td colspan="2">시군농업기술센터 또는
시도별 선정 기관</td><td>'22년
상반기까지</td><td>○ 또는 ×</td></tr>
</table>

상기와 같이 2022년도 유기농업자재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었기에 통보하오니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거짓 청구 등 부당행위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 년 월 일

○○시장·군수·구청장

* 사업자로 선정된 농업경영체는 통지서 수령일 이후부터 유기농업자재 등을 구입·사용한 후, 신용카드 영수증, 계좌이체 증빙서, 세금계산서 등 자부담 선 납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첨부하여, 관할 시·군·구에 보조금 청구(단, 토양검정 결과 사후 제출 대상자가 토양검정결과 제출 전 지출한 자재비는 배정된 총 지원액 중 일정 비율(예: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지원)

［별지 제4호 서식］

유기농업자재지원사업 집행결과 보고서

’22년도 유기농업자재지원사업 사업비 정산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 시·도(시·군·구)명 :

(단위 : ㎡, kg, 원)

지원 실적				예산액				실 집행액				집행잔액				국고보조금 반환예정액
지원 품목	농가수	지원면적	녹비종자 공급물량	계	국비 (20%)	지방비	자부담	계	국비 (20%)	지방비	자부담	계	국비 (20%)	지방비	자부담	
헤어리베치																
녹비(청)보리																
호밀																
자운영																
수단그라스(조중생)																
수단그라스(만생)																
천적																
유기농업자재																
자재원료																
소계																
지원 품목	**농가수**	**지원 필지수**	**지원필지 면적**	**국비(100%)**				**국비(100%)**				**국비(100%)**				**국고보조금 반환예정액**
토양검정																
시비처방 등 컨설팅																

※ 국고보조금 반환예정액 산정기준 : 시·도에서는 국고보조금을 최초 교부받은 때로부터 정산 후 집행잔액을 반납할 때까지 **발생한 모든 이자를 포함하여 반납**(예산 및 기금 운용계획 집행지침, 기획재정부)

［별지 제5호 서식］

자재사용 내역 확인서

○ 성　　명 :

○ 생년월일 :

○ 인증번호 :

위 친환경인증 농가가 아래와 같이 사용하는 자재원료(허용물질)는 「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별표1】제1호가목에 따라 친환경농업에 사용하는 물질임을 확인합니다.

허용물질명*	제품명**	제품단위 (kg, ℓ, ㎖ 등)	구입량 (A+B)	사용량 (A)	보관량 (B)

* 「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별표1】사용가능 물질명을 기재

** 실제 판매되고 있는 제품명을 기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소장
또는 인증기관의 장 (직인)

［별지 제5-2호 서식］

컨설팅 결과 확인서

○ 성　　명 :

○ 생년월일 :

○ 인증번호 :

위 농가가 '22.00.00.자로 받은 토양검정 결과*에 대해 비료사용처방, 0000, 0000 등 분야에 대해 아래와 같이 자문을 실시했음을 확인합니다.

자문 일시	자문 분야	현황 및 문제점	개선방향
00.00.00	비료사용처방		

* 유기농업자재지원사업을 받기위해 제출한 토양검정결과

컨설팅 수행 기관장 등 (직인)

［별지 제6호 서식］

인삼 경작예정지 확인서

인삼경작예정지확인서

경작인 또는 대표자 성명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주 소 :

경작예정내용

신고번호 :

경작지주소	식재예정면적	식재년도	식재구분 (직파/이식)	임차구분

위와 같이 인삼경작 예정지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 확인서 용도 : 유기농업자재지원사업 신청용

ㅇ ㅇ 인삼농업협동조합장 직인

참고1 인삼농업협동조합 현황

조합명	대표자	주 소	관 할 구 역
강화인삼농협	황우덕	인천 강화 강화읍 강화대로 335 (032-933-5001)	강화군
개성인삼농협	이영춘	경기 포천 호국로 1423 (031-535-3711)	양평군, 연천군, 포천시
경기동부인삼농협	윤여홍	경기 이천시 경춘대로 3047-7 (031-637-3435)	광주시, 여주시, 원주시, 이천시
김포파주인삼농협	조재열	경기 김포 통진읍 조강로 47 (031-987-0171)	파주시
안성인삼농협	박봉순	경기 안성 공도읍 서동대로 4469 (031-612-6611)	안성시, 평택시, 화성시
강원인삼농협	최진현	강원 홍천 홍천읍 설악로 987 (033-439-3024)	고성군(강원), 원주시, 인제군, 철원군, 춘천시, 평창군, 홍천군, 화천군, 횡성군
충북인삼농협	이규보	충북 증평 증평읍 중부로 2459 (043-820-3465)	괴산군, 구미시, 김천시, 보은군, 영동군, 옥천군, 음성군, 제천시, 증평군, 진천군, 청주시
백제금산인삼농협	강상묵	충남 부여 부여읍 성왕로 311 (041-830-8507)	거창군(경남), 계룡시(충남), 공주시(충남), 금산군(충남), 논산시(충남), 보령시(충남), 부여군(충남), 세종시(세종), 유성구(대전), 중구(대전)
서산인삼농협	김낙영	충남 서산 남부순환로 11 (041-660-8615)	서산시, 아산시, 태안군
전북인삼농협	신인성	전북 진안 진안읍 진무로 1021 (063-430-1917)	광양시, 김제시, 남원시, 무주군, 순창군, 신안군, 영광군, 완도군, 완주군, 익산시, 전주시, 진안군, 해남군
풍기인삼농협	권헌준	경북 영주 풍기읍 금계로 32 (054-636-2715)	봉화군, 상주시, 안동시, 영양군, 영주시, 예천군, 울진군, 의성군, 청송군
계	11개		

참고2 허용물질의 종류

허용물질(제3조제1항 관련)

1. 유기식품등에 사용 가능한 물질

가. 유기농산물 및 유기임산물

1) 토양 개량과 작물 생육을 위해 사용 가능한 물질

번호	사용 가능 물질	사용 가능 조건
1	가) 농장 및 가금류의 퇴구비[堆廐肥: 볏짚, 낙엽 등 부산물을 부숙(썩혀서 익히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여 만든 퇴비와 축사에서 나오는 두엄을 말한다] 나) 퇴비화된 가축배설물 다) 건조된 농장 퇴구비 및 탈수한 가금류의 퇴구비 라) 가축분뇨를 발효시킨 액상의 물질	(1) 제11조제2항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유기농산물 및 유기임산물 인증기준의 재배방법 중 가축분뇨를 원료로 하는 퇴비·액비의 기준에 적합할 것 (2) 사용 가능 물질 중 라)는 유기축산물 또는 무항생제축산물 인증 농장, 경축순환농법(耕畜循環農法: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자가 경종과 축산을 겸업하면서 각각의 부산물을 작물재배 및 가축사육에 활용하고, 경종작물의 퇴비소요량에 맞게 가축사육 마릿수를 유지하는 형태의 농법을 말한다) 등 친환경 농법으로 가축을 사육하는 농장 또는 「동물보호법」 제29조에 따른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을 받은 농장에서 유래한 것만 사용하고, 「비료관리법」 제4조에 따른 공정규격설정 등의 고시에서 정한 가축분뇨발효액의 기준에 적합할 것
2	식물 또는 식물 잔류물로 만든 퇴비	충분히 부숙된 것일 것
3	버섯재배 및 지렁이 양식에서 생긴 퇴비	버섯재배 및 지렁이 양식에 사용되는 자재는 이 표에서 사용 가능한 것으로 규정된 물질만을 사용할 것
4	지렁이 또는 곤충으로부터 온 부식토	부식토의 생성에 사용되는 지렁이 및 곤충의 먹이는 이 표에서 사용 가능한 것으로 규정된 물질만을 사용할 것
5	식품 및 섬유공장의 유기적 부산물	합성첨가물이 포함되어 있지 않을 것
6	유기농장 부산물로 만든 비료	화학물질의 첨가나 화학적 제조공정을 거치지 않을 것
7	혈분·육분·골분·깃털분 등 도축장과 수산물 가공공장에서 나온 동물부산물	화학물질의 첨가나 화학적 제조공정을 거치지 않아야 하고, 항생물질이 검출되지 않을 것
8	대두박(콩에서 기름을 짜고 남은 찌꺼기를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 쌀겨 유박(油粕: 식물성 원료에서 원하는 물질을 짜고 남은 찌꺼기를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 깻묵 등 식물성 유박류	(1) 유전자를 변형한 물질이 포함되지 않을 것 (2) 최종제품에 화학물질이 남지 않을 것 (3) 아주까리 및 아주까리 유박을 사용한 자재는 「비료관리법」 제4조에 따른 공정규격설정등의 고시에서 정한 리친(Ricin)의 유해성분 최대량을 초과하지 않을 것

9	제당산업의 부산물[당밀, 비나스(Vinasse: 사탕수수나 사탕무에서 알코올을 생산한 후 남은 찌꺼기를 말한다), 식품등급의 설탕, 포도당을 포함한다]	유해 화학물질로 처리되지 않을 것
10	유기농업에서 유래한 재료를 가공하는 산업의 부산물	합성첨가물이 포함되어 있지 않을 것
11	오줌	충분한 발효와 희석을 거쳐 사용할 것
12	사람의 배설물(오줌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1) 완전히 발효되어 부숙된 것일 것 (2) 고온발효: 50℃ 이상에서 7일 이상 발효된 것 (3) 저온발효: 6개월 이상 발효된 것일 것 (4) 엽채류 등 농산물·임산물 중 사람이 직접 먹는 부위에는 사용하지 않을 것
13	벌레 등 자연적으로 생긴 유기체	
14	구아노(Guano: 바닷새, 박쥐 등의 배설물)	화학물질 첨가나 화학적 제조공정을 거치지 않을 것
15	짚, 왕겨, 쌀겨 및 산야초	비료화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화학물질 첨가나 화학적 제조공정을 거치지 않을 것
16	가) 톱밥, 나무껍질 및 목재 부스러기 나) 나무 숯 및 나뭇재	원목상태 그대로이거나 원목을 기계적으로 가공·처리한 상태의 것으로서 가공·처리과정에서 페인트·기름·방부제 등이 묻지 않은 폐목재 또는 그 목재의 부산물을 원료로 하여 생산한 것일 것
17	가) 황산칼륨, 랑베나이트(해수의 증발로 생성된 암염) 또는 광물염 나) 석회소다 염화물 다) 석회질 마그네슘 암석 라) 마그네슘 암석 마) 사리염(황산마그네슘) 및 천연석고(황산칼슘) 바) 석회석 등 자연에서 유래한 탄산칼슘 사) 점토광물(벤토나이트·펄라이트·제올라이트·일라이트 등) 아) 질석(Vermiculite: 풍화한 흑운모) 자) 붕소·철·망간·구리·몰리브덴 및 아연 등 미량원소	(1) 천연에서 유래하고, 단순 물리적으로 가공한 것일 것 (2) 사람의 건강 또는 농업환경에 위해(危害)요소로 작용하는 광물질(예: 석면광, 수은광 등)은 사용하지 않을 것
18	칼륨암석 및 채굴된 칼륨염	천연에서 유래하고 단순 물리적으로 가공한 것으로 염소함량이 60퍼센트 미만일 것

19	천연 인광석 및 인산알루미늄칼슘	천연에서 유래하고 단순 물리적 공정으로 가공된 것이어야 하며, 인을 오산화인(P_2O_5)으로 환산하여 1kg 중 카드뮴이 90mg/kg 이하일 것
20	자연암석분말·분쇄석 또는 그 용액	(1) 화학물질의 첨가나 화학적 제조공정을 거치지 않을 것 (2) 사람의 건강 또는 농업환경에 위해요소로 작용하는 광물질이 포함된 암석은 사용하지 않을 것
21	광물을 제련하고 남은 찌꺼기[광재(鑛滓): 베이직 슬래그]	광물의 제련과정에서 나온 것으로서 화학물질이 포함되지 않을 것(예 : 제조 시 화학물질이 포함되지 않은 규산질 비료)
22	염화나트륨(소금) 및 해수	(1) 염화나트륨(소금)은 채굴한 암염 및 천일염(잔류농약이 검출되지 않아야 함)일 것 (2) 해수는 다음 조건에 따라 사용할 것 (가) 천연에서 유래할 것 (나) 엽면시비용(葉面施肥用)으로 사용할 것 (다) 토양에 염류가 쌓이지 않도록 필요한 최소량만을 사용할 것
23	목초액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의 목초액(KSM3939) 기준에 적합할 것
24	키토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품질규격에 적합할 것
25	미생물 및 미생물 추출물	미생물의 배양과정이 끝난 후에 화학물질의 첨가나 화학적 제조공정을 거치지 않을 것
26	이탄(泥炭, Peat), 토탄(土炭, Peat moss), 토탄 추출물	
27	해조류, 해조류 추출물, 해조류 퇴적물	
28	황	
29	주정 찌꺼기(Stillage) 및 그 추출물(암모니아 주정 찌꺼기는 제외한다)	
30	클로렐라(담수녹조) 및 그 추출물	클로렐라 배양과정이 끝난 후에 화학물질의 첨가나 화학적 제조공정을 거치지 않을 것

2) 병해충 관리를 위해 사용 가능한 물질

번호	사용 가능 물질	사용 가능 조건
1	제충국 추출물	제충국(*Chrysanthemum cinerariaefolium*)에서 추출된 천연물질일 것

2	데리스(Derris) 추출물	데리스(*Derris spp., Lonchocarpus spp. 및 Tephrosia spp.*)에서 추출된 천연물질일 것
3	쿠아시아(Quassia) 추출물	쿠아시아(*Quassia amara*)에서 추출된 천연물질일 것
4	라이아니아(Ryania) 추출물	라이아니아(*Ryania speciosa*)에서 추출된 천연물질일 것
5	님(Neem) 추출물	님(*Azadirachta indica*)에서 추출된 천연물질일 것
6	해수 및 천일염	잔류농약이 검출되지 않을 것
7	젤라틴(Gelatine)	크롬(Cr)처리 등 화학적 제조공정을 거치지 않을 것
8	난황(卵黃, 계란노른자 포함)	화학물질의 첨가나 화학적 제조공정을 거치지 않을 것
9	식초 등 천연산	화학물질의 첨가나 화학적 제조공정을 거치지 않을 것
10	누룩곰팡이속(*Aspergillus spp.*)의 발효생산물	미생물의 배양과정이 끝난 후에 화학물질의 첨가나 화학적 제조공정을 거치지 않을 것
11	목초액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의 목초액(KSM3939) 기준에 적합할 것
12	담배잎차(순수 니코틴은 제외한다)	물로 추출한 것일 것
13	키토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품질규격에 적합할 것
14	밀랍(Beeswax) 및 프로폴리스(Propolis)	
15	동·식물성 오일	천연유화제로 제조할 경우만 수산화칼륨을 동물성·식물성 오일 사용량 이하로 최소화하여 사용할 것. 이 경우 인증품 생산계획서에 기록·관리하고 사용해야 한다.
16	해조류·해조류가루·해조류추출액	
17	인지질(Lecithin)	
18	카제인(유단백질)	
19	버섯 추출액	
20	클로렐라(담수녹조) 및 그 추출물	클로렐라 배양과정이 끝난 후에 화학물질의 첨가나 화학적 제조공정을 거치지 않을 것
21	천연식물(약초 등)에서 추출한 제재(담배는 제외)	
22	식물성 퇴비발효 추출액	(1) 제1호가목1)에서 정한 허용물질 중 식물성 원료를 충분히 부숙시킨 퇴비로 제조할 것 (2) 물로만 추출할 것
23	가) 구리염 나) 보르도액 다) 수산화동 라) 산염화동 마) 부르고뉴액	토양에 구리가 축적되지 않도록 필요한 최소량만을 사용할 것

24	생석회(산화칼슘) 및 소석회(수산화칼슘)	토양에 직접 살포하지 않을 것
25	석회보르도액 및 석회유황합제	
26	에틸렌	키위, 바나나와 감의 숙성을 위해 사용할 것
27	규산염 및 벤토나이트	천연에서 유래하고 단순 물리적으로 가공한 것만 사용할 것
28	규산나트륨	천연규사와 탄산나트륨을 이용하여 제조한 것일 것
29	규조토	천연에서 유래하고 단순 물리적으로 가공한 것일 것
30	맥반석 등 광물질 가루	(1) 천연에서 유래하고 단순 물리적으로 가공한 것일 것 (2) 사람의 건강 또는 농업환경에 위해요소로 작용하는 광물질(예 : 석면광 및 수은광 등)은 사용하지 않을 것
31	인산철	달팽이 관리용으로만 사용할 것
32	파라핀 오일	
33	중탄산나트륨 및 중탄산칼륨	
34	과망간산칼륨	과수의 병해관리용으로만 사용할 것
35	황	액상화할 경우에만 수산화나트륨을 황 사용량 이하로 최소화하여 사용할 것. 이 경우 인증품 생산계획서에 기록·관리하고 사용해야 한다.
36	미생물 및 미생물 추출물	미생물의 배양과정이 끝난 후에 화학물질의 첨가나 화학적 제조공정을 거치지 않을 것
37	천적	생태계 교란종이 아닐 것
38	성 유인물질(페로몬)	(1) 작물에 직접 처리하지 않을 것 (2) 덫에만 사용할 것
39	메타알데하이드	(1) 별도 용기에 담아서 사용할 것 (2) 토양이나 작물에 직접 처리하지 않을 것 (3) 덫에만 사용할 것
40	이산화탄소 및 질소가스	과실 창고의 대기 농도 조정용으로만 사용할 것
41	비누(Potassium Soaps)	
42	에틸알콜	발효주정일 것
43	허브식물 및 기피식물	생태계 교란종이 아닐 것
44	기계유	(1) 과수농가의 월동 해충 제거용으로만 사용할 것 (2) 수확기 과실에 직접 사용하지 않을 것
45	웅성불임곤충	

참고3 **친환경농산물의무자조금 납부 확인증 서식(예시)**

친환경농산물의무자조금 납부 확인증

납부 대상자	농가(법인)명		대표자	
	인증번호		인증서 발급일	
	소 재 지			

친환경농산물의무자조금 납부 내역

대상년도	인증면적(㎡)				고지금액	납부액
	유기		무농약			
	논	밭	논	밭		
년					원	원

상기인은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한 친환경농산물의무자조금을 납부하였음을 확인함.

2018년 월 일

친환경농산물의무자조금관리위원장 인

※ 문 의 처 : 친환경농산물의무자조금 사무국 ☎ 044-863-6202

16 친환경퇴비 생산시설현대화 사업

1. 사업개요

가. 목 적

○ 노후화된 퇴비 생산시설 개·보수 지원으로 우량비료 생산 기반 구축

○ 퇴비 품질 향상을 통한 안전 농산물 생산 유도

나. 근거법령

○ 「가축분뇨의관리 및 이용에관한법률」 제3조(국가·지방자치단체·축산업자의 책무)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4조(농업 투입재 산업의 육성 및 기계화·시설현대화 촉진) 및 제38조(친환경농업 등의 촉진)

다. 성과목표 및 지표

○ 가축분뇨, 음식물폐기물 등을 원료로 한 우수 품질의 퇴비 생산

2. 2022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가. 사업대상자

○ 생산자단체, 농업법인, 민간(개인)업체 등

나. 지원자격 및 요건

○ 농업법인(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은「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35조제9항 및 별표6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

○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을 통해 가축분퇴비 및 퇴비를 3년 이상 공급하고 '19.1.1.부터 '22년 사업자 선정 시점까지 비료관리법 위반으로 과징금 또는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업체(단체 등)

* 유기질비료지원사업 미참여 업체도 '5.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가능

○ 광역친환경단지 경축순환자원화센터 및 축산분뇨처리 등 관련 사업을 '19.1.1.부터 '22년 사업자 선정 시점까지 지원받은 업체 배제

○ 친환경퇴비생산시설현대화지원사업을 '17~'21년 지원받은 업체 배제

다. 지원대상 및 자금의 용도

○ 지원대상

- 생산시설 : 발효시설(교반식, 통풍식), 축분전처리장(신축, 증·개축), 후숙창고(신축, 증·개축), 악취방지시설, 포장시설(자동 포장라인 및 상차로봇) 등 품질개선 및 환경오염 방지와 관련된 시설
- 제품생산·관리장비 : 부숙도측정기, 수분측정기, 퇴비살포기, 휠로더, 페이로다, 농업용로더, 굴착기, 지게차 등 생산현장 장비로써 생산과정, 품질관리, 환경오염 저감에 사용되는 장비

* 지원 제외 : 압롤카, 압롤박스, 차량, 크레인 등 운반장비 및 이 사업의 목적과 관련 없는 시설, 장비

○ '19.1.1.~'21.12.31. 사업실적, 필요성(주위 민원 및 환경오염 저감 등), 자부담 능력 등을 종합 평가하여 지원

라. 지원형태(조건) 및 사업의무량

○ 재원 : 축산발전기금(축산분뇨처리시설 내역사업)

○ 지원비율(%) : 국비보조 20%, 국비융자 30, 지방비 20, 자부담 30

- 융자조건 : 농업경영체(농업인, 농업법인), 농·축협 연리 2.0%(3년 거치 3년 상환), 민간(개인)업체 연리 3.0%(3년 거치 3년 상환)

* 예산 여건에 따라 국비 융자조건이 변경될 수 있음

마.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개소당 지원한도 : 500백만원/개소

구분	국비보조	국비융자	지방비	자부담
500백만원	100	150	100	150
(100%)	(20)	(30)	(20)	(30)

* 정부지원 유기질비료지원사업 미참여업체 지원한도 150백만원

1) 사업대상자는 개소당 지원한도 범위 내에서 필요한 개·보수시설 신청

○ 시설규모가 개소당 한도액을 초과할 경우 자부담으로 설치 가능

○ 시설 개체 시 한도액의 100%를 지원하고 보수의 경우는 한도액의 80% 이상 지원할 수 없으며, 기존시설 철거비용은 지원하지 않음

2) 사업주관기관은 개소당 한도액 범위 내에서 사업대상자 신청에 따라 사업량(개소)증가, 규격 등을 조정할 수 있음

3) 사업대상자의 사업계획서상 사업비와 실제 설치비가 상이할 경우 금액이 작은 비용을 지원대상 사업비로 적용

4) 사업주관기관의 건축 및 토목기술직 공무원이 감독 및 공사감리 실시

○ 시설 개·보수 사업임을 감안 별도로 설계비 및 공사감리비는 사업비에 책정되어 있지 않으며, 외부 전문가 의뢰 시 비용은 사업대상자가 부담

5) 사업주관기관은 제품의 종류, 사양 등에 따라 설치비 등에 차이가 있음으로 (사)한국축산환경시설기계협회 및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한국유기질 비료산업협동조합 및 가축분유질비료협동조합(이하"비료협등조합") 등에서 제품의 가격 및 사양 정보와 기준 등을 종합하여 사업대상자에게 제공하되 시설 및 장비는 품목별로 발효시설 3억원, 후숙시설 2억원, 악취방지시설 2억원, 포장시설 2.5억원(로봇시설 2억원)범위 내에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조달청 구매 입찰 단가 등 객관적으로 증빙이 가능한 경우 초과 사용 가능

○ 품질관리를 위하여 부숙도 측정기, 수분 측정기가 없거나 내구연한이 지난 경우 반드시 사업에 포함토록 할 것

○ 퇴비살포기, 농업용로더 등 정부지원 농업기계로 등록된 품목(농업기계 구입지원 사업 시행지침 참조)은 한국농기계협동조합의 사후관리보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

3.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가. 사업신청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친환경퇴비생산시설현대화 관련 사업목적, 사업량 및 세부사업내용이 반영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에 시달(12월)

시·도(시·군)

○ 시·도(시·군)에서는 사업시행지침이 통지되면 사업신청 공고(12월)

- 주요 신청내용 : 목적, 신청기간, 대상자 자격, 신청방법, 선정절차 등

○ 시·군은 친환경퇴비생산시설 현대화지원사업 희망자를 취합하여 시·도에 신청

○ 시·도는 시·군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요구서를 작성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신청

보조사업자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26조제1항의 별지 제1호 서식을 준용하여 사업신청서(붙임 서식 1) 및 선정계획에 따른 사업신청서를 작성하여 시·군에 신청

나. 사업자 선정단계

시·도(시·군)

○ 시·군에서는 사업 신청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농정심의회를 통해 우선순위를 정하여 시·도에 신청

○ 시·도에서는 시·군 추천에 따라 사업대상자를 선정하여 농식품부에 신청

- 선정방식 : 시·도 농정심의회를 통하여 서면·현장평가 등의 방법으로 선정
- 선정기준 : 사업계획의 적정성(사업추진 전략, 자부담 능력 등)
- 농식품부 신청 :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우선순위를 정해 신청

농림축산식품부

○ 시·도 추천 → 농림축산식품부 선정(선정을 위한 평가 업무는 축산환경관리원에 위탁)

- 사업신청이 예산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심사대상자 수를 한정할 수 있으며, 시·도에서 제출한 우선순위에 따라 심사대상자 선정

○ 축산환경관리원이 평가를 통해 결정한 사업후보자중 사업대상자 및 사업예비대상자 선정

축산환경관리원

○ 심사평가단 구성 : 비료(퇴비·가축분퇴비) 및 환경분야 전문가 10명 내·외로 구성(축산환경관리원 포함)

○ 현장평가 : 사업계획 내용확인을 위한 현장실사 실시(사업계획서 보완사항 제시)

○ 종합평가 : 보완·제출된 사업계획서의 타당성 검토를 실시하고, 해당 사업계획서에 대한 평가위원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사업후보자 결정(종합평가 60점 미만의 사업자는 사업대상에서 제외)

○ 선정기준 : ‘19.1.1.～’21.12.31. 사업실적, 필요성, 자부담 능력 등 양질의 퇴비생산 계획이 명확히 수립된 대상자를 선정, 악취방지관련 시설 설치계획 수립 사업자 우선 선정

다. 세부계획수립

농림축산식품부

○ 시·도(시·군)를 통해 제출된 친환경퇴비생산시설현대화지원사업 사업계획서는 검토 후 필요시 보완 조치

시·도(시·군)

○ 사업주관기관은 보조사업자로부터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26조제1항의 별지 제1호 서식(붙임 서식 1)에 따라 대출신청 자료를 받아 사업대상자별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시·군 농정심의회의 공개 심의를 거쳐 확정

- 사업주관기관은 세부사업계획의 타당성 검토를 위해 필요한 경우, 농촌진흥청·농협경제지주·비료협동조합 등과 협조(현장 및 심의회 참석)

○ 사업시행 중 보조사업자의 사업계획 변경 및 사업포기서가 제출되면 시·군·구에서는 사업변경계획을 검토하여 시·도에 변경승인요청을 하고, 시·도에서는 변경 승인을 하며, 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 사업의 포기로 보조사업자를 다시 선정해야하는 경우는 시·군·구에서 농정심의회를 거쳐 신청을 하고, 시·도에서는 농정심의회를 거쳐 확정

* 단, 연초 사업자선정 절차의 차순위자를 보조사업자로 선정하는 경우 생략할 수 있음

보조사업자

○ 사업대상자는 사업대상 확정 통보를 받은 후, 20일 이내에 세부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시·군에 제출

- 자부담 우선 집행계획 등 자금조달 계획 등 포함

○ 보조사업자는 사업계획을 일부 또는 전부를 변경하거나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 사업주관기관에 사업계획 변경 신청 및 사업 포기서를 제출

라. 사업시행

시·도(시·군)

1) 친환경퇴비 시설·장비 등의 구입 정보 제공

○ 사업주관기관은 사업대상자가 구매코자 하는 시설·장비에 대한 제품특성 및 가격 비교 등을 할 수 있도록 (사)한국축산환경시설기계협회 및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비료협동조합 등을 통한 제조업체별 가격 및 제품 사양 정보와 기준 등을 사업대상자에게 제공

2) 시공업체 등 선정 및 계약체결

○ 사업주관기관은 (재)농업기술실용화재단 등 공인기관에서 공인한 제품과 농촌진흥청의 '가축분뇨 처리시설 및 관련기술 평가'를 받은 제품을 우선 구입토록 함

○ 사업주관기관은 부실시공을 예방하고 사업추진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시 경쟁 입찰을 실시토록 하고, 계약 청약자와 낙찰자를 공개하며, 유찰시 수의계약 방식을 통해 체결

○ 사업주관기관은 설치 업체로 하여금 보험사업자가 발행한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을 사업대상 업체에게 교부토록 하고 보험증권 사본을 사업주관기관에 제출

- 보험가입금액은 계약금액의 2% 이상, 보험기간은 최소 1년 이상

3) 착공·시공 및 감리

< 착공·시공 >

○ 사업주관기관은 사업대상자 또는 설치 업체로 하여금 사업계획과 설계도 등에 따라 사업을 착공토록 함

○ 사업대상자가 보조금교부결정 통지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여도 사업을 착공하지 못할 경우 사업대상자 변경 또는 사업비 반납조치를 할 수 있음

< 공사감리 >

○ 사업주관기관의 건축 및 토목기술직 공무원이 감독 및 감리

○ 사업주관기관은 부실시공 또는 불공정행위를 발견한 경우 당해 설치 업체에 대해 설치중지, 하자보수, 재설치 명령 등을 취하고, 향후 사업 참여 제한

○ 사업주관기관은 설치 등 사업이 완료되면 완료 검사 및 정산 실시

보조사업자

○ 사업대상자는 사업 시행전 해당 시·군을 통해 신고 등의 필요한 절차 이행

○ 사업대상자는 설치 업체와 계약체결 시 사업주관기관이 제공하는 서식에 따라 계약서 작성

마. 자금배정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비 배정 : 시·도에서 매달 20일까지 보조금과 융자한도액을 신청한 예산 요구액에 한하여 다음 달에 배정

도(시·군), 대출취급기관

1) 사업자금 배정신청

○ 사업주관기관은「농림축산신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53조에 따라 다음 달 말까지 집행 가능한 최소한의 보조금 및 융자한도액을 사업대상자로부터 신청 받아 매월 20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에 자금배정 요구

- 시·도는 보조금 및 융자한도액 배정요구를 하였으나, 정부의 자금 형편상 그 달에 전액이 배정되지 못한 경우 사업주관기관은 미 배정액을 차기분에 포함하여 배정 요구

2) 사업자금 집행 및 정산

○ 사업자금 집행은「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라 집행

○ 사업주관기관은 회계연도가 종료되거나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검정을 실시하고, 사업비 정산 실시

- 검정 및 정산서에는 국비보조, 지방비, 국비융자, 자부담으로 구분하고, 사업비 집행액은 정산서 내역이 포함된 증거서류 등에 의하여 확인

○ 사업주관기관은 기성고에 따라 사업비를 집행하되 시험가동 후 하자가 발생 경우 일정기간을 정하여 보완 조치토록 하고, 조치사항 미이행 시 보조금 회수

○ 사업주관기관은 보조금 교부결정 내역 및 융자한도액을 대출취급기관에 통지하고, 대출취급기관은 사업대상자별 실제 대출금액을 사업주관기관에 통지

○ 사업주관기관은 사업비를 집행할 경우 설치 업체 등에 통보하고, 사업대상자로 하여금 설치 업체 등의 통장에 대금을 입금한 입금확인서를 제출토록 할 것

* 사업주관기관은 사업대상자의 위임을 받아 설치 업체 등의 계좌에 직접 입금 조치할 수 있음

○ 보조금과 융자금을 함께 지원할 때 융자금을 자부담으로 대체하게 하고 보조금만 지원할 수 없으나,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후 금융기관의 신용불량 거래 등 불가피한 사유로 융자금 대출이 불가능한 경우, 그 사실을 확인하고 융자금을 자부담으로 대체할 수 있음

- 단, 융자금을 자부담으로 대체할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농림축산식품부로 보고하여야 하며, 융자금을 조속히 반납하여야 함

○ 대출취급기관은 사업대상자의 부동산담보, 제3자 담보, 후취담보 및 농림축산업자 신용보증 제도를 적극 활용

○ 사업주관기관은 9.30. 현재의 사업추진실적을 점검하여 예산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대상자 변경 및 자금배정 반납 등 필요한 조치 강구

바.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자의 사업추진실적 지도·점검 실시

- 집행실적 점검 : 공문 제출(매월)
- 점검일정 : 반기별 1회 이상(5월, 11월)
- 점 검 반 : 농림축산식품부(주관), 해당 시·도 합동 현지방문 점검
- 점검항목 : 사업 진척도, 사업자금의 적정 집행내역 등

시·도(시·군), 대출취급기관

○ 사업주관기관은「농림축산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74조에 의거 사업대상자의 사업추진상황 등을 분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지원자금이 사업목적대로 사용되도록 사후관리 강화

○ 사업주관기관은 지원 사업으로 취득한 시설·장비의 효율적 관리 및 활용 등을 위하여 자체 “관리카드”를 비치, 기록·유지 등 사후관리 감독 철저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관리

재 산 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비 고
	부터	까지		
○ 친환경퇴비생산시설 현대화시설	2022	2031	○ 중앙관서의 장 승인 없이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사용, 양도·교환, 대여, 담보제공은 안 됨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등
○ 제품관리 장비	2022	2026		

○ 보 고

보 고 사 항	보고기한	보고기관	비 고
○ 2022년 친환경퇴비생산시설현대화 사업 추진실적보고	2022.12.31.한	시·군(도) → 도 (농식품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법령 보고사항 * 붙임 서식 2, 3
○ 2022년 친환경퇴비생산시설현대화 사업 추진완료·정산보고	2023.2.15.한		
○ 2022년 친환경퇴비생산시설현대화 사업 수요조사 결과 보고	2022.10월말		
○ 2022년 친환경퇴비생산시설현대화 사업 대상자 선정 공고	2022.1월말		
○ 2022년 친환경퇴비생산시설현대화 사업 대상자 확정 및 가내시	2022.3월초		

《제 재》

도(시·군), 대출취급기관

○ 사업주관기관 및 대출취급기관은 사업자가 지원자금의 상환완료기간까지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는지를 수시로 점검하고, 시설·장비 등을 가동하지 않거나 용도외 사용할 때 자금 회수 등 조치

○ 사업주관기관은 사업대상자가 허위 영수증을 발급받는 등 사업비를 부당하게 지원받은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63조 및 제63조의4에 따라 부당사용금액에 대한 회수조치 및 일정기간 사업 제한

사. 성과측정단계

○ 1등급이상 가축분퇴·퇴비 생산업체비율(%)

- 생산업체의 1등급이상(특등급, 1등급) 가축분퇴비 및 퇴비 비율 측정
- 1등급이상 퇴비생산업체수/전체지원업체수×100

* 한 업체에서 가축분퇴비, 퇴비 2종 생산시 생산업체수를 2개로 계산

- 측정시기 : '22년도 4/4분기(조사 : 시장·군수·구청장)
- 측정방법 : 2022년 유기질비료 표준사업지침에 따른 품질등급 평가시 최종 품질등급
- 측정결과제출 : 농식품부 농기자재정책팀으로 공문제출

[참고] 2022년 유기질비료 표준사업지침 내 품질등급 평가내용
Ⅳ.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5. 이행점검단계 《품질관리 및 유통단속》 가. 품질검사 및 품질등급 평가 (3) 품질등급 평가

아.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사업평가》

○ 지원업체 평가 실시

- 평가대상 : 사업대상업체
- 평가기간 : 2022년 1월～12월
- 평가내용 : 퇴비 공급계획 대비 실적, 품질 및 유통관리, 운영실태 등
- 평가방법 : 농식품부 및 시·도의 연 2회 점검결과(40% 반영)와 한국유기질비료산업협동조합 평가결과(60% 반영)를 종합하여 상·중·하로 분류

《환　류》

○ 평가결과 상위 20%업체에 대해서는 차년도 퇴비 지원물량 10% 증량 배정

○ 농림축산식품부 평가전담부서의 농림사업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예산편성 방향과 제도개선 사항을 환류

4. 2023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가. 2023년도 사업수요조사

○ 2022년도 농림사업시행지침서에 의함

나. 2023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사업신청 : 2022년도 농림사업시행지침서에 의함

○ 지원대상 : 생산시설, 제품생산·관리장비 등 2022년도 지침에 의함

다. 2023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 심의 안내

○ 2023년도 사업신청시 지원제한 기준 추가

- 사업신청(농식품부에 제출) 후 신청을 철회한 경우와 사업대상자(예비대상자 포함)로 선정된 후 사업을 포기한 경우, 사업포기서를 제출한 다음연도부터 3년간 신청 및 지원 제한(사업을 이월한 후 포기한 사업자는 5년)

* '22년 신청자부터 적용('22년 신청 철회 및 포기할 경우 '23~'25년(이월 후 포기는 '27년)사업 지원 제한)

○ 2023년도 사업자 선정시 가산점항목 추가

- 유기질비료 공급물량이 '21년대비 '22년 증가한 시·도에서 신청한 사업대상자에게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음

[서식 1]

농림축산식품 사업 신청서

<table>
<tr><td rowspan="5">신청자</td><td>생산자단체 등의 명칭</td><td colspan="2"></td><td>법인등록번호</td><td colspan="3"></td></tr>
<tr><td>성 명
(대표자명)</td><td colspan="2"></td><td>농업경영체 등록번호</td><td></td><td>생년월일</td><td></td></tr>
<tr><td>주 소</td><td colspan="3"></td><td>전화번호</td><td colspan="2"></td></tr>
<tr><td>생 산
경 력</td><td>년</td><td>품질교육</td><td colspan="4">분야, 월 주</td></tr>
<tr><td>생산자단체 등의 형태</td><td colspan="3">협동조합, 농업법인, 법인, 회사, 작목반, 기타</td><td colspan="2">참여농가수</td><td>호</td></tr>
<tr><td rowspan="4">신청내용</td><td>사 업 명</td><td colspan="6">친환경퇴비 생산시설 현대화사업</td></tr>
<tr><td rowspan="2">사 업 비
(천 원)</td><td rowspan="2">계</td><td colspan="3">정부지원(축산발전기금)</td><td rowspan="2">지방비</td><td rowspan="2">자부담</td></tr>
<tr><td>국고계</td><td>보 조</td><td>융 자</td></tr>
<tr><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사업내용별 규모(량)</td><td colspan="6"></td></tr>
</table>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 ○ (시장·군수·자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1부.(사업신청 공고에서 양식제공)
2. 대출신청자료 1부.(대출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함)
3. 사업자 경영실태 확인서 1부.
4. 법인등기부등본
5. 표준재무제표

(주) 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농업경영체(농업인 및 농업법인), 사업시행지침에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농외소득이 있는 다른 직업종사자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농업법인은 제91조 관련 별표 5에 의한 농업법인 지원조건에 적합한 경우에만 지원됨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업인 지원을 위한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추진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기간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농림축산식품사업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농림축산식품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기간 및 사후관리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첨부 1]

농림축산식품 사업 계획서

1. 현 황

<table>
<tr><td rowspan="6">시 설
및
생 산</td><td rowspan="4">생산
시설</td><td>발효시설</td><td>후숙창고</td><td>악취방지시설</td><td>포장시설</td><td></td></tr>
<tr><td>(규격)</td><td></td><td></td><td></td><td></td></tr>
<tr><td>(능력)</td><td></td><td></td><td></td><td></td></tr>
<tr><td>(설치비) 천원</td><td></td><td></td><td></td><td></td></tr>
<tr><td rowspan="2">장비</td><td>휠로더</td><td>페이로다</td><td>부숙도
측정기</td><td>수분
측정기</td><td></td><td></td></tr>
<tr><td>대</td><td>대</td><td>대</td><td>대</td><td></td><td></td></tr>
<tr><td colspan="6">연간 생산능력 : 톤(가축분퇴비 톤, 일반퇴비 톤)
- 주요 사용원료 및 비율 : (원료별 비율 적시)</td></tr>
</table>

정부지원실적	구분	단위	2018	2019	2020	2021
	물량	톤				
	금액 계	천원				
	-국 고	천원				
	-지방비	천원				
	공급단가	원/포				
	등 급	특~2등급				

2. 사업계획

○ 세부사업내용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규격	단가	사업량	사 업 비					
					합계	정부지원(축발기금)			지방비	자담
						계	보조	융자		
계										
시설	○ ○ ○ ○ ○ ○ ○ ○ ○ ○ ○ ○									
장비	○ ○ ○ ○ ○ ○ ○ ○ ○ ○ ○ ○									

- 자부담금 확보계획

- 세부사업별 추진일정

세부사업명	1/4분기	2/4	3/4	4/4
○ ○ ○ ○ ○ ○ ○ ○ ○ ○ ○ ○				

* " ←——→"로 표시

○ 양질퇴비 생산계획

[첨부 2]

대 출 신 청 자 료

1. 신청자

생산자단체 등의 명칭		생산자단체 등의 형태		종업원수	
성명 (대표자명)		생년월일 (남/여)		전화번호	( ) -
주소					

신청내용	사업명	사업내용	사업비 (천원) 합계	정부지원 (축발기금) 계	보조	융자	지방비	자담
	퇴비생산시설 현대화	<시설 계> - - <장비 계> - - <합 계>						

2. 예금 및 융자금 현황

(단위 : 백만원)

예금 현황			융자금 현황			
기관명	예금종류	금액	기관명	대출일	상환기일	금액

3. 담보물(재산) 현황

소재지	종별	면적 (㎡)	소유자	신청자와의 관계	예상 평가액 (백만원)	先取담보 설정액 (백만원)	後取담보 설정액 (백만원)

4.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보증부대출 희망액 : 천원

※ 본인의 신용조사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년 월 일

신청자(서명 또는 날인)

[첨부 3]

사업자 경영실태 확인서

1. 신청자

생산자단체등의 명칭		생산자단체등의 형태		종업원수	
성명 (대표자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 ) -
주소					

신청내용	사업명	사업내용	사업비 (천원)					
			합계	정부지원 (축발기금)			지방비	자담
				계	보조	융자		
	친환경 퇴비생산시설 현대화	<시설 계> - - <장비 계> - - <합 계>						

2. 자부담 확보 능력

3. 사업검토

구 분	검토항목	평가			검토의견
		상	중	하	
사업능력	○ 생산능력 ○ 사업규모 ○ 품질정도 ○ 종업원수				
사업계획	○ 사업계획의 적정성 ○ 사업전망				
입지여건	○ 생산 또는 원료조달 ○ 판매지역				

※ 사업성검토기관의 장은 사업별 특성에 따라 "검토항목" 조정가능

4. 종합의견

년 월 일

○ ○ ○ 시장·군수 (인)

[서식2 : 엑셀]

(　　)년도 친환경퇴비생산시설현대화사업 추진실적보고

< 대상자 선정, 사업추진실적 : 완료 및 정산 >

(단위 : 천원)

사업별		사업자수(개소)	사업계획		사업비										이월액		불용액	
					계획					실적(정산)								
			단위	사업량	국비보조	국비융자	지방비	자담	소계	국비보조	국비융자	지방비	자담	계	국비보조	국비융자	국비보조	국비융자
합계	시　설																	
	장　비																	
	합　계																	
시설																		
	소　계																	
장비																		
	소　계																	

[서식 3]

친환경퇴비생산시설현대화사업(완료, 연도말) 검정 및 정산서

1. 사업주관기관명 :

2. 작성년월일 :

3. 작성자 직·성명 :

4. 지원대상자 주소·성명 :

5. 사업비 집행명세 :

○ 총괄표

사 업 명	사 업 비 집 행 액(천원)				
	합 계	국비보조	국비융자	지방비	자부담
합 계					
(시설 계) - -					
(장비 계) - -					

○ 세부명세

세부사업명	규 격	단 위	수 량	단 가 (천원)	금액(합계) (천원)	비 고
합 계						
(시설 계) - -						
(장비 계) - -						

17 친환경농산물 안전성 관리강화

1. 목 적

○ 친환경농산물 안전성 관리 강화를 통한 소비자 신뢰향상 및 행정처분 최소화

○ 인증취소 농가를 대상으로 도 지원 친환경농업 관련 보조사업 지원 제한을 통한 안전농산물 생산체계 확립

2. 추진근거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 「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31조, 제34조

3. 관리계획

○ 추진목표 : 인증면적 대비 0.5% 수준으로 행정처분 면적 최소화

○ 주요내용 : 친환경농산물 인증 상습 취소농가 지원제한, 지도·점검 강화

○ 주요 관리방안

시 책 명	구 분	주 요 내 용
친환경농산물 안전성 관리계획	보조금 회수처분	○ 인증취소농가 관련 보조금 회수조치
	道 친환경농업분야 보조사업 지원제한	○ 인증취소 1회 시, 3년간 지원제외 ○ 인증취소 2회 시, 5년간 지원제외
	행정처분 목록관리	○ 행정처분 원인제공 관련업체 현황관리 ○ 분기별 행정처분 내역 관리
	지도·점검 강화	○ 시군주관 점검대상 농산물 안전성 관리

4. 추진방안

가. 시행주체 : 시장·군수

나. 관리기간 : 2022. 1.~12.(1년간)

○ 시행기간 : ’22. 1. 1. ~ 별도 통보 시 까지

다. 주요내용

○ 친환경농산물 인증취소 농가 보조금 회수 조치

- 인증취소 당해 연도를 기준으로 친환경농업분야 지원보조금 전액 회수
- 친환경농업관련 지원예정 대상사업에서 즉시 제외
- 친환경인증 농업인과 일반 농업인이 함께 지원받는 사업은 차등지원액 범위 내 회수

○ 道 친환경농업분야 보조사업 지원제한

- 친환경농산물 인증취소 1회 : 차년도부터 도비 지원사업 3년간 지원제외
- 친환경농산물 인증취소 2회 : 차년도부터 도비 지원사업 5년간 지원제외

○ 행정처분 경영체·업체 목록관리

- 분기별 행정처분 농가현황 목록 관리 및 보고(분기별 15일 이내)
- 행정처분 원인제공 농자재 공급업체, 공동방제 업체 등에 대해 친환경농업분야 사업 참여를 영구 제한

  * 원인제공 업체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인증기관)의 행정처분 심사 중 적발된 업체 등

○ 친환경농산물 생산현장 지도·점검 강화

- 친환경농산물 인증기준 준수, 안전성 관리 목적에 한하여 농가 입회하에 시군 공무원 주관으로 농산물 시료를 채취하고, 잔류농약 검정의뢰 등을 실시

  * 시료채취 권한부여 : 인증비 지원사업, 유기·무농약 지속직불금 등 사업신청서에 관련사항 표기

[동 의 서]

친환경농산물 인증기준 준수 관리를 목적으로 보조사업을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신청인의 인증품 생산·유통 등 전 과정에 대해 시료채취 및 잔류농약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기관(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에 통지할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 부적격으로 판정 될 경우 검사결과는 관계기관(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에 통지하고, 처분결과에 따라 조치

라. 적용대상

○ 친환경농산물 인증 후 행정처분(부정인증에 따른 취소 등)을 받은 경영체

- 발생한 연도를 기준으로 해당 경영체에 대하여 보조금 회수 및 관련사업 지원제한
- 해당 경영체에 대한 보조사업 지원제한 기준 연도는 사유발생 차년도부터 1년차로 반영하고, 년 단위 적용

* 행정처분 중 '시정명령', '인증포기' 등은 지원제한 적용대상이 아님

○ 지원제한 기간에 있는 농업경영체의 친환경농산물 인증이 승계하는 경우

- 토지거래 등 경영체 변경의 사유가 합당한 경우에는 지원제한 해제

마. 적용대상 사업

○ (도비지원) 유기·무농약 지속 직불제,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지원, 친환경농산물 인증비지원사업, 유기농가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 (기타) 도에서 지원제한 적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별도 안내)

바. 행정처분 농가 관리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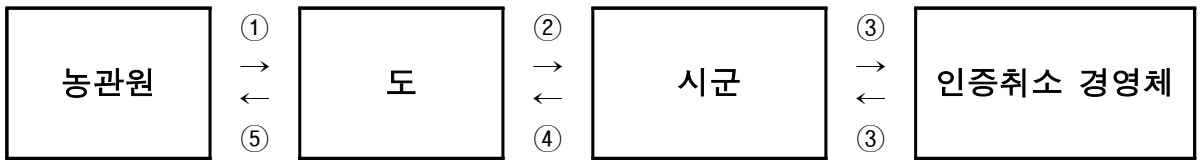

① 행정처분 내역 통보 ② 행정처분 내역 발송

③ 행정처분에 따른 조치계획(사업비 반납, 지원제한 등) 안내, 보조금 회수

④ 안전관리 조치현황 보고(분기별) ⑤ 안전관리 추진현황 정보제공

사. 보조금 환수 및 처분 내역 보고

○ 행정처분 확정 즉시 보조금 환수를 위한 안내문 등 관련사항을 처분대상자에게 통보하여 지체 없이 회수조치

○ 시장·군수는 회수된 보조금을 각 사업별로 반납 조치하고, 회수처분·지원제한 등 관리현황은 총괄하여 분기별로 도에 보고

아. 사후관리

○ 행정처분 농가현황 관리대장을 통해 지원제외 대상자의 지원여부 상시검증

5. 행정사항

가. 안전성관리 추진현황 보고 : 3회(3, 6, 9월말 기준) - 다음달 15일까지

나. 안전성관리 추진현황 총괄보고 : 1회(12월말 기준) - '23. 1. 15.까지

[보고 서식]

1. 안전성관리 추진현황 : 3회(3월말, 6월말, 9월말기준)

- 행정처분 현황

농가현황		처 분 내 역			조치결과
성 명	주 소	인증번호	위반일자	위반내용	

2. 안전성관리 추진현황 총괄보고 : 1회(12월말기준)

- 행정처분 현황

(단위 : ha)

시군명	행정처분 현황										비고
	계		인증취소		인증포기		시정명령		기타		
	건	면적	건	면적	건	면적	건	면적	건	면적	

- 조치결과

농가현황		처 분 내 역			보조금 회수		지원제한	
성 명	주 소	인증번호	위반일자	위반내용	대상사업	회수내역	처분사유	제한기간

참 고 사업참여 · 지원제한 주요사례

1 '21년 5월에 논두렁 제초제 살포로 취소처분

▶ 처분 당해 연도('21년) 기 지원 보조금 회수, 지원예정 보조금 미지원
▶ '22~'24년(3년간) 친환경농업분야 도비보조사업 지원제한

2 '16~'20년간 인증취소 2회, '21년 인증취소

▶ 처분 당해 연도('21년) 기 지원 보조금 회수 및 지원예정 보조금 미지원
▶ '22~'24년(3년간) 친환경농업분야 도비보조사업 지원제한 * 과거경력 미포함

3 '21년 인증취소, '22년 인증취득 후 '23년 인증취소

▶ 1회 인증취소로 보조금 미지원에 따라 회수대상 보조금 없음.
▶ 2회 인증취소로 '24~'28년(5년간) 친환경분야 도비보조사업 지원제한

4 단체 1, 개인 2(유기,무농약) 각 3건의 인증 보유 경영체의 인증취소

▶ 1건 취소되는 경우 1 사례를 적용, 잔여 건과 관계없이 경영체 대상 제한
▶ 3건 중 2건이 취소되는 경우 3 사례를 적용, 5년 제한
▶ 경영체 구성원간 별도로 인증을 받았더라도 경영체 단위로 제한
▶ 단, 단체인증의 경우는 '인증취소' 처분을 받는 농가에 한정하여 제한

수 지원제한 중인 농가의 인증 재취득 후 명의 변경(승계) 관련

▶ 승계의 경우 지원제한 유지 원칙(경영체 내 농업인 등 포함)
▶ 토지거래 등의 사유로 경영체가 변경, 변경된 경영체가 신규인증 하는 경우는 지원가능

숙 '21년도에 '20년산 농산물로 인한 인증취소 처분

▶ 처분사유 발생 연도 기준 연도('20년~) 이후 관련 보조금 회수처분

▶ 지원제한 시행('21년)하기 전 행위로 판단, 지원제한 대상 아님. 다만, '21년에 제초제 살포 등 행위로 인증취소 시 지원제한 대상에 포함됨

⑦ 공동방제 업자의 농약혼용 등 비의도적 인증취소 피해사례

▶ '인증취소' 확정 시, 비의도적 사유 등은 '지원제한' 예외대상 아님.

▶ 부정인증 원인제공 공동방제 업자는 친환경농업단지 등 지원사업 참여 영구배제(업체목록 별도관리)

▶ 단지조성비를 지원받는 단지(단체인증)가 영구배제 업체를 통한 공동방제가 확인 될 경우, 해당기간 단지조성비는 전액회수 조치함

⑧ 시군 담당직원 자체조사에서 잔류농약 검출이 확인된 경우

▶ 농관원·인증기관 등 관계기관에 농약살포 의심사업자로 신고(조사의뢰) 조치

▶ 관계기관의 명확한 '행정처분' 이외에는 임의로 지원 제한하지 않음

⑨ 도비 지원제한 중인 취소농가의 지원가능 범위

▶ 시군 자체사업, 국비 지원사업 등 도비 미지원, 관행농가와 동일하게 지원하는 사업 등은 지원제한 대상사업이 아님

▶ 국비와 도비가 매칭되는 친환경농업기반구축 사업 등은 지원가능

▶ 취소 3년 뒤 제한이 해제되는 친환경직불금(국비)은 지원 가능

⑩ 도비 보조사업 지원이 제한되는 행정처분의 범위

▶ 행정처분 중 '시정명령', '인증포기' 등의 사유는 지원제한 대상이 아니며, 농약검출, 제초제사용 등의 인증취소 농가만 해당됨.

유기농육성 분야

18 친환경농업 기반구축 사업

Ⅰ. 사업개요

1. 목 적

○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 기반조성 구축으로 농업환경 개선 및 보전 도모

- 친환경농산물 생산 효율화·규모화 및 생산비 절감 지원 등을 통해 생산자단체 등의 친환경농업 참여 활성화 유도
- 친환경 농산물 및 가공품 공급·소비 인프라 확충 등을 통해 관련 상품의 소비지 유통 확대 여건 조성

2. 근거법령

○「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

3. 사업계획

(단위 : 천원)

사 업 명	사업량	총사업비				
		계	국비	도비	시군비	자부담
친환경농업 기반구축 사업	9개소	8,530,000	2,559,000	2,132,500	2,132,500	1,706,000

Ⅱ. 사업 주요내용

< 기본방향 >

○ 중·소규모지구에 친환경농산물 생산·유통 등에 필요한 시설·장비와 함께 교육·마케팅 등 S/W를 묶어 지원하고, 우수단지·지구에 시설·장비 등을 추가 지원하는 친환경농업지구·단지(보완)사업 추진

○ 기존 광역친환경농업단지는「'14년도 광역친환경농업단지사업 시행지침」등에 따라 사업추진절차, 시설·장비관리, 이행점검 등 사후관리 추진

1. 사업대상자

○ 생산자단체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협,「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 등

*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은「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35조제9항 관련 (별표6) '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에서 정한 요건을 구비해야 함. 단, 개별 작목반 운영 실적이 있는 경우 법인 설립 1년 미만이라도 지원 가능

2. 지원자격 및 요건

<친환경농업지구(신규)>

○ 사업유형별 지원자격 및 요건

사업유형	지원자격	지원요건
생산▪가공▪소비 중심형	▪(벼) 연접한 농경지가 10ha 이상 집단화 되고, 참여농가가 10호 이상인 지역에서 친환경농업을 실천하고자 하는 생산자단체 ▪(엽채류·과채류·근채류 등) 농경지가 2ha 이상 집단화 되고, 참여농가가 5호 이상인 지역에서 친환경농업을 실천하고자 하는 생산자단체	▪전체 사업구역 대비 친환경농업 30% 이상 시행하고 있어야 함 ▪지구 내 친환경인증농가 전원 친환경농산물의무자조금 납무 완료

<친환경농업 지구·단지(보완)>

○ 지원자격

- 기 선정된 광역친환경농업단지 및 친환경농업지구로서 지구 내 비인증 농가의 친환경 인증 취득 등을 통한 집적화 성과가 우수한 사업주체

○ 지원요건

- 친환경농산물 생산·유통 등 사업성과가 우수한 단지·지구(인증면적 10% 이상 증가)
- 보완사업 완료 후 3년이 경과한 후 10년까지 최대 2회까지 지원 가능
- 반기별 사업실적 보고서를 성실히 제출하는 단지/지구
- 신규사업자 선정시 지구 내 비인증농가의 인증 전환 의향서를 제출하고 인증 전환을 위한 계획(지자체 반기별 점검, 별지 제13호)을 이행하여 친환경인증을 취득한 농가를 포함하는 단지/지구*

  * '24년도 보완사업자 선정시부터 적용

- 단지 및 지구내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전원이 친환경농산물의무자조금 납부 완료
- 정부 또는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농업경영컨설팅지원사업 등을 통해 경영컨설팅 이수(사업신청 당해 연도 경영컨설팅 이수 계획 인정)

○ 친환경농업 집적지구* 지원자격 및 요건('23년 선정시 부터 적용 예정)

* 개념 : 친환경농지 간 집적도를 높인 생산거점으로 사업주체가 안정적 판로를 바탕으로 농가와 계약재배 등을 통해 관리

품목별 \ 단계별		사업신청 요건		
		예비지구	기초지구	선도지구
쌀	사업면적	• 50ha	• 100ha	• 150ha
	인증면적	• 사업면적의 50% 이상(**인증면적 중 20% 이상 연접**)		
	취급액	• 10억원	• 15억원	• 20억원
원예 (쌀 외 식량작물 포함)	사업면적	• 20ha	• 40ha	• 60ha
	인증면적	• 사업면적의 50% 이상		
	취급액	• 15억원	• 30억원	• 45억원
가공	사업면적	• 20ha	• 40ha	• 60ha
	인증면적	• 사업면적의 50% 이상		
	취급액	• 30억원	• 60억원	• 90억원

* 참여주체별 역할 : (농가) 사업주체와의 계약에 따라 **전속출하**(출하량의 80% 이상) 이행, (사업주체) 농가와의 계약물량을 **책임지고 판매**, 지속적으로 **신규시장을 개척**하여 지구 내 일반농가의 친환경 전환 견인, 농가 **생산관리**를 위해 **생산매뉴얼 운영**, **농가 기술교육**, **농산물 품질 및 인증관리**, **공동농작업** 등 지원

3. 지원대상

<친환경농업지구(신규)>

○ 사업유형별 지원대상

사업유형	지원대상	기타
생산 중심형	▪ (H/W) 친환경농산물 생산·저장·유통 등에 필요한 시설·장비 ▪ (S/W) 경영관리 및 조직화 역량 강화 교육·컨설팅	▪ 건축물 설치에 따른 감리비 ▪ 기타 부대비용
가공 중심형	▪ (H/W) ① 친환경농산물 가공·포장·유통 등에 필요한 시설·장비, ② 친환경 농업 및 상품 관련 교육·체험 시설 ▪ (S/W) 마케팅, 디자인개발, 제품 및 기술개발, 지적재산권 등록 등	▪ 건축물 설치에 따른 감리비 ▪ 기타 부대비용
소비 중심형	▪ (H/W) 친환경 농산물 및 가공품 전용 판매장, 유통 관련 시설·장비 * (판매장) 내부 인테리어 기자재 구입 및 공사 등	▪ 기타 부대비용

※ 시설·장비의 경우 원칙적으로 공동이용이 가능한 것만 지원 가능

<친환경농업 지구·단지(보완)>

○ (H/W) 본 사업으로 기 지원된 시설·장비 개보수 및 확충

○ (S/W) 역량강화 및 조직화 교육, 마케팅, 제품·디자인 및 생산기술 개발, 지적재산권 등록 관련 비용

○ (기타) 건축물 설치에 따른 감리비, 기타 부대비용

◈ **신규 및 보완 사업 공통 지원제외 대상**

○ (부지) 부지매입비, 부지 및 건물 임차비, 사업부지 기반조성비

○ (시설) 음식점 및 숙박시설 설치비

○ (장비) 일반 농기계 및 차량 등 다용도·범용 장비

○ (자재) 개별농가단위 생산관련 자재 구입비(비료, 미생물제재, 종자 등)

○ (운영) 인건비, 개별농가 홍보·마케팅 관련 비용

○ (기타) 설계비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농식품부에서 확정 통보한 친환경농업지구(신규) 및 친환경농업 지구·단지(보완) 조성과 관련한 사업대상자별 사업계획 이행에 필요한 비용

- (H/W) 사업계획 이행에 필요한 친환경농산물 생산·가공·유통 관련 시설 설치 및 장비 구매 비용 등

◈ 지원가능 H/W 분야

○ (생산) 친환경농산물 및 유기농업자재 생산 관련 시설·장비

- 친환경농산물 생산에 필요한 시설·장비
- 유기농업자재 생산 및 활용 관련 시설·장비

*「친환경농어업법」시행규칙 제3조제1항 관련 별표1 '허용물질 종류'에서 허용하고 있는 물질을 생산하는 시설·장비

○ (가공) 친환경농산물 가공 관련 시설·장비

- 집하, 예냉, 선별, 가공, 제조, 포장에 필요한 시설·장비

○ (유통) 친환경 농산물 및 가공품 유통 관련 시설·장비

- 저온 저장고, 지게차, 저온 운반차량(3.5톤 이하) 등

○ (교육·체험) 친환경 농업 및 상품 관련 교육·체험 시설·장비

- 교육장, PC 등 기자재, 현장 체험학습장 등

○ (소비) 친환경 농산물 및 가공품 등 판매시설

○ (기타) 건축물 설치에 따른 감리비 등

- (S/W) 사업계획 이행에 필요한 친환경농산물 생산·가공·유통 관련 교육·컨설팅 비용 등

◈ 지원가능 S/W 분야

○ (역량강화) 재배・경영관리 및 생산자단체 조직화 역량 강화 관련 교육・컨설팅

- (교육) 공동영농 및 농가조직화를 위한 인식전환, 계약재배, 작부체계 전환, 농기계 조작・관리, 친환경 인증 취득, 선진지 견학 등
- (컨설팅) 경영체 조직관리 및 운영체계 수립(제도・규약 마련, 사업전략 등), 경영개선(사업여건에 따른 적정 취급량 및 운영활성화, 보유 농기계의 효율적 운영, 향토자원 활용, 농가소득증대 방안 등), 생산역량혁신 계획 수립(작목 및 품종선택, 재배방법, 영농기술, 작부체계, 농기계공동운영, 생산비 절감 등)

○ (상품개발) 친환경농산물 및 가공품 생산기술 개발, 상품개발 기술 관련 교육・컨설팅

○ (판로확대) 마케팅, 디자인 및 브랜드 개발, 상품 특허 및 지적재산권 등록 등

5. 지원형태 및 사업범위

○ 재원 : 균형발전특별회계(지역지원계정)

○ 사업시행기관 : 시・도 및 시・군

○ 지원비중 및 사업기간

구분	친환경농업지구(신규)	친환경농업 지구・단지(보완)
지원 비중	▪ 국비 30%, 지방비 50%, 자부담 20%	▪ 국비 30%, 지방비 40%, 자부담 30%
사업 기간	▪ 사업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하되, 여건 등에 따라 1년 추가 가능 - (1년사업) 당해 연도 국고 100% 지원, (2년사업) 1년차 국고 30%, 2년차 70%(지구별로 사업 진척도에 따라 연차별 지원액 조정 가능)	▪ 1년 - 당해 연도에 국고 100% 지원

○ 사업의무량

- 사업기간 중 세부사업계획 수립, 시설・장비 설치・구입, 각종 교육・컨설팅 이수 등 마무리

○ 지구 내 농지의 임대차 허용

- 친환경농업 지구·단지 내 농지에 대해서는 선정시부터 사후관리 기간 동안(선정연도로부터 10년간)「농지법」제 23조제1항제9호,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3항에 따라 농지의 임대차 허용

  * '21년 기준, 2010 ~ 2020년 선정 지구·단지('20.9월 조사기준, 별첨)에 대해서도 동일 기준 및 절차 적용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지원한도(사업규모) : 20억원

- 친환경농업지구(신규), 친환경농업 지구·단지(보완) 모두 지원 한도 동일
- 사업대상자의 경영여건, 친환경 농산물 및 가공품 생산·유통 규모 등에 따라 10억원 범위 내에서 차등 지원
- 현재 집적화 정도와 향후 지구 내 친환경 인증 면적의 확대 계획의 우수성 등을 전문가 심사위원회의 종합 평가를 거쳐 예산 배정

  * (예시) 지원액(국비 기준) : 1.5억, 2억, 2.5억, 3억

- 교육·컨설팅 등 S/W사업의 경우 총사업비의 20% 이내로 집행 가능

Ⅲ. 사업추진체계

1. 사업신청단계

[사업시행지침]		[온·오프라인]		[오프라인]
'22년도 사업 추진방향 통보	→	'22년도 사업홍보 및 선정공고	→	'22년도 사업신청
농식품부('21.3월)		사업시행기관('21.3~5월)		생산자단체 등('21.6월)

농림축산식품부

○ (농식품부) 사업시행지침을 수립하여 시·도에 통보('21.3월)하고, 사업시행기관(시·도, 시·군)과 생산자단체 등을 대상으로 사업홍보 실시('21.3~5월)

시·도 및 시·군

○ (시·도) 농식품부로부터 사업시행지침을 통보받은 시·도는 이를 시·군에 지체 없이 통보('21.3월)

○ (시·군) 시·도로부터 사업시행지침을 통보받은 시·군은 '21년도 신규 사업대상자 공개모집 실시('21.3~5월)

- 시·군은 신규 사업대상자 공개모집 공고문을 시·군청 홈페이지 및 외부 게시판에 게시, 관할 친환경농업 생산자단체 등에 안내

* 공모내용/기간 : 사업목적, 신청자격, 신청기간, 신청방법, 선정절차 등 / 1개월 이상

사업자(신청자)

○ (사업자) 사업신청자는 아래 신청서류를 구비하여 해당 시·군에 제출('21.6.18)

1) 사업신청서

- 친환경농업지구(신규) : 본 지침 별지 제1호 서식
- 친환경농업 지구·단지(보완) : 본 지침 별지 제3호 서식

2) 세부사업계획서 외 관련 서류

- 친환경농업지구(신규) : 본 지침 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5호~제8호, 제12호 서식
- 친환경농업 지구·단지(보완) : 본 지침 별지 제4호 서식, 별지 제5호~제8호 서식

3) 그 외 첨부서류

◈ 그 외 첨부서류

○ (법인현황) 법인등기부등본, 조합원(농업인 주주) 명부(출자내역 포함, 농협 제외), 농업경영체 등록(변경등록) 확인서(농협 제외), 농림축산식품사업 이력서(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별지 제4호 서식),

○ (경영현황) 결산재무제표(최근 3년간), 친환경농산물 및 일반농산물 취급액(최근 3년간)

○ (영농현황) 친환경인증서, 참여농가 명부 및 농지현황, 해당 농지 전체를 조망하는 항공사진(집적 정도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정확한 사진)

○ (판로현황) 최근 3년 이내 식품기업 등과의 계약재배 또는 납품실적, 기타 거래처와의 출하내역서, 기업 등과 향후 진행될 계약재배 약정서 등

○ (사업신청) 자부담금 확보증명서(현금 잔액증명서 또는 정기예금증서 등), 세부사업비 산출내역서(견적서 함께 제출, 교육·컨설팅 제외), 사업부지 관련 토지등기부등본·지적도·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토지 건폐율·용적률 및 제한사항 검토서(지자체 사전심사청구제도 활용)

* 토지가 법인명의 등기이전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매매(가)계약체결서 추가제출

※ 농협사업자의 경우 농협 경제정보시스템 상의 전산출력 자료 인정

○ 사업대상자가 지구 내 농지에 대한 임대차를 계획하고 임대 필요 농지[별지 제7호 서식]를 작성하여 제출할 경우, 해당 필지들이 동 사업에 따른 임대차가 적법한지 여부를 시군에서 확인하여 표기

시·도 및 시·군

○ (시·군) 시·군은 지원자격 및 요건을 갖추었고, 제출서류를 모두 준비한 사업자에 한해 사업대상자 선정 제외대상*, 사업성 검토 및 사업시행지침 준수 여부 검토 후 사업신청서, 세부사업계획서 등을 시·도에 제출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제6항 및 제9항,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제1항에서 규정한 지원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법인 등

○ (시·도) 시·도는 시·군에서 제출한 사업신청자별 관련 서류의 이상 여부를 확인한 후 자체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적합한 사업자를 선정

* 구성 : 친환경농산물 생산·가공·유통, 농업경영 및 친환경농산물 소비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

- 사업평가지표(붙임1 또는 붙임2)에 따른 자체심의 점수가 60점을 넘은 사업신청자들에 한해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농식품부에 사업 신청('21.8.18일)

* 제출시 자체 평가 결과 점수를 표기하고, 점수에 따른 순위를 정하여 제출

2. 사업자 선정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농식품부) 농식품부는 시·도에서 제출한 사업신청자별 구비서류를 사전 점검하고, 보완이 필요한 경우 해당 시·도에 관련 서류 보완 요청('21.8월)

○ (농식품부) 농식품부는 사업대상자 선정을 위해 '선정위원회'를 구성('21.8월)

- 선정위원회는 선정심사의 공정성·객관성·전문성 확보 등을 위해 생산·유통 등 분야별 외부 전문가로 구성(10명 내외)

○ (농식품부) 농식품부는 시·도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대해 단계별 평가 실시('21.8~9월)

< 1단계 : 서면평가 >

- 평가자 : 사업대상자 선정위원회

  * 친환경농산물 생산·유통 등 분야별 외부 전문가

- 평가내용 : 사업준비, 사업여건, 사업계획 적정성 등 평가

< 2단계 : 발표평가 >

- 평가자 : 사업대상자 선정위원회

  * 친환경농산물 생산·유통 등 분야별 외부 전문가

- 평가내용 : 사업 준비, 사업여건, 사업계획 적정성 등 평가

- 참석대상 : 사업신청자 및 해당 지자체 담당자(시·도, 시·군)

- 평가방식 : 사업신청자 사업계획 설명 및 평가위원 질의·답변

< 3단계 : 최종선정 및 예산규모 확정 >

- 사업대상자별 서면 및 발표평가 점수의 평균값을 최종 점수로 부여

-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사업대상자 확정

- 사업규모와 시설·장비 투자의 적정성 등을 제고하기 위해 사업대상자별 사업계획 및 세부사업비 조정 등을 통해 예산규모 확정

○ (농식품부) 농식품부는 시·도에 사업대상자 목록, 사업대상자별 총사업비 및 국비예산안(가내시) 통보('21.9월)

  * 재정집행 효율성 및 사업성과 제고를 위해 별도의 사업준비 상황 점검

시·도 및 시·군

○ (시·도) 농식품부로부터 사업대상자 목록, 사업대상자별 총사업비 및 국비예산안(가내시)을 통보받은 시·도는 이를 해당 시·군에 통보('21.9월)

- 시·도에서는 농식품부로부터 통보받은 국비예산안(가내시)을 근거로 지방비 확보 추진

○ (시·군) 시·군은 사업대상자에게 관련 내용을 통보하고, 조정된 총사업비 및 세부사업비 등에 따라 세부사업계획을 변경하도록 요청('21.9월)

- 시·군에서는 시·도로부터 통보받은 국비예산안(가내시)을 근거로 지방비 확보 추진

사업자(신청자)

○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사업계획서 제출 시 제출한 임대 필요 농지(별지 제7호)에 대해 다음의 사항과 「농지법」 제24조의2의 규정을 준수한 임대차 계약 체결

- 임대차계약 기간 내에는 사업 종료에도 불구하고 임대 가능 농지로 간주(단, 계약기간 연장은 불가)

- 사업대상자의 귀책사유 등으로 인해 사업선정 이후 취소, 변경되는 경우 식재된 농작물의 작기 등을 고려하여, 수확 시까지만 임대 가능 농지로 간주

○ 사업대상자는 임대차 농지 소재지 시군에 농지의 임대차 계약 체결 결과를 보고(임대차 계약서, 농지원부 사본 등 제출)

시·도 및 시·군

○ (시·군) 지구 내 농지의 임대차 계약 결과를 보고 받은 농지 소재지 시장·군수는 해당 농지의 필지 지번 등을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기록·관리하고 임대차 계약 농지가 포함된 농지원부에 변동사항을 정리

- 임대차가 가능한 농지에 대한 기록을 시도에 보고('21.11월)

○ (시·도) 시·도는 시·군에서 제출한 내용을 종합하여, 농식품부에 보고('21.12월)

농림축산식품부

○ (농식품부) 농식품부는 차년도 예산안이 국회에서 확정이 되면, 지체 없이 해당 시·도에 사업대상자별 총사업비 및 국비예산 확정 통보('21.12월)

시·도 및 시·군

○ (시·도) 농식품부로부터 사업대상자별 총사업비 및 국비예산 확정을 통보받은 시·도는 이를 해당 시·군에 통보('21.12월)

- 시·도에서는 농식품부로부터 통보받은 확정 국비예산을 근거로 지방비 확보 추진

○ (시·군) 시·군은 사업대상자에게 총사업비 및 보조금(국비+지방비 규모) 확정 통보('21.12월)

- 시·군에서는 시·도로부터 통보받은 확정 국비예산을 근거로 지방비 확보 추진

3. 사업시행단계(H/W 설치·확보, S/W 사업 이행)

【사전행정절차 이행 및 세부사업계획 확정·변경 등】

시·도 및 시·군

○ (시·도 및 시·군) 시·도 및 시·군은 예산 연내 집행 및 사업 조기 추진 차원에서 사업대상자 확정 직후 사업대상자들이 시설 설치 관련 각종 인허가 등 사전행정절차 및 시설 설계 등을 이행하도록 독려('21.9~12월)

사업대상자

○ (사업대상자) 사업대상자는 선정 직후 시설 설치 관련 각종 인허가 등 사전행정절차 및 시설 설계 등 이행('21.9월~12월)

○ (사업대상자) 시·군으로부터 총사업비 및 보조금 확정 통보를 받은 사업대상자는 최종 세부사업계획서를 마련하여 시·군에 제출('21.12월)

시·도 및 시·군

○ (시·도 및 시·군) 사업대상자로부터 최종 세부사업계획서를 제출받은 시·군은 이를 시·도를 통하여 농식품부에 제출('21.12월)

사업대상자

○ (사업대상자) 사업대상자가 세부사업계획서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변경내용에 따라 해당 승인주체에 승인을 받아야 함

내용		승인주체
대표자 변경 등 경미한 사항		시·군 보고
건축·설비 관련 설계 변경 * 사업비 조정이 불필요한 경우		시·군 승인
세부사업계획 및 세부사업비 변경	총사업비의 30% 이하	시·군 승인
	총사업비의 30~50%	시·도 승인
	총사업비의 51% 이상	농식품부 승인
사업부지 변경		농식품부 승인

※ 사업부지 변경의 경우 원칙적으로 불가. 단, 불가피한 경우(도로, 공단 등)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

※ 세부사업비 산출내용은 지역 실정에 맞게 조정(증감)할 수 있으나,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사업비 산출근거(종합물가정보, 원가계산서 등)를 첨부하여야 하며, 총사업비 범위 내에서 변경 가능

※ 세부사업계획에 따라 사업 완료 후 사업비가 남는 경우(입찰차액, 부가가치세 환급분 등)는 시·군 승인 후 시설 및 장비 확충·개선에 집행 가능(단, 기존시설 유지·보수 및 단순 리모델링, 일반 장비 구입은 제외)

※ 사업계획 사후변경 승인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며, 이에 따른 초과금액은 자부담으로 추진

○ (사업대상자) 사업대상자가 사업을 포기할 경우 사업포기서를 시·군에 제출

※ 사업을 포기할 경우, 임대 농지가 포함된 지구의 임대농지 허용 기간은 식재된 농작물의 작기 종료시까지

시·도 및 시·군

○ (시·도 및 시·군) 사업대상자로부터 사업포기서를 제출받은 시·군은 이를 시·도를 통하여 농식품부에 제출

【시설 설치 및 장비 확보 등 사업시행】

사업대상자

○ (사업대상자) 자부담 확보 결과 시·군에 제출('21.12월)

- (농협조직) 이사회 회의록(자부담 부담 결의 내용이 포함된 것)

- (농업법인) 총 자부담의 100%를 별도 통장에 입금 후 사본(통장 인감 등록 부분과 입금금액 표시 부분)과 이사회 회의록(자부담 부담 결의 내용이 포함된 것) 제출

  * 자부담을 사업 개시 전에 인출해서 허위서류 제출과 행정기관을 속이는 실수 방지 목적을 위해 통장 인감은 법인인감과 시·군 담당자 도장을 병행 등록하는 등의 유사조치 이행

지자체 및 사업대상자

○ (지자체 및 사업대상자) 시·군과 사업대상자는 아래 일정 준수

일정	사업시행내용	비고
전년도 12월 ~사업추진년도 2월	▪ 계약 및 입찰 관련 지자체 일상감사	
사업추진년도 1~2월	▪ 시설 설치 및 장비 납품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 공고 ▪ 시설 설치 및 장비 납품 업체 선정·계약 ▪ 교육·컨설팅 관련 업체 선정·계약	
사업추진년도 3월	▪ 사업 착수 및 착공	
사업추진년도 3~11월	▪ 시설 설치 및 장비 납품	
사업추진년도 11월	▪ 시설 준공, 장비 인수 완료	
사업추진년도 11월	▪ 사업완료 - 시설 설치 및 장비 인수, 교육·컨설팅 등	
사업추진년도 12월	▪ 건물등기부등본(부기등기) 등재 ▪ 사업비 정산	
사업추진년도 12월	▪ 사업비 정산	

※ 사업시행(납품) 업체 선정 추진 시 「국고보조금통합관리지침」 제21조, 「지자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및 지자체 자체 계약 관련 조례 등 준용

4. 자금 교부 및 집행 단계

【보조금 교부결정】

시·도 및 시·군

○ (시·도 및 시·군) 시·도 및 시·군은 사업자에게 보조금 교부결정 신청 안내('21.12월)

사업대상자

○ (사업대상자) 시·군에 보조금 교부결정 신청('21.12월)

시·도 및 시·군

○ (시·도 및 시·군) 시·군은 시·도를 통해 농식품부에 보조금 교부결정 신청('22.1월)

농림축산식품부

○ (농식품부) 농식품부는 시·도를 통하여 해당 시·군에 보조금 교부결정 통보('22.1월)

【자금집행】

농림축산식품부

○ (농식품부) 시·도 및 시·군에서 사업추진실적에 따라 자금배정 요청 시 보조금 배정(수시)

시·도 및 시·군

○ (시·군) 시·군은 사업 보조금(국비+지방비)을 공사실적 등에 따라 집행하되,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58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자부담금을 우선 집행

* 연간 사업비에 대한 자부담 비율이 100분의 20 이상이고 연간 자부담 금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 자부담 금액은 사업 착수 시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집행하고, 연간 사업량의 100분의 50에 해당할 때부터 기성고에 따른 보조금 또는 융자금 집행시마다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합한 금액의 집행 비율 이상 자부담 금액 집행

○ (시·군) 시·군은 예산 조기집행을 위해 사업대상자와 협의하여 선금지급 활성화 제도 적극 활용

- 근거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행안부 예규) 제6장 선금·대가 지급요령

- 주요내용 : (개요) 지자체가 계약대상자의 계약이행 전 또는 기성대가 지급 전에 미리 그 대금의 일부를 지급하는 것, (선금지급대상) 공사, 물품 제조(구매는 제외) 및 용역계약 등

- 지급범위 :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계약금액 규모에 따라 선금의무지급율 이상으로 지급

선금 의무지급률	공 사	물품제조 · 용역	비고
계약금액의 30%	100억 원 이상	10억 원 이상	
계약금액의 40%	100억 원 미만 20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 3억 원 이상	
계약금액의 50%	20억 원 미만	3억 원 미만	

사업대상자

○ (사업대상자) 사업대상자는 예산 조기집행을 위해 시설 설치 및 장비 확보 등 신속 추진, 선금지급 적극 협조, 시·군에 기성고에 따른 보조금 교부 요청 등을 차질 없이 이행

5. 이행점검, 사업비 정산 및 사후관리 단계

【이행점검】

농림축산식품부

○ (농식품부) 농식품부는 사업추진 및 예산집행 상황 등을 점검하여 사업부진 예방 및 부실화 사전 방지 등 사업관리 실시

시·도 및 시·군

○ (시·도 및 시·군) 시·군은 사업대상자들이 세부사업계획서에 따라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하고, 분기별로 시설설치 및 장비확보, 예산집행 실태를 점검하여 다음달 10일까지 농식품부에 보고(별지 제8호 서식)

○ (시·군) 시·군은 사업대상지 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농지의 필지 지번 등을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기록·관리하고 매년 11월 30일까지 시도지사 제출

- (시·도) 시·도지사는 시군이 제출한 내용을 종합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농식품부에 보고

○ (시·도 및 시·군) 시·군은 사업대상자가 부도, 폐·휴업, 사업포기, 사망 또는 사업을 1년 이상 추진하지 아니하여 지원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교부결정을 취소하고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별표 5에 따라 환수조치

【사업비 정산】

사업대상자

○ (사업대상자) 사업대상자는 사업이 완료했을 때,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20일 이내 시·군에 보조사업실적보고서(정산보고서 등) 제출

- 보조금 총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 및 제9조에 따른 감사 인으로부터 정산보고서의 적정성을 검증 받아야 함

  * 근거 : 「보조금법」 제27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제2항

- 보조사업실적보고서에 중요재산 부기등기를 한 등기서류를 포함하여 제출

시·도 및 시·군

○ (시·도 및 시·군) 시·군은 사업대상자의 정산보고서 접수 및 보조금 확정

- 시·군은 회계연도가 종료되거나 사업이 완료될 때 사업검정 실시 및 사업비를 정산하고 다음해 1월까지 그 결과를 시·도를 통하여 농식품부에 보고

- 사업검정 및 사업비 정산은 재원별로 구분하여 증빙서류에 의해 실시하고 현장 확인, 사진촬영 등 근거자료 첨부

○ (시·도 및 시·군) 시·군은 사업대상자가 보조금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행위*를 확인한 경우 「보조금법」 제31조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 조치 후 이를 시·도를 통해 농식품부에 보고

* 거짓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지급)받은 경우, 농식품사업 자금 용도외 사용, 교부결정 또는 법령 위반 등의 행위

【사후관리】

사업대상자

○ (사업대상자) 사업대상자는 아래 재산을 취득한 경우 15일 이내에 보조금통합관리망*에 등록하고 사후관리기간 종료 이전까지 중요재산 관리 철저 및 지자체 사후관리 시 적극 협조

* 「보조금법」 제26조의2에 따라 국고보조사업을 원활하게 관리하고 보조금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구축된 시스템

중요재산 범위	사후관리기간
▪ 부동산 및 부동산의 종물 - 부동산(예시) : 농식품사업자금으로 지원된 토지, 건물, 유리온실 - 부동산의 종물(예시) : 건물내 고정식 기계설비, 고정식 ICT설비 등	▪ 준공일로부터 10년 - 해당 중요재산은 「보조금법」 제35조의2에 따라 부기등기
▪ 부동산의 종물이 아닌 기계·장비 - 농기계 등 기계·장비	▪ 구입일로부터 5년

○ (사업대상자) 사업대상자는 중요재산 중 부동산 소유권 등기를 할 때 사업대상자 명의로 등기하여야 하며, '보조금이 지원된 부동산 증명서'*를 시·군으로부터 발부 받아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여 부기등기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별지 제9호 서식

◈ 부기등기 내용

○ 이 부동산(건물)은 보조금이 지원되어 있으며, 0000년 00월 00일까지는 보조금을 지원한 000기관의 장의 승인 없이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및 담보의 제공을 할 수 없다.

- 중요재산은 부득이한 사유가 아닌 한 농식품부장관의 승인 없이 보조금의 교부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의 제공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음

○ (사업대상자) 사업대상자는 그 외 중요재산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6조(중요재산의 사후관리) 규정 준용

시·도 및 시·군

○ (시·도 및 시·군) 시·도와 시·군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2조(사업의 관리책임 등)에 따라 사업대상자 및 중요재산 사후관리 조치 시행

Ⅳ. 평가 및 환류

1. 사업실적보고서 제출

○ 기 지원된 친환경농업지구 및 단지에 대한 친환경농업 이행실적 평가

- 평가대상 : '11년도 이후 선정된 사업대상자

  *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후 10년간 사업실적보고서 제출 의무 부여

- 평가내용 : 친환경농업지구 및 단지별 유기·무농약 인증 농가수, 인증면적, 친환경농산물 생산·취급 실적 등(별지 제10호 서식), 사업 지구 단지 내 관행농가의 인증전환 추진 실적(별지 제13호 서식)

- 평가일정 : 매년 2회(상·하반기 각 1회)

  * (상반기) 매년도 6월말 기준 실적을 7월 조사, (하반기) 매년도 12월말 기준 실적으로 다음해 1월 조사

- 평가방법 : 지구·단지별 전체 농산물 생산면적 대비 친환경농산물 생산면적 비중, 사업주체 친환경농산물 취급실적 등 성과 평가

2. 평가

○ 친환경농업지구 및 단지별 사업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환류 추진

<인센티브>

- (사업주체) 친환경농산물 인증 집적 고도화 등 사업성과가 좋은 친환경농업지구 및 단지 사업주체에 한해 '친환경농업 지구·단지 보완사업' 신청 자격 부여

  * 보도자료, 홍보책자 등을 통해 해당 사업주체 활동성과를 우수사례로 소개

- (시·군) 사업성과가 좋은 친환경농업지구 및 단지를 관할하는 시·군 지역에서 신규 사업신청이 접수될 경우 해당 사업신청자에 가점 부여

- (지자체 담당자) 사업성과가 좋은 친환경농업지구 및 단지를 관할하는 시·도 및 시·군 업무 담당자 대상 장관표창, 해외 선진지 연수 기회 등 부여

<제재>

- 사업추진 후 3년 간 사업성과가 부진*한 지구·단지를 관할하는 시·군 지역에서 신규 사업신청 제한

  *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후 3년간 사업구역 내 친환경 인증 재배면적이 선정된 해 연도말 기준 대비 증가가 없는 지구·단지

  ※ 다만, 사업신청 제한 예외 사례에 해당할 경우 시·도 자체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농식품부에 사업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농식품부는 사업대상자 선정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사업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음

  - (사례) ① 당해 시·군 전체의 유기·무농약인증 면적이 최근 증가세로 사업지원을 통해 성과창출을 기대할 수 있는 경우, ② 시·군내 부진지구 외 우수지구가 있어 연계사업시 유기·무농약 인증면적 확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경우로서, ㉮ 사업신청자의 사업계획이 기존 부진지구와 차별성이 있고, ㉯ 사업계획이 충실하며, ㉰ 지역의 친환경농업 육성 여건 및 필요성 등을 감안 시 사업 지원이 필요한 경우

- 동 사업의 사후관리 대상 지구의 농지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임대차 계약 기간 미보장, 정당한 사유 없는 휴경 등 농지법 위반행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해당 시군 신규 사업신청 제한(선정시 감점)

  *「농지법」 제60조(벌칙)에 따라, 임차 농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경영에 사용하지 않아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대차 종료를 명령했을 때,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음

3. 참고서식

○ <붙임 1> 친환경농업지구(신규) 사업대상자 평가표

○ <별지 제1호 서식> 친환경농업지구(신규) 사업신청서

○ <별지 제2호 서식> 친환경농업지구(신규) 조성 세부사업계획서

○ <별지 제3호 서식> 친환경농업 지구·단지(보완) 사업신청서

○ <별지 제4호 서식> 친환경농업 지구·단지(보완) 조성 세부사업계획서

○ <별지 제5호 서식> 사업 지구·단지 내 농가 영농현황

○ <별지 제6호 서식> 사업참여 농가 동의서

○ <별지 제7호 서식> 임대 필요 농지 현황

○ <별지 제8호 서식> 사업참여 친환경 농가 친환경농산물의무자조금 납부현황

○ <별지 제9호 서식> 사업 추진상황 보고

○ <별지 제10호 서식> 친환경농업 이행실적 보고서

○ <별지 제11호 서식>「농지법」제23조제1항9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3항에 따라 임대차가 가능해지는 농지

○ <별지 제12호 서식> 지구 내 관행농가의 친환경 인증전환 의향서

○ <별지 제13호 서식> 사업 지구, 단지 내 관행농가 인증전환 추진 실적 보고서

[붙임 1]

친환경농업지구 사업대상자 평가표

1. 서류심사

항 목	배 점	평 가 기 준	점 수
1. 계획의 적정성 (25)	10	○ **HW 사업계획(시설.장비)은 집적지구 유지.확대에 적정한가?** 1」친환경 생산.가공.유통.판매 계획에 적합한 적정 규모의 시설.장비 인지 여부 2」기존 시설.장비와의 연계 활용 여부 3」소속 농가의 예상 활용도, 활용 범위	
	10	○ **SW 사업계획(사업조직 마케팅 역량 강화, 농가 교육 등)은 적정한가?** - 계획의 구체성과 성과 창출 가능성 등을 고려	
	5	○ **사업부지와 자부담금은 확보되었는가?** - 미확보시, 확보계획 구체화 정도 등 평가	
2. 농지의 집적 정도 (15)	10	○ **친환경농지가 규모화되었는가?** - 지구 내 친환경인증면적의 규모와 비중 등 고려 * 비중 = (친환경인증 면적/집적지구 전체 면적)×100	
	5점	○ **친환경농지간 연접성 정도는?**	
3. 생산 관리 현황 (30)	10점	○ **생산계획 수립 여부?** ○ **계약재배 현황?** - 소속농가의 계약재배 비율 ○ **계약재배에 대한 농가 이행정도?**	
	10점	○ **소속농가의 인증 및 품질관리를 위한 지원체계는 적절한가?** - 생산관리 매뉴얼 운영, 기술교육, 인증 관련 교육 등	
	5점	○ **공동농작업 운영현황?** ○ **자재 공동구매 및 공동시설.장비 운영현황?**	
	5점	○ **의사결정체계를 구축하였는가?** - 농가와 사업조직간 협의기구 설립 여부, 최근 1년간 회의 개최 현황	
4. 유통 확보 현황 (30)	30점	○ **안정적 유통망 확보 현황?** 1」최근 5년간 판로 개척 실적 2」최근 5년간 판매처별 매출액 증감 추이 3」판매처 다양화 정도	
5. 가점	3점	○ **식량작물공동경영체 육성사업을 지원받은 실적이 있는가?**	
	2점	○ **관할 시.군의 기 조성 지구 친환경인증 면적이 증가한 경우**	
	5점	○ **벼 이외 품목에서 집적지구를 구성한 경우**	
6. 감점	2점	○ **최근 3년간 사업을 포기한 사업자인 경우**	
합계	100점 (+10점, -2점)		

1. 발표심사

항 목	배 점	평 가 기 준	점 수
1. 사업자의 의지, 역 량 (40)	10점	○ **사업자가 사업추진의 역량과 의지를 갖고 있는가?** 1」생산관리 체계의 적정성 2」안정적 유통망 확보 경과 및 확대 노력 3」집적지구 사업에 대한 이해도 4」친환경농업 확산에 대한 의지, 비전	
	25점	○ **친환경농산물 생산과 유통에 전문성이 있는가?** - 매출액 중 친환경농산물 비중 등 평가 ○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고, 구체적 판매계획을 가지고 있는가?** - 납품계약, 홍보 및 마케팅 실적 및 계획 등 종합 고려	
	10점	○ **지구 내 일반농가의 친환경 전환 유도 방안의 구체성?**	
	10점	○ **공동영농 및 농가 소득 리스크 관리 위한 기금 운영현황?** - 정관에 공동영농 비용과 이익금 정산 관련 해당 내용 포함 여부, 기금 규모의 적정성 등 평가	
2. 계획의 실현 가능성 (45)	25	○ **세부 사업계획은 구체적인가?** ○ **연차별 사업목표 및 추진일정은 적정한가?** ○ **집적지구의 성장가능성이 있는가?** - 사업자의 생산관리와 유통망확보 등의 추진체계와 세부사업계획의 실현가능성 등을 종합 고려	
	10	○ **사업조직, 참여조직, 농가 등 주체별 역할은 명확한가?** ○ **각 주체는 동 사업에 대한 이해도와 추진의지가 높은가?** ○ **판로 확대를 위해 유통 관계자와의 네트워크 형성 등 마케팅 역량 제고를 위한 노력은 적정한가?**	
	10	○ **친환경농산물 생산량 확대와 인증면적 증가 계획은 시장 여건 분석을 바탕으로 적정한가?** ○ **지구 내 일반농의 인증전환 의사는 사전 파악하였는가?** ○ **일반농가의 인증전환 교육 등 지원방안은 적정한가?**	
3. 지자체의 추진의지 (15)	15	○ **집적지구 육성을 위한 지자체 사업의 연계 여부?**	
합계	100점		

2. 현장심사

항 목	배 점	평 가 기 준	점 수
1. 환경평가 (30)	20점	○ **농지, 농업용수 등 농업 환경 관리를 하고 있는가?** - 영농폐기물 및 생활폐기물 적정 처리 여부, 농지 주변 생물군의 관리와 보전에 관한 노력 등 ○ **농가와 사업자간 농업 환경 관리에 대한 역할분담 체계?**	
	10점	○ **집적지구는 비산 오염 우려가 없거나, 오염 방지방안이 있는가?** - 집적지구 주변에 오염원이 있는 경우 적절한 완충지대나 보호시설을 확보하고 있는지 여부	
2. 조직의 결속력 (40)	10점	○ **계약재배 등이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가?**	
	10점	○ **소속농가의 사업 만족도?**	
	10점	○ **사업자, 참여조직, 소속농가간 의사결정체계 운영 활성화 정도?** - 총회와 이사회 개최 빈도, 소속농가의 참여정도 등을 고려	
	10점	○ **사업조직은 농가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가?** - 후계인력 육성, 재배기술 개발 수요 등에 대응	
3. 사업의 지속 가능성 (30)	10점	○ **일반농가의 친환경 전환을 통한 집적지구의 규모화 가능성은?** - 일반농가의 집적지구 사업 이해도, 추진 의지, 사업조직에 대한 소속감 여부 등을 고려	
	10점	○ **사업자의 판매처 확보 노력, 유통망 확대 가능성?**	
	10점	○ **사업자, 참여조직, 농가 간 협력 체계의 긴밀성, 결속력은?**	
합계	100점		

[별지 제1호 서식]

친환경농업지구(신규) 사업신청서

<table>
<tr><td rowspan="7">신청인</td><td>단체명</td><td colspan="2"></td><td>설립연도</td><td colspan="2"></td></tr>
<tr><td>대표자명</td><td colspan="2"></td><td rowspan="4">교육·컨설팅 및 시설·장비 지원 이력</td><td>총 횟수</td><td>회</td></tr>
<tr><td>연락처</td><td colspan="2"></td><td>총 금액</td><td>백만원</td></tr>
<tr><td>주소</td><td colspan="2"></td><td>지원 내용</td><td></td></tr>
<tr><td>조직형태</td><td colspan="5">*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협조직' 등으로 기입</td></tr>
<tr><td>조직현황</td><td colspan="5">법인 출자자 수 ___명, 참여농가수 ___호, 영농면적 ___ha</td></tr>
<tr><td>출하처</td><td colspan="5">*출하처, 기입(대형유통업체, 공공급식처, 식품기업 등)</td></tr>
<tr><td rowspan="9">신청내역</td><td colspan="6">(2020)년도 해당사업에 ☑ 표시 및 관련 내용 기재</td></tr>
<tr><td>사업유형</td><td colspan="2">☐ 생산중심형</td><td colspan="2">☐ 가공중심형</td><td>☐ 소비중심형</td></tr>
<tr><td rowspan="2">총사업비</td><td>계</td><td>국비</td><td>지방비</td><td colspan="2">자부담</td></tr>
<tr><td>백만원</td><td>백만원</td><td>백만원</td><td colspan="2">백만원</td></tr>
<tr><td rowspan="2">☐ 시설·장비 지원</td><td>주요내용</td><td colspan="4"></td></tr>
<tr><td>사업규모</td><td colspan="4">백만원</td></tr>
<tr><td rowspan="2">☐ 교육·컨설팅 지원</td><td>주요내용</td><td colspan="4"></td></tr>
<tr><td>사업규모</td><td colspan="4">백만원</td></tr>
<tr><td rowspan="2">☐ 임대차 계획</td><td>주요내용</td><td colspan="4"></td></tr>
<tr><td>규모</td><td colspan="4"></td></tr>
</table>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하며, 사업대상자 선정기관 등이 아래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시 반드시 ☐에 √ 표시)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필수)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필수)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시장·군수·자치구청장 귀하

붙임 : 1. 세부사업계획서
2. 평가 증빙자료 일체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안내문≫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교육·홍보 등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안내, 사업대상자 선정을 위한 평가, 사업 추진 및 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 등의 각 항목(대표자명,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교육·홍보 등의 사업대상자 선정을 위한 평가와 사업기간 및 사후관리에 필요한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사업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 제공 동의 사항 】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교육·홍보 등 정책 사업의 평가 및 시행·위탁 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농림축산식품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관련 교육 등 홍보·안내, 사업대상자 선정·평가, 사업 시행·사후관리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농림축산식품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 기간 및 사후관리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사업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별지 제2호 서식]

친환경농업지구(신규) 조성 세부사업계획서

사 업 명 칭

수립 20○○년 ○○월 ○○일

○○○○법인

목 차

Ⅰ. 사업자 현황 ····· 360

Ⅱ. 친환경농업지구(신규) 조성 세부사업계획 ·· 365

Ⅲ. 사업비 확보계획 ····· 378

Ⅳ. 기대효과 ····· 379

Ⅰ. 사업자 현황

1) 사업자 기본현황

<table>
<tr><td>단체명</td><td></td><td>대표자</td><td></td></tr>
<tr><td>연락처</td><td></td><td>법인등록번호</td><td></td></tr>
<tr><td>주소</td><td></td><td>사업자등록번호</td><td></td></tr>
<tr><td>법인 설립일</td><td></td><td>출자액(천원)</td><td></td></tr>
<tr><td>출자자 수(명)</td><td></td><td>운영진 수(명)</td><td></td></tr>
<tr><td>참여농가 수(명)</td><td></td><td>-</td><td></td></tr>
<tr><td>법인영농면적(ha)</td><td>논 : ha
밭 : ha</td><td>주요 생산품목</td><td></td></tr>
<tr><td>생산 현황(연간)</td><td colspan="3">품종명 : ha 톤, (상위 5개 품종 기입)</td></tr>
<tr><td rowspan="4">시설·장비
보유현황</td><td>시설명 : 동 ㎡</td><td>시설명 : 동 ㎡</td><td>시설명 : 동 ㎡</td></tr>
<tr><td>장비명 : 대</td><td>장비명 : 대</td><td>장비명 : 대</td></tr>
<tr><td>장비명 : 대</td><td>장비명 : 대</td><td>장비명 : 대</td></tr>
<tr><td>장비명 : 대</td><td>장비명 : 대</td><td>장비명 : 대</td></tr>
<tr><td rowspan="4">시설·장비
임대현황</td><td>시설명 : 동 ㎡</td><td>시설명 : 동 ㎡</td><td>시설명 : 동 ㎡</td></tr>
<tr><td>장비명 : 대</td><td>장비명 : 대</td><td>장비명 : 대</td></tr>
<tr><td>장비명 : 대</td><td>장비명 : 대</td><td>장비명 : 대</td></tr>
<tr><td rowspan="3">자체
가공·유통현황</td><td>가공품명</td><td>연간 생산량</td><td>연간 판매액</td></tr>
<tr><td></td><td>톤</td><td>백만원</td></tr>
<tr><td></td><td>톤</td><td>백만원</td></tr>
<tr><td rowspan="4">교육·컨설팅
지원 이력</td><td>지원연도, 사업비</td><td rowspan="4">시설·장비
지원 이력</td><td>지원연도, 사업비</td></tr>
<tr><td>주요내용</td><td>지원품목</td></tr>
<tr><td>지원연도, 사업비</td><td>지원연도, 사업비</td></tr>
<tr><td>주요내용</td><td>지원품목</td></tr>
</table>

2) 사업자 경영 현황

○ 사업자 단체 목적 및 발전 방향(비전)

-

*

○ 사업자 주요사업

-

*

○ 사업자 구성현황

(단위 : 천원, 명)

구분	1구좌 금액	총 출자액	총 출자자수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인원 수	공동영농 활동자 수	영농 위탁 의뢰자 수
법인 결성시						
현재						
향후 계획						

* 주요출자자 현황(상위 10명)

(단위 : 천원)

출자자	출자액	출자자	출자액

○ 사업 외부 생산자단체 등과의 교류현황

- *단체 가입현황, 타 생산자단체, 유통업체 등과 자매결연 및 MOU 현황 등 기술*

*

○ 사업자 조직체계(조직도)

-

*

* 대표, 이사, 감사, 총무, 기획, 품질관리, 기술지도 등

○ 사업자 농산물 생산·가공·유통·판매 관련 시설·장비 보유 현황

- 시설 보유 현황

시설명	현황	위치	설치년도	비고
저온창고	*(규모) ㎡, 동*	*00군 00면 00리 00번지*	*0000년*	

- 장비 보유 현황

시설명	현황	보관장소	확보년도	비고
트렉터	*(규모) 대, 마력*	*00법인 농기계창고*	*0000년*	

○ 최근 3년간 품목별 용도별 재배면적

(단위 : ha)

구분	품목명	친환경	GAP	일반용	기타	
2018	품목명					
	품목명					
	품목명					
	품목명					
	합계					
2019	품목명					
	품목명					
	품목명					
	품목명					
	합계					
2020 (계획)	품목명					
	품목명					
	품목명					
	품목명					
	품목명					
	합계					

○ 최근 3년간 품목별 용도별 생산량*(생산법인이 아닐 경우 유통량으로 기입)*

(단위 : 톤)

구분	품목명	친환경	GAP	일반용	기타	
2018	품목명					
	품목명					
	품목명					
	품목명					
	합계					
2019	품목명					
	품목명					
	품목명					
	품목명					
	합계					
2020 (계획)	품목명					
	품목명					
	품목명					
	품목명					
	품목명					
	합계					

○ 사업자 최근 3년간 교육·컨설팅 주요실적

교육명 (연월일)	주관기관		참석자		교육내용	교육시간 (시간)	교육비용	
	기관명	소재지	구분	인원수(명)			금액(천원)	처리방식
계				총 명				
'19.10.5		*전남 나주*	*임원*	*대표 등 8명*	*친환경 농산물 재배 교육*			*국가·지자체보조*
		전북 전주	*조직원*	*50명*	*000재배기술 교육*			*수익자부담*

○ 최근 3년간 지자체 지원사업 및 향후 지원 계획(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

* 시도, 시군에서 내용을 반드시 확인

사업명	사업내용	예산	친환경농업 지구와의 연계 내용	사업기간 및 진행사항	비고 (과제정보, 지원기관, 담당부서 등)

Ⅱ. 친환경농업지구(신규) 조성 세부사업계획

1) 추진배경

○ *현황과 문제점 등 기입*

-

2) 세부계획

(1) 사업유형 :

(2) 친환경농업지구 현황

○ 지구 위치 및 면적(ha) : *주소 기입(예시 00시 00면 00리 일원) / 면적 기입ha*

○ 지구 현황

- 일반현황

구분	유기	무농약	일반(GAP 포함)	합계
전체 면적(ha)				
사업참여 면적(ha)				
전체 농가수(명)				
사업참여 농가수(명)				

- 사업참여 농가 품목별 생산량

구분	유기	무농약	일반(GAP 포함)	합계
품목명(톤)				
품목명(톤)				
합계				

- 사업참여 주체별 영농 면적

구분	사업주체	협력 생산자단체	협력 일반농가	합계
면적(ha)				
농가수				

- 지구 지적도

* 전체 지구가 한 지적도 상에 모두 나타나도록 축적비율은 적의 조정하고 지구 경계와 인증 및 비인증 농지를 최대한 정확하게 표시, 제출 지적도의 정확도나 가독성이 낮을 경우 사업계획서의 내실성 측면에서 감점 가능(사업계획서 본문 내에는 축소도로 나타내고, 전체 지적도는 별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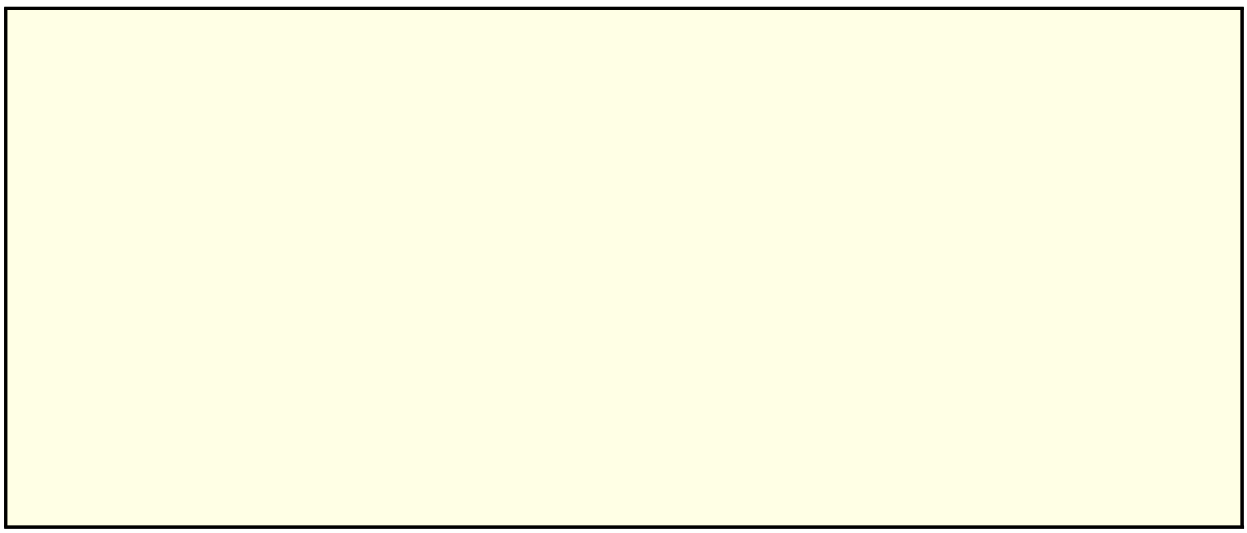

* 지구 참여 필지 별도 색을 넣어 구분, 지구 경계를 선으로 표시

(3) 친환경농업지구 조성·확대 방안

○ 추진 여건 분석

<육성 대상 품목별 시장 환경>

-

<친환경농업 지역적 여건>

-

<친환경 농산물 및 가공품 등 판로확보 현황>

- 식품업체, 대형마트 등 납품 현황 및 계약 체결 계획 등 기입

- 각종 도표 등을 활용하여 납품 물량, 품목, 금액 등 구체적 내용 기입

<사업 참여 주체 및 농업인 역량>

-

<사업주체와 지자체 간 협력체계>

-

○ 주요 비전과 목표

- *비전 :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중장기 비전 제시*
- 목표 (*비전 달성을 위한 목표 설정(향후 5개년)*)

목표	당초 ('21년 3월 기준)	22	23	24	25	26
지구내 친환경 재배면적(ha)						
지구내 친환경 재배면적 비중(%)						
친환경농산물 생산량(톤)						
친환경농산물 (가공품 포함) 매출액(백만원)						
지구 내 비인증 농가의 인증전환	*비인증 농가수*	*전환 농가수*	*전환 농가수*	*전환 농가수*	*전환 농가수*	*전환 농가수*
지구 내 비인증 농지의 인증전환	*비인증 농지면적*	*전환 농지면적*	*전환 농지면적*	*전환 농지면적*	*전환 농지면적*	*전환 농지면적*

** 목표는 사업자 실정에 맞게 조정 가능, 단, 친환경 생산 확대 기조에 부합해야 함*

** 단위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적정하게 작성하고 증빙을 상세 첨부(필지별 토지현황, 친환경 인증서 등)*

○ 사업자 및 참여 법인·농가 조직화·역할 분담 전략

- *목표달성을 위한 사업자 및 참여 법인·농가 조직화·역할 체계 등 기입 (조직도 등 시각화 자료도 삽입)*

○ 사업자 및 참여 법인·농가 교육·컨설팅 전략

- *목표달성을 위한 사업자 및 참여 법인·농가 교육·컨설팅 계획 기입*

○ 친환경농산물 마케팅 및 판로확대 전략

- *목표달성을 위한 친환경농산물 마케팅 및 판로확보 전략*

○ 친환경농산물 생산 확대 전략

- *일반농가 관리체계 구축계획, 교육컨설팅 및 인증지원 등 체계적인 추진 전략 등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기입*

○ 친환경농산물 가공·유통 확대 전략

- *목표달성을 위한 친환경농산물 가공유통 확대 계획*

○ 일반 농가 대상 친환경 농가 전환 전략

- *일반 농가 대상 교육, 컨설팅, 농가 대상 판로 알선, 공동재배·경영 추진 방안 등 각종 지원책 기입*

○ 참여 농가(일반 및 친환경농가 전체) 혜택 지원 전략

- *출자배당, 친환경농자재 등 현물지급, 운영수익 활용 공동재배 시설장비 재투자, 영농작업료 할인 등 기입*

(4) 친환경농업지구 조성.확대 세부추진계획

<신규>

추진과제	현황과 문제점	실행계획	세부사업 내용
예시) *지구 내 비인증농가의 인증전환*			
예시) *교육·컨설팅* *농업인 역량강화,* *조직화, 법인 운영 등*			
예시) *생산 기반 강화*			
예시) *가공 기반 조성*			
예시) *유통 기반 조성*			

<인센티브 사업>

: 신규사업 추진 후 사업성과에 따라 지원하는 인센티브 사업을 신청하여 추진할 계획이 있을 경우 작성

(5) 생산·가공·유통·판매 관련 시설·장비 확보 계획

<시설 분야>

○ 확보예정 시설

추진과제	현황과 문제점	실행계획	세부사업 내용
예시) *지구 내 비인증농가의 인증전환*			
예시) *교육·컨설팅* *농업인 역량강화,* *조직화, 법인 운영 등*			
예시) *생산 기반 강화*			
예시) *가공 기반 조성*			
예시) *유통 기반 조성*			

시설명	규모	설비	용도 및 필요성	비고 (신규/인센티브)*
저온창고	*(규모) ㎡, 동, (저장가능물량) 톤*	*시설 내 설치할 설비 (예시: 선별기, 포장기 등) 내역*	■(용도) ■(필요성) ■(계획과의 부합성) ■(규모의 적정성)	*신규사업 추진시*
				인센티브 사업 추진시

** 신규사업 추진 후 사업성과에 따라 지원하는 인센티브 사업을 신청하여 추진할 계획이 있을 경우 인센티브 사업을 작성하고 신규 / 인센티브로 구분*

○ 시설 활용·관리 방안

- (관리체계) *관리 전담인력, 유지보수 체계 등 기입*
- (기존 및 신규 시설·장비와의 연계성) *기존 및 신규 시설장비 간 어떻게 종합적으로 연계 활용할 것인지 기입*
- (활용계획)

<장비 분야>

○ 확보예정 장비

장비명	규모	용도 및 필요성	비고 (신규/인센티브)*
저온 운반차량	*(규모) 톤 cc 등 장비 스펙기입*	■(용도) ■(필요성) ■(계획과의 부합성) ■(규모의 적정성)	*신규사업 추진시*
			인센티브 사업 추진시

** 신규사업 추진 후 사업성과에 따라 지원하는 인센티브 사업을 신청하여 추진할 계획이 있을 경우 인센티브 사업을 작성하고 신규/ 인센티브로 구분*

○ 장비 활용・관리 방안

- (관리체계) *관리 전담인력, 유지보수 체계, 보관 장소 등 기입*
- (기존 및 신규 시설・장비와의 연계성) *기존 및 신규 시설장비 간 어떻게 종합적으로 연계 활용할 것인지 기입*
- (활용계획) *공동재배, 공동방제 등 활용계획 및 개인경작용으로 활용을 금지하는 등의 활용제한 내용에 대해서도 기입*

(6) 사업추진 일정

** 각 단계별 추진일정을 면밀히 검토하여 실행가능한 일정을 최대한 자세히 작성할 것*

** 칸에 색(회색) 기입 * 구분란에는 자유롭게 사업자 여건에 맞게 자유롭게 기입*

<신규사업 추진시>

구분	사업신청연도(2021년)				사업추진 연도(2022년)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사업방침 결정																
이사회																
정기총회																
인허가																
설계																
일상감사																
시행업체 선정입찰																
보조금 교부결정																
시행업체 선정계약																
사업착수																
교육																
컨설팅																
기계납품																
시험운행																
검수																
정산																
기타																

<인센티브 사업 추진시>

** 신규사업 추진 후 사업성과에 따라 지원하는 인센티브 사업을 신청하여 추진할 계획이 있을 경우 작성*

구분	사업신청연도(년)				사업추진연도(년)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사업방침 결정																
이사회																
정기총회																
인허가																
설계																
일상감사																
시행업체 선정입찰																
보조금 교부결정																
시행업체 선정계약																
사업착수																
교육																
컨설팅																
기계납품																
시험운행																
검수																
정산																
기타																

(7) 사업예산 요구액

<신규>

구분	사업량	사 업 비 (백만원)				사업비 비중(%)
		계	국고	지방비	자부담	
계						
○ *추진과제*						
- *사업내용*						
· 시설*명*						
· 장비명, 용역명 등						
○ *추진과제*						
- *사업내용*						
· 교육명						
· 컨설팅명						

<인센티브> ** 신규사업 추진 후 사업성과에 따라 지원하는 인센티브 사업을 신청하여 추진할 계획이 있을 경우 작성*

구분	사업량	사 업 비 (백만원)				사업비 비중(%)
		계	국고	지방비	자부담	
계						
○ *추진과제*						
- *사업내용*						
· 시설*명*						
· 장비명, 용역명 등						
○ *추진과제*						
- *사업내용*						
· 교육명						
· 컨설팅명						

(8) 사업예산 세부산출내역

* *대략적인 계획이 아닌 실제 실행계획을 자세히 작성*
* 본 자료는 간이설계 및 시장조사 가격 등을 근거로 계획수립 차원에서 작성
* 산출기준 및 편성사유는 구체적으로 기재, 산출기준 및 편성사유가 부실하거나 미제출시 해당항목은 사업비 심의시 제외
* 유사시설은 양식을 적절히 변경하여 작성

구분	단가	사업량	사업비	산출기준	편성사유
1. 감리 및 컨설팅					
- 기계공사 감리					
- 토목•건축공사 감리					
- 컨설팅 (성능시험 등)					
감리 및 컨설팅 합계					
2. 기계 및 장비					
2-1) 가공부(Ⅰ)					
- 단위기계					
- 구조물 및 이송시설					
- 집진시설					
-					
소계					
2-2) 가공부(Ⅱ)					
- 단위기계					
- 구조물 및 이송시설					
- 집진시설					
- 품질검사장비					
-					
소계					
기계 및 장비 합계					

구분	단가	사업량	사업비	산출기준	편성사유
3. 건축 및 토목					
3-1) 건축					
- 가공부					
- 회의실					
-					
소계					
3-2) 토목 및 소방 등 기타					
- 토목공사					
- 1차수전공사					
- 소방 및 통신					
-					
소계 *건축 및 토목 합계*					
4. 기타					
4-1)유통시설					
- 지게차					
-					
소계					
4-2) 위생시설					
- 오수처리시설					
-					
소계					
건축 및 토목 합계					
총사업비					

(9) 부지확보 현황*(기존 건축물-시설에 설치할 경우 해당 시설 기입)*

○ 부지 확보여부 : *확보 or 확보 중(가등기) 기입*

○ 부지 위치 : 00시 00읍 00리 00번지

○ 부지 면적 : m2(평)

○ 부지 관련 사진(위성사진 또는 드론 활용 전경사진을 활용하되 전체 지구 내에서 위치 표시)

* 지적도, 토지등기부등본(부지확보, 증빙 필요),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기존건축물 대장 제출

* 건폐율, 용적율, 개발제한구역 등 토지 및 건축 관련 법령상 저촉여부 등 관련규제 검토 (지자체 사전심사청구제도 활용)

(10) 지구 내 임대차 계약 계획

○ 대상 부지 :

○ 위치 : 00시 00읍 00리 00번지

○ 면적 : m2(평)

○ 부지 관련 사진(위성사진 또는 드론 활용 전경사진을 활용하되 전체 지구 내에서 위치 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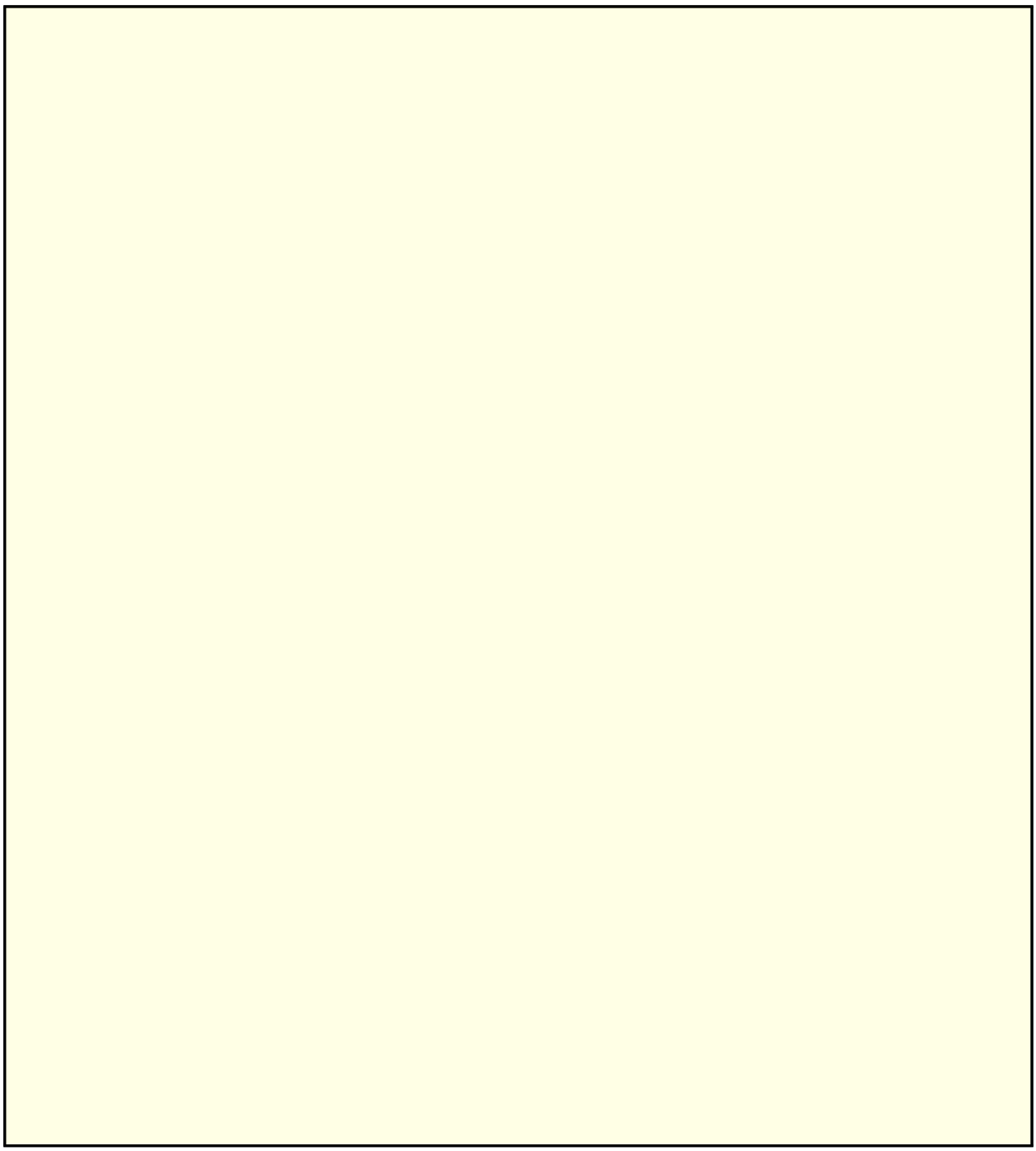

Ⅲ. 사업비 확보계획

1) 자부담 확보계획

○ *자부담 확보를 위해 그동안 추진한 사항과 향후 계획을 기재, 자부담금이 확보되지 않았을 경우 향후 확보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입*

(단위 : 백만원)

자부담		조달		
항 목	금 액	항 목	금 액	
			기 확보	계획
합 계		합 계		
○ *부지매입*				
		- *출자액 (자본금)*		
○ *부지조성공사*		- *이익잉여금*		
		- *신규출자*		
○ *설치사업비*		- *기타*		
○ *용역사업비*				

Ⅳ. 기대효과

○ (생산분야)

-

 *

○ (가공분야)

-

 *

○ (유통분야)

-

 *

○ (소비분야)

-

 *

○ (기타분야)

-

 *

※ 사업추진 3년간 사업성과가 부진한 지구를 관할하는 시·군 지역에서 신규 사업을 신청한 경우

○ 신청사유

- ** 아래 내용에 해당 할 경우 근거자료를 토대로 자세하게 작성*

① 당해 시·군 전체의 유기·무농약인증 면적이 최근 증가세로 사업지원을 통해 성과창출을 기대할 수 있는 경우, ② 시·군내 부진지구 외 우수지구가 있어 연계사업시 유기·무농약 인증면적 확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경우로서, ㉮ 사업신청자의 사업계획이 기존 부진지구와 차별성이 있고, ㉯ 사업계획이 충실하며, ㉰ 지역의 친환경 농업 육성 여건 및 필요성 등을 감안 시 사업 지원이 필요한 경우

[별지 제3호 서식]

친환경농업 지구·단지(보완) 사업신청서

<table>
<tr><td rowspan="6">신청인</td><td>단체명</td><td colspan="2"></td><td>설립연도</td><td colspan="2"></td></tr>
<tr><td>대표자명</td><td colspan="2"></td><td rowspan="4">교육·컨설팅
및
시설·장비
지원 이력</td><td>총 횟수</td><td>회</td></tr>
<tr><td>연락처</td><td colspan="2"></td><td>총 금액</td><td>백만원</td></tr>
<tr><td>주소</td><td colspan="2"></td><td>지원 내용</td><td></td></tr>
<tr><td>조직형태</td><td colspan="5">*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협조직' 등으로 기입</td></tr>
<tr><td>조직현황</td><td colspan="5">법인 출자자 수 ___명, 참여농가수 ___호, 영농면적 ___ha</td></tr>
<tr><td>출하처</td><td colspan="5">*출하처, 기입(대형유통업체, 공공급식처, 식품기업 등)</td></tr>
<tr><td rowspan="8">신청내역</td><td colspan="6">(2020)년도 해당사업에 ☑ 표시 및 관련 내용 기재</td></tr>
<tr><td>사업유형</td><td colspan="2">☐ 생산중심형</td><td colspan="2">☐ 가공중심형</td><td>☐ 소비중심형</td></tr>
<tr><td rowspan="2">총사업비</td><td>계</td><td>국비</td><td>지방비</td><td colspan="2">자부담</td></tr>
<tr><td>백만원</td><td>백만원</td><td>백만원</td><td colspan="2">백만원</td></tr>
<tr><td rowspan="2">☐ 시설·장비 지원</td><td>주요내용</td><td colspan="4"></td></tr>
<tr><td>사업규모</td><td colspan="4">백만원</td></tr>
<tr><td rowspan="2">☐ 교육·컨설팅 지원</td><td>주요내용</td><td colspan="4"></td></tr>
<tr><td>사업규모</td><td colspan="4">백만원</td></tr>
<tr><td rowspan="2">☐ 임대차 계획</td><td>주요내용</td><td colspan="4"></td></tr>
<tr><td>규모</td><td colspan="4"></td></tr>
</table>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하며, 사업대상자 선정기관 등이 아래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시 반드시 ☐에 √ 표시)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필수)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필수)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시장·군수·자치구청장 귀하

붙임 : 1. 세부사업계획서
2. 평가 증빙자료 일체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안내문≫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교육·홍보 등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안내, 사업대상자 선정을 위한 평가, 사업 추진 및 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 등의 각 항목(대표자명,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교육·홍보 등의 사업대상자 선정을 위한 평가와 사업기간 및 사후관리에 필요한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사업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 제공 동의 사항 】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교육·홍보 등 정책 사업의 평가 및 시행·위탁 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농림축산식품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관련 교육 등 홍보·안내, 사업대상자 선정·평가, 사업 시행·사후관리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농림축산식품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 기간 및 사후관리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사업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별지 제4호 서식]

친환경농업 지구·단지(보완) 조성 세부사업계획서

사 업 명 칭

수립 20○○년 ○○월 ○○일

○○○○법인

목 차

Ⅰ. 사업자 현황 ····· 384

Ⅱ. 과거 친환경농업 지구·단지 사업계획 및 성과 ··· 390

Ⅲ. 친환경농업 지구·단지(보완) 조성 세부사업계획 ··· 394

Ⅳ. 사업비 확보계획 ····· 403

Ⅴ. 기대효과 ····· 404

Ⅵ. 친환경농업 집적지구 운영 현황 ····· 405

Ⅰ. 사업자 현황

1) 사업자 기본현황

<table>
<tr><td>단체명</td><td></td><td>대표자</td><td></td></tr>
<tr><td>연락처</td><td></td><td>법인등록번호</td><td></td></tr>
<tr><td>주소</td><td></td><td>사업자등록번호</td><td></td></tr>
<tr><td>법인 설립일</td><td></td><td>출자액(천원)</td><td></td></tr>
<tr><td>출자자 수(명)</td><td></td><td>운영진 수(명)</td><td></td></tr>
<tr><td>참여농가 수(명)</td><td>경종 : 명
축산 : 명</td><td>법인영농면적(ha)</td><td>논 : ha
밭 : ha</td></tr>
<tr><td>법인축산현황</td><td>한우 : 마리,
젖소 : 마리,
돼지 : 마리,
닭 : 마리</td><td>주요 작물
생산품목</td><td></td></tr>
<tr><td>생산(출하) 현황(연간)</td><td colspan="3">품종명 : ha 톤, (상위 5개 품종 기입)
축종명 : 마리 (취급 축종 전체)</td></tr>
<tr><td>사업 성과</td><td colspan="3">지구 단지 내 친환경농업 인증 면적/ 비중 증가, 관행농가의 인증전환 현황</td></tr>
<tr><td rowspan="4">시설 · 장비
보유현황</td><td>시설명 : 동 ㎡</td><td>시설명 : 동 ㎡</td><td>시설명 : 동 ㎡</td></tr>
<tr><td>장비명 : 대</td><td>장비명 : 대</td><td>장비명 : 대</td></tr>
<tr><td>장비명 : 대</td><td>장비명 : 대</td><td>장비명 : 대</td></tr>
<tr><td>장비명 : 대</td><td>장비명 : 대</td><td>장비명 : 대</td></tr>
<tr><td rowspan="3">시설 · 장비
임대현황</td><td>시설명 : 동 ㎡</td><td>시설명 : 동 ㎡</td><td>시설명 : 동 ㎡</td></tr>
<tr><td>장비명 : 대</td><td>장비명 : 대</td><td>장비명 : 대</td></tr>
<tr><td>장비명 : 대</td><td>장비명 : 대</td><td>장비명 : 대</td></tr>
<tr><td rowspan="3">자체
가공 · 유통현황</td><td>가공품명</td><td>연간 생산량</td><td>연간 판매액</td></tr>
<tr><td></td><td>톤</td><td>백만원</td></tr>
<tr><td></td><td>톤</td><td>백만원</td></tr>
<tr><td rowspan="4">교육·컨설팅
지원 이력</td><td>지원연도, 사업비</td><td rowspan="4">시설·장비
지원 이력</td><td>지원연도, 사업비</td></tr>
<tr><td>주요내용</td><td>지원품목</td></tr>
<tr><td>지원연도, 사업비</td><td>지원연도, 사업비</td></tr>
<tr><td>주요내용</td><td>지원품목</td></tr>
</table>

2) 사업자 경영 현황

○ 사업자 단체 목적 및 발전 방향(비전)

-

*

○ 사업자 주요사업

-

*

○ 사업자 구성현황

(단위 : 천원, 명)

구분	1구좌 금액	총 출자액	총 출자자수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인원 수	공동영농 활동자 수	영농 위탁 의뢰자 수
법인 결성시						
현재						
향후 계획						

* 주요출자자 현황(상위 10명)

(단위 : 천원)

출자자	출자액	출자자	출자액

○ 사업 외부 생산자단체 등과의 교류현황

- *단체 가입현황, 타 생산자단체, 유통업체 등과 자매결연 및 MOU 현황 등 기술*

*

○ 사업자 조직체계(조직도 기입)

-

*

* 대표, 이사, 감사, 총무, 기획, 품질관리, 기술지도 등

○ 사업자 농산물 생산・가공・유통・판매 관련 시설・장비 보유 현황

- 시설 보유 현황

시설명	현황	위치	설치년도	비고
저온창고	*(규모) ㎡, 동*	*00군 00면 00리 00번지*	*0000년*	

- 장비 보유 현황

시설명	현황	보관장소	확보년도	비고
트렉터	*(규모) 대, 마력*	*00법인 농기계창고*	*0000년*	

< 경종 분야 >

○ 최근 3년간 품목별 용도별 재배면적*(정확하게 기입하고 관련 증빙 첨부)*

(단위 : ha)

구분	품목명	친환경	GAP	일반용	기타	
2020	품목명					
	품목명					
	품목명					
	품목명					
	합계					
2021	품목명					
	품목명					
	품목명					
	품목명					
	합계					
2022 (계획)	품목명					
	품목명					
	품목명					
	품목명					
	품목명					
	합계					

○ 최근 3년간 품목별 용도별 생산량*(생산법인이 아닐 경우 유통량으로 기입)*

(단위 : 톤)

구분	품목명	친환경	GAP	일반용	기타	
2020	품목명					
	품목명					
	품목명					
	품목명					
	합계					
2021	품목명					
	품목명					
	품목명					
	품목명					
	합계					
2022 (계획)	품목명					
	품목명					
	품목명					
	품목명					
	품목명					
	합계					

< 축산 분야 >

○ 최근 3년간 축종별 사육현황

(단위 : 마라수)

구분	축종명	유기	무항상제	일반
2020	*한우*			
	젖소			
	돼지			
	닭			
	합계			
2021	축종명			
	축종명			
	축종명			
	축종명			
	합계			
2022 (계획)	축종명			
	축종명			
	축종명			
	축종명			
	축종명			
	합계			

○ 최근 3년간 축종별 출하량*(생산법인이 아닐 경우 유통량으로 기입)*

(단위 : 마라수)

구분	축종명	유기	무항상제	일반
2020	*한우*			
	젖소			
	돼지			
	닭			
	합계			
2021	축종명			
	축종명			
	축종명			
	축종명			
	합계			
2022 (계획)	축종명			
	축종명			
	축종명			
	축종명			
	축종명			
	합계			

○ 사업자대상자 선정 이후(사업추진년도~현재) 교육·컨설팅 주요실적

교육명 (연월일)	주관기관		참석자		교육내용	교육시간 (시간)	교육비용	
	기관명	소재지	구분	인원수(명)			금액(천원)	처리방식
계				총 명				
'19.10.5		*전남 나주*	*임원*	*대표 등 8명*	*친환경농산물 재배 교육*			*국가·지자체보조*
		전북 전주	*조직원*	*50명*	*000재배기술 교육*			*수익자부담*

○ 최근 3년간 지자체 지원사업 및 향후 지원 계획(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

* 시도, 시군에서 내용을 반드시 확인

사업명	사업내용	예산	친환경농업 지구와의 연계 내용	사업기간 및 진행사항	비고 (과제정보, 지원기관, 담당부서 등)

Ⅱ. 과거 친환경농업 지구.단지 사업계획 및 성과

1) 사업개요

○ 사업명(추진년도) : *00지구 친환경농업지구 조성 사업(2015년)*

○ 사업추진 당시 지구(단지) 위치 : *주소 기입(예시 00시 00면 00리 일원)*

- 지구(단지) 지적도

* 전체 지구가 한 지적도 상에 모두 나타나도록 축적비율은 적의 조정하고 지구 경계와 인증 및 비인증 농지를 최대한 정확하게 표시, 제출 지적도의 정확도나 가독성이 낮을 경우 사업계획서의 내실성 측면에서 감점 가능(사업계획서 본문 내에는 축소도로 나타내고, 전체 지적도는 별첨)

<사업 추진 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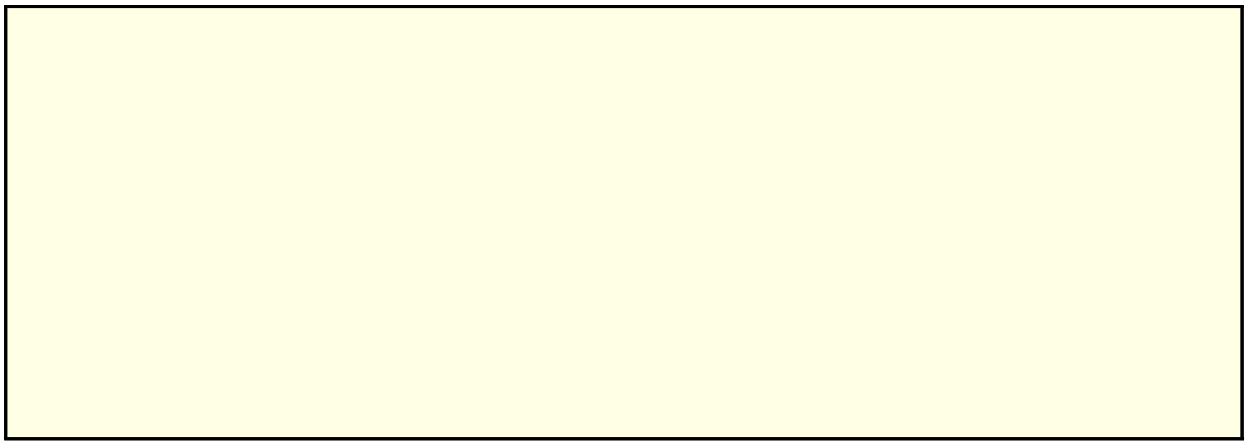

* 지구(단지) 참여 필지 별도 색을 넣어 구분

<사업 추진 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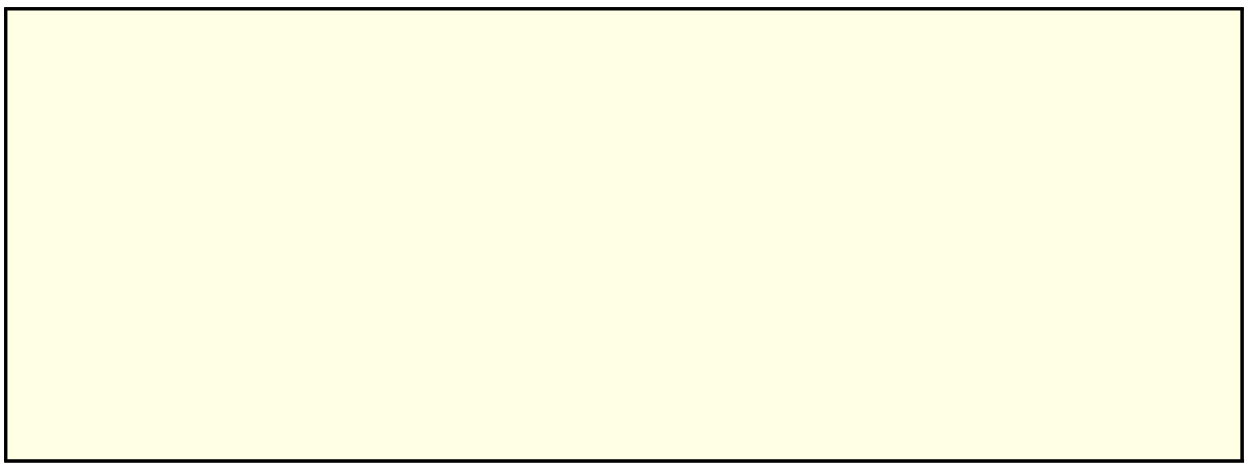

* 지구(단지) 참여 필지 별도 색을 넣어 구분

○ 사업계획 주요내용

-

○ 사업추진 당시 지구(단지) 규모

< 경종 분야 >

- 일반현황

구분	유기	무농약	일반(GAP 포함)	합계
전체 면적(ha)				
사업참여 면적(ha)				
전체 농가수(명)				
사업참여 농가수(명)				

- 사업참여 농가 품목별 생산량

구분	유기	무농약	일반(GAP 포함)	합계
품목명(톤)				
품목명(톤)				
합계				

- 사업참여 주체별 영농 면적

구분	사업주체	협력 생산자단체	협력 일반농가	합계
면적(ha)				
농가수				

< 축산 분야 >

- 일반현황

구분	한우	젖소	돼지	닭	합계
전체 사육마리수					
사업참여 농가 사육마리수					

- 사업참여 농가 축종별 출하량

구분	유기	무농약	일반	합계
축종명(마리)				
축종명(마리)				
합계				

○ 사업추진 당시 지원 내역*(정산결과 기입)*

구분	사업량	사 업 비 (백만원)				사업비 비중(%)
		계	국고	지방비	자부담	
계						
○ *추진과제*						
- *사업내용*						
· 시설*명*						
· 장비명, 용역명 등						
○ *추진과제*						
- *사업내용*						
· 교육명						
· 컨설팅명						

2) 사업추진 성과

○ 지구·단지 내 사업이행 실적*(증빙)*

구분	단지(지구)내 전체 참여농가, 경지 면적 변동추이		친환경농산물 인증현황						친환경축산물 인증현황 *단지사업자만 작성		
	농가수	경지면적	인증농가수			인증면적			인증축산농가수	유기	무항생제
			유기	무농약	계	유기	무농약	계			
	호	ha	호	호	호	ha	ha	ha	호	두	두
사업추진 전년도									소 돼지 . .		
사업추진년도									”		
2년차(년)									”		
3년차(년)									”		
4년차(년)									”		
5년차(년)									”		
6년차(년)									”		
…									”		

○ 지구·단지 내 사업자 친환경농산물 취급실적

(단위 : 톤, 백만원)

구분	품목	취급실적						취급액					
		전체 생산량			사업주체 취급물량			전체 생산액			사업주체 취급액		
		계	유기	무농약	계	유기	무농약	계	유기	무농약	계	유기	무농약
사업 추진 전년도	벼												
	콩												
사업 추진 년도													
		…											
2년차 (년)													
3년차 (년)													
4년차 (년)													
5년차 (년)													
…													

3) 사업추진 성과 총평

○

Ⅲ. 친환경농업 지구.단지(보완) 조성 세부사업계획

1) 추진배경

○ *현황과 문제점 등 기입*

-

2) 세부계획

(1) 친환경농업지구*(or 친환경농업단지)* 현황

○ 지구(단지) 위치 : *주소 기입(예시 00시 00면 00리 일원)*

○ 지구(단지) 현황

< 경종 분야 >

- 일반현황

구분	유기	무농약	일반(GAP 포함)	합계
전체 면적(ha)				
사업참여 면적(ha)				
전체 농가수(명)				
사업참여 농가수(명)				

- 사업참여 농가 품목별 생산량

구분	유기	무농약	일반(GAP 포함)	합계
품목명(톤)				
품목명(톤)				
합계				

- 사업참여 주체별 영농 면적

구분	사업주체	협력 생산자단체	협력 일반농가	합계
면적(ha)				
농가수				

< 축산 분야 >

- 일반현황

구분	한우	젖소	돼지	닭	합계
전체 사육마리수					
사업참여 농가 사육마리수					

- 사업참여 농가 축종별 출하량

구분	유기	무농약	일반	합계
축종명(마리)				
축종명(마리)				
합계				

- 지구(단지) 지적도

* 지구 참여 필지 별도 색을 넣어 구분, 지구(단지) 경계를 선으로 표시

(2) 친환경농업 지구·단지 보완 방안

○ 추진 여건 분석

<육성 대상 품목별 시장환경>

-

<친환경농업 지역적 여건>

-

<친환경 농산물 및 가공품 등 판로확보 현황>

- 식품업체, 대형마트 등 납품 현황 및 계약 체결 계획 등 기입

- 각종 도표 등을 활용하여 납품 물량, 품목, 금액 등 구체적 내용 기입

<사업참여 주체 및 농업인 역량>

-

<사업주체와 지자체 간 협력체계>

-

○ 주요 비전과 목표

- 비전 :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중장기 비전 제시*

- 목표 (비전 달성을 위한 목표 설정(향후 5개년))

목표	당초 ('21년 3월 기준)	22	23	24	25	26
지구내 친환경 재배면적(ha)						
지구내 친환경 재배면적 비중(%)						
친환경농산물 생산량(톤)						
친환경농산물 (가공품 포함) 매출액(백만원)						
지구 내 비인증 농가의 인증전환	*비인증 농가수*	*전환 농가수*	*전환 농가수*	*전환 농가수*	*전환 농가수*	*전환 농가수*
지구 내 비인증 농지의 인증전환	*비인증 농지면적*	*전환 농지면적*	*전환 농지면적*	*전환 농지면적*	*전환 농지면적*	*전환 농지면적*

** 목표는 사업자 실정에 맞게 조정 가능, 단, 친환경 생산 확대 기조에 부합해야 함*

** 단위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적정하게 작성하고 증빙을 상세 첨부(필지별 토지현황, 친환경 인증서 등)*

○ 사업자 및 참여 법인·농가 조직화·역할 분담 전략

- 목표달성을 위한 사업자 및 참여 법인·농가 조직화·역할 체계 등 기입 (조직도 등 시각화 자료도 삽입)

○ 사업자 및 참여 법인·농가 교육·컨설팅 전략

- 목표달성을 위한 사업자 및 참여 법인·농가 교육·컨설팅 계획 기입

○ 친환경농산물 마케팅 및 판로확대 전략

- *목표달성을 위한 친환경농산물 마케팅 및 판로확보 전략*

○ 친환경농산물 생산 확대 전략(일반농가의 친환경농가 전환계획)

- *일반농가 관리체계 구축계획, 교육컨설팅 및 인증지원 등 체계적인 추진 전략 등 기입,*

○ 친환경농산물 가공·유통 확대 전략

- *목표달성을 위한 친환경농산물 가공유통 확대 계획*

○ 일반 농가 대상 친환경 농가 전환 전략

- *일반 농가 대상 교육, 컨설팅, 농가 대상 판로 알선, 공동재배·경영 추진 방안 등 각종 지원책 기입*

○ 참여 농가(일반 및 친환경농가 전체) 혜택 지원 전략

- *출자배당, 친환경농자재 등 현물지급, 운영수익 활용 공동재배 시설장비 재투자, 영농작업료 할인 등 기입*

(3) 친환경농업지구 조성·확대 세부추진계획

추진과제	현황과 문제점	실행계획	세부사업 내용
예시) *지구 내 비인증농가의 인증전환*			
예시) *교육·컨설팅* *농업인 역량강화,* *조직화, 법인 운영 등*			
예시) *생산 기반 강화*			
예시) *가공 기반 조성*			
예시) *유통 기반 조성*			

(4) 생산·가공·유통·판매 관련 시설·장비 확보 계획

<시설 분야>

○ 확보예정 시설

시설명	규모	설비	용도 및 필요성	비고
저온창고	*(규모) ㎡, 동, (저장가능물량) 톤*	*시설 내 설치할 설비(예시: 선별기, 포장기 등) 내역*	■(용도) ■(필요성) ■(계획과의 부합성) ■(규모의 적정성)	

○ 시설 활용・관리 방안

- (관리체계) *관리 전담인력, 유지보수 체계 등 기입*
- (기존 및 신규 시설・장비와의 연계성) *기존 및 신규 시설장비 간 어떻게 종합적으로 연계 활용할 것인지 기입*
- (활용계획)

<장비 분야>

○ 확보예정 장비

장비명	규모	용도 및 필요성	비고
저온운반차량	*(규모) 톤 cc 등 장비 스펙 기입*	■(용도) ■(필요성) ■(계획과의 부합성) ■(규모의 적정성)	

○ 장비 활용・관리 방안

- (관리체계) *관리 전담인력, 유지보수 체계, 보관 장소 등 기입*
- (기존 및 신규 시설・장비와의 연계성) *기존 및 신규 시설장비 간 어떻게 종합적으로 연계 활용할 것인지 기입*
- (활용계획) *공동재배, 공동방제 등 활용계획 및 개인경작용으로 활용을 금지하는 등의 활용제한 내용에 대해서도 기입*

(5) 사업추진 일정

** 각 단계별 추진일정을 면밀히 검토하여 실행가능한 일정을 최대한 자세히 작성할 것*

** 칸에 색(회색) 기입 * 구분란에는 자유롭게 사업자 여건에 맞게 자유롭게 기입*

구분	사업신청년도(2021년)				사업신청년도(2022년)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사업방침 결정																
이사회																
정기총회																
인허가																
설계																
일상감사																
시행업체 선정입찰																
보조금 교부결정																
시행업체 선정계약																
사업착수																
교육																
컨설팅																
기계납품																
시험운행																
검수																
정산																
기타																

(6) 사업예산 요구액

구분	사업량	사 업 비 (백만원)				사업비 비중(%)
		계	국고	지방비	자부담	
계						
○ *추진과제*						
- *사업내용*						
· 시설*명*						
· 장비명, 용역명 등						
○ *추진과제*						
- *사업내용*						
· 교육명						
· 컨설팅명						

(7) 사업예산 세부산출내역

* *대략적인 계획이 아닌 실제 실행계획을 자세히 작성*
* 본 자료는 간이설계 및 시장조사 가격 등을 근거로 계획수립 차원에서 작성
* 산출기준 및 편성사유는 구체적으로 기재, 산출기준 및 편성사유가 부실하거나 미제출시 해당항목은 사업비 심의시 제외
* 유사시설은 양식을 적절히 변경하여 작성

구분	단가	사업량	사업비	산출기준	편성사유
1. 감리 및 컨설팅					
- 기계공사 감리					
- 토목•건축공사 감리					
- 컨설팅 (성능시험 등)					
감리 및 컨설팅 합계					
2. 기계 및 장비					
2-1) 가공부(Ⅰ)					
- 단위기계					
- 구조물 및 이송시설					
- 집진시설					
-					
소계					

구분	단가	사업량	사업비	산출기준	편성사유
2-2) 가공부(II)					
- 단위기계					
- 구조물 및 이송시설					
- 집진시설					
- 품질검사장비					
-					
소계					
기계 및 장비 합계					
3. 건축 및 토목					
3-1) 건축					
- 가공부					
- 회의실					
-					
소계					
3-2) 토목 및 소방 등 기타					
- 토목공사					
- 1차수전공사					
- 소방 및 통신					
-					
소계 *건축 및 토목 합계*					
4. 기타					
4-1)유통시설					
- 지게차					
-					
소계					
4-2) 위생시설					
- 오수처리시설					
-					
소계					
건축 및 토목 합계					
총사업비					

(8) 부지확보 현황*(기존 건축물-시설에 설치할 경우 해당 시설 기입)*

○ 부지 확보여부 : *확보 or 확보 중(가등기) 기입*

○ 부지 위치 : 00시 00읍 00리 00번지

○ 부지 면적 : m2(평)

○ 부지 관련 사진(위성사진 또는 드론 활용 전경사진을 활용하되 전체 지구 내에서 위치 표시)

* 지적도, 토지등기부등본(부지확보, 증빙 필요),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기존건축물 대장 제출

* 건폐율, 용적율, 개발제한구역 등 토지 및 건축 관련 법령상 저촉여부 등 관련규제 검토 (지자체 사전심사청구제도 활용)

(9) 지구 내 임대차 계약 계획

○ 대상 부지 :

○ 위치 : 00시 00읍 00리 00번지

○ 면적 : m2(평)

○ 부지 관련 사진(위성사진 또는 드론 활용 전경사진을 활용하되 전체 지구 내에서 위치 표시)

Ⅳ. 사업비 확보계획

1) 자부담 확보계획

○ *자부담 확보를 위해 그동안 추진한 사항과 향후 계획을 기재, 자부담금이 확보되지 않았을 경우 향후 확보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입*

(단위 : 백만원)

자부담		조달		
항 목	금 액	항 목	금 액	
			기 확보	계획
합 계		합 계		
○ *부지매입*				
		- 출자액 (자본금)		
○ *부지조성공사*		*- 이익잉여금*		
		- 신규출자		
○ *설치사업비*		*- 기타*		
○ *용역사업비*				

Ⅴ. 기대효과

○ (생산분야)

-

  *

○ (가공분야)

-

  *

○ (유통분야)

-

  *

○ (소비분야)

-

  *

○ (기타분야)

-

  *

Ⅵ. 친환경농업 집적지구 운영 현황

1. 조직 운영체계

가. 조직의 구성

○ 농가 현황, 농가와 사업주체간 출하계약 관계 현황 등

※ **예시**

- 사업자인 00법인에 00면 소재 농가 00호, 00면 소재 농가 00호, 00면 소재 농가 00호 등 총 00호가 조합원으로 참여하고 있음
- 총 00개 농가, 농지 00ha 중 친환경 인증농가는 00호(00%), 인증농지는 00ha(00%)
- 소속 친환경 인증농가는 연초 사업자인 00법인과 출하계약을 체결하고, 농가별 평균 출하량의 80% 이상을 동 법인에 출하
- 소속 농가 중 비인증 농가의 평균 출하량 00이고, 사업자인 00법인을 통해 주로 대형 유통매장, 로컬푸드, 직거래 등에 출하하고 있음

○ 사업자인 법인의 조직 및 인력 현황, 사업자와 농가간 업무 협력 체계 등

예시」 사업자와 농가간 업무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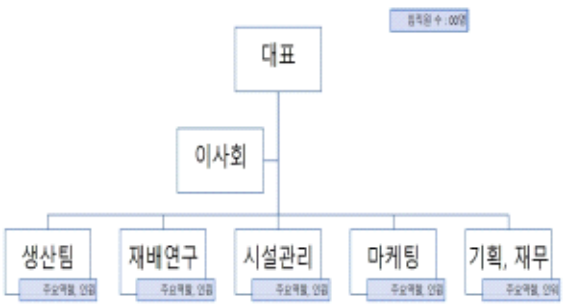

예시」 법인 조직 체계

※ **예시**

- 사업조직은 00, 00, 00 부서로 구성, 각 부서는 0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분야별 00 전문가가 00명 포함
- 소속 농가는 면 단위로 지회를 구성하여 지회장을 중심으로 법인의 운영에 참여
- 면 단위 지회를 중심으로 소속농가의 생산 및 인증관리 업무 담당
- 법인은 연 2회 소속 농가 전원이 참여하는 협의회를 개최하여 법인 운영과 관련한 주요 의사결정을 추진

2. 조직의 역할

가. 생산계획 수립

○ *판매처에 대한 법인의 납품계약에 따라 법인은 소속 농가 대상으로 생산계획을 수립, 이 과정에서 농가와의 계약재배 절차 및 내용 기술*

- *품목별 재배 및 수확 일정, 수량 등 주요내용 기술*

※ **포함해야 할 양식**

<품목별 계약 재배 현황>

품목	인증여부	생산량(톤)	매출액 (백만원)	계약재배 면적(ha)	판매처

<단지별 계약재배 이행현황>

구 분			단지1	단지2	단지3	단지4	단지5	단지6	합계
참여농가		전체							
		친환경인증							
약정이행	계약재배 약정량	전체							
		친환경인증							
	계약재배 이행량	전체							
		친환경인증							
	이행률 (%)	전체							
		친환경인증							
전체 출하실적		전체							
		친환경인증							

나. 공동 영농작업

1) 공동 영농작업 범위 * 품목 특성에 따라 생산 全과정 작성

※ **예시(벼)**

- ① 육묘 ② 경운.정지 ③ 이앙(파종) ④ 시비 ⑤ 병해충관리 ⑥ 물관리 ⑦ 수확 ⑧ 건조.저장 ⑨ 출하 등

2) 공동 영농작업 규모(단위 : ha)

※ **포함해야 할 양식**

구 분	*육묘*	*경운 (정지)*	*이앙*	*시비*	*병해충 방제*	*수확*	*건조*	*저장*	*출하*	*기타*
면적(ha)										

구분	2019		2020		전년 대비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육묘						
경운정지						
이앙						
병해충방제						
건조저장						
수확						
소계						

3) 공동 농자재 구입 및 공동 방제 현황

※ **포함해야 할 양식**

구 분	물량	금액	구매방식	비고
유기질비료			□ 자체구매 □ 보 조	
			□ 자체구매 □ 보 조	
			□ 자체구매 □ 보 조	
			□ 자체구매 □ 보 조	

4) 공동시설 운영 현황

※ **포함해야 할 양식**

구 분	보유현황		비고
공동육묘장	동	㎡	
건조시설			
기타시설			

5) 공동 농기계 보유 현황

※ **포함해야 할 양식**

구 분	보유현황		운영현황
트랙터	동	㎡	
콤바인	(기종)	대	
이앙기	(기종)	대	
방제기	(기종)	대	
기타장비			

6) 공동 영농작업 관련 비용 부담 체계

○ *생산과정별로 자체 협약 등에 따라 농가의 비용부담이 있는 경우 기술*

다. 일반농가의 인증전환 지원 현황

○ *일반농가 대상 인증제도 및 친환경 기술 교육, 선도 친환경 농업인의 멘토링 등 일반농가의 인증 전환을 위한 지원내용*

라. 품질 관리

1) 생산 매뉴얼 제작 · 배포

2) 재배기술, 품질 균일화 등 품질 관리 교육

3) 품질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현장 점검 및 모니터링

4) 선도농업인 생산지도

5) 품질 불량에 대한 피드백 과정

마. 선진 친환경 영농기술 도입과 보급

1) 농가의 친환경 생산 기술 관련 애로사항 해결 방안

2) 혁신적 친환경농업 생산기술의 확산 방안

바. 기금 운영(해당되는 경우)

1) 조직 발전 기금 현황(예시 : 매출액의 3%) 및 용도

2) 소득·가격 관련 리스크 관리 위한 기금 운영 여부 및 세부내용

3. 조직의 유통망 현황

가. 현재 유통망의 지속가능성

○ 최근 5년간 주요 판매처에 대한 품목별 물량 및 매출액 추이 등

※ **포함해야 할 양식**

구분	주요 품목 및 물량('20)	2015 매출액	2018 매출액	2020 매출액 (전체 매출액 대비 비중)	비고
학교급식					
생 협					
전문매장					

나. 향후 유통망 확대 가능성

○ 신규 거래처 확보 노력, 기존 거래처 또는 신규 거래처의 수요 동향과 그에 따른 생산 확대 계획 등에 대해 기술

[별지 제5호 서식]

사업 지구·단지 내 농가 영농현황

번호	농가명(세) (H・P,☎)	지번 (지번별로 작성)	경작 규모	친환경 인증현황	인증전환 계획	재배품목	판매방식
계	명	-	-	-		-	-
1	홍길동(○○세) (010-111-1234)	○○리 ○○	ha	※없음,유기, 무농약으로 구분 기재			※직거래, 도매시장, 인터넷 등
2				*※없음*	*※ 인증전환 착수(00년 00월)하여 인증전환 취득(00년 00월) 계획*		
3							
4							
5							

[별지 제6호 서식]

사업참여 농가 동의서

○ 지 구 명 :

○ 사업주체 :

○ 사업장 소재지 :

○ 사업구역 전체면적 : ha

- 사업구역내 유기·무농약 인증면적 : ha(유기 ha, 무농약 ha)

○ 사업구역 내 농가수 : 호

- 그중 인증농가 수 : 호

○ 사업계획 :

○ 농가 동의내용 : (사업지구 선정시 사업계획에 따라 관행농가는 유기·무농약재배로 전환을 성실히 이행하고, 기존 유기·무농약 인증농가는 인증관리에 철저를 기하면서 인증면적 확대 등 사업계획을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내용을 기재)

년 월 일

사업자(대표자) 주소 : 성명 : 인 (서명 또는 날인)

사업참여자 주소 : 성명 : 인 (서명 또는 날인)

주소 : 성명 : 인 (서명 또는 날인)

※ 대표자는 사업목적 및 계획을 충분히 설명하고 참여 농가의 동의를 받아 연명 기재

[별지 제7호 서식]

임대 필요 농지 현황

신청 단지명	필지	임차인	임대인	계약기간	「농지법 시행령」 제24조③에 따른 임대 적법여부
					(시군 작성란)

[별지 제8호 서식]

사업참여 친환경 농가 친환경농산물의무자조금 납부현황

인증기관	인증번호	인증분류 (유기, 무농약)	농가/단체명	생산자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		비고
					가입동의서 제출여부	자조금 납부여부	
총 계							

※ 친환경농산물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로부터 납부 확인서를 받아 증빙으로 첨부

[별지 제9호 서식]

사업 추진상황 보고

□ 지구명 : (주소 : 전화 :)

생산자단체명	대표자	사업 규모	참여 농가	주작목	자금집행상황		
					예산	집행	진도
		ha	명		천원		%

□ 세부사업계획 내역

구분	사업계획 및 내용	추진실적	진도 (%)	향후추진계획 (일정별)
합 계				
유기농업자재 생산시설·장비	소 계			
친환경 농산물 생산시설·장비	소 계			
친환경 농산물 유통·가공시설·장비	소 계			
친환경농업 교육·체험 시설·장비	소 계			
기타				
S/W	소 계			

□ 친환경농산물 인증실적

구분	사업 시행 전		사업 시행 후 현재	
	농가수	면적(ha)	농가수	면적(ha)
유기 인증				
무농약인증				

[별지 제10호 서식]

친환경농업 이행실적 보고서

(단위 : 백만원, ha, 호)

시도	시군	지구·단지	지원연도	법인형태	호당평균소득	사업비		사업구역면적	농가수				사업성과(인증면적)						사업주체의 관리실적(취급물량)						품목	임대차 농지 포함 여부
									전체농가		인증농가		선정당시 면적			현재(상반기,하반기)			참여농가 전체 생산량			사업주체 취급물량				
							국고보조		당초	현재	당초	현재	계	유기	무농약	계	유기	무농약	계	유기	무농약	계	유기	무농약		

(작성방법)

- ㅇ 작성기준은 2008년 이후 선정된 지구·단지(엑셀로 작성)
- ㅇ 친환경인증면적은 유기・무농약 인증면적을 기준으로 작성
- ○ 법인형태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협, 축협 등으로 구분
- ○ 농가수 : 사업구역내 경지를 경작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구분 조사
- ○ 품목 : 인증면적의 품목과 면적을 기재(예시, 벼 20ha, 딸기 3, 잡곡 2 등)

[별지 제11호 서식]

「농지법」 제23조제1항9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3항에 따라 임대차가 가능해지는 농지

조사지역 :　　시·군·구　　시·구·읍·면　　리·동

일련 번호	사업	농지의 표시			취득자격 증명 발급일	소유자 (주소, 성명)	임차인 (주소, 성명)	경작지 (다년생 식물 재배지, 시설지)	임대차 계약기간	임차료
		지번	지목	면적 (㎡)						

[별지 제12호 서식]

지구 내 관행농가의 친환경 인증전환 의향서

○ 지 구 명 :

○ 인증전환 추진 농업인 :

○ 인증전환 대상 농지(주소) :

○ 인증전환 대상 농지(면적) : ha

○ 인증전환 계획 : 00년 0월부터 인증전환 추진을 착수하여 00년 0월까지 인증 취득 완료

- 인증 취득에 필요한 교육(00년 0월), 일지 작성(00년 0월~00년 0월), 친환경 농업 실천 등을 추진할 계획

○ 농가 동의내용 : 사업계획에 따라 유기·무농약재배로 전환을 성실히 이행 하겠음

년 월 일

사업참여자 주소 : 성명 : 인 (서명 또는 날인)

[별지 제13호 서식]

사업 지구·단지 내 관행농가 인증전환 추진 실적 보고서

번호	지번 (지번별로 작성)	경작규모	인증전환 계획	추진 실적의 적정성
계	-	-		
1	○○리 ○○	ha	*※교육 이수* *※인증취득을 위한 경영 관련 자료의 구비* *※친환경 재배 방법의 실천 등*	
2				
3				
4				
5				

19 친환경농산물 계약재배 청년농가 육성

1. 목 적

○ 청년농가를 대상으로 계약재배율이 낮은 친환경농산물 품목에 대한 생산시설 지원으로 친환경농업 참여 유도 및 실천으로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마련

○ 학교급식·공공급식 등에 필요한 친환경농산물의 생산시설 신축 및 개보수 지원으로 청년농가의 친환경농업 참여를 유도하고 및 실천 기회 확대

2. 지원근거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16조(친환경농수산물 등의 생산·유통·수출 지원)

3. 사업계획

(단위 : 천원)

세부 사업별		사업량	총사업비			
			계 (100%)	도 비 (28%)	시군비 (52%)	자부담 (20%)
계			1,500,000	420,000	780,000	300,000
생산기반	생산시설	110개소	1,100,000	264,000	616,000	220,000
농가 조직화	물류비·안전성검사	1식	107,000	85,600		21,400
	컨설팅	1식	110,000	26,400	61,600	22,000
상품화	포장재	91,500개	183,000	44,000	102,400	36,600

4. 사업추진

가. 사업시행기관 : 시장·군수

나. 사업추진 기간 : 2022. 1. ~ 12.

〈 계약재배 청년농가 육성사업 추진일정 〉

계획수립·시달 ('21. 12.)	⇨	사업 신청 ('21. 12.)	⇨	대상 선정·통보 ('22. 1.)	⇨	사업 추진 ('22. 2.~)
도→시·군		시·군 협의회		도→시·군		시·군 협의회

다. 지원대상

1) 지원농가

○ 사업대상자는 청년농가를 우선하여 선정한다. 청년농가는 만49세 이하의 농업인을 말한다. 대상자의 친환경인증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참여 희망 농업인이 만50세 이상이더라도 기존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계약재배에 참여하는 농가 등에서 공급주체가 추천하는 자도 선정 가능

※ 시군에서 사업대상자를 선정할 때 **청년농가 참여 비율을 50%이상**으로 목표 한다. 다만 학교급식에 필요한 과일 또는·채소류 안정적 공급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시군 협의회를 통한 자체 선정기준을 마련하여 사업대상 농가 선정** 가능

2) 공급주체

○ 시군 학교 및 공공급식 등에 친환경농산물을 납품하는 공급업체로 선정

※ 시군에서는 사업목적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로컬푸드 등 친환경농산물을 계약재배 납품하는 업체도 공급업체로 선정 가능

3) 호남권친환경농산물종합물류센터

○ 농림축산식품부의 광역단위 친환경농산물 산지조직 육성 사업 참여업체

- 학교급식 등 계약재배로 생산한 친환경농산물을 시군에 자체 공급하고 발생하는 친환경농산물 잔여물량을 시군 간 교류 및 수도권 등 타지역에 판매하고 공급

4) 컨설팅

○ 학교급식 등에 필요한 친환경농산물을 연중 공급할 수 있는 생산기술과 청년농가 소득증대에 필요한 유통정보 지원이 가능한 업체

라. 지원내용

1) 생산시설

○ 학교급식 등 친환경농산물 계약재배에 필요한 시설하우스 등의 신축 및 개보수, 환경 개선과 생산비 절감에 필요한 장비 구입비 등

- 친환경 과수 등 노지재배에 필요한 시설 설치 및 장비 구입 지원

※ 생산시설 및 장비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농가는 컨설팅 및 교육 대상자로 반드시 참여해야 하며 시설·장비 사업비의 10%에 해당하는 컨설팅 비용의 20% 자부담

2) 물류비

○ 학교급식 등에 시군별 친환경농산물을 수집·배송에 소요되는 비용

○ 친환경농산물 잔여물량을 수도권 등 관외로 판매하는 비용

○ 친환경농산물 공급 및 판매를 위하여 필요한 안전성검사 비용

3) 컨설팅

○ 학교급식 등에 친환경농산물을 연중 공급할 수 있는 생산기술 컨설팅과 청년농가 소득증대에 필요한 유통정보 교육을 지원

○ 현장 컨설팅과 선진지 견학 등 교육에 필요한 비용

○ 시군 협의회 포함, 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하는 워크숍에 소요되는 비용

※ 사업 참여 농가를 대상으로 사업 시행 전후의 소득을 분석한 자료를 산출하여 제출

4) 포장재

○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공급에 사용하는 친환경 포장재 제작비 지원

마. 사업체계

○ 시군은 친환경 학교급식 공급주체가 계약재배율이 낮은 품목을 중심으로 계약재배를 희망하는 친환경농산물 인증 청년농가 육성 지원

○ 친환경학교급식 공급주체는 시군 및 교육청 지원을 받아 계약재배율이 낮은 품목의 연중생산 공급계획을 수립하고 청년농가 등 사업대상자 선정

※ 붙임 : 친환경학교급식 주요 식재료 계약재배 현황

○ 친환경농산물 생산 청년농가는 친환경학교급식 공급주체와 친환경농산물 생산을 위해 계약재배를 통해 연중 생산 및 공급

⇒ 시군 협의회 구성(시군 + 학교급식 공급주체 + 친환경농산물 생산 청년농가)

○ 호남권친환경물류센터에서는 시군별 학교급식에 필요한 친환경농산물의 시군 간 품목별 과부족 물량을 파악하고 물량을 교류토록 지원한다.

○ 호남권친환경물류센터에서는 시군 또는 타시도 친환경농산물 교류물량의 안전성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사업 체계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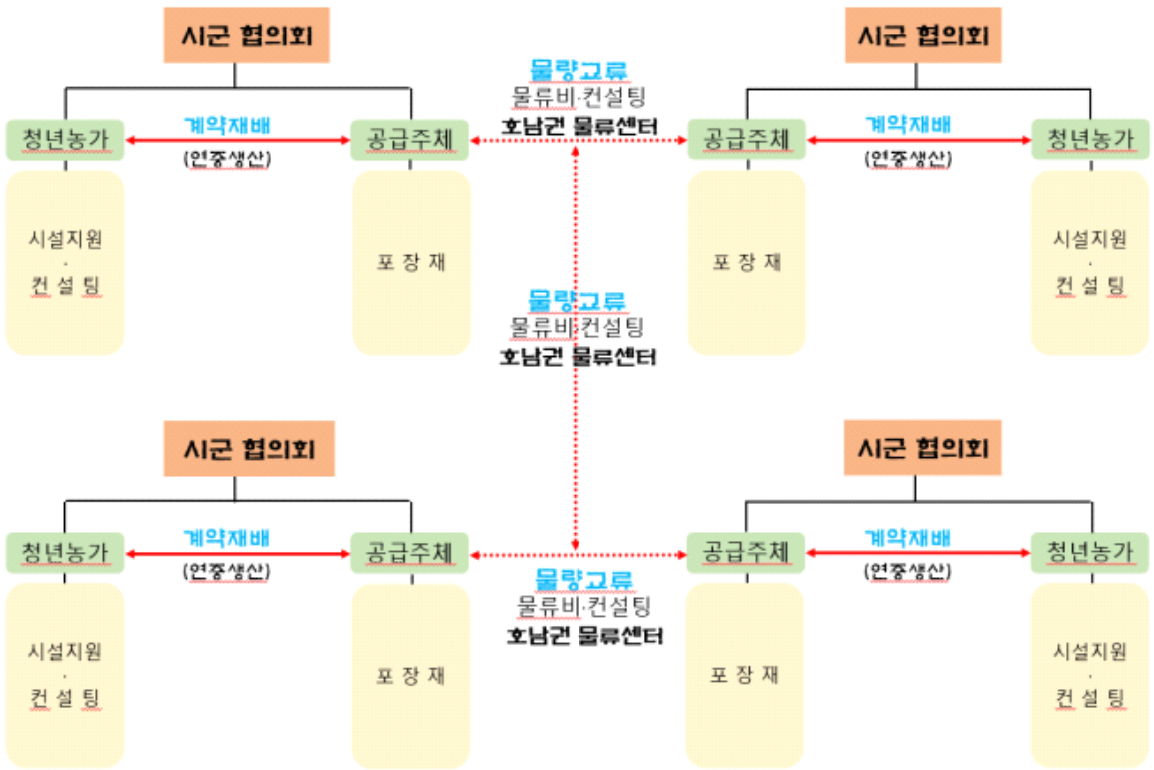

< 시군 협의회 구성 >

▶ 목적 : 소량·다품목 친환경농산물 식재료를 연중 공급하기 위해서는 지역에서 시·군(친환경농업 및 학교급식 담당부서)과 친환경학교급식 공급주체(급식센터), 친환경학교급식 재배농가와의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 필요

▶ 구성 : 시·군, 친환경학교급식 공급주체, 친환경농산물 생산농가 등

▶ 역할 : 친환경학교급식에서 계약재배율이 낮은 품목을 선정하고, 이를 안정적으로 연중 생산·공급하기 위한 참여주체 간 협력기구

- **친환경학교급식에 공급되는 주요 품목**(45개)**중에서 계약재배율이 50%이하**이거나, **안정적 공급이 필요한 품목, 시군 대표품목으로 육성 가능한 품목 선정**
- 선정된 품목을 안정적으로 생산하기 위한 **지원대상 농가 및 사업대상 선정** 등
- 선정된 품목을 생산·공급하기 위해 **선정농가와 공급주체간 계약재배 체결**
- 광역협의회(공급주체)간 과부족 품목 교류로 공급의 안정화와 향후 경쟁력 있는 품목 육성

마. 세부 사업내역

○ 사 업 비 : 1,500,000천원(도비 28%, 시군비 52%, 자담 20%)

세부사업	사업비 (천원)	지원한도	비 고
계	1,500,000		
시설하우스 (기자재 보수)	1,100,000	(신축) 1농가당 30,000천원 (개보수) 1농가당 20,000천원 (장비 등) 1농가당 30,000천원	(신축 단가) 100평당 10,000천원 한도
컨설팅·교육	110,000	농가당 시설 지원비의 10%에 해당하는 컨설팅에 반드시 참여하되 컨설팅 비용의 20%를 자부담	(예시) 시설비 10,000천원당 컨설팅 비용 1,000천원의 20%인 200천원 자부담
물류비 안전성검사	107,000	(물류비) - 순회수집 차량(3.5톤) 배송비 : 대당 500천원 - 수도권 등 관외 물류비 : 팔레트당 100천원 (안전성 검사) 검사 1회당 150천원	사업비 범위 내에서 물류비와 안전성검사 변경 사용 가능
포장재 지원	183,000	(포장재) - 포장박스 2,000원×91,500개 * 15개 시·군 ×6,100개=91,500개	사업비 범위 내에서 제작단가 조정

※ 시설하우스는 원예·특작시설 내재해설계기준(농식품부 고시 제2019-44호)에 적합할 것

○ 지원단가 :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농업기계가격」,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의「농기계구입자금지원사업」,「농업종합자금지원사업」 등의 단가 내에서 적정 적용하되,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단가 산출 근거(비교견적서, 원가계산서 등)를 면밀 검토하여 시장, 군수가 결정

※ 道 식량원예과 소관 시설하우스 관련 유사 사업 지침 등을 참고하여 단가의 적정성 검토

○ 사업비 배정기준

- 시군(친환경·학교급식 담당부서)·계약재배 청년농가·학교급식 공급주체가 협의체를 구성한 시군
- 인근 시군과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공급교류 협약체결 시군
- 과수·채소 등 품목다양화, 유기농 등 인증실적이 높은 시군

사업유형 예시

① 시설하우스 신축, 개·보수

- 관수관비시설, 관정개발, 농산물운반기(레일형), 무인방제시설, 방풍망시설, 배수시설, 비가림시설, 비가림하우스(개보수 포함), 서리우박피해방지, 야생동물방지시설, 작업로정비, 지주시설, 친환경과원관리, 품종갱신(기존 시설 활용 가능), 다겹보온커튼(기존 일반 비가림하우스의 동해 방지용), 환풍기, 공동이용설비, 재해예방용 농업용난방기, 냉해방지용 팬, 감귤원 원지정비(기존수목 굴취, 이랑조성, 우량품종 묘목식재(기존 수목의 이식 가능), 방풍수 정비), 자동개폐기, 온습도조절기, 보광시설, 차광·차열시설, 기지원시설·장비 중 사후관리기간이 경과한 시설·장비의 개보수

* 총 사업비 500만 원 미만으로 지원되는 다겹보온커튼은 중요재산에서는 제외되나, 시군에서 동 사업으로 지원되는 시설에 대한 사후관리대책(철거, 보관, 재설치 계획 등)을 수립하고 철저한 이행을 담보할 시에만 지원 가능

* 관수관비시설, 농산물운반기, 무인방제시설, 야생동물방지시설, 다겹보온커튼, 공동이용설비, 환풍기, 재해예방용 농업용난방기는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의 품질보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

* 예시사업 이외의 사업은 사전승인 필요

② 컨설팅, 교육

- 컨설팅·교육 업체는 시군에서 선정하되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광역협의회에서 결정할 수 있다.
- 시군에서는 시설지원 대상농가에 대한 컨설팅 지원에 대하여 농가별 시설비의 2% 자부담분을 포함하여 컨설팅을 총괄하는 사업자에 납부해야 한다.
- 참여농가의 사업전후 성과분석(친환경농산물 생산량, 소득조사 등), (소량 다품목) 연중 공급 위한 품목별 생산 작기 구축 및 농가 교육·현장 지도 점검실적 포함, 출하시기 조절, 공급주체 운영상황 등

*** 시군에서 사업성과 분석 등을 위해 추가 요구한 자료에 대해 제공 가능한 업체 선정**

**** 기존 친환경 학교급식 식재료 계약재배 농가 포함하여 컨설팅 및 교육 추진 가능**

(예시) 농가명	품목	인증면적 (ha)	생산량 (톤)	학교급식 출하량(톤)	과부족량 (톤)	주 출하 시기	kg당 가격 (천원)
홍길동							

③ 물류비 및 안전성 검사 비용 지원

- 시군 간 친환경농산물 수집 차량 배송비 및 수도권 등에 잔여물량 판매물류비
- 시군 거점 센터 간 농산물 유통비용(1회당 500천원/3.5톤)
- 수도권 등 관외 판매 물류비(팔레트 당 100천원)

*** 공급주체와 농가 간 물류비로 사용불가**

**** 사업시행 초기, 한시적으로 기존 친환경 학교급식 식재료를 포함하여 유통 가능**

물류비와 안전성 검사 비용 사용 결과는 해당 시군에 정산서를 제출해야 한다.

5. 사업비 집행 및 사후관리

가. 사업비 집행 및 정산

○ 사업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꼭 필요한 세부사업을 대상으로 사업비 적정 배분

○ 기준 규격 이상 시설·장비 구입 등은 이면계약 방지를 위해 시·군 자체 지침을 마련하여 투명성 확보

- 시공·공급업체 선정, 계약 체결 및 사업자 자부담 포함 사업예산 집행(사업예산 절감 및 시설, 장비의 사유화 방지)

○ 자부담 집행 및 정산자료 검증 강화

- 자부담은「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53조의2에 따라 집행하도록 조치
- 사업 정산 시 사업자등록증소지자 자필서명 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 통장사본 등 금융기관 거래자료 등 증빙자료 검정 이행

○ 사업비 검정 및 정산은 시장·군수 책임 하에 실시하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과 규정 준수

나. 사후관리

○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의 관리기간 등에 대해서는 농림사업에서 정하고 있는 기간 및 기준을 적용하여 사후 지도관리 철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2020. 2. 27.>

중요재산 범위 및 사후관리기간 적용 기준

중요재산의 범위	사후관리기간
■ **부동산의 종물이 아닌 기계・장비** - 농기계 등(트렉터, 광역액비살포기, 방제기 등) 기계・장비는 사업시행지침에 따라 사후관리기준 설정. 다만, 500만원 이상으로 구입한 고정식 또는 이동식 농기계・장비는 최소 5년 이상의 사후관리 기간을 설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5년(사업개별특성 및 사용・관리환경 등 고려 ±2년)

*** 500만원 미만으로 구입한 보온커튼, 지주대, 미니스프링쿨러 등 소모성 기자재는 중요재산에서 제외**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하여는 보조금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등 재산처분의 제한조치

- 중요재산 중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등기를 할 때에는 부기등기 의무화

○ 시설·장비 등은 효율적 관리를 위한 책임자 지정 및 수시 확인·점검(관리·운영 실태, 등기부 열람 등)

○ 보조금을 부당 집행한 경우에는 보조금 회수 및 부당사용 금액에 따라 일정기간 사업자금 지원 제한

○ 운영실태 및 사업실적을 분석·평가하여 우수 법인체에 대해서는 운영자금, 홍보·판촉 등 연계 가능한 사업을 우선하여 지원

○ 보조사업 안내문(안)에 의한 표지를 제작하여 시설 등의 입구·몸체 또는 그 밖의 잘 보이는 곳에 견고하게 설치하거나 부착하여야 한다.

○ 시설하우스는 보조지원 사업임을 일 수 있는 입간판 설치

- 위치 : 시설하우스 입구 정면(눈에 잘 띄는 곳)
- 크기 : (가로) 60cm × (세로) 30cm

이 사업(시설)은 ○○○○년에 **전라남도**로부터 **친환경농산물 계약재배 청년농가 육성**을 위해 보조금 등의 재정지원을 받아 운영하는(설치한) 것으로 사후관리기간인 ○○○○년 ○○월 ○○일까지는 보조금 지원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의 제공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 사 업 명 :
2. 사 업 자 :
3. 시설규모 :
4. 재　　원 :
5. 사 업 비 :
6. 사업기간 :

○○○○년　　월　　일

6. 행정사항

○ 사업 추진상황 및 집행실적 점검(분기) : 연4회

- 3월, 9월(현장점검) / 6월, 12월(서면점검)

보조 사업자	사업내용	사업비 (천원)	추진상황		집행액 (천원)	향후계획	비고
			내용(설계, 인허가 등)	공정율			

○ (도, 시·군) 협의회 회의 개최

- 시·군 협의회 회의(매월), 광역협의회 회의(분기별)

○ 사업완료 및 정산보고 : 2023. 2. 25.까지

[붙 임]

친환경학교급식 주요 식재료 계약재배 현황

❑ 친환경 학교급식 식재료 납품 현황 분석결과

- ❍ 지난 3년간 학교급식으로 납품된 찬환경농산물은 총 23,088톤으로, 곡류 51%, 채소류 39% 및 과일류 10%의 비율을 보임
- ❍ 곡류 중 납품량이 가장 많은 품목은 백미(무농약, 유기농), 찹쌀 순이며 납품량은 11,306톤으로 곡류(11,742톤)의 96%를 차지
- ❍ 채소의 경우 납품량 8,937톤 중 근채류, 조미채소 및 엽채류가 85%를 차지(7,628톤) *** 품목별 상위 3개 45%: 양파, 감자, 무**
- ❍ 과일(2,409톤)은 평균 14.3%로 균일하게 납품되는 경향을 보임

곡 류	채소류	과일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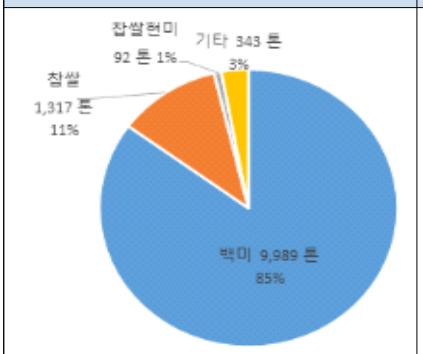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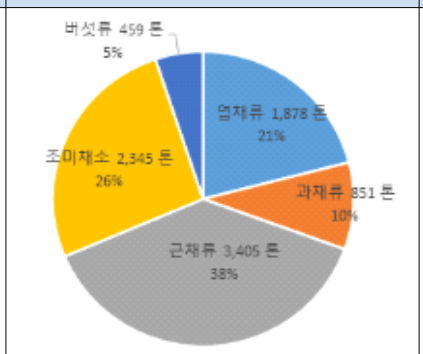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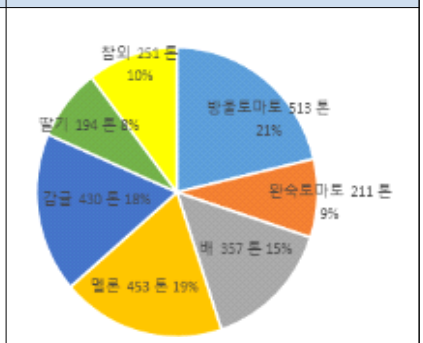

구 분	납품량 많은 품목 (상위 3개)			납품량 적은 품목 (하위 3개)		
	품 목	납품량	비율(%)	품 목	납품량	비율(%)
곡 류	백미	9,989톤	85.1	서리태	22.4톤	0.2
	찹쌀	1,317톤	11.2	백태	12.3톤	0.1
	찹쌀현미	92.2톤	0.8	검정약콩	11.2톤	0.1
채소류	양파	1,703톤	19.1	건고추	46.3톤	0.5
	감자	1,238톤	13.9	쑥갓	39.5톤	0.4
	무	1,092톤	12.2	풋고추	22.3톤	0.2
과일류	방울토마토	513톤	21.3	참외	251톤	10.4
	멜론	453톤	18.8	완숙토마토	211톤	8.8
	감귤	453톤	17.9	딸기	194톤	8.0

❑ 계약재배 현황

❍ 품목별 계약재배율 상이하며, 상·하위 품목간 격차가 심함

❍ 곡류의 계약재배율은 평균 59%, 채소류 56% 이며 과일류의 경우 44%의 계약재배율을 보임

- (곡류) 최저 14.7%(율무)~최대 97.7%(백미)
- (채소류) 최저 30.6%(풋고추)~최대 77.2%(새송이버섯)
- (과일류) 최저 13.7%(참외)~최대 62.2%(방울토마토)

*** 감귤, 참외는 타도산 납품허용(제주, 경북)**

구 분	계약재배율 높은 품목 (상위 3개)		계약재배율 낮은 품목 (하위 3개)		비 고
	품 목	비율(%)	품 목	비율(%)	
곡 류	백미	97.7	기장	33.1	백미 (무농약) 100%
	백태	91.4	보리쌀	28.8	
	찹쌀	87.7	율무	14.7	
채소류	새송이버섯	77.2	깻잎	38.0	오이 44.1%, 청피망 39.2%
	당근	76.4	깐마늘	37.3	
	대파	67.6	풋고추	30.6	
과일류	방울토마토	62.2	배	46.7	멜론 51.5%
	완숙토마토	61.8	감귤*	17.0	
	딸기	57.6	참외*	13.7	

* 품목별 계약재배율은 도 전체 평균으로 시군마다 다를 수 있음

[서식 1]

친환경농산물 계약재배 청년농가 육성사업 신청서

<table>
<tr><td>신청시군</td><td colspan="5"></td></tr>
<tr><td rowspan="2">사업부서</td><td>친환경농산물
생산부서</td><td colspan="4">(연락처)</td></tr>
<tr><td>(학교급식 담당부서)</td><td colspan="4">(연락처)</td></tr>
<tr><td colspan="6">사 업 신 청 내 용</td></tr>
<tr><td rowspan="2">구분</td><td rowspan="2">사업량</td><td colspan="4">사업비(천원)</td><td rowspan="2">비고</td></tr>
<tr><td>계</td><td>도비</td><td>시군비</td><td>자부담*</td></tr>
<tr><td>계</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시설하우스</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컨설팅·교육</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물류비</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 colspan="6">* 자부담 : 사업신청 농가 및 공급주체 부담
년 월 일

신청자 : (인)

전라남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 1. 시군거점센터 협약서 1부.
2. (분야별)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각 1부.</td></tr>
</table>

[서식 2]

친환경농산물 계약재배 청년농가 육성사업

시 군 협 의 회 협 약 서

협약서 참여자	
시군	
계약농가	
공급주체	

상기 협약자는 친환경농산물 계약재배 청년농가육성사업을 신청함에 있어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식재료의 안정적인 생산·유통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거점센터를 구성 상호 긴밀하게 협력하여 추진할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확약자 ○ ○ 시 장 · 군 수 (인)

친환경농산물 계약재배농가 대표(인)

○○시군 학교급식공급주체 대표(인)

[서식 3]

친환경농산물 계약재배 청년농가 육성사업 신청서

(농가 시설하우스 지원)

신 청 자	(핸드폰 :)							
생년월일	(만 세)							
친환경농산물 인증현황(경력 : 년)								
품목	면적(㎡)				생산량(kg)			
계	소계	유기	무농약	관행	소계	유기	무농약	관행

사업 대상지 현황			
지번	지적(㎡)	지목	소유자

사 업 신 청 내 용						
구분	사업량	사업비(천원)				비고
		계	도비 (24%)	시군비 (56%)	자부담 (20%)	
계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상시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상시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인)

○○시장·군수 귀하

첨부서류 : 사업계획서 1부.

[서식 3-1]

사 업 계 획 서

□ 사업 개요

○ 사 업 명 :

○ 사업기간 : 20 . . . ~ 20 . . .

○ 사 업 비 : 금 천원 (보조금 , 자부담)

○ 사업부지

토지소재지	지번	면적(㎡)	지목	비고(소유자)

* 임차농지인 경우는 시설 사후관리가 용이하도록 임대기간을 확보한 증빙자료 첨부

○ 세부사업내역

사업내용	사업량	단가 (천원)	소요사업비(백만원)			
			계	도비	시군비	자담

○ 추진일정

세부공정	1~2월	3~4월	5~6월	7~8월	9~10월	11~12월

□ 추진계획

1. 친환경인증면적 확대계획(향후 3년 이상)

- 주요 품목위주로 친환경농산물 인증확대 및 인증단계 상향계획 수립

(단위 : ㎡)

구분	품목	2022(당해)	2023	2024	2025
친환경 농산물	계				
무농약	소계				
유기	소계				

2. 시설 운영계획(생산・유통・기술교육 등)

–

–

3. 연차별 성과계획

발전 지표	연차별 성과(추정)				비 고
	2022(당해)	2023	2024	2025	
1. 매출액(백만원)					
2. 생산량(톤)					

□ 기대효과

○

○

[서식 4]

친환경농산물 계약재배 청년농가 육성사업 신청서

(공급주체, 컨설팅 및 물류비 지원)

신 청 자	(핸드폰 :)
사 업 자 등 록 번 호	
친환경농산물 재포장취급자 인증여부	

친환경농산물 관리현황

품목	면적(㎡)				생산량(kg)			
계	소계	유기	무농약	관행	소계	유기	무농약	관행

사 업 신 청 내 용

구분	사업량	사업비(천원)				비고
		계	도비	시군비	자부담	
계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상시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상시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인)

○○시장·군수 귀하

첨부서류 : 사업계획서 1부.

[서식 4-1]

사 업 계 획 서

□ 사업 개요

○ 사 업 명 :

○ 사업기간 : 2022. . . ~ 2022. . .

○ 사 업 비 : 금 천원 (보조금 , 자부담)

○ 세부사업내역

사업내용	사업량	단가 (천원)	소요사업비(백만원)			
			계	도비	시군비	자담

□ 추진계획

1. 친환경인증면적 확대계획(향후 3년 이상)

- 주요 품목위주로 친환경농산물 인증확대 및 인증단계 상향계획 수립

(단위 : 면적)

구분	품목	2022(당해)	2023	2024	2025
친환경 농산물	계				
무농약	소계				
유기	소계				

2. 컨설팅, 교육계획

–

–

3. 학교급식 식재료 물류차량 운영계획

–

–

4. 연차별 성과계획

발전 지표	연차별 성과(추정)				비 고
	2022(당해)	2023	2024	2025	
1. 매출액(백만원)					
2. 참여농가 소득(백만원)					
3. 생산량(톤)					

□ 기대효과

○

○

[서식 5] 사업비 정산 서식

물 류 비 영 수 증

○ 영수인 정보

성 명	(인)	주민등록번호	
주 소			
근 무 처			
차량번호		연 락 처	
금 액	원(₩)		
위 금액을 정히 영수함. 2022년 월 일 성명 : (서명)			

*** 신분증, 입금확인증 필수 첨부**

○ 활동 내역

일 자	방문장소(업소명)	배달품목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수당 지출을 위한 회계 등의 업무

나.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기타

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수집된 이후 5년간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 동의	□ 동의하지 않음

본인확인을 위한 고유식별정보 수집 동의	□ 동의	□ 동의하지 않음

2. 제3자에 대한 제공 동의

가.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나.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국산 식재료 공동구매 조직화 사업 인건비 지출 확인

다.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기타

라.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10년

마.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동의는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는 국산 식재료 공동구매 조직화 사업 지원 대상자에 대한 사업비 지원이 제한됨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 동의	□ 동의하지 않음

본인확인을 위한 고유식별정보 제3자 제공 동의	□ 동의	□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호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에 의거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위와 같이 수집·이용하도록 하는데 동의합니다.

2022년 월 일

성 명 : (서명)

현장점검 확인서

○ 일　　시 :

○ 방문대상 :

○ 방 문 자 :

○ 점검품목 :

○ 점검내용

-

-

-

○ 사진

(사진설명)	(사진설명)
(사진설명)	(사진설명)

조직명 :

대　표 :　　(인)

교육실적

○ 일시 및 장소 :

○ 참석인원 :

○ 주요내용

-

-

-

○ 사진

조직명 :

대 표 : (인)

20 유기농 생태마을 육성

1. 사업개요

가. 목 적

○ 지역특색을 살린 유기농 생태마을 육성을 위해 고부가가치 유기농식품산업 기반 구축 및 안정적 소득기반 창출

○ 주민이 주도하는 친환경 유기농업 공동체사업을 통해 농촌의 생태보전과 삶터·쉼터·일터로서의 다원적 기능과 가치 확대

나. 지원근거

○ 「유기농 생태마을 육성 및 지원 조례안」 5조(지원 사업)

○ 「제4차 친환경농업육성 5개년 계획」 (2020년 ~ 2024년)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6조(성장촉진지역 등의 개발)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16조(친환경농수산물 등의 생산·유통·수출 지원)

다. 사업계획

(단위 : 천원)

사 업 명	사 업 량	총사업비			
		계(100%)	도비(45%)	시군비(45%)	자부담(10%)
유기농 생태마을 육성사업	2개소	1,000,000	450,000	450,000	100,000

※ 개소 당 사업비 : 500,000천원(도비 225,000 시군비 225,000 자부담 50,000)

2. 사업시행 주요내용

가. 사업시행기관 : 시장·군수

나. 사업추진 기간 : 2022. 1. ~ 12.

다. 사업내용

○ 저탄소, 친환경, 건강먹거리, 농촌재생 등과 연계해 지역특색을 살린 유기농업 융복합산업화 사업 지원

- 「유기농 생태마을 자문위원회」*, 마을주민 협의한 자체 발굴사업

* 시군 친환경농업과장, 시군친환경농업연합회장, 마을대표, 전문가 등 10명 이내로 구성

사업유형 예시

❖ 웰빙테마 유기농업 융복합사업

☞ **유기농 생태마을 지역주민 주도로 친환경 유기농업과 지역에 있는 자원을 활용해 2, 3차 산업과 연계한 융·복합 수익모델 발굴로 소득기반 및 일자리 창출**

※ 6차산업 : 유기농업과 농촌의 모든 유무형 자원을 바탕으로 농업과 식품, 특산품 제조가공(2차산업) 및 유통 판매, 문화, 체험, 관광, 서비스(3차산업)등 연계한 융복합산업

① **친환경농산물 생산·유통·제조·가공 기반구축 지원**

- 친환경농산물 생산에 필요한 개별·공동시설(미생물배양기, 친환경 벼 건조시설 등)
- 친환경농산물 유통·가공 등 시설,설비 지원(저온저장고, 잡하·선별시설, 세척·절단·포장시설 등)
- 제조·가공 등 전(前) 단계에 필요한 공동 생산·보관·유통시설 지원(제조·가공 등과 연계 지원)

② **유기농업과 연계한 농촌의 맛과 멋을 즐기는 체험·관광·문화·여가 산업기반 구축 등**

- 생산된 농산물, 제품 홍보·체험 등을 위한 소규모 체험·전시시설(신축 및 리모델링 포함), 온·오프라인 판매장, 직거래 판매장,, 공동판매장 시설 지원
- 팜파티 등 친환경농업 교육, 체험시설 등

❖ 지속성장 가능한 유기농 중심의 친환경농업 발전전략

① (**저탄소·친환경**) 탄소중립경제 선도, 환경보전형 농업활동을 통한 생물다양성 증진 및 건강한 생태계보존 가치 증대

* 기후위기, 농약·비료 등으로 인한 토양양분 불균형과 환경오염, 농업기반 위협 해결

② (**건강먹거리**) 농장에서 식탁까지(farm to fork) 안전먹거리 시스템, 유기농 고품질 메디푸드, 건강 기능성식품, 간편식품 개발, 소비자 가치소비(환경+건강) 확대

③ (**농촌재생**) 환경보전형 유기농업과 지역의 문화자원·경관 등을 연계한 특화사업으로 농촌의 공간가치(거주+여가+문화) 증대, 마을공동체 활성화

라. 지원대상(조건)

○ 「전라남도 유기농 생태마을 육성 및 지원 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유기농 생태마을로 지정된 마을로 최근 5년 이내 유기농 생태마을 육성사업 지원 내역 없는 마을(예) 2022년 사업 지원 시 2028년부터 추가사업 신청 가능)

마. 사업추진체계

도	사업지침 수립 시달, 사업대상자 선정, 보조금 교부, 사업계획 승인, 추진상황 점검 등
⇓	
시 · 군	적격마을 심사 후 추천, 사업계획 수립 및 승인요청, 추진상황 확인, 사업비 집행 및 정산, 사후관리 등
⇓	
사업추진주체 (마을, 농업법인 등)	세부 추진계획 수립, 사업시행, 사업비 정산 등

○ 사업희망 마을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 제출(사업대상 마을→시군)

≪사업계획 수립 시 유의사항≫

- ▸사업계획은 본 지침상의 지원대상 등을 참조하여 지역 및 작목특성에 맞게 수립하되, 사업비 산출근거(견적서, 원가계산서 등)를 첨부하여야 함
- ▸기 설치된 생산·유통·가공·처리시설과의 연계활용 방안 및 계획 중인 타 사업 등과 연계 추진방안을 사업계획 수립 시 반영
- ▸ 동일 시설에 대해 타 사업과 중복되지 않도록 유의

○ 사업계획서 검토 후 적격자 도에 추천(시군→도)

- 마을명의의 사업부지(압류 등 설정 여부) 및 자부담 확보, 중복·편중 여부 등 확인
- 시군과 자문위원회 공동으로 마을주민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사업발굴, 사업계획 수립
- 시군은 사업목적과 지원대상 조건을 갖춘 마을의 사업계획서를 엄격 심사하여 도에 제출

○ 1차 서류심사, 2차 현지 및 전문가 평가를 거쳐 지원대상자 최종 결정(도)

- 도에서는 전문가 심사(현장 확인) 등 공모를 통해 대상 마을 및 사업계획 최종 확정

※ 사업적격자가 많지 않을 경우 전문가 평가를 자체 평가로 대체

바. 대상추천

○ 추천대상 마을은 유기농 생태마을 지정당시 마을명칭으로 유기농 생태마을 육성 사업 추천이 가능하나, 지원 사업계획 내용 중 인·허가 절차 이행이나 사업의 원만한 추진과 향후 사업추진의 책임성, 완료된 시설·장비 등의 원활한 사후관리를 위해 마을회 등록, 영농조합, 농업회사 등을 사업대상으로 추천

※ 단, 유기농 생태마을 지정당시 마을명칭으로 사업대상을 추천할 경우 향후 사업 착공 전까지 농업법인으로 변경한다는 조건도 가능(참여주민 전체가 동의한 회의록 동의서 등 제출)

사. 평가방법

○ 서류심사 및 현장조사

- 시군 추천마을 현황 및 사업계획 등 지정기준 적합여부 서류검토, 현장조사

○ 평가위원 종합평가

- 후보마을 대상 전문가 평가단(5명 내외) 구성·평가

3. 사업비 집행 및 사후관리

가. 사업비 집행 및 정산

○ 사업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꼭 필요한 세부사업으로 사업비 적정 배분

○ 사업비 지원이 가능한 세부항목에 대해서 사업비를 집행하되, 적정 여부 확인

○ 사업계획 승인 이후 세부 사업간 사업비 변경 및 조정이 필요한 경우 시장·군수는 사업변경에 따른 타당성을 검토 자체승인 조치하고 그 결과를 도에 보고

▶ 도 승인사항 : 사업예정지 변경, 보조사업자 변경, 총 사업비의 30% 이상 증감이 필요한 경우 등 중대한 변경사항

▶ 시군 승인사항 : 도에서 승인한 사업내역 중 일부 사업 제외, 부가가치세 환급(예상)금액, 집행잔액 등을 사업에 재투자하고자 할 경우 등 경미한 변경사항

○ 사업비 검정 및 정산은 시장·군수 책임 하에 실시하고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 및 규정 준수

나. 사후관리

○ 시군에서는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의 관리기간 등에 대해서는 농림사업에서 정하고 있는 기간 및 기준을 적용하고 사후 지도관리 철저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하여는 보조금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등 재산처분의 제한조치

- 중요재산 중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등기를 할 때에는 부기등기 의무화

○ 세부사업별 사업의 건축물, 공작물 등 시설·장비는 보조지원 사업임을 알 수 있는 안내판 설치

- 위치 : 시설물 주출입구 정면(눈에 잘 띄는 곳)
- 크기 : (가로) 90cm × (세로) 60cm

이 사업(시설)은 ○○○○년에 농림축산식품부(**전라남도**)로부터 **유기농 생태마을 육성**을 위해 보조금 등의 재정지원을 받아 운영하는(설치한) 것으로 사후관리기관인 ○○○○년 ○○월 ○○일까지는 보조금 지원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의 제공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 사 업 명 :
2. 사 업 자 :
3. 시설규모 :
4. 재 원 :
5. 사 업 비 :
6. 사업기간 :

○○○○년 월 일

○ 시설·장비 등에 대해서는 사업 목적에 따라 친환경농산물만을 취급하여야 하며, 농산물 취급확약서를 관리자(시·군)에 제출
- 시설·장비 등 일반 농산물과 혼용 사용 시 보조금 회수 조치

친환경농산물 취급 확약서

○ 사 업 명 : 0000년 유기농 생태마을 육성사업
○ 단 체 명 : (대표자 성명 :)
○ 사업장위치 :
○ 연 락 처 :
○ 지원내역

사업내용	사업규모 (㎡)	사업 완공일	사업비(백만원)			
			계	국비	시군비	자부담

본인은 친환경농산물 생산·가공·유통시설 설치를 위해 00년에 보조금 지원받았으며, **사업의 목적대로 친환경농산물만을 취급**하고 「농림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라 사후관리 기간 동안 성실히 보조의무자의 역할을 다할 것을 확약합니다.

0000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

○○ 시장·군수 귀하

○ 시군에서는「유기농 생태마을」지원 후 매년 친환경농업 실천현황을 조사하고 친환경농업 의식교육 지속 실시로 면적 확대 추진

○ **「유기농 생태마을」**은 마을 주변 농경지 필지별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마을 사무실에 비치하고 선진지 견학 등의 장소로 제공

- 지번, 지목, 면적, 경작자, 재배작물, 인증단계 등 포함 대장 작성

4. 행정사항

○ 사업 추진상황 및 집행실적 점검(분기) : 연4회

- 3월, 9월(현장점검) / 6월, 12월(서면점검)

보조 사업자	사업내용	사업비 (천원)	추진상황		집행액 (천원)	향후계획	비고
			내용(설계, 인허가 등)	공정율			

○ 유기농 생태마을 운영실적 조사 : 2022. 3. 31.까지

○ 부동산 등 중요재산 관리실태 조사 : 연1회(7월중)

○ 사업완료 및 정산보고 : 2023. 1. 31.까지

[서식 1]

유기농 생태마을 육성 사업신청서

<table>
<tr><td rowspan="4">신청자</td><td>마을명칭(위치)</td><td colspan="6"></td></tr>
<tr><td>성 명
(대표자명)</td><td></td><td>농업경영체
등록번호</td><td></td><td>전화번호</td><td colspan="2"></td></tr>
<tr><td>주 소</td><td colspan="6"></td></tr>
<tr><td>사업신청
단체현황</td><td colspan="2">농업법인, 마을회 등</td><td colspan="2">참여농가수
(마을농업인 한정)</td><td colspan="2">호
(유기 ,친환경)</td></tr>
<tr><td rowspan="5">신청내용</td><td>사 업 명</td><td colspan="6"></td></tr>
<tr><td rowspan="3">사업예정지
(동·리 번지까지 기재)</td><td colspan="3" rowspan="3"></td><td colspan="3">친환경인증현황</td></tr>
<tr><td colspan="2">유기농 인증면적</td><td>ha</td></tr>
<tr><td colspan="2">무농약 인증면적</td><td>ha</td></tr>
<tr><td>사 업 비
(천 원)</td><td rowspan="2">계</td><td colspan="3">정부지원(재원명 기재)</td><td rowspan="2">지방비</td><td rowspan="2">자부담</td></tr>
<tr><td>국고계</td><td>보 조</td><td>융 자</td></tr>
<tr><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사업내용별
규모(량)</td><td colspan="6"></td></tr>
</table>

위와 같이 「0000년도 유기농 생태마을 육성 사업」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상기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 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상기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 ○ (시장·군수·자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유기농생태마을 추천조사표 1부
3. 친환경농업 현황 및 사업계획 확인할 수 있는 자료 1부

[서식 1-1]

사 업 계 획 서

※ 사업계획서 작성시 기본양식을 예시한 것으로 마을별 현실에 맞게 작성(A4 용지 6~7매 정도 작성)

□ 마을현황

○ 기본현황, 친환경 인증현황, 소득현황 등

구분	품목	면적(㎡)	생산량(톤)	매출액(천원)	참여농가(호)
계					
일반 농산물	소계				
친환경 농산물	소계				
무농약	소계				
유기	소계				

○ 행복마을·녹색농촌체험마을 등 지정현황

□ 사업목적

○ 사업추진 배경과 필요성

□ 사업계획

○ 사업개요, 사업내용, 추진주체(마을주민 참여 등)

○ 사업계획

- 사 업 비 : 백만원(도비 , 시군비 , 자담)
- 사업예정지 :

세부사업내역	사업량	단가 (천원)	소 요 사 업 비(백만원)			
			계	도비	시군비	자 담
계						
가공공장	000㎡/1동					
포장기기	0대					

○ 추진일정, 사업비 투자계획 등

○ 운영관리계획

○ 자문위원회 운영결과 내용 및 반영 등

□ 친환경 확대 계획

○ 친환경농산물 인증면적 확대 및 내실화 계획(방안)

구분		품목	2022년		2023년		2024년 이후	
			면적 (ha)	생산량 (톤)	면적 (ha)	생산량 (톤)	면적 (ha)	생산량 (톤)
친환경 농산물		계						
	무 농 약	소계						
	유 기	소계						

□ 마을 발전계획

○ 친환경농산물 판매망 확대 및 소득증대 등

발전 지표	연차별 성과(추정)			비 고
	2022년	2023년	2024년 이후	
1. 법인(단체) 생산・매출액(백만원)				
2. 참여농가 소득증가(백만원)				
3. 일자리 창출(명)				
4. 수출(백만원)				
5. 방문객(명)				

□ 기대효과

○

○

※ 관련서류 첨부

○ 마을별 제출서류

- 유기농 생태마을 사업신청서(서식1) 1부
- 유기농 생태마을 사업계획서(서식1-1) 1부.
- 「유기농 생태마을」 추천 조사표(서식1-2) 1부.
- 지적도 1부(마을 중심 지적도에 필지별 인증단계 색깔표시)
- 법인 명의로 개설된 별도의 보조금 관리 통장 사본 1부.(자부담 확보 내역 확인용)
- 사업 주체 선정에 대한 마을 주민 동의서(서식5) 1부.

○ 시군 제출서류

- 유기농 생태마을 신청마을 평가표(서식2) 1부.
- 공모사업 현장 점검표(서식3) 1부.
- 인허가 관련부서 검토의견서(서식4) 1부.

[서식 1-2]

「유기농 생태마을」 육성사업 추천 조사표

<table>
<tr><td rowspan="2">마을
현황</td><td>주소 : 면 리 마을</td><td rowspan="2">친 환 경
농업단지</td><td colspan="2">마을명 :</td></tr>
<tr><td>이장 : (년생)
(☏ , HP)</td><td colspan="2">대 표 : (년생)
(☏ , HP)</td></tr>
<tr><td colspan="2">구성호수 : 호(농가 , 비농가)</td><td>신청일 현재
(. . .)</td><td>인증농가 호, ha
- 무농약 호, 유기농 호</td></tr>
<tr><td colspan="2">경지면적 : ha(논 , 밭)</td><td colspan="2">인증현황(ha) : ha(논 , 밭 , 임야)</td></tr>
<tr><td colspan="2">- 작목별 : 벼 , , ,
, , , ,</td><td colspan="2">- 작목별 : 벼 , , , ,
, , , ,</td></tr>
<tr><td colspan="2">원예시설 : 동(㎡)
- 주작목 : , , , ,</td><td colspan="2">- 단계별 : 유기 , 무농약</td></tr>
<tr><td colspan="2">축산현황 : 호, 소 두, 돼지 두,
닭 수, 기타</td><td colspan="2">- 유기축산 : 소 두, 돼지 두, 닭 수
무항생제 : 소 두, 돼지 두, 닭 수</td></tr>
<tr><td colspan="2">마을 평균 호당소득 : 천원
- 농업소득 , 농외소득 , 기타
- 호당소득 최고가구 : 천원</td><td colspan="2">마을 친환경농가 평균소득 : 천원
- 농업소득 , 농업외 소득 , 기타
- 호당소득 최고농가 : 천원</td></tr>
<tr><td>마을
생태
환경</td><td>※ 강, 하천 또는 산자락, 유적, 관광명소, 생태공원(생태연못), 저수지, 잔디구장 등과 연계하여 마을 위치 및 주변 환경, 기타 특이사항 작성</td><td>주거
환경</td><td colspan="2">주택 채, 부속건물 채,
공동이용 건물 채, 가게 채,
식당 개소, 기타</td></tr>
<tr><td rowspan="5">마을
공동
시설</td><td>쓰레기 공동처리장 : ㎡</td><td rowspan="2">주택
(채)</td><td>형태) 한옥 , 양옥 , 기타</td></tr>
<tr><td>하수 종말처리장 : ㎡</td><td>연료) 태양열 , 목재 , 기타</td></tr>
<tr><td>공동 선별작업장 : ㎡</td><td rowspan="2">친환경
공동
이용
시설</td><td rowspan="2">※ 친환경관련 공동이용시설 작성</td></tr>
<tr><td>마을회관(교육장) : ㎡</td></tr>
<tr><td>농산물 판매시설 : ㎡</td><td colspan="2">문화재·관광시설 : ※ 연계 가능시설</td></tr>
<tr><td colspan="2">마을 인증목표
(신청일 현재 인증+신청면적)</td><td colspan="3">호, ha (유기 , 무농약)</td></tr>
<tr><td colspan="5">- 지목별 : 논 ha, 밭 ha, 임야 ha(개간지 , ,)</td></tr>
<tr><td colspan="5">- 작목별 : 벼 ha, 밭작물 , 채소류 , 특작류 , 과수류 , 기타</td></tr>
<tr><td>특기
사항</td><td colspan="4">※ 친환경 선도마을 지정현황, 기타 친환경농업 관련사항 및 행복마을, 녹색농촌체험마을, 정보화마을 지정현황 등 마을 특기사항 기재</td></tr>
</table>

[서식 2]

유기농 생태마을 신청마을 평가표

□ 마을명 :

평가요소	평가항목	등 급 심 사 기 준	점수
1. 친환경 농업실천 참여도 및 현황(25)	1-1. 마을 전체농가 대비 친환경 농산물 인증농가 비율(5)	◦ 70%초과 : 5 30~70% : 3 30%미만 : 1 *** 마을농가수 : ___가구, 친환경농가수 : ___가구**	
	1-2. 친환경농가 대비 유기 농산물 인증농가 비율(5)	◦ 50%초과 : 5 20~50% : 3 20%미만 : 1 *** 친환경인증농가수 : ___가구, 유기인증농가수 : ___가구**	
	1-3. 마을전체 경지면적 대비 친환경 농산물 인증면적 비율(5)	◦ 70%이상 : 5 30~70% : 3 30%미만 : 1 *** 마을전체 경지면적 : ___ha, 친환경인증면적 : ___ha**	
	1-4. 친환경 인증면적 대비 유기 농산물 인증면적 비율(5)	◦ 50%초과 : 5 20~50% : 3 20%미만 : 1 *** 친환경인증면적 : ___ha, 유기농산물인증면적 : ___ha**	
	1-5. 마을의 유기농인증 경지면적(3)	◦ 20ha초과 : 3 10~20ha : 2 10ha미만 : 1 *** 벼 이외작물 : 2ha초과 : 5점, 1~2ha : 3점, 1ha미만 : 1점**	
	1-6. 타 명칭 지정마을(2)	◦ 2개소 이상 : 2 1개소 : 1, 0개소 : 0 * 행복마을(한옥마을), 전통테마마을, 정보화마을 등	
2. 사업내용 적합성 (25)	2-1. 유기농 생태마을 적합한 사업신청(10)	◦ 적합(10점) ~ 미흡(1점) * 유기농 생태마을의 육성목적과 부합여부	
	2-2. 사업의 창의성(5)	◦ 양호 : 5점 보통 : 3점 미흡 : 1점 * 사업내용 및 추진계획 등 기존사업과의 차별성 등 평가	
	2-3. 마을 특성과의 부합 여부(5)	◦ 양호 : 5점 보통 : 3점 미흡 : 1점 * 마을의 특징과 사업내용의 연계여부 평가	
	2-4. 사업의 선택과 집중정도(5)	◦ 양호 : 5점 보통 : 3점 미흡 : 1점	
3. 사업계획 실현가능성 (30)	3-1. 사업계획 구체성 및 실행가능성(10)	◦ 우수(10점) ~ 미흡(1점)	
	3-2.사업목표의 현실성(5)	◦ 우수(5점) ~ 미흡(1점)	
	3-3.기존 사업과의 차별성(5)	◦ 우수(5점) ~ 미흡(1점) * 기존에 지원하고 있는 사업과의 중복여부(농기계 보조 등)	
	3-4.사업비 투자계획의 적정성(5)	◦ 우수(5점) ~ 미흡(1점)	
	3-5.인증면적 확대계획(5)	◦ 우수(5점) ~ 미흡(1점) * 친환경농산물 생산계획(유기인증 상향 등)이 적정한가?	
4. 사업추진 의지 및 기대효과 (20)	4-1.간담회 등을 통한 주민 의사 수렴여부(5)	◦ 수렴 : 5점 미수렴 : 0점 * 마을회의를 통한 주민동의서 등 첨부 여부	
	4-2.자부담 재원 확보 및 투자 정도(5)	◦ 전액확보 : 5점, 미확보 : 0점	
	4-3.사업부지 확보여부(5)	◦ 마을명의 부지확보 : 5 부지사용 승인 : 3점 미확보 : 0	
	4-4.마을 소득증대 및 유기농 면적확대 등 기여도(5)	◦ 높음 : 5점 보통 : 3점 낮음 : 1점 * 본 사업을 통한 유기인증 면적의 확대 및 마을소득 증대 가능성	
합 계			

작성자(담당공무원) :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검토자(담 당 팀 장) :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확인자(담 당 과 장) :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서식 3]

유기농 생태마을 육성 공모사업 현장점검표

시 군 명		마을명(대표자)	
소 재 지			
사 업 내 용			
현장방문일		담 당 자	

점 검 항 목	확 인 내 용	증 빙 서 류
1. 지원대상 확인	*예)000법인, 000마을*	*예)법인등기 등*
2. 친환경(유기농) 인증	*예)친환경(유기농) 인증면적*	*예)친환경(유기농) 인증서*
3. 사업부지 확보 여부	*예)토지소유자, 토지 근저당설정 등*	*예)토지승낙서, 토지등기부등본 등*
4. 농지법, 건축법 등 관련법저촉여부	*예)가·부*	*예)관련부서 사전협의 공문*
5. 주민의사 수렴 여부	*예)회의를 거쳐 주민들의 의견이 수렴됐는지 확인*	*예)주민회의록, 주민동의서 등*
6. 타 명칭 지정(사업) 여부	*예)행복마을, 테마마을 등 타 명칭 지정 확인*	*예)마을 지정서*
7. 자부담 재원 확보	*예)확보액*	*예)통장사본 등*
8. 사업계획	*예)지원단가 적정성 등*	*예)견적서, 설계서 등*
종합의견 ○		

[서식 4]

공모사업 신청에 따른 관련법 검토의견서

□ **적　　요** : 유기농 생태마을 육성 공모사업 신청에 따른 관련법 검토

□ **목　　적** : 사업계획서 검토 및 가능여부 판단

□ **협의요청부서(기관)** :

□ **사업시행자** :

□ **신 청 내 역**

(단위 : ㎡)

위　치	지 목	지　적	전용면적	전용목적	용도지역	비　고

□ **관련법규 검토(협의)**

대상법규	검토(협의)의견	검토결과 (가・부)	검토자		비 고
			직	성명	
건축법					
농지법					
산지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환경관련법					
도로법					
기타 관련법					

붙임 : 관련부서 사전 협의 회신 공문

[서식 5]

사업주체 선정에 대한 마을 주민 동의서

□ **사 업 주 체** : (인・허가 등 법적 행위요건을 갖춘 농업법인)

□ **사업부지(주소)** :

□ **사 업 내 용** :

□ **회 의 내 용** : (사업주체 선정 및 사업 내용에 동의한다는 내용 명시)

년 월 일

* 주민 2/3이상의 동의 서명 필요

사업주체(대표자)	성명 :	주소 :	인(서명 또는 날인)
사업참여자(주민)	성명 :	주소 :	인(서명 또는 날인)
사업참여자(주민)	성명 :	주소 :	인(서명 또는 날인)
사업참여자(주민)	성명 :	주소 :	인(서명 또는 날인)
사업참여자(주민)	성명 :	주소 :	인(서명 또는 날인)
사업참여자(주민)	성명 :	주소 :	인(서명 또는 날인)
사업참여자(주민)	성명 :	주소 :	인(서명 또는 날인)

21 유기농 생태마을 활성화

1. 사업개요

가. 목 적

○ 주민이 참여하는 자립형 마을공동체 활동 지원으로 주민 화합과 삶의 질 향상

○ 유기농업 정착과 체험장으로 육성된 유기농 생태마을 운영 활성화로 일자리 창출, 농가소득 증가

나. 지원근거

○「유기농 생태마을 육성 및 지원 조례」제5조(지원사업)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16조(친환경농수산물 등의 생산·유통·수출 지원)

○ 제4차 친환경농업육성 5개년계획

다. 사업계획

(단위 : 천원)

사 업 명	사업량	총사업비			
		계 (100%)	도 비 (15%)	시군비 (70%)	자부담 (15%)
유기농 생태마을 활성화사업	10개소	200,000	30,000	140,000	30,000

2. 사업시행 주요내용

가. 사업시행기관 : 시장·군수

나. 사업추진 기간 : 2022. 1. ~ 12.

다. 사업내용

○ 유기농 생태마을 농가소득원 다양화 및 소득 확대를 위한 사업 발굴 및 운영

- 유기농업 실천현장과 친환경농산물을 활용한 체험프로그램 개발, 장비, 도구 구입 등
- 프로그램 진행 등에 필요한 주민교육, 마을리더 교육 등 실시

○ 유기농 생태마을 공동체 역량강화사업

- 유기농 생태마을 발전 및 역량강화를 위한 컨설팅, 선진지 견학, 워크숍 추진
- 친환경 재배기술, 친환경제제 제조기술 등 유기농업 확대위한 외부 전문가 교육 활성화사업

○ 마을발전계획 수립, 입간판, 마을 안내자료 등 홍보물 제작 등

라. 신청자격 : 신청당시 친환경 생태마을로 지정된 마을

마. 사업체계

○ 도는 사업지침 수립 시달 및 사업대상자 선정, 시군 사업비 배정, 보조금 교부, 추진상황 점검 등

○ 시군은 관내 유기농 생태마을에 사업에 대한 홍보를 통해 희망마을의 사업신청 안내·접수, 사업신청

- 유기농 생태마을에서 신청한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검토하고 현장확인 등을 통해 적격자 여부를 판단하여, 도에 사업대상 마을 추천
- 유기농 생태마을은 사업지침 등을 마을주민과 협의하여 필요한 사업에 대해 사업신청서(사업계획서)를 시군에 제출

○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유기농 생태마을은 사업지침에 따라 성실하게 사업을 진행하고 완료 후 정산하여 시군에 보고

3. 사업비 집행 및 사후관리

가. 사업비 집행 및 정산

○ 사업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꼭 필요한 세부사업을 대상으로 사업비 적정 배분

○ 이면계약 방지를 위해 시·군 자체 지침을 마련하여 투명성 확보

- 시공·공급업체 선정, 계약 체결 및 사업자 자부담 포함 사업예산 집행(사업예산 절감 및 시설, 장비의 사유화 방지)

○ 자부담 집행 및 정산자료 검증 강화

- 자부담은「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53조의2에 따라 집행하도록 조치
- 사업 정산 시 사업자등록증소지자 자필서명 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 통장사본 등 금융기관 거래자료 등 증빙자료 검정 이행

○ 사업비 검정 및 정산은 시장·군수 책임 하에 실시하고「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과 규정 준수

나. 사후관리

○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는 보조금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등 재산처분의 제한조치

○ 보조금을 부당 집행한 경우에는 보조금 회수 및 부당사용 금액에 따라 일정기간 사업자금 지원 제한

4. 행정사항

○ 당해 연도 보조사업자 선정현황 결과 보고 : 2022. 3. 11.

○ 사업 추진상황 및 집행실적 점검(분기) : 연4회

- 3월, 9월(현장점검) / 6월, 12월(서면점검, 보고서식)

○ 사업완료 및 정산보고 : 2023. 1. 31.까지

[서식 1]

유기농 생태마을 활성화사업 신청서

신 청 자	주 소				
	마 을 명				
	대표자명		전화번호		
사 업 비 (단위 : 천원)	항목별	계	도비	시·군비	자부담
	계				
필 요 성	○ -				
사업내용	○ -				
사 업 비 산출근거	○ - -				

상기와 같이 유기농 생태마을 활성화 사업을 신청하며, 지원금을 목적대로 성실히 사용할 것을 확약합니다.

신 청 일 : 년 월 일

신 청 자(대표) : (서명 또는 날인)

○○ 시장·군수 귀하

붙임 : 사업계획서 1부, 마을회의록 1부

사 업 계 획 서

□ 유기농 생태마을 활성화 사업개요

○ 사업기간 :

○ 사 업 비 : 천원(도비 , 시군비 , 자담)

○ 신청마을 : (대표 , ☎)

- 운 영 자 : (☎)

○ 사업내용

항목별	사업내용 (사업량)	계	도비	시·군비	자부담
계					

□ 유기농 생태마을 현황

구분		세부내용			비고
친환경인증 현황		ha(유기 ha, 무농약 ha) - 주요품목 : (ha), (ha)			
친환경농산물 매출현황		천원 - 주요품목 : (ha), (ha) - 판 매 처 : (%), (%), (%)			
시설현황		**체험시설**	**식당시설**	**숙박시설**	
		명/1회	명/1회	동, 실 명/1일	
		상품판매장	**기타**		
체험 현황	방문객	**연평균**	**19년**	**20년**	
		회, 명	회, 명	회, 명	
	체험 소득	**연평균**	**19년**	**20년**	전담 00 일시 00

□ 사업계획

○ 사업목적 및 필요성 등

○ 사업내용, 추진주체(마을주민 참여 등)

○ 세부사업내역

○ 운영관리계획: 세부사업별 사용계획, 필요성 등 작성

○ 공정별 추진일정

□ 친환경농산물 인증 확대계획

구분		품목	2022년		2023년		2024년 이후	
			면적 (ha)	생산량 (톤)	면적 (ha)	생산량 (톤)	면적 (ha)	생산량 (톤)
친환경 농산물		계						
	무 농 약	소계						
	유 기 농	소계						

□ 연도별 성과계획

지표	연도별 성과			비고
	2022년	2023년	2024년	
친환경농산물 매출액(천원)				
체험방문객(명)				
체험소득 (천원)				
인력				

□ 기대효과

○

○

(참고) 유기농 생태마을 지정 지침

1. 목　　적

○ 친환경농업을 적극 실천하는 유기농 선도 지역을 발굴 **유기농 생태마을**로 지정하여 유기농 조기 확산 분위기 조성

○ 생태환경이 살아 숨 쉬는 마을 전체를 친환경 유기농업 체험장으로 활용 등 농촌관광 명소화로 주민소득증대 도모

2. 추진방침

○ 친환경 영농기반이 잘 갖추어진 일정규모 이상 유기농 실천마을

○ 마을생태환경이 환경 친화적이며, 복합영농 실천으로 친환경 교육, 각종 농촌문화 현장체험 및 민박(유기농식당) 등 관광 명소화를 통한 도·농 교류 촉진으로 농가 소득증대를 실현하는 마을 지정

○ 유기농 생태마을 집중홍보 및 인센티브 차원 공동이용시설 지원

3. 지정계획

가. 추진기간 : 시군 추천(4월), 평가·지정(5월)

나. 지정기준

○ 농가 10호 이상으로 구성되어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마을로, 들녘 또는 수계단위 친환경농산물 인증 면적이 10ha 이상인 마을(유기농 비율 30%)

- 과수 및 채소의 경우 농가 5호 이상, 친환경농산물 인증 면적 1ha 이상(유기농 비율 30% 이상인 마을)

○ 마을 생태환경이 우수하며 제초제를 사용하지 않고, 유기농으로 가기 위한 주민의식이 뚜렷하며, 건축물이나 생활방식 등이 환경 친화적인마을

○ 농촌문화 및 친환경농업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농장이나 민박(유기농 식당)시설이 있는 친환경농업 관련 소득이 높은 마을

다. 지정방법

○ 시군별 후보지 도 추천(붙임 1~3) → 1차 서류평가 → 2차 현지종합평가 → 지정(결격사유가 없는 마을 대상으로 상위 순위부터 유기농 생태마을 지정번호 부여) → 지정서 교부(지정대장 비치)

라. 평가방법

○ 1차 서류평가

- 시군 추천 마을 대상 서류검토 상위 마을 대상 1차 평가(서류평가, 필요시 현지 확인) 실시를 통해 2차 평가 후보마을 선정 *** 1차 서류 평가표 : 붙임 4**

○ 2차 현지종합평가

- 전문 평가단을 구성하여 후보마을 현지 종합평가 적격여부 판단
(친환경농업인단체, 유기농명인, 소비자단체, 공무원, 관계분야 전문가 등)
*** 2차 현지 종합평가표 : 붙임 5**

마. 지정기간

○ **지정기간은 1년**이며, 매년 친환경농업 실천여부를 조사하여 유기농 생태마을 지정기준 준수 마을에 대해서는 지정서 재교부

바. 세부 추진일정

○ 시군별 지역 내 유기농업 실천 선도마을 발굴, 도에 추천 : 4월

○ 전문 평가단 마을 현지방문 종합 평가 실시 : 5월

- 종합평가 결과 결격사유 없는 마을 대상으로 순위부여

○ 유기농 생태마을 지정서 교부(전남도 지정번호 부여) : 5월말

○ 전라남도 지정 안내표지판 마을입구 설치 및 지정 홍보 : 연중

4. 유기농 생태마을 인센티브 제공

가. **유기농 생태마을** 지정 안내표지판 도 일괄제작 설치

나. 각종 친환경농업 관련사업 대상자 선정 시 우선순위 부여

다. TV, 신문 등 다양한 언론매체를 통해 유기농 생태마을 홍보

라. 도시 거주자 친환경농업 현장 체험학습 교육장으로 우선 활용

마. 지정 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마을 공동영농시설 설치비 지원

5. 사후관리

가. 유기농 생태마을 지정 후 **마을 전체 경지면적에 대해 유기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관리

○ 마을이 필요로 하는 친환경농업 관련 공동이용시설 일부 지원

나. 유기농 생태마을 지정 후 **매년 친환경농업 실천현황**을 조사하여 지정기준에 미달 시 지정 취소

○ 유기농 생태마을별 실천현황 조사(매년 3월) 결과 지정이 취소되는 마을에 공문 통보(1년 유예기간 설정), 1년 후 재조사

⇒ 재조사 시에도 당초 지정기준에 미달 시 지정취소 통보 유기농 생태마을 지정 안내표지판 회수

*** 지원시설은 목적 외 사용할 경우 보조금 회수조치**

6. 행정사항

가. 시군별 유기농 생태마을 지정 후보지 추천 : 4월

○ 시군담당자가 지정 기준에 적합한 마을 조사하여 도에 추천 : 붙임 2

나. 현지평가 대상으로 통보받은 마을은 추천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제출(현지평가 전)

○ 유기농 실천과정이나 마을전경 및 홍보자료 등 특기사항 포함

○ 마을 지적도(경지구역, 친환경인증 면적, 유관시설 표기)

다. 현지평가 시 평가단 안내 및 마을 대표자 참석 질의사항 준비

[붙임 1]

유기농 생태마을 지정신청서

가. 신청인(대표자)

성 명 (대 표 자)		생년월일 (법인번호)	
주 소		연락처	

나. 마을현황

마을명					
마을소재지					
마을현황	· 구성호수 : 호(농가 , 비농가) * 경지면적 : ha(논 , 밭)				
친 환 경 인증 현황	구 분	계		유기	무농약
	농가수(명)	10(중복 제외)		5	8
	인증면적(ha)	16		6	10
	주요품목	벼	9	5	4
		양파	5	1	4
		딸기	2		2

위와 같이 유기농 생태마을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서명 또는 인)

○○ 시장·군수 귀하

[붙임 2]

유기농 생태마을 지정추천 조사표

<table>
<tr><td rowspan="2">마을
현황</td><td>주소 : 면 리 마을</td><td rowspan="2">친환경
농업단지</td><td colspan="2">마을명 :</td></tr>
<tr><td>이장 : (년생)
(☏ , HP)</td><td colspan="2">대 표 : (년생)
(☏ , HP)</td></tr>
<tr><td colspan="2">구성호수 : 호(농가 , 비농가)</td><td>신청일 현재
(. . .)</td><td colspan="2">인증농가 호, ha
- 무농약 호, 유기농 호</td></tr>
<tr><td colspan="2">경지면적 : ha(논 , 밭)
- 작목별 : 벼 , , ,
, , , ,</td><td colspan="3">인증현황(ha) : ha(논 , 밭 , 임야)
- 작목별 : 벼 , , , ,
, , , ,</td></tr>
<tr><td colspan="2">원예시설 : 동(㎡)
- 주작목 : , , , ,</td><td colspan="3">- 단계별 : 유기 , 무농약</td></tr>
<tr><td colspan="2">축산현황 : 호, 소 두, 돼지 두,
닭 수, 기타</td><td colspan="3">- 유기축산 : 소 두, 돼지 두, 닭 수
무항생제 : 소 두, 돼지 두, 닭 수</td></tr>
<tr><td colspan="2">마을 평균 호당소득 : 천원
- 농업소득 , 농외소득 , 기타
- 호당소득 최고가구 : 천원</td><td colspan="3">마을 친환경농가 평균소득 : 천원
- 농업소득 , 농업외 소득 , 기타
- 호당소득 최고농가 : 천원</td></tr>
<tr><td>마을
생태
환경</td><td colspan="2">* 강, 하천 또는 산자락, 유적, 관광명소, 생태공원(생태연못), 저수지 등과 연계하여 마을 위치 및 주변 환경, 기타 특이사항 작성</td><td>주거
환경</td><td colspan="2">주택 채, 부속건물 채,
공동이용 건물 채, 가게 채,
식당 개소, 기타</td></tr>
<tr><td rowspan="5">마을
공동
시설</td><td>쓰레기 공동처리장 : ㎡</td><td rowspan="2">주택
(채)</td><td colspan="2">형태) 한옥 , 양옥 , 기타</td></tr>
<tr><td>하수 종말처리장 : ㎡</td><td colspan="2">연료) 태양열 , 목재 , 기타</td></tr>
<tr><td>공동 선별작업장 : ㎡</td><td>친환경
공동
이용
시설</td><td colspan="2">* 친환경관련 공동이용시설 작성</td></tr>
<tr><td>마을회관(교육장) : ㎡</td><td colspan="3" rowspan="2"></td></tr>
<tr><td>농산물 판매시설 : ㎡</td></tr>
<tr><td colspan="2">문화재·관광시설 : * 연계 가능시설</td><td colspan="3"></td></tr>
<tr><td colspan="2">마을 인증목표
(신청일 현재 인증+신청면적)</td><td colspan="4">호, ha (유기 , 무농약)</td></tr>
<tr><td colspan="6">- 지목별 : 논 ha, 밭 ha, 임야 ha(개간지 , ,)</td></tr>
<tr><td colspan="6">- 작목별 : 벼 ha, 밭작물 , 채소류 , 특작류 , 과수류 , 기타</td></tr>
<tr><td>특기
사항</td><td colspan="5">※ 마을 특기사항 기재(별지작성 가능)</td></tr>
</table>

[붙임 3]

유기농 생태마을 지적도

00마을 친환경인증현황 (친환경 ■, 유기농 ■)

[붙임 4]

유기농 생태마을 1차 서류 평가표(벼 등)

□ 마 을 명 : 시군 읍면 리 마을

<table>
<tr><th>항목</th><th>평가내용</th><th>평가 기준</th><th>점수</th></tr>
<tr><td rowspan="2">농가의
친환경농업
관심도 평가
(30)</td><td>친환경농업 실천
참여도 평가
(15)</td><td>○ 마을 전체농가 대비 친환경농산물
인증 농가 비율
<table><tr><td>구분</td><td>75%
이상</td><td>50%
이상</td><td>25%
이상</td><td>10%
이상</td><td>10%
미만</td></tr><tr><td>평점</td><td>15</td><td>12</td><td>9</td><td>6</td><td>3</td></tr></table></td><td></td></tr>
<tr><td>유기농업 실천
참여도 평가
(15)</td><td>○ 마을 전체농가 대비 유기농산물 인증
농가 비율
<table><tr><td>구분</td><td>75%
이상</td><td>50%
이상</td><td>25%
이상</td><td>10%
이상</td><td>10%
미만</td></tr><tr><td>평점</td><td>15</td><td>12</td><td>9</td><td>6</td><td>3</td></tr></table></td><td></td></tr>
<tr><td rowspan="3">친환경농업
실천 평가
(50)</td><td>친환경농산물
인증면적 평가
(20)</td><td>○ 친환경농산물 인증면적
<table><tr><td>구분</td><td>100ha
이상</td><td>70ha
이상</td><td>50ha
이상</td><td>30ha
이상</td><td>10ha
이상</td></tr><tr><td>평점</td><td>20</td><td>16</td><td>12</td><td>8</td><td>4</td></tr></table></td><td></td></tr>
<tr><td>유기농산물
인증면적 평가
(20)</td><td>○ 친환경농산물 인증면적 중 유기농산물
인증면적 비율
<table><tr><td>구분</td><td>80%
이상</td><td>70%
이상</td><td>60%
이상</td><td>50%
이상</td><td>30%
이상</td></tr><tr><td>평점</td><td>20</td><td>16</td><td>6</td><td>4</td><td>5</td></tr></table></td><td></td></tr>
<tr><td>인증품목 다양화
(10)</td><td>○ 마을 전체 친환경농산물 인증품목 수
- 친환경인증 품목당 1점, 최대 10점</td><td></td></tr>
<tr><td rowspan="3">마을환경 및
친환경농업
기반현황
(20)</td><td>환경 친화적인
마을평가
(10)</td><td>○ 친환경농업과 연계가능한 문화재, 관광
시설, 전통한옥(초가 포함) 현황
<table><tr><td>구분</td><td>10채 이상</td><td>5채 이상</td><td>5채 미만</td></tr><tr><td>평점</td><td>10</td><td>8</td><td>6</td></tr></table></td><td></td></tr>
<tr><td>공동이용시설
평가
(5)</td><td>○ 친환경농업 공동작업장, 유기농 식당,
저온창고, 판매장 등 공동 이용시설
- 개소당 1점, 최대 5점</td><td></td></tr>
<tr><td>전통문화 계승
(5)</td><td>○ 두레, 계 등 공동체 조직 및 행사 추진
- 건당 1점, 최대 5점</td><td></td></tr>
<tr><td>총점</td><td>100점</td><td></td><td></td></tr>
</table>

[붙임 4-1]

유기농 생태마을 1차 서류 평가표(과수, 채소)

□ 마 을 명 : 시군 읍면 리 마을

<table>
<tr><th>항목</th><th>평가내용</th><th>평가 기준</th><th>점수</th></tr>
<tr><td rowspan="2">농가의
친환경농업
관심도 평가
(30)</td><td>친환경농업 실천
참여도 평가
(15)</td><td>○ 마을 전체농가 대비 친환경농산물
인증 농가 비율
<table><tr><td>구분</td><td>75%
이상</td><td>50%
이상</td><td>25%
이상</td><td>10%
이상</td><td>10%
미만</td></tr><tr><td>평점</td><td>15</td><td>12</td><td>9</td><td>6</td><td>3</td></tr></table></td><td></td></tr>
<tr><td>유기농업 실천
참여도 평가
(15)</td><td>○ 마을 전체농가 대비 유기농산물 인증
농가 비율
<table><tr><td>구분</td><td>75%
이상</td><td>50%
이상</td><td>25%
이상</td><td>10%
이상</td><td>10%
미만</td></tr><tr><td>평점</td><td>15</td><td>12</td><td>9</td><td>6</td><td>3</td></tr></table></td><td></td></tr>
<tr><td rowspan="2">친환경농업
실천 평가
(50)</td><td>친환경농산물
인증면적 평가
(20)</td><td>○ 친환경농산물 인증면적
<table><tr><td>구분</td><td>20ha
이상</td><td>10ha
이상</td><td>5ha
이상</td><td>2ha
이상</td><td>1ha
이상</td></tr><tr><td>평점</td><td>20</td><td>16</td><td>12</td><td>8</td><td>4</td></tr></table></td><td></td></tr>
<tr><td>유기농산물
인증면적 평가
(30)</td><td>○ 친환경농산물 인증면적 중 유기농산물
인증면적 비율
<table><tr><td>구분</td><td>70%
이상</td><td>60%
이상</td><td>50%
이상</td><td>40%
이상</td><td>30%
이상</td></tr><tr><td>평점</td><td>30</td><td>24</td><td>18</td><td>12</td><td>6</td></tr></table></td><td></td></tr>
<tr><td rowspan="3">마을환경 및
친환경농업
기반현황
(20)</td><td>환경 친화적인
마을평가
(10)</td><td>○ 친환경농업과 연계가능한 문화재, 관광
시설, 전통한옥(초가 포함) 현황
<table><tr><td>구분</td><td>10채 이상</td><td>5채 이상</td><td>5채 미만</td></tr><tr><td>평점</td><td>10</td><td>8</td><td>6</td></tr></table></td><td></td></tr>
<tr><td>공동이용시설
평가
(5)</td><td>○ 친환경농업 공동작업장, 유기농 식당,
저온창고, 판매장 등 공동 이용시설
- 개소당 1점, 최대 5점</td><td></td></tr>
<tr><td>전통문화 계승
(5)</td><td>○ 두레, 계 등 공동체 조직 및 행사 추진
- 건당 1점, 최대 5점</td><td></td></tr>
<tr><td>총점</td><td>100점</td><td></td><td></td></tr>
</table>

유기농 생태마을 2차 현지 종합평가

1. 평가방법

○ 유기농마을 후보지 추천표(붙임 2), 1차 서류 평가표(붙임 4)상의 항목을 참고하여 심사위원별 종합적인 평가 실시

*** 2차 현지 종합평가표(첨부) 작성, 서명 또는 날인**

○ 평가 진행순서

① 마을이장 또는 단지대표의 현황 설명을 청취한 후 위원별 평가항목 현장 확인 및 질의

② 다른 위원 질의에 대한 보충 질의

③ 전체 심사위원 종합 토의 후 위원별 평가표 작성

2. 중점 평가항목

○ 이장 또는 단지대표 및 주민들의 친환경농업에 대한 열의와 향후 유기농업 실천 계획

○ 주요작목별 재배여건 및 친환경농법 등 재배방법

○ 인증단계별 현황, 사계절 복합영농 등 마을주민 영농상황

○ 친환경 인증 작목별 단위면적당 소득 및 호당 평균 소득

○ 마을주변이나 논, 밭 등의 유기합성 제초제 사용 여부

○ 주택, 교육장, 판매장 등 공동이용시설의 환경 친화적인지 여부

○ 공원, 정자, 하천, 둠벙, 도로, 가로수 등 마을 생태환경 및 친환경농업 체험시설, 유기농식당·판매장 등 운영 상황

○ 친환경농산물 공동브랜드, 선별·판매량, 배송 방법 등

[붙임 5]

유기농 생태마을 2차 현지 종합평가표

항목	평가내용	평가 기준	점수
마을 운영 현황 (25점)	마을환경의 생태적 가치 (10점)	○ 마을주위의 숲, 하천, 습지, 동식물 서식지, 철새도래지 등의 친환경농업을 통한 생태적 가치(1~5) ○ 기존 지형을 훼손하지 않는 환경친화적 마을(1~5)	
	환경친화적 마을 운영실적 (15점)	○ 돌담, 흙벽 등 친환경적 자재사용 건축물 시공(1~5) ○ 도시민 친환경현장체험 가능여부(1~5) ○ 마을의 영농폐기물처리방법, 재활용시설 설치 등 오염물질적정처리 여부(1~5)	
친환경 농업 추진 현황 (50점)	친환경 농업추진 (50점)	○ 마을인근 관행농법(제초제 등) 추진현황(1~10) ○ 우렁이, 미생물 등 친환경 농법 사용(1~10) ○ 마을 주민의 공동체 의식 및 친환경농업 실천의지(1~10) - 유기인증 상향 및 확대계획 등 ○ 친환경농업을 통한 농가소득의 적정성(1~10) ○ 친환경인증 필지의 집단화 여부(1~10)	
주민활동 및 생태환경 (20점)	주민활동 (15점)	○ 친환경농업 관련 주민협의체 구성 및 운영 여부(0, 5) ○ 친환경농산물 공동생산.판매 등 주민 공동체 활동 여부(1~10)	
	생태환경 (5점)	○ 산, 강, 공원, 저수지 등과 연계된 마을 생태환경(1~5)	
발전가능성(5점)		○ 우수 유기농생태마을로의 발전가능성(1~5)	
총점 (100점)		○ 평가자 의견)	

20 . . .

평가위원 : (인)

22 친환경 과수·채소 전문단지 조성 지원

1. 사업개요

가. 목 적

○ 소비자 수요는 다양하나 친환경 재배가 어려운 과수·채소 품목 생산기반 확대를 통한 안정적 공급으로 판로 확대 및 인증품목 다양화

○ 친환경 과수· 채소 생산 집적화, 시설·가공·유통 현대화를 통한 품질 개선 및 생산성 향상으로 농가소득 향상 기여

나. 지원근거

○ 「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친환경 농수산물 등의 생산·유통·수출 지원)

다. 사업계획

(단위 : 천원)

사 업 명	사 업 량	총사업비			
		계(100%)	도비(21%)	시군비(49%)	자부담(30%)
친환경 과수·채소 전문단지 조성사업	6개 내외	3,000,000	630,000	1,470,000	900,000

※ 개소 당 사업비 : 500,000천원 한도(도비 105,000 시군비 245,000 자부담 150,000)

2. 사업시행 주요내용

가. 사업시행기관 : 시장·군수

나. 사업추진 기간 : 2022. 1. ~ 12.

다. 사업내용

○ 전문단지 : 친환경 과수·채소의 인증면적 확대 및 단지집단화를 위한 생산·유통 시설·장비 등 지원

- 생산 시설·장비 : 생산시설(하우스), 공동 방제장비, 미생물배양시설, 관배수장비 등
- 유통 시설·장비 : 저온저장시설, 집하장, 선별기, 포장기 등

※ 생산시설(온실)은 원예특작시설 내재해형 기준(농식품부 고시 제2019-44호)에 따름

○ 육 묘 장 : 친환경 과채류 전문육묘시설 구축에 필요한 육묘생산 시설·장비 지원

- 시설분야 : 생산시설(하우스), 병해충 차단시설, 시설분리, 발아실, 활착·접목실, 관수시설 등
- 장비분야 : 친환경 육묘전용 포장기, 자동육묘기, 환경조절 장치 등

※ 친환경 과채류 전문육묘시설은 육묘장 주변 영농현황 및 친환경육묘를 위해 필요한 시설·장비를 종합하여 평가 후 지원내역 확정

* 육묘장 지원은 지역별 친환경육묘 수요, 공급 등을 감안 지원대상을 제한할 수 있음

< 지원제외 대상 >

▶ 기반조성 : 부지매입비, 임차료, 인허가 비용, 진입로 및 농로 확포장 등

▶ 농 기 계 : 농기계와 차량구입비. 단, 사업계획과 사업규모를 감안하여 사업목표 달성에 필요한 경우는 지원 가능

▶ 농 자 재 : 개별농가단위의 생산재 구입비(비료, 미생물제제, 종자 등 농업용 자재)

▶ 홍 보 비 : 생산물의 포장재, 포장디자인, 홍보·마케팅 비용

▶ 기타사항 : 설계비, 인건비 등 단순 사업운영비, 컨설팅, 차량구입비, 농업인 교육비용 등

라. 신청자격

○ 전문단지 : 친환경농경지 1ha이상을 경작하고, 친환경 과수·채소를 생산하고 있거나 생산계획이 있는 농업인, 생산자단체(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등)

○ 육 묘 장 : 채소분야 육묘업을 등록하고, 최근 육묘생산실적이 3년 이상인 법인

- 채소분야 육묘생산실적 증빙은 생산 및 판매대장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시군에서 확인
- 친환경 또는 일반육묘의 생산실적이 있는 법인 포함

○ 사업대상자 선정 우대조건

- 사업신청 대표품목의 친환경인증 실적 및 확대계획이 우수한 농업인·생산자 단체
- 사업주체가 직접 친환경농산물을 생산·유통·판매하거나, 계약재배, 계통판매 등을 통한 공동출하 등 판매실적 및 계획이 충실한 농업인·생산자 단체
- 친환경 과수·채소 생산을 위해 논에 타작물을 재배(쌀 생산 조정제)를 실천하는 경우
- 친환경생산단지의 집단화·집적화가 우수한 농업인·생산자 단체
- 사업 참여농가 전체가 친환경농산물의무자조금을 납부한 농업인·생산자단체
- 호남권 친환경농산물 종합물류센터와 계약재배 및 출하약정을 맺거나 호남권 물류센터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이수한 농업인·생산자 단체

<대상자 추천 시 유의사항>

- 사업신청 가능 작물의 범위 : 농업통계조사 규칙 별표 작물의 분류 중 과수, 채소 및 이와 상응하는 작물전체

- 생산자단체의 범위 :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9-8호(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생산자단체 범위),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제9항 및 별표6의 기준에 적합한 법인
- 시군은 사업신청자의 최근 5년간 지원받은 자금 내역을 확인·제출하여 중복·편중 방지(서식 1-2, 서식 2-2)

마. 추진과정 및 체계

○ 사업추진 체계

도	사업지침 수립 시달, 사업대상자 선정, 보조금 교부, 사업계획 승인 등
⇑⇓	
시 · 군	적격자 추천, 사업계획 수립 및 승인요청, 추진상황 확인·점검, 사업비 집행 및 정산, 사후관리 등
⇑⇓	
사업추진주체 (생산자단체 등)	세부 추진계획 수립, 사업시행, 사업비 정산 등

○ 사업희망자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 제출(사업대상자→시군)

○ 사업계획서 검토 후 적격자 도에 추천(시군→도)

* 시군에서는 사업신청자 지원요건 확인서 작성 제출(서식 1-8, 서식 2-6)

* * 사업 대상부지에 대한 관련법 검토의견서 제출(서식 1-9, 서식 2-7)

○ 1차 서류심사, 2차 현지 확인 및 전문가 평가를 거쳐 지원대상자 최종 결정(도)

※ 사업적격자가 많지 않을 경우 전문가 평가를 도 자체 평가로 대체

○ 사업시행 및 사업비 정산, 성과분석(시군)

- 사업 착수 전 세부사업 계획서를 작성하여 도 승인을 득한 후 착공하고, 사업 승인 후 사업계획 변경 필요시 그 사유를 검토하여 시·군 자체승인 후 도에 통보 또는 도에 변경승인 요청

▶ 도 승인사항 : 사업예정지 변경, 보조사업자 변경, 총 사업비의 30% 이상 증감이 필요한 경우 등 중대한 변경사항(시군 검토의견서를 첨부 승인 신청)

▶ 시군 승인사항: 사업내역 중 일부 사업 제외, 부가가치세 환급(예상)금액, 집행잔액 등을 사업 재투자하고자 할 경우 등 경미한 변경사항(시군 자체 승인하고 승인 내역을 10일 이내 도에 제출)

바. 설계 및 시공업체 선정

○ 시장·군수는 민간보조사업자가 2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 및 용역구매 계약을 체결하거나 2억원을 초과하는 시설공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 ② 조달청장에게 위탁 ③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탁하여 계약 체결을 하도록 한다.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등 관련 법령에 따라 추진

○ 건축·건설 관계 법령상 유자격업체가 작성한 설계서 이용

- 단, 자체 설계서를 이용할 경우 공사착수 전에 시·군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시공업체의 자격

- 건축 및 토목의 경우 전문건설업 면허 보유업체(단, 부득이한 경우 일반면허 보유자 참여 허용)로서 하자 보수와 A/S보장이 확실한 업체
- 전기, 통신, 소방 등은 시설별로 각각의 관계법에 의한 면허 보유업체
- 저온저장고, 예냉시설의 경우 공조냉동기계 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보유업체

사. 준공검사 및 등기 등

○ 시장·군수는 사업자로부터 준공검사 신청이 있는 경우 시설물들이 설계도에 준하여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 확인 후 검사 실시

○ 시·군은 설계 및 시공업체 선정부터 준공 시까지 지도·감독을 하여야 함

- 지원시설물은 부기등기 여부와 토지 또는 건물대장 등재여부 확인

  * 시설·장비 등 자산취득성 사업 등의 사유화 방지 지도·점검 철저

5. 사업비 집행 및 사후관리

가. 사업비 집행 및 정산

○ 사업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꼭 필요한 세부사업을 대상으로 사업비 적정 배분

- 사업예산은 시군 재정 형편에 따라 시군비를 추가로 편성하여 지원할 수 있다.

○ 기준 규격 이상 시설·장비 구입 등은 이면계약 방지를 위해 시·군 자체 지침을 마련하여 투명성 확보

- 시공·공급업체 선정, 계약 체결 및 사업자 자부담 포함 사업예산 집행(사업예산 절감 및 시설, 장비의 사유화 방지)

○ 자부담 집행 및 정산자료 검증 강화

- 자부담은「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53조의2에 따라 집행토록 조치
- 사업 정산 시 사업자등록증소지자 자필서명 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 통장사본 등 금융기관 거래자료 등 증빙자료 검증 이행

○ 사업비 검정 및 정산은 시장·군수 책임 하에 실시하고「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련법령과 규정 준수

나. 사후관리

○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의 관리기간 등에 대해서는 농림사업에서 정하고 있는 기간 및 기준을 적용하여 사후 지도관리 철저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하여는 보조금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등 재산처분의 제한조치

- 중요재산 중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등기를 할 때에는 부기등기 의무화

○ 시설·장비 등은 효율적 관리를 위한 책임자 지정 및 수시 확인·점검(관리·운영실태, 등기부 열람 등)

○ 보조금을 부당 집행한 경우에는 보조금 회수 및 부당사용 금액에 따라 일정기간 사업자금 지원 제한

○ 세부사업별 사업의 건축물, 공작물 등 시설·장비는 보조지원 사업임을 알 수 있는 안내판 설치

- 위치 : 시설물 주출입구 정면(눈에 잘 띄는 곳)
- 크기 : (가로) 90cm × (세로) 60cm

이 사업(시설)은 ○○○○년에 전라남도부터 보조금 등의 재정지원을 받아 운영하는(설치한) 것으로 사후관리기관인 ○○○○년 ○○월 ○○일까지는 보조금 지원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의 제공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 사 업 명 :
2. 사 업 자 :
3. 시설규모 :
4. 재　　원 :
5. 사 업 비 :
6. 사업기간 :

○○○○년　　월　　일

○ 시설·장비 등에 대해서는 사업 목적에 따라 친환경농산물만을 취급하여야 하며, 농산물 취급확약서를 관리자(시·군)에 제출

- 시설·장비 등 일반 농산물과 혼용 사용 시 보조금 회수 조치

친환경농산물 취급 확약서

○ 사 업 명 : 0000년 친환경 과수·채소 전문단지 조성사업
○ 단 체 명 : (대표자 성명 :)
○ 사업장위치 :
○ 연 락 처 :
○ 지원내역

사업내용	사업규모(㎡)	사업 완공일	사업비(백만원)			
			계	국비	시군비	자부담

본인은 친환경농산물 생산·가공·유통시설 설치를 위해 00년에 보조금 지원받았으며, **사업의 목적대로 친환경농산물만을 취급**하고 「농림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라 사후관리 기간 동안 성실히 보조의무자의 역할을 다할 것을 확약합니다.

0000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

○○ 시장·군수 귀하

6. 행정사항

○ 사업 추진상황 및 집행실적 점검(분기) : 연4회

- 3월, 9월(현장점검) / 6월, 12월(서면점검)

보조 사업자	사업내용	사업비 (천원)	추진상황		집행액 (천원)	향후계획	비고
			내용(설계, 인허가 등)	공정율			

○ 기 지원 보조사업자 대상 사업 운영실적 : 2022. 3. 31.까지

○ 부동산 등 중요재산 관리실태 조사 : 연1회(7월중)

○ 사업완료 및 정산보고 : 2023. 1. 31.까지

[사업 신청서– 공통]

친환경 과수·채소 전문단지 조성사업 신청서

<table>
<tr><td rowspan="5">신청자</td><td>단체명</td><td colspan="2"></td><td>법인등록번호</td><td colspan="3"></td></tr>
<tr><td>성 명
(대표자명)</td><td colspan="2"></td><td>농업경영체
등록번호</td><td></td><td>생년월일</td><td></td></tr>
<tr><td>주 소</td><td colspan="4"></td><td>전화번호</td><td colspan="2"></td></tr>
<tr><td>영농(림)
종사경력</td><td>년</td><td>영농교육</td><td colspan="5">분야, 월 주</td></tr>
<tr><td>생산자단체
등의 형태</td><td colspan="3">협동조합, 농업법인, 기타</td><td colspan="2">참여농가수</td><td colspan="2">호</td></tr>
<tr><td rowspan="5">신청내용</td><td>사 업 명</td><td colspan="7"></td></tr>
<tr><td rowspan="3">사업예정지
(동·리 번지까지
기재)</td><td colspan="3" rowspan="3"></td><td colspan="4">농지이용계획</td></tr>
<tr><td colspan="3">농업진흥지역 안</td><td colspan="2">지구</td></tr>
<tr><td colspan="3">농업진흥지역 밖</td><td colspan="2">지구</td></tr>
<tr><td rowspan="2">사 업 비
(천 원)</td><td rowspan="2">계</td><td colspan="3">정부지원(재원명 기재)</td><td rowspan="2">자부담</td><td rowspan="2">기타</td></tr>
<tr><td>도비</td><td>시군비</td><td>융 자</td></tr>
<tr><td>사업내용별
규모(량)</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able>

위와 같이 「0000**년도 친환경 과수·채소 전문단지 조성사업**」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상기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 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상기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 ○ (시장·군수·자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경영실태, 사업관련 증빙자료 각 1부

[서식 1-1]

친환경 과수·채소 전문단지 사업계획서

□ 일반현황

○ 신 청 자 : 00영농조합(대표 ☎)

○ 위 치 :

○ 설립연도 :

○ 조직원수 : 명(인증농가수 : 명)

○ 품목 및 면적 :

- 품목별, 인증단계별 면적 :

○ 생 산 량 : 톤

○ 년간 매출액 : 백만원

○ 주 판매처 등 유통현황 :

□ 사업개요

○ 사업목적 및 필요성 등

○ 사업계획

- 사 업 비 : 백만원(도비 , 시군비 , 자담)
- 사업예정지

토지소재지	지번	면적(㎡)	지목	비 고(소유자)

○ 세부사업내역

세부사업내역	사업량	단가 (천원)	소 요 사 업 비(백만원)			
			계	도 비	시군비	자 담
계						
집하장	000㎡/1동					
포장기기	0대					

○ 운영관리계획

- 세부사업 내역의 세부사업별 사용계획, 필요성 등 작성

○ 공정별 추진일정

세부공정별	1~2월	3~4월	5~6월	7~8월	9~10월	11~12월

□ 추진계획

○ 친환경인증면적 확대계획(향후 3년 이상)

- 주요 품목위주로 친환경농산물 인증 확대 및 인증단계 상향계획을 작성

○ 친환경농업단지 운영계획(생산·유통·기술교육 등)

○ 친환경농산물 판매 및 출하방법

○ 장기적 도달 목표 및 비전

예) 향후 일자리 및 부가가치 창출 등

< 발전지표 예시> - 가능한 항목만 지표설정

발전 지표	연차별 성과			비 고
	2022년	2023년	2024년	
1. 개인·법인(단체) 생산·매출액(백만원)				
2. 참여농가 소득증가(백만원)				
3. 일자리 창출(명)				
4. 수출(백만원)				

□ 기대효과

○

○

○

※ 관련서류 첨부

○ 사업신청자 제출서류

- 친환경 과수채소 전문단지 조성사업 신청서 1부.
- 사업계획서(서식 1-1) 1부.
- 최근 5년간 정부(지자체 포함) 지원사업 현황(서식 1-2) 1부.
- 조직체 내 농가 영농현황 (서식 1-3) 1부.
- 사업 참여농가 동의서 (서식 1-4) 1부.
- 부지사용승인서 (서식 1-5) 1부.

○ 시군 제출서류

- 사업계획 검토의견서 (서식 1-6) 1부.
- 사업신청자 평가표(서식 1-7) 1부.
- 농업법인 신청사업자 지원 자격요건 점검확인서 (서식 1-8) 1부.
- 공모사업 신청에 따른 관련법 검토의견서 (서식 1-9) 1부.

[서식 1-2]

최근 5년간 정부(지자체포함) 지원사업 현황

사업명	사업년도	사업내용 (시설·장비명)	투 자 금 액 (백만원)					소 유· 수혜자
			계	국 고	융 자	지방비	자부담	

○ 작성자(담당공무원) :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서식 1-3]

조직체 내 농가 영농현황

농가명(세) (H · P)	지 번	경작 규모	친 환 경 인증현황	작목입식현황	판매방식
홍길동(○○세) (010-111-1234)	○○리 ○○ *지 번 별* *작 성*	ha	※없음, 유기, 무 농 약 으 로 구분 기재	※재배 품목 기재 (벼, 사과 등)	※직거래, 도매시장, 인터넷 등
총 계					
유 기					
무농약					
관 행					

[서식 1-4]

사업 참여농가 동의서

○ 조 직 명 :

○ 소 재 지 :

○ 경지면적 : ha

○ 사업대표자 : 외 명

○ 주요시설·장비설치계획

○ 내 용

(사업계획서와 인증면적 확대를 위한 사업참여에 동의한다는 내용을 명시)

년 월 일

사업자(대표자)	주소 :	성명 :	인 (서명 또는 날인)
사업참여자	주소 :	성명 :	인 (서명 또는 날인)
사업참여자	주소 :	성명 :	인 (서명 또는 날인)
사업참여자	주소 :	성명 :	인 (서명 또는 날인)
사업참여자	주소 :	성명 :	인 (서명 또는 날인)
사업참여자	주소 :	성명 :	인 (서명 또는 날인)
사업참여자	주소 :	성명 :	인 (서명 또는 날인)

※ 대표자는 사업목적 및 계획을 충분히 설명하고 농가의 동의를 받아 연명 기재

[서식 1-5]

부지사용 승인서

○ 사용승인 기간 :

○ 사용승인 내역

토지소재지	지번	면적(㎡)	지목	용도구역	소유자	비고

상기 토지 소유자로서 「친환경 과수·채소 전문단지·육묘장 조성 지원사업」의 ○○○ 시설·장비 부지사용을 승인합니다.

○ 주　　소 :

○ 생년월일 :

○ 승낙자(토지소유자) :　　(인)

* 인감증명서 및 토지소유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첨부

년　　월　　일

○ ○ 시장·군 수　귀하

[서식 1-6]

사업계획 검토의견서

1. 사업개요

○ 조 직 명 :

○ 소 재 지 :

○ 경지면적 :

○ 대표농가 : (참여농가 : 호)

○ 투자계획 :

2. 검토의견

* 사업자 영농현황 및 본 사업을 통해 사업자에게 기대되는 파급효과 등을 작성

년 월 일

시장·군수 직인

[서식 1-7]

사업신청자 평가표

□ 생산자단체명 :

평가요소	평가항목	등 급 심 사 기 준	점수
1. 지역농업 여건 및 사업참여 상황 등 (25)	1-1. 사업장 부지확보 여부(10)	○ 사업신청자(법인은 법인명의) 소유 부지확보 : 10 ○ 부지사용 승인 : 5 ○ 부지 미확보 : 0	
	1-2. 농경지 면적(5)	○ 5ha이상 : 5, 3ha이상 : 3, 1ha이상 : 1	
	1-3. 친환경인증비율(5)	○ 50%이상 : 5, 30%이상 : 3, 10%이상 : 1 * 참여 농가의 경작농지에 대한 친환경 인증 면적비율(증빙 자료 첨부)	
	1-4. 사업참여 농경지 집단화 정도(5)	○ 70%이상 집단화 : 5 ○ 50%이상 집단화 : 3 ○ 50%미만 : 1	
2. 사업계획 수립의 적정성 (30)	2-1. 사업목표의 명확성(5)	○ 배점 : 5 (우수 5~미흡 1) * 농업 경영규모 등 대비 사업목표가 명확한가?(관련 자료 첨부)	
	2-2. 사업계획 적정성(5)	○ 배점 : 5 (우수 5~미흡 1) * 사업목표 달성을 위한 세부사업 적정성	
	2-3. 자부담 확보계획(10)	○ 확보 : 10, 확보계획 수립 : 5, 미수립 : 0 * 신청자 또는 신청법인 잔액증명서 확인 등	
	2-4. 시설장비 투자 및 운영관리 적정성(5)	○ 배점 : 5~1 (우수 5~미흡 1) * 시설·장비 확보 및 활용 방안 계획은 적정한가?	
	2-5. 인증확대계획(5)	○ 배점 : 5 (우수 5~미흡 1)	
3. 사업 수행 능력의 적정성 (25)	3-1. 조직과 인력구성의 적정성(5)	○ 배점 : 5 (적정 5~미흡 1) * 참여자(농가)간 생산유통가공 연계가 가능하도록 역할분담 등이 잘 갖춰져 있는가?	
	3-2. 참여자(농업인) 교육실적(10)	○ 년 5회 이상 : 10, 년 3회 이상 : 5, 년 2회 이하 : 1 * 공모일로 부터 1년간 실적 인정	
	3-3. 추진전략의 적정성(5)	○ 배점 : 5 (적정 5~미흡 1) * 규모화, 기계화 등 생산비 절감을 위한 실적 또는 계획이 있는가?	
	3-4. 추진의지 정도(5)	○ 배점 : 5 (우수 5~미흡 1) * 대표자의 친환경농업 관련 활동 실적 및 계획이 있는가?	
4. 생산. 유통 계획의 적정성 (20)	4-1. 친환경 농산물 생산계획 적정성(5)	○ 배점 : 5 (우수 5~미흡 1) * 친환경농산물 생산계획(인증면적 확대 등) 구체적이며 적정한가?	
	4-2. 친환경농산물 판매 계획(5)	○ 배점 : 5 (우수 5~미흡 1) * 법인(브랜드) 명칭으로 유통업체와 직거래, 판촉활동 등 구체적인 판매실적 및 계획수립 여부?	
	4-3. 출하형태(5)	○ 배점 : 5 (우수 5~미흡 1) * 공동 마케팅을 위한 자체규약 유무 및 공동출하공동계산 실적 또는 계획 수립여부?(증빙 자료 첨부)	
	4-4. 성공 가능성(5)	○ 배점 : 5 (우수 5~미흡 1) *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차별화된 전략 및 으로 성공(발전)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가?	
5. 가점 (10)		○ 건당 3점(총 10점 한도) * 논 타작물, 친환경의무자조금, 호남권물류센터 연계, 자격증 등	
합 계			

작성자(담당공무원) :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검토자(담 당 팀 장) :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확인자(담 당 과 장) :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서식 1-8]

농업법인 신청 사업자 지원요건 점검 확인서

☐ 신청시군 :

☐ 신 청 자 :

항 목	내 용	예	아니요
법인요건 (영농조합법인)	총 출자금이 1억원 이상 여부		
	자본금이 자부담 이상 확보 여부		
	설립 후 운영 실적이 1년 이상 여부 (최근 1개년 결산재무제표 유무)		
	조합원 5명 이상 농업인 여부		
사업부지	담보 및 지상권 설정 등 재산권 제한 여부		
	법인명의 소유권 등기 여부		
	사업관련 각종 인.허가 가능 여부(지목 : 00)		
사업계획서	계획서와 현장이 부합하는지 여부		
구비서류	사업신청서 구비서류가 갖추어져 있는지 여부		
지원제한 기준	사업신청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청철회 또는 포기한 적이 있는지 여부		
	보조금 부당사용, 미승인 양도.교환.담보제공 등을 한 적이 있는지 여부		

※ 법인등기부, 통장사본, 재무재표, 토지등기부 등 관련 증빙자료 첨부

위와 같이 점검한 결과 지원요건에 충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 작성자(담당공무원) :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 검토자(담 당 팀 장) :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 확인자(담 당 과 장) :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서식 1-9]

공모사업 신청에 따른 관련법 검토의견서

□ **적　　요** : 친환경 과수·채소 전문단지 조성 공모사업 신청에 따른 관련법 검토

□ **목　　적** : 사업계획서 검토 및 가능여부 판단

□ **협의요청부서(기관)** :

□ **사업시행자** :

□ **신 청 내 역**

(단위 : ㎡)

위　치	지 목	지　적	전용면적	전용목적	용도지역	비　고

□ **관련법규 검토(협의)**

대상법규	검토(협의)의견	검토결과 (가·부)	검토자		비 고
			직	성명	
건축법					
농지법					
산지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환경관련법					
도로법					
기타 관련법					

붙임 : 관련부서 사전 협의 회신 공문

[서식 2-1]

친환경육묘장 사업계획서

□ 일반현황

○ 단 체 명 : 00영농조합(대표 ☎)

○ 위 치 :

○ 면 적 :

○ 설립연도 :

○ 종사인원 : 명(정규직 : 명, 기간제 : 명) ※ 신청일 기준

○ 육묘관련자격 보유현황 : 개

- 내 역 :

○ 품목 및 면적 :

- 주요 생산품목 :

○ 생 산 량 : 주

- 일 반 :
- 친 환 경 :

○ 년간 매출액 : 백만원

○ 주요 시설·장비 :

- 육묘장 형태 : 비닐온실, 유리온실, P.C온실

□ 사업개요

○ 사업목적 및 필요성 등

○ 사업계획

- 사 업 비 : 백만원(도비 , 시군비 , 자담)
- 사업예정지

토지소재지	지번	면적(㎡)	지목	비 고(소유자)

○ 세부사업내역

세부사업내역	사업량	단가 (천원)	소 요 사 업 비(백만원)			
			계	도 비	시군비	자 담
계						
육묘생산시설	000㎡/1동					
포장기기	0대					

○ 운영관리계획

- 세부사업별 사용계획, 필요성 등 작성

○ 공정별 추진일정

세부공정별	1~2월	3~4월	5~6월	7~8월	9~10월	11~12월

□ 추진계획

○ 친환경육묘 생산계획

- 종자확보, 육묘방법, 친환경농자재 사용계획, 일반육묘와 구분생산 방법 등
- 육묘로 인한 민원발생 시 조치계획, 농가피해 최소화 대책 등

○ 친환경육묘 홍보·판매계획

- 주요 생산 작목별 친환경육묘 판매 예상가격 등

○ 장기적 도달 목표 및 비전

예) 향후 일자리 및 부가가치를 창출 등

<발전지표 예시> - 친환경육묘와 관련한 사항으로 지표작성

발전 지표	연차별 성과			비 고
	2022년	2023년	2024년	
1. 법인(단체) 생산량(주)				
2. 참여농가 소득증가(백만원)				
3. 매출액(백만원)				

□ 기대효과

○

○

※ 관련서류 첨부

○ 사업신청자 제출서류

- 친환경 과수채소 전문단지 조성사업 신청서 1부.
- 사업계획서(서식 2-1) 1부.
- 최근 5년간 정부(지자체 포함) 지원사업 현황(서식 2-2) 1부.
- 최근 3년간 과채류 육묘 생산실적 현황(서식 2-3) 1부.
- 부지사용승인서 (서식 2-4) 1부.

○ 시군 제출서류

- 사업계획 검토의견서(서식 2-5) 1부.
- 사업신청자 평가표(서식 2-6) 1부.
- 농업법인 신청사업자 지원 자격요건 점검확인서(서식 2-7) 1부.
- 공모사업 신청에 따른 관련법 검토의견서(서식 2-8) 1부.

[서식 2-2]

최근 5년간 정부(지자체포함) 지원사업 현황

사업명	사업년도	사업내용 (시설·장비명)	투 자 금 액 (백만원)					소 유· 수혜자
			계	국 고	융 자	지방비	자부담	

○ 작성자(담당공무원) :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서식 2-3]

최근 3년간 과채류 육묘 생산실적 현황

생산년도	작 물 명	생산 및 판매현황		비 고
		생산량 (만주)	주요판매처	
총 계				
2022년	소 계			
2021년	소 계			
2020년	소 계			

※ 운영실적은 매출액 기준으로 작성하고, 육묘장의 생산대장 등과 대조

확인자(공무원) : 소속 직 성명 (인)

[서식 2-4]

부지사용 승인서

○ **사용승인 기간 :**

○ **사용승인 내역**

토지소재지	지번	면적(㎡)	지목	용도구역	소유자	비고

상기 토지 소유자로서 「친환경 과수·채소류 전문단지 조성(전문육묘)사업」의 ○○○ 시설·장비 부지사용을 승인합니다.

주 소 :

주민번호 :

승낙자(토지소유자) : (인) * 인감증명서 첨부

년 월 일

○ ○ 시장·군 수 귀하

[서식 2-5]

사업계획 검토의견서

1. 사업개요

○ 조 직 명 :

○ 소 재 지 :

○ 경지면적 :

○ 법인명칭 :

○ 투자계획 :

2. 검토의견

* 사업자 운영현황 및 향후계획을 통해 사업자에게 기대되는 파급효과 등을 작성

년 월 일

시장·군수 직인

[서식 2-6]

친환경육묘장 사업신청자 평가표

□ 생산자단체명 :

구 분		평 가 항 목 및 배 점 기 준	배점	평점	비 고
신청기준	육묘업 등록	「종자산업법」에 따른 육묘업 등록여부	여/부		육묘업 등록증
	육묘장 운영실적	최근 1년간 과채류분야 육묘공급업체	여/부		운영실적 증빙서
	친환경육묘	친환경육묘를 위한 시설차폐 가능 여부	여/부		시군 현장실사
시설·장비·인력	종사인원 (신청일기준)	① 21인 이상	10		정규직 및 기간제포함
		② 11인 ~ 20인	7		
		③ 5인 ~ 10인	5		
	육묘관련자격 보유현황	① 2개이상	10		종자관리사 및 동등자격
		② 1개	5		
	친환경전용 가능 육묘동 시설면적	① 2,000㎡이상(10점) (200㎡ 당 1점씩, 최대 2,000㎡)	10		건축물 대장 확인
	친환경전용 접목활착실여부	① 별도시설 보유	10		시설현황점검
		② 별도시설 미보유	0		
	육묘장 소유형태	① 법인소유	10		증빙자료 제출
		② 임대토지 (토지사용승낙서 또는 임대차계약서 제출시)	5		
친환경육묘운영계획	친환경육묘 세부추진계획	- 종자확보 방법, 시설차폐 계획, 생산관리 방법 등(미흡 0 ~ 우수 10)	10		신청서 평 가
	시설구분 방법	① 별도의 친환경전용 육묘동 운영	10		
		② 기존 일반육묘동내 시설차폐 운영	5		
	작업동선 및 장비의 오염 안전성	① 작업동선 및 장비오염 방지를 위한 시설 안전성 평가 (평가방법 : 우려 0점 ~ 적정 10점)	10		
	육묘 생산가능 품목 수	① 육묘장 생산실적 점검 (불가품목 : 10개이상 0점 ~ 0개 10점)	10		도 친환경 채소 상위 20품목
	친환경육묘분야 전문성	- 친환경육묘 추진실적 및 육묘로 인한 농가 인증취소 판정시 대책(미흡 0 ~ 우수 10)	10		
점수 합계			100		

[서식 2-7]

농업법인 신청 사업자 지원요건 점검 확인서

□ 신청시군 :

□ 신 청 자 :

항 목	내 용	예	아니요
법인요건 (영농조합법인)	총 출자금이 1억원 이상 여부		
	자본금이 자부담 이상 확보 여부		
	설립 후 운영 실적이 1년 이상 여부 (최근 1개년 결산재무제표 유무)		
	조합원 5명 이상 농업인 여부		
사업부지	담보 및 지상권 설정 등 재산권 제한 여부		
	법인명의 소유권 등기 여부		
	사업관련 각종 인.허가 가능 여부(지목 : 00)		
사업계획서	계획서와 현장이 부합하는지 여부		
구비서류	사업신청서 구비서류가 갖추어져 있는지 여부		
지원제한 기준	사업신청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청철회 또는 포기한 적이 있는지 여부		
	보조금 부당사용, 미승인 양도.교환.담보제공 등을 한 적이 있는지 여부		

※ 법인등기부, 통장사본, 재무재표, 토지등기부 등 관련 증빙자료 첨부

위와 같이 점검한 결과 지원요건에 충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 작성자(담당공무원) :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 검토자(담당 팀장) :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 확인자(담당 과장) :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서식 2-8]

공모사업 신청에 따른 관련법 검토의견서

□ **적　　요** : 친환경 육묘장 조성 공모사업 신청에 따른 관련법 검토

□ **목　　적** : 사업계획서 검토 및 가능여부 판단

□ **협의요청부서(기관)** :

□ **사업시행자** :

□ **신 청 내 역**

(단위 : ㎡)

위　치	지 목	지　적	전용면적	전용목적	용도지역	비　고

□ **관련법규 검토(협의)**

대상법규	검토(협의)의견	검토결과 (가・부)	검토자		비 고
			직	성명	
건축법					
농지법					
산지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환경관련법					
도로법					
기타 관련법					

붙임 : 관련부서 사전 협의 회신 공문

23 친환경농산물 생산·유통 인프라 구축

1. 목 적

○ 친환경농산물 생산·가공·유통기반 구축으로 친환경농산물 유통시장 선점 및 다양한 품목의 친환경농산물 생산

○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거나 생산하려는 단체에 우선 지원하여 친환경농업 실천 농가의 소득 증대 기여

2. 지원근거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6조(성장촉진지역 등의 개발)

○ 「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친환경 농수산물 등의 생산·유통·수출 지원)

3. 사업계획

(단위 : 천원)

사 업 명	사 업 량	총사업비			
		계(100%)	도비(45%)	시군비(15%)	자부담(40%)
친환경농산물 생산·유통 인프라 구축	2개소	1,000,000	450,000	150,000	400,000

※ 개소 당 사업비 : 500,000천원(도비 225,000 시군비 75,000 자부담 200,000)

4. 사업추진

가. 사업시행기관 : 시장·군수

나. 사업추진 기간 : 2022. 1. ~ 12.

다. 사업내용

○ 친환경농산물 생산·가공·유통시설, 장비 등 지원(신축, 증·개축)

- 생산시설 : 육묘장, 미생물 발효시설, 유기퇴비 생산시설 등
- 가공시설 : 세척기, 전문도정시설(※ 벼 도정시설 외 지원 시 가점) 등
- 유통시설 : 저온저장고, 집하·선별·포장·예냉시설 등
- 교육·체험 시설 : 농업인 교육장, 소비자 체험장, 교육장 등

※ 모든 지원시설은 친환경농산물 생산·가공·유통과 연관되어야 함

◈ **사업 지원제외 대상**

○ (부지) 부지매입비, 부지 및 건물 임차비, 사업부지 기반조성비

○ (시설) 음식점 및 숙박시설 설치비

○ (장비) 일반 농기계 및 차량 등 다용도·범용 장비

○ (자재) 개별농가단위 생산관련 자재 구입비(비료, 미생물제재, 종자 등)

○ (운영) 인건비, 개별농가 홍보·마케팅 관련 비용

○ (기타) 설계비

라. 지원자격(기준)

○ 10ha 이상 친환경농산물(벼 이외 품목은 2ha 이상)을 생산·가공·유통하는 생산자단체

- 생산자단체의 친환경인증농가 전원이 친환경농산물의무자조금을 납부한 생산자 단체 (사업신청 당해 연도 친환경농산물의무자조금 납부 인정)

※ 생산자단체의 범위 : 농협, 산림조합, 농업법인 등(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9-8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생산자단체 범위)

<대상자 추천시 유의사항>

- 사업신청자의 최근 5년간 지원받은 자금 내역을 확인하여 중복·편중 방지
- 농업법인은 농업경영체 등록된 법인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농림축산식품부 훈령 제352호, 2020. 2. 27.)」 제35조제9항 및 별표6의 기준에 적합할 것

마. 추진과정 및 체계

○ 사업추진 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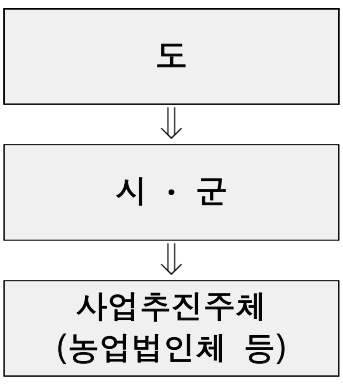

사업지침 수립 시달, 사업대상자 선정, 보조금 교부, 사업계획 승인, 추진상황 점검 등

적격자 추천(시·군당 1개소), 사업계획 수립 및 승인요청, 추진상황 확인, 사업비 집행 및 정산, 사후관리 등

세부 추진계획 수립, 사업시행, 사업비 정산 등

○ 사업희망자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 제출(사업대상자→시군)

○ 사업계획서 검토 후 적격자 도에 추천(시군→도)

- 생산자단체 여부(법인 요건 구비 등), 친환경의무자조금 납부실적, 사업부지(근저당, 압류 등 설정 여부) 및 자부담 확보, 중복·편중 여부 등 확인

○ 1차 서류심사, 2차 현지 및 전문가 평가를 거쳐 지원대상자 최종 결정(도)

※ 사업적격자가 많지 않을 경우 전문가 평가를 자체 평가로 대체

○ 사업시행 및 사업비 정산, 성과분석(시군)

바. 설계 및 시공업체 선정

○ 시장·군수는 민간보조사업자가 2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 및 용역구매 계약을 체결하거나 2억원을 초과하는 시설공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① 조달청장에게 위탁, ②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탁, ③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계약 체결을 하도록 한다.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등 관련 법령에 따라 추진

○ 건축·건설 관계 법령상 유자격업체가 작성한 설계서 이용

- 단, 자체 설계서를 이용할 경우 공사착수 전에 시·군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시공업체의 자격

- 건축 및 토목의 경우 전문건설업 면허 보유업체(단, 부득이한 경우 일반면허 보유자 참여 허용)로서 하자 보수와 A/S보장이 확실한 업체
- 전기, 통신, 소방 등은 시설별로 각각의 관계법에 의한 면허 보유업체
- 저온저장고, 예냉시설의 경우 공조냉동기계 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보유업체

사. 준공검사 및 등기 등

○ 사업자로부터 준공검사 신청이 있는 경우 시설물들이 설계도에 준하여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 확인 후 검사 실시

○ 시·군은 설계 및 시공업체 선정부터 준공 시까지 지도·감독을 시행하여야 함

- 지원시설물은 부기등기 여부와 토지 또는 건물대장 등재여부 확인

  * 시설·장비 등 자산취득성 사업 등의 사유화 방지 지도·점검 철저

5. 사업비 집행 및 사후관리

가. 사업비 집행 및 정산

○ 사업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꼭 필요한 세부사업을 대상으로 사업비 적정 배분

- 사업 착수 전 세부사업 계획서를 작성 한 후 도 승인을 득한 후 착공하여야 함

* 세부사업계획 수립 시 특정사업 편중작성 방지 지도

○ 기준 규격 이상 시설·장비 구입 등은 이면계약 방지를 위해 시·군 자체 지침을 마련하여 투명성 확보

- 시공·공급업체 선정, 계약 체결 및 사업자 자부담 포함 사업예산 집행(사업예산 절감 및 시설, 장비의 사유화 방지)

○ 사업계획 승인 이후 세부 사업간 사업비 변경 및 조정이 필요한 경우 시장·군수는 사업변경에 따른 타당성을 검토 자체승인 조치하고 그 결과를 도에 보고

- 사업 승인 후 사업계획 변경 필요시 그 사유를 검토하여 자체승인 또는 도에 변경 승인 요청

▶ 도 승인사항 : 사업예정지 변경, 보조사업자 변경, 총 사업비의 30% 이상 증감이 필요한 경우 등 중대한 변경사항

▶ 시군 승인사항 : 도에서 승인한 사업내역 중 일부 사업 제외, 공사 완료 후 부가가치세 환급금, 집행잔액 등을 사업에 재투자하고자 할 경우 등 경미한 변경사항

○ 자부담 집행 및 정산자료 검증 강화

- 자부담은「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53조의2에 따라 집행토록 조치
- 사업 정산 시 사업자등록증 소지자 자필서명 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 통장사본 등 금융기관 거래자료 등 증빙자료 검정 이행

○ 사업비 검정 및 정산은 시장·군수 책임 하에 실시하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련법령과 규정 준수

나. 사후관리

○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의 관리기간 등에 대해서는 농림사업에서 정하고 있는 기간 및 기준을 적용하여 사후 지도관리 철저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농림축산식품부훈령」 제352호, 2020. 2. 27.) 제7장 사후관리 및 별표 4(중요재산 범위 및 사후관리기간 적용 기준) 참조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하여는 보조금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등 재산처분의 제한조치

- 중요재산 중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등기를 할 때에는 부기등기 의무화

○ 시설·장비 등은 효율적 관리를 위한 책임자 지정 및 수시 확인·점검(관리·운영실태, 등기부 열람 등)

○ 보조금을 부당 집행한 경우에는 보조금 회수 및 부당사용 금액에 따라 일정기간 사업자금 지원 제한

○ 시설·장비 등에 대해서는 사업 목적에 따라 친환경농산물만을 취급하여야 하며, 농산물 취급확약서를 사후 관리자(시·군)에 제출

- 시설·[장비 등 일반 농산물과 혼용 사용 시 보조금 회수 조치

친환경농산물 취급 확약서

○ 사 업 명 : 0000년 친환경농산물 생산·유통 인프라 구축사업
○ 단 체 명 : (대표자 성명 :)
○ 사업장위치 :
○ 연 락 처 :
○ 지원내역

사업내용	사업규모 (㎡)	사업 완공일	사업비(백만원)			
			계	국비	시군비	자부담

본인은 친환경농산물 생산·가공·유통시설 설치를 위해 00년에 보조금 지원받았으며, **사업의 목적대로 친환경농산물만을 취급**하고 「농림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라 사후관리 기간 동안 성실히 보조의무자의 역할을 다할 것을 확약합니다.

0000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

○○ 시장·군수 귀하

○ 시설·장비는 보조지원 사업임을 알 수 있는 안내판 설치
- 위치 : 시설물 주출입구 정면(눈에 잘 띄는 곳)
- 크기 : (가로) 90cm × (세로) 60cm

이 사업(시설)은 ○○○○년에 **전라남도**로부터 **친환경농산물 생산·유통·가공**을 위해 보조금 등의 재정지원을 받아 운영하는(설치한) 것으로 사후관리기간인 ○○○○년 ○○월 ○○일까지는 보조금 지원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의 제공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 사 업 명 :
2. 사 업 자 :
3. 시설규모 :
4. 재 원 :
5. 사 업 비 :
6. 사업기간 :

○○○○년 월 일

○ 운영실태 및 사업실적을 분석·평가하여 우수 법인체에 대해서는 운영자금, 홍보 ·판촉 등 연계 가능한 사업을 우선하여 지원

5. 행정사항

○ 사업 추진상황 및 집행실적 점검(분기) : 연4회

- 3월, 9월(현장점검) / 6월, 12월(서면점검)

보조 사업자	사업내용	사업비 (천원)	추진상황		집행액 (천원)	향후계획	비고
			내용(설계, 인허가 등)	공정율			

○ 기 지원 보조사업자 대상사업 운영실적 : 2022. 4. 31.까지

○ 부동산 등 중요재산 관리실태 조사 : 연1회(7월중)

○ 사업완료 및 정산보고 : 2023. 1. 31.까지

[사업 신청서] – A4용지 5~6장 내외

친환경농산물 생산·유통 인프라 구축사업 신청서

<table>
<tr><td rowspan="6">신청자</td><td>단체명</td><td colspan="2"></td><td>법인등록번호</td><td colspan="4"></td></tr>
<tr><td>성 명
(대표자명)</td><td colspan="2"></td><td>농업경영체
등록번호</td><td colspan="2"></td><td>생년월일</td><td></td></tr>
<tr><td>주 소</td><td colspan="4"></td><td>전화번호</td><td colspan="2"></td></tr>
<tr><td>영농(림)
종사경력</td><td colspan="2">년</td><td>영농교육</td><td colspan="4">분야,　　월　　주</td></tr>
<tr><td>생산자단체
등의 형태</td><td colspan="3">협동조합, 농업법인, 기타</td><td colspan="2">참여농가수</td><td colspan="2">호</td></tr>
<tr><td colspan="8"></td></tr>
<tr><td rowspan="6">신청내용</td><td>사 업 명</td><td colspan="7"></td></tr>
<tr><td rowspan="3">사업예정지
(동·리 번지까지
기재)</td><td colspan="3" rowspan="3"></td><td colspan="4">농지이용계획</td></tr>
<tr><td colspan="2">농업진흥지역 안</td><td colspan="2">지구</td></tr>
<tr><td colspan="2">농업진흥지역 밖</td><td colspan="2">지구</td></tr>
<tr><td rowspan="3">사 업 비
(천 원)</td><td rowspan="2">계</td><td colspan="3">정부지원(재원명 기재)</td><td colspan="3">지방비</td><td rowspan="2">자부담</td></tr>
<tr><td>국고계</td><td>보조</td><td>융자</td><td>지방비계</td><td>도비</td><td>시군비</td></tr>
<tr><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사업내용별
규모(량)</td><td colspan="7"></td></tr>
</table>

「농림축산식품분야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상기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상기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 ○ (시장·군수) 귀하

첨부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대출신청자료 1부(대출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함)
3. 경영실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경영장부, 경영일지 등)사본 1부(기록실적이 있는 경우에 한함)

(주) 1. 사업계획서는 사업시행지침에 따로 정한 경우 외에는 지원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만 제출
2. 대출신청자료는 대출신청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만 제출
3. 사업의 성격상 위 신청서의 서식이 부적합한 경우는 사업시행지침에 서식을 따로 정할 수 있음
4. 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농업경영체(농업인 및 농업법인), 사업시행지침에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농외소득이 있는 다른 직업종사자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농업법인은 제91조 관련 별표 10에 의한 농업법인 지원조건에 적합한 경우에만 지원됨

[서식 1]

사 업 계 획 서

□ 일반현황

○ 단 체 명 : 00영농조합(대표 ☎)

○ 위 치 :

○ 설립연도 :

○ 조직원수 : 명(인증농가수 : 명)

○ 품목 및 면적 :

구분	품목	면적(㎡)	생산량(톤)	매출액(천원)	참여농가(호)
계					
일반 농산물	소계				
친환경 농산물	소계				
무농약	소계				
유기	소계				

○ 가 공 현 황 : 톤

○ 연간 매출액 : 백만원

○ 주 판매처 등 유통현황 :

□ 사업개요

○ 사업목적 및 필요성 등

○ 사업계획

- 사 업 비 : 백만원(도비 , 시군비 , 자담)
- 사업예정지 :

○ 세부사업내역

세부사업내역	사업량	단가 (천원)	소 요 사 업 비(백만원)			
			계	도비	시군비	자 담
계						
가공공장	000㎡/1동					
포장기기	0대					

○ 운영관리계획

□ 추진계획

○ 친환경농산물 생산계획(향후 3년)

※ 친환경농산물 인증 확대계획을 주 품목별로 작성

구분	품목	2022		2023		2024 이후	
		면적 (ha)	생산량 (톤)	면적 (ha)	생산량 (톤)	면적 (ha)	생산량 (톤)
친환경 농산물	계						
무농약	소계						
유기	소계						

○ 친환경농산물 가공계획

○ 친환경농산물 판매계획 및 출하방법

○ 장기적 도달 목표 및 비전

예) 향후 일자리 및 부가가치를 창출 등

< 발전지표 예시 > 가능한 항목만 지표설정

발전 지표	연차별 성과(추정)			비 고
	2022	2023	2024이후	
1. 법인(단체) 생산・매출액(백만원)				
2. 참여농가 소득증가(백만원)				
3. 일자리 창출(명)				
4. 수출(백만원)				

□ 기대효과

○

○

※ 관련서류 첨부

○ 사업신청자 제출서류

- 친환경농산물 생산·유통 인프라 구축사업 신청서 1부.
- 사업계획서(서식 1) 1부.
- 최근 5년간 정부(지자체 포함) 지원사업 현황(서식 2) 1부.
- 조직체 내 농가 영농현황 (서식 3) 1부.
- 사업 참여농가 동의서 (서식 4) 1부.
- 부지사용승인서 (서식 5) 1부.

○ 시·군 제출서류

- 사업계획 검토의견서 (서식 6) 1부.
- 사업신청자 평가표(서식 7) 1부.
- 사업참여농가 친환경농산물의무자조금 납부현황(서식 8) 1부.
- 농업법인 신청사업자 지원 자격요건 점검확인서 (서식 9) 1부.
- 공모사업 신청에 따른 관련법 검토의견서 (서식 10) 1부.

[서식 2]

최근 5년간 정부(지자체포함) 지원사업 현황

사업명	사업년도	사업내용 (시설·장비명)	투 자 금 액(백만원)					소 유· 수혜자
			계	국 고	융 자	지방비	자부담	

[서식 3]

조직체 내 농가 영농현황

농가명(세) (H · P)	지 번	경작 규모	친 환 경 인증현황	작목입식현황	판매방식
홍길동(○○세) (010-111-1234)	○○리 ○○ *지 번 별* *작 성*	ha	※없음, 유기, 무농약으로 구분 기재	※ 재배 품목 기재 (벼, 사과 등)	※직거래, 도매시장, 인터넷 등
총 계					
유 기					
무농약					
관 행					

[서식 4]

사업 참여농가 동의서

○ 조 직 명 :

○ 소 재 지 :

○ 경지면적 : ha

○ 사업대표자 : 외 명

○ 주요시설·장비설치계획

○ 내 용(사업계획서와 사업 참여를 동의한다는 내용을 명시)

년 월 일

사업자(대표자)	주소 :	성명 :	인 (서명 또는 날인)
사업참여자	주소 :	성명 :	인 (서명 또는 날인)
사업참여자	주소 :	성명 :	인 (서명 또는 날인)
사업참여자	주소 :	성명 :	인 (서명 또는 날인)
사업참여자	주소 :	성명 :	인 (서명 또는 날인)
사업참여자	주소 :	성명 :	인 (서명 또는 날인)
사업참여자	주소 :	성명 :	인 (서명 또는 날인)

※ 대표자는 사업목적 및 계획을 충분히 설명하고 농가의 동의를 받아 연명 기재

[서식 5]

부지사용 승인서

○ 사용승인 기간 :

○ 사용승인 내역

토지소재지	지번	면적(㎡)	지목	용도구역	소유자	비고

상기 토지 ㎡ 중 ㎡를 「친환경농산물 생산·유통 인프라 구축사업」의 ○○○ 시설·장비 부지사용을 승인합니다.

주 소 :

주민번호 :

승낙자(토지소유자) : (인) * 인감증명서 첨부

년 월 일

○ ○ 시장·군 수 귀하

[서식 6]

사업계획 검토의견서

1. 사업개요

○ 조 직 명 :

○ 소 재 지 :

○ 경지면적 :

○ 대표농가 : (참여농가 : 호)

○ 투자계획 :

2. 검토의견

* 시장·군수는 기술센터, 농관원, 농협 등 각 기관·단체별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서 검토 의뢰한 후 의견서를 제출받아 종합 검토의견서 작성

년 월 일

시장·군수 직인

[서식 7]

사업대상자 평가표

□ 생산자단체명 :

평가요소	평가항목	등 급 심 사 기 준	점수
1. 지역농업 여건 및 사업참여 상황 등 (20)	1-1. 사업장 부지확보 여부(5)	○ 법인명의 부지확보 : 5 ○ 부지사용 승인 : 3 ○ 부지 미확보 : 0	
	1-2. 농경지 면적(5)	○ 50ha이상 : 5, 30ha이상 : 3, 10ha이상 : 1	
	1-3. 친환경인증비율(5)	○ 70% 이상 : 5 , 50%이상 : 3 , 30%이상 : 1 * 참여농가의 전체 경작농지에 대한 친환경인증 비율	
	1-4. 사업참여 농경지 집단화 정도(5)	○ 70%이상 집단화 : 5 ○ 50%이상 집단화 : 3 ○ 30%미만 : 1	
2. 사업계획 수립의 적정성 (20)	2-1. 사업목표의 명확성(5)	○ 우수 : 5 보통 : 3 미흡 : 1 * 경쟁력 제고를 위한 명확한 목표와 그 목표설정이 타당한가?	
	2-2. 세부사업 적정성(5)	○ 우수 : 5 보통 : 3 미흡 : 1 * 사업목표 달성을 위한 세부사업 적정성	
	2-3. 시설장비 운영관리 계획 적정성(5)	○ 우수 : 5 보통 : 3 미흡 : 1	
	2-4. 자금투자계획 적정성(5)	○ 우수 : 5 보통 : 3 미흡 : 1 * 자부담 확보 및 활용 방안 계획은 적정한가?	
3. 사업 수행 능력의 적정성 (20)	3-1. 조직과 인력구성 의적정성(5)	○ 우수 : 5 보통 : 3 , 미흡 : 1 * 참여자(농가)간 생산·유통·가공 연계가 가능하도록 역할분담 등이 잘 갖춰져 있는가?	
	3-2. 참여자(농업인) 교육실적(5)	○ 년 5회 이상 : 5, 년 3회 이상 : 3, 년 2회 이하 : 1 * 공모일로부터 1년 기준 실적까지 인정	
	3-3. 추진전략의 적정성(5)	○ 우수 : 5 보통 : 3 미흡 : 1 * 재배면적 규모화, 기계화 및 생산비 절감을 위한 실적 또는 계획이 있는가?	
	3-4. 추진의지 정도(5)	○ 우수 : 5 보통 : 3 미흡 : 1 * 대표자의 친환경농업 관련 활동 실적 및 계획이 있는가?	
4. 생산. 유통 계획의 적정성 (40)	4-1. 친환경 농산물 생산 계획 적정성(10)	○ 우수 : 10 보통 : 6 미흡 : 3 * 친환경농산물 생산계획(인증면적 확대 등) 구체적이며 적정한가?	
	4-2. 친환경농산물가공 계획 적정성(10)	○ 우수 : 10 보통 : 6 미흡 : 3 * 친환경농산물 가공 계획이 구체적이며 적정한가?	
	4-3. 친환경농산물 판매 계획(10)	○ 우수 : 10 보통 : 6 미흡 : 3 * 법인(브랜드) 명칭으로 유통업체와 직거래, 판촉활동 등 구체적인 판매실적 및 계획수립 여부 ?	
	4-4. 출하형태(5)	○ 우수 : 5 보통 : 3 미흡 : 1 * 공동 마케팅을 위한 자체규약 유무 및 공동출하·공동계산 실적 또는 계획 수립여부?	
	4-5. 성공 가능성(5)	○ 1 ~ 5 *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차별화된 전략 및 성공(발전)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가?	
5. 가점(10)	1. 항목별 (2) * 벼 이외 품목, 친환경농산물 해외인증취득업체, 계약재배(생산량 대비 50% 이상 계약재배) 등 고정납품처가 있는 경우, 시·군 및 친환경연합회에서 추천을 받은 업체의 경우		
	합 계		

작성자(담당공무원) :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검토자(담 당 팀 장) :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확인자(담 당 과 장) :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서식 8]

사업참여농가 친환경농산물의무자조금 납부현황

인증기관	인증번호	인증분류 (유기, 무농약)	농가/단체명	생산자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		비고
					가입동의서 제출여부	자조금 납부여부	
총 계							

[서식 9]

농업법인 신청 사업자 지원요건 점검 확인서

□ 신청시군 :

□ 신 청 자 :

항 목	내 용	예	아니요
법인요건 (영농조합법인)	총 출자금이 1억원 이상 여부		
	자본금이 자부담 이상 확보 여부		
	설립 후 운영 실적이 1년 이상 여부 (최근 1개년 결산재무제표 유무)		
	조합원 5명 이상 농업인 여부		
사업부지	담보 및 지상권 설정 등 재산권 제한 여부		
	법인명의 소유권 등기 여부		
	사업관련 각종 인.허가 가능 여부(지목 : 00)		
사업계획서	계획서와 현장이 부합하는지 여부		
구비서류	사업신청서 구비서류가 갖추어져 있는지 여부		
지원제한 기준	사업신청 후 정당한 사유없이 신청철회 또는 포기한 적이 있는지 여부		
	보조금 부당사용, 미승인 양도.교환.담보제공 등을 한 적이 있는지 여부		

※ 법인등기부, 통장사본, 재무재표, 토지등기부 등 관련 증빙자료 첨부

위와 같이 점검한 결과 지원요건에 충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 작성자(담당공무원) :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 검토자(담당 팀장) :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 확인자(담당 과장) :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서식 10]

공모사업 신청에 따른 관련법 검토의견서

□ **적　　요** : 친환경농산물 생산·유통 인프라 구축사업 신청에 따른 관련법 검토

□ **목　　적** : 사업계획서 검토 및 가능여부 판단

□ **협의요청부서(기관)** :

□ **사업시행자** :

□ **신 청 내 역**

(단위 : ㎡)

위　치	지 목	지　적	전용면적	전용목적	용도지역	비　고

□ **관련법규 검토(협의)**

대상법규	검토(협의)의견	검토결과 (가・부)	검토자		비 고
			직	성명	
건축법					
농지법					
산지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환경관련법					
도로법					
기타 관련법					

붙임 : 관련부서 사전 협의 회신 공문

24 과수농가 비가림 하우스 시설 지원

1. 사업개요

가. 목 적

○ 유기농 상향에 어려움이 많은 과수농가에 각종 병해충을 효율적으로 방제하여 친환경 과일을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비가림 하우스 시설 지원

* (과수 비가림 하우스 재배의 특징) 병해충 피해율과 농약살포 횟수를 줄일 수 있는 등 편리한 농작업이 가능

나. 지원근거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농어업 등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

다. 사업계획

(단위 : ha, 천원)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			
		계(100%)	도비(15%)	시군비(50%)	자부담(35%)
과수농가 비가림하우스	3.5ha	880,500	132,075	440,250	308,175

2. 사업 추진

가. 사업대상자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따라 과수 친환경 인증을 받은 농업인 및 법인

- '22년 사업 대상자 변경 사항 : '21년) 과수 친환경 인증을 받으려는 농업인 및 법인
→ '22년) 과수 친환경 인증을 받은 농업인 및 법인

※ 변경사유 : 친환경 과수 비가림하우스 사후관리 어려움과 기존 친환경과수 농가 사업수요 증가 등으로 '22년부터 사업대상자 기준 변경

나. 지원요건

○ FTA 기금「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표준규격」또는「원예·특작시설 내재해형 기준(농식품부 고시 제2014-78호)」의 "지역별 내재해 설계기준"에 적합한 시설

다. 의무 및 보조금 회수

○ 해당 시설은 사업시행연도(2022년 12월) 안에 완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시설 완공 후 사후관리 기간 동안 친환경 인증을 유지를 해야 함

※ '21년까지 사업자('16년~'21년)는 친환경 인증을 받고 유지하는 것을 의무로 함

○ 사후관리 기간 동안 친환경 인증이 취소되는 경우 보조금 전액을 회수 할 수 있음

※ 인증이 취소되었을 경우 인증 취소 사유, 농가의 재인증 의지, 인증추진 등 현장상황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시군에서 결정

라. 지원조건

○ 사업비 기준 단가 : 25천원/㎡

- FTA 기금「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표준규격」또는「원예·특작시설 내재해형」경우, 초과 금액은 자부담 * 시설 종류에 따라 단가변동 가능

○ 지원기준 : 도비 15%, 시군비 50% 자부담 35%

○ 사업주관 기관 : 시장·군수

마. 사업비 집행 및 사후관리

《사업비 집행》

도

○ 사업 추진상황 및 자금 집행현황 점검(분기별)

시·군

○ 기존 규격 이상 시설 등은 이면계약 방지를 위해 시군 자체 지침을 마련하여 투명성 확보

○ 자부담 우선 집행 및 정산자료 검증

- 사업 착수할 때부터 사업대상자로 하여금 자부담금을 우선 집행토록 조치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58조 제2항

- 사업 정산 시 사업자등록증 소지자 자필서명 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 통장사본 등 금융기관 거래자료 등 증빙자료 검정 이행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과 규정 준수하여 사업비 검정 및 정산

《사후관리》

시·군

○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는 농림사업에서 정하고 있는 기간 및 기준을 적용하여 사후지도 관리 철저

○ 시설 책임자 지정 및 관리·운영 실태 수시 확인·점검

- 보조금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등 재산처분의 제한조치
- 사후관리 기간 동안 친환경인증정보시스템 및 현장점검을 통해 친환경 인증 유지 여부 수시 확인·점검

○ 사후관리 기간 동안 친환경 인증 취소되는 경우 보조금 회수 여부 결정

○ 시설하우스는 보조지원 사업임을 알 수 있는 입간판 설치

- 위치 : 시설 하우스 입구 정면(눈에 잘 띄는 곳)
- 크기 : (가로) 60cm × (세로) 30cm

이 시설하우스는 ○○○○년에 **전라남도**로부터 **친환경 농산물 생산**을 위해 보조금 등의 재정지원을 받아 운영하는 (설치한) 것으로 사후관리기간인 ○○○○년 ○○월 ○○일까지는 보조금 지원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의 제공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전라남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 사 업 명 :
2. 사 업 자 :
3. 시설규모 :
4. 재 원 :
5. 사 업 비 :
6. 사업기간 :

○○○○년 월 일

바. 행정사항

○ 사업 추진상황 보고 : 2022. 6.말, 12.말

○ 사업완료 및 정산보고 : 2023. 1. 17.까지

[보고 서식]

1. 사업 대상자 및 추진상황보고(6월, 12월)

사업대상자 현황				사업계획					추진상황 (구체적 기재)
성명	인증 단계	품목	재배면적 (㎡)	사 업 비(천원)				비가림 시설면적 (㎡)	
				계	도비	시군비	자담		

2. 사업완료 및 정산보고

○ 사업비 집행실적

(단위 : ㎡, 천원)

사 업 량			예 산 액				집 행 액				도비 집행 잔액
계획	실적	%	계	도비	시군비	자담	계	도비	시군비	자담	

○ 세부 사업자 내역

사업자 성명	사업실적		인증실적			
	시설위치	비가림 시설면적 (㎡)	인증 일자	인증 단계	품목	인증면적 (㎡)

[신청 서식-앞면]

과수 비가림하우스 시설 지원 사업 신청서

1. 일반현황

가. 신청자 개요

성 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번호)	
주 소		연락처	

나. 재배현황

(단위 : ㎡)

구 분	품 목			
	계			
면 적	㎡	㎡	㎡	㎡

다. 친환경 인증현황(신청당시)

품목명	인증연도	인증단계	인증면적
			㎡

2. 사업계획

가. 비가림하우스 시설 설치 대상농지

위 치	면적	비 고
	㎡	

나. 세부 사업내역

형 태	규모(㎡)	소요액(백만원)	추진시기(기간)	비 고
단동 또는 연동				

[신청 서식-뒷면]

다. 비가림하우스 설치규격

규격명	폭(m)	높이(m)	설치간격(cm)	서까래 (Φ(㎜)×t(㎜)@㎝)	가로대 (Φ(㎜)×t(㎜))

3. 인증계획

품목명	인증계획날짜	인증단계	인증면적
			㎡

본인은 위와 과수 비가림하우스 시설 지원사업비를 지원받고, 시설 완공 후 무농약 이상 친환경 인증을 유지하고 사후관리 기간 동안 인증을 유지할 것을 약속합니다.

정해진 기한 내에 무농약 이상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취득하지 않을 경우나 인증을 유지 못할 경우 보조금 전액을 회수할 수 있다는 내용에 대해 안내 받았으며, 친환경 미인증에 따른 보조금 회수 등 조치에 동의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26조에 의하여 상기와 같이 친환경 과수 비가림하우스 시설 지원사업을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상기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상기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2022년 월 일

신 청 자 : (서명 또는 인)

○○ 시장·군수 귀하

25 친환경 포트육묘 이앙기 공급 지원

1. 목 적

○ 친환경 포트육묘 이앙기 지원으로 친환경 벼 재배 생산성을 높여 농가 소득 향상 및 고품질 쌀의 안정적 생산기반 마련

○ 포트육묘 이앙기 공급을 통해 줄기가 두껍고 건강한 모를 생산하고, 이앙 초기 우렁이의 갉아먹음 피해를 방지하여 하여 친환경 벼 생산성 증대

2. 지원근거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16조(친환경농수산물 등의 생산·유통·수출 지원)

3. 사업계획

(단위 : 천원)

사 업 명	사 업 량	총사업비			
		계(100%)	도비(15%)	시군비(45%)	자부담(40%)
친환경농산물 포트육묘 이앙기 공급 지원	20대	1,360,000	204,000	612,000	544,000

* 1대당 68,000천원(도비 10,200, 시군비 30,600, 자부담 27,200)

4. 사업추진

가. 사업시행기관 : 시장·군수

나. 사업추진 기간 : 2022. 1. ~ 12.

다. 사업내용

○ 포트육묘 이앙기, 부속작업기(파종기, 시비기 등) 지원 공급

라. 지원자격(기준)

○ 무농약 이상 인증면적이 10ha이상인 친환경농업단지(법인 및 농가)

○ 포트육묘이앙기 공동이용률 제고로 생산비 절감이 가능한 단지

마. 사업자 선정

○ 시군에서는 사업대상자로부터 사업신청서(서식 1)를 제출받아 사업 타당성, 농업경영 규모, 자부담 능력 등을 종합 검토 후 시·군 농정심의회를 통해 선정

○ 사업대상자는 보조금 교부결정 후 2개월 이내에 사업을 개시할 수 있는 농가를 선정 원칙. 단, 천재지변 등 농정심의회에서 인정하는 특별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유예기간을 부여할 수 있음

○ 시·군에서는 지원 대상자 선정 결과를 시·군 홈페이지, 반상회보, 게시판 등에 일정기간 공지하고 이의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선정 등 조치

5. 사업비 집행 및 사후관리

가. 사업비 집행 및 정산

○ 사업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꼭 필요한 세부사업을 대상으로 사업비 적정 배분

○ 기준 규격 이상 시설·장비 구입 등은 이면계약 방지를 위해 시·군 자체 지침을 마련하여 투명성 확보

- 시공·공급업체 선정, 계약 체결 및 사업자 자부담 포함 사업예산 집행(사업예산 절감 및 시설, 장비의 사유화 방지)

○ 자부담 집행 및 정산자료 검증 강화

- 자부담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53조의2에 따라 집행하도록 조치
- 사업 정산 시 사업자등록증소지자 자필서명 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 통장사본 등 금융기관 거래자료 등 증빙자료 검정 이행

○ 사업비 검정 및 정산은 시장·군수 책임 하에 실시하고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과 규정 준수

나. 사후관리

○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의 관리기간 등에 대해서는 농림사업에서 정하고 있는 기간 및 기준을 적용하여 사후 지도관리 철저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하여는 보조금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등 재산처분의 제한조치

- 중요재산 중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등기를 할 때에는 부기등기 의무화

○ 보조금을 부당 집행한 경우에는 보조금 회수 및 부당사용 금액에 따라 일정기간 사업자금 지원 제한

○ 시·군에서는 사업 추진실적 및 자금집행 상황 등을 점검한 결과, 사업추진이 부진하거나 부실한 사업장 등에 대해서는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함

○ 시장·군수는 본 사업으로 구매한, 기계 등에 대해서는 사업 완료 후 1개월 이내에 현지를 확인하고,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 관리 기본규정 제72조에 의한 사업의 관리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 농기계 경우 사후관리대장(서식 4)을 작성 비치하여 농기계 구입 확인, 기계 활용, 관리상태 등을 매년 2회 이상 점검

○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의 관리기간 등에 대하여는 유사 농림사업에서 정하고 있는 기간 및 기준을 적용함

6. 행정사항

○ 당해 연도 보조사업자 선정현황 결과 보고 : 2022. 3. 12.

○ 사업 추진상황 및 집행실적 점검(분기) : 연4회

- 3월, 9월(현장점검) / 6월, 12월(서면점검)

보 조 사업자	사업내용	사업비 (천원)	추진상황 (기종선정, 구입계약, 구입완료 등)	집행액 (천원)	향후계획	비고

○ 사업완료 및 정산보고 : 2023. 1. 31.까지

[서식 1]

친환경 포트육묘 이앙기 사업신청서

단 체 명		주 소	
대 표 자 (연 락 처)	(○ ○ ○) 000-0000-0000	회 원 수	농가
전 체 영농규모	ha	친 환 경 현 황	유 기 ha 무농약 ha
사 업 량	대		

(단위 : 천원)

사 업 비 현 황	합 계	도 비	군 비	자 담

2022년도 친환경농업과 사업시행지침에 의거 친환경 포트육묘 이앙기 지원 사업을 신청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상기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상기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인)

○○시장·군수 귀하

※ 별첨 : 사업계획서 1부. 끝.

친환경 포트육묘 이앙기 사업계획서

□ 구입계획

○ 구입예정일 :

○ 보 관 장 소 : 시·군 읍·면 리 번지

* ○○○자택, ○○○마을 보관창고 등

○ 관리담당자 : (핸드폰 :)

○ 사 업 비 : 천원(도비 , 시군비 , 자담)

○ 구입규격 :

- 제조회사 :

○ 구입방법 :

- □ 직접 구매, □ 행정기관 구매 대행(지방계약법 제8조)

○ 연간 운영 계획

장제·수확·파종 면 적	참여(수혜) 농 가 수	방제·수확·파종 작 업 비	비 고
ha	호	원/10a당	

□ 사업 실적 의무적 보고사항 준수(사업완료 즉시)

○ 위 사업 신청자(대표) _____는 보조사업 지원으로 나타난 실적에 대해 사업시행지침에 의거 **사후관리 기간 동안 의무적 보고사항을 준수하겠습니다.**

[서식 2]

친환경 포트육묘 이앙기 사업 추진상황

(단위 : 천원)

사 업 계 획			추 진 실 적		사업비 집행			
세부 사업명	쌀농업회사 /영농법인 등 (대표자)	사업량	실 적	진도	계	도비	시군비	자담

※ 사업계획상의 내용과 사업량은 도 승인 사업계획과 일치되도록 작성

[서식 3]

친환경 포트육묘 이앙기 사업 정산결과

□ 사업실적

사 업 명	쌀농업회사/ 영농법인 등 (대표자)	추 진 실 적			세 부 사 업 내 용
		계 획	실 적	진도	
합 계		(대)	(대)	(%)	* 지원내용 구체적 기재

□ 사업비 집행

(단위 : 원)

예 산 액				집 행 액				도 비 집행잔액
계	도 비	시군비	자 담	계	도 비	시군비	자 담	

※ 집행잔액 발생 시 사유 :

□ 기타 건의사항(문제점)

○

[서식 4]

친환경 포트육묘 이앙기 사후관리 대장

사 업 명	친환경 포트육묘 이앙기					
법인단체/ 대표자	농업회사법인/ △△△	주 소	○○시·군 ○○읍·면 ○○리 ○○번지		연락처	010-0000-0000
사 업 비	합 계	도 비		시군비		자 담
사업내용						
기종 명		제조회사 (전화번호)		규 격 (모델명)		
농기계형식 표지판의 제조번호		구입 년월		보관장소 (관리자)		

사 진	
포트육묘이앙기	농기계형식 표지판의 제조번호
	○ 그림파일 용량 : 300KB이하 ○ 그림파일에서 붙여넣은 후 속성에서 - 사진크기 : 너비 75, 높이 70 - 글자처럼 취급 체크

26 친환경 중경제초기 지원(신규)

1. 목 적

○ 친환경 중경제초기 지원으로 제초 인력확보가 어려운 친환경 농업인 부담 경감 및 생산성 향상

○ 친환경농법인 왕우렁이가 방제하기 어려운 잡초(여뀌, 물질경이, 자귀풀 등) 의 중경제초기 사용으로 친환경 재배 효율성 증대

2. 지원근거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16조(친환경농수산물 등의 생산·유통·수출 지원)

3. 사업계획

(단위 : 천원)

사 업 명	사 업 량	총사업비			
		계(100%)	도비(15%)	시군비(35%)	자부담(50%)
친환경 중경제초기 지원	126대	945,000	141,750	330,750	472,500

* 승 용 : 31,000천원(도비 4,650, 시군비 10,850, 자부담 15,500) /1대
* 보 행 : 1,500천원(도비 225, 시군비 525 자부담 750) /1대
* 논두렁 : 4,000천원(도비 600, 시군비 1,400, 자부담 2,000) /1대

4. 사업추진

가. 사업시행기관 : 시장·군수

나. 사업추진 기간 : 2022. 1. ~ 12.

다. 사업내용

○ 친환경중경제초기(승용, 논두렁, 보행) 구입비 지원

라. 지원자격(기준)

○ 승용중경제초기 : 친환경 벼 인증면적(무농약 이상)이 **10ha이상**인 친환경 농업단지(법인 및 농가)

○ 보행·논두렁 제초기 : 친환경 벼 인증면적(무농약 이상) **1ha이상**인 친환경 농업단지(법인 및 농가)

마. 사업자 선정

○ 시군에서는 사업대상자로부터 사업신청서(서식 1)를 제출받아 사업 타당성, 친환경 농업경영 규모, 자부담 능력 등을 종합 검토 후 시·군 농정심의회를 통해 선정

○ 사업대상자는 보조금 교부결정 후 2개월 이내에 사업을 개시할 수 있는 농가를 선정 원칙. 단, 천재지변 등 농정심의회에서 인정하는 특별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유예기간을 부여할 수 있음

○ 시·군에서는 사업 참여 희망자가 제출한 신청서의 기종명, 규격, 가격 등을 검토 확인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자와 보조 지원액을 결정

○ 시·군에서는 지원 대상자 선정 결과를 시·군 홈페이지, 반상회보, 게시판 등에 일정기간 공지하고 이의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선정 등 조치

5. 사업비 집행

○ 사업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꼭 필요한 기종을 대상으로 사업비 적정 배분

○ 1법인(농가) 1대 공급원칙, 보조금 한도 내에서 구입비의 50%지원

- 사업비 기준 단가를 초과할 경우, 초과 금액은 자부담

* 승용 31,000천원(보조금 한도 15,500천원), 보행 1,500천원(보조금 한도 750천원), 논두렁 4,000천원(보조금 한도 2,000천원)

○ 자부담 집행 및 정산자료 검증 강화

- 사업 정산 시 사업자등록증소지자 자필서명 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 통장사본 등 금융기관 거래자료 등 증빙자료 검정 이행

○ 시·군에서는 보조금 지급 시 사전에 제품 공급, 이상 여부와 자부담 납부 등 관련서류를 확인한 후 보조금 지급

* 시·군은 사업대상자가 공급업체에 보조금을 위임할 경우 공급업체에 보조금 직접 지급 가능

○ 사업비 검정 및 정산은 시장·군수 책임 하에 실시하고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과 규정 준수

6. 사후관리

○ 시·군에서는 공급대장 및 사후관리 대장을 비치하여 사업완료 후 1개월 이내에 친환경중경제초기 구입을 현지 확인

○ 시장·군수는「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 관리 기본규정」제72조에 의한 사업의 관리절차를 이행하고 활용·관리상태 등을 매년 1회 이상 점검

○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의 관리기간 등에 대해서는「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 관리 기본규정」제 60조 1항에 의한 기간 및 기준을 적용하여 사후 지도관리 철저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하여는 보조금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등 재산처분의 제한조치

○ 보조금을 부당 집행한 경우에는 보조금 회수 및 부당사용 금액에 따라 일정기간 사업자금 지원 제한

○ 시·군에서는 사업 추진실적 및 자금집행 상황 등을 점검한 결과, 사업추진이 부진하거나 부실한 사업장 등에 대해서는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함

7. 행정사항

○ 당해 연도 보조사업자 선정현황 결과 보고 : 2022. 3. 11.

○ 사업 추진상황 및 집행실적 점검(분기) : 연4회

- 3월, 9월(현장점검) / 6월, 12월(서면점검)

보조 사업자	사업내용	사업비 (천원)	추진상황 (기종선정, 구입계약, 구입완료 등)	집행액 (천원)	향후계획	비고

○ 사업완료 및 정산보고 : 2023. 1. 31.까지

[서식 1]

친환경 중경제초기 지원 사업신청서

단 체 명 (농 가 명)		주 소	
대 표 자 (연 락 처)	(○ ○ ○) 000-0000-0000	회 원 수	농가
전 체 영농규모	ha	친 환 경 현 황	유 기 ha 무농약 ha
사 업 량	대(승용중경제초기 □ 보행형중경제초기 □ 논두렁제초기 □)		

(단위 : 천원)

사 업 비 현 황	합 계	도 비	군 비	자 담

2022년도 친환경농업과 사업시행지침에 의거 친환경 중경제초기 지원 사업을 신청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상기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상기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인)

○○시장·군수 귀하

※ 별첨 : 사업계획서 1부. 끝.

친환경 중경제초기 지원 사업계획서

□ 구입계획

○ 기 종 명 :

- 제조회사 :
- 공급업체(상호명) : ○○○농기계 △△△대리점

○ 가 격 : 천원(보조금 , 자담)

- 단가 : 천원/대

○ 구입예정일 :

○ 구 입 방 법 :

- □ 직접 구매, □ 행정기관 구매 대행(지방계약법 제8조)

○ 보관장소 : 시·군 읍·면 리 번지

* ○○○자택, ○○○마을 보관창고 등

○ 관리담당자 : (핸드폰 :)

○ 연간 운영 계획

작업(제초) 면적	참여(수혜) 농가수	비 고
ha	호	

□ 사업 실적 의무적 보고사항 준수(사업완료 즉시)

○ 위 사업 신청자(대표) _____는 보조사업 지원으로 나타난 실적에 대해 사업시행지침에 의거 **사후관리 기간 동안 의무적 보고사항을 준수하겠습니다.**

[서식 2]

친환경 중경제초기 사업 추진상황

(단위 : 천원)

사 업 계 획			추 진 실 적		사업비 집행			
세부 사업명	쌀농업회사/영농법인 등 (대표자)	사업량	실 적	진도	계	도비	시군비	자담

※ 사업계획상의 내용과 사업량은 도 승인 사업계획과 일치되도록 작성

[서식 3]

친환경 중경제초기 지원 사업 정산결과

□ 사업실적

사 업 명	쌀농업회사/영농법인 등 (대표자)	추 진 실 적			세 부 사 업 내 용
		계 획	실 적	진도	
합 계		(대)	(대)	(%)	* 지원내용 구체적 기재

□ 사업비 집행

(단위 : 원)

예 산 액				집 행 액				도 비 집행잔액
계	도 비	시군비	자 담	계	도 비	시군비	자 담	

※ 집행잔액 발생 시 사유 :

[서식 4]

친환경 중경제초기 지원 사업 공급대장

연번	주 소	성명	기종명	제조 회사	규 격 (모델명)	구입비(천원)				구 입 연월일
						계	도비	시군비	자담	

친환경 중경제초기 사후관리 대장

사 업 명	친환경 중경제초기 지원				
법인단체/ 농협/대표자	농업회사 ○○농협	주 소	○○시·군 ○○읍·면 ○○리 ○○번지	연락처	010-0000-0000
사 업 비 (천원)	합 계	도 비	시군비	자 담	
사업내용					
기종 명		제조회사 (전화번호)		규 격 (모델명)	
농기계형식 표지판의 제조번호		구입 년월		보관장소 (관리자)	

사 진	
친환경 중경제초기	농기계형식 표지판의 제조번호

27 친환경 과수농가 해충방제기 지원(신규)

1. 사업개요

가. 목 적

○ 친환경인증 획득이 어려운 과수농가의 해충 방제로 안정적인 친환경 과일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해충방제기(광방충기, 해충포획기) 지원

○ 친환경 방제로 살충제 사용을 줄여 친환경과수 인증면적 확대 및 친환경 유기 재배 전환 유도

* (친환경 해충방제기 특징) 해충의 본능적인 생태적 습성을 이용한 파장 및 광을 활용하여 해충 기피시키거나 유인하여 포획

나. 지원근거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농어업인 등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

다. 사업계획

(단위 : 대, 천원)

사 업 명	사 업 량	총사업비			
		계(100%)	도비(15%)	시군비(35%)	자부담(50%)
친환경 해충방제기 (광방충기)지원	300대	540,000	81,000	189,000	270,000

* 광 방 충 기 : 2,200천원(도비 330, 시군비, 770, 자부담 1,100)/600평
* 해충포획기 : 400천원(도비 60, 시군비 140, 자부담 200)/300평

2. 사업 추진

가. 사업대상자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따라 과수 친환경 인증을 받은 농업인 및 법인

- 광 방 충 기 : 친환경과수 인증면적이 600평(2,000㎡) 이상인 농업인 및 법인
- 해충포획기 : 친환경과수 인증면적이 300평(1,000㎡) 이상인 농업인 및 법인

나. 지원요건

○ 광방충기(GRC, GAC, GN형)

○ 해충포획기(광원, 유아등 등)

다. 의무 및 보조금 회수

○ 해당 시설은 사업시행연도(2022년 12월) 안에 완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시설 완공 후 친환경인증을 받은 기준일로 부터 최소 사후관리 기간 동안 인증 유지를 해야 함

라. 지원조건

○ 사업비 기준 단가 : (광방충기) 2,200천원/600평 (해충포획) 400천원/300평

- 사업비가 기준 단가를 초과할 경우, 초과 금액은 자부담 * 시설 종류에 따라 단가변동 가능

○ 지원기준 : 도비 15%, 시군비 35% 자부담 50%

○ 사업주관 기관 : 시장·군수

마. 사업자 선정

○ 시군에서는 사업대상자로부터 사업신청서(서식 1)를 제출받아 사업 타당성, 친환경 농업경영 규모, 자부담 능력 등을 종합 검토 후 시·군 농정심의회를 통해 선정

○ 사업대상자는 보조금 교부결정 후 2개월 이내에 사업을 개시할 수 있는 농가를 선정 원칙. 단, 천재지변 등 농정심의회에서 인정하는 특별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유예기간을 부여할 수 있음

○ 시·군에서는 사업 참여 희망자가 제출한 신청서의 규격, 가격 등을 검토 확인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자와 보조 지원액을 결정

○ 시·군에서는 지원 대상자 선정 결과를 시·군 홈페이지, 반상회보, 게시판 등에 일정기간 공지하고 이의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선정 등 조치

3. 사업비 집행 및 사후관리

가. 사업비 집행

○ 기준 규격 이상 시설 등은 이면계약 방지를 위해 시군 자체 지침을 마련하여 투명성 확보

○ 자부담 우선 집행 및 정산자료 검증 강화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58조 2항에 따라 사업 착수할 때부터 사업대상자로 하여금 자부담금을 우선 집행토록 조치
- 사업 정산 시 사업자등록증 소지자 자필서명 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 통장사본 등 금융기관 거래자료 등 증빙자료 검정 이행

○ 사업비 검정 및 정산은 시장·군수 책임 하에 실시하고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과 규정 준수

나. 사후관리

○ 시·군에서는 공급대장 및 사후관리 대장을 비치하여 사업완료 후 1개월 이내에 해충방제기(광방충기, 해충포획기) 설치 현지 확인

○ 사업을 지원받은 농가가 사후관리 기간 동안 친환경 과수 인증을 유지하고 있는 지 파악

○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의 관리기간 등에 대해서는 농림사업에서 정하고 있는 기간 및 기준을 적용하여 사후 지도관리 철저

○ 사후관리 기간 내에 있는 시설물은 보조금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등 제한

○ 시설 등은 효율적 관리를 위한 책임자 지정 및 수시 확인·점검(관리·운영실태 등)

다. 행정사항

○ 사업 추진상황 보고 : 2022. 6.말, 12.말

○ 사업완료 및 정산보고 : 2023. 1. 17.까지

[신청 서식]

친환경 해충방제기 지원 사업 신청서

신청 구분	대 표 명		생산조직명	
	주 소		연락처	
인증 내역	인증구분		인증품목	
	인증면적		인증유효기간	
	인증번호		인증기관	
	인증농가수		대표자	

신청내역

위 치	사용작목	규 격	형식명 (제조업체)	가 격	신청량
				원	대
				원	대
				원	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26조에 의하여 상기와 같이 친환경 해충방제기 지원사업을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상기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상기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2022년 월 일

신 청 자 : (서명 또는 인)

○○ 시장·군수 귀하

붙임 : 1. 친환경농산물 인증서 사본 1부.
2. 견적서 등

[보고 서식]

1. 사업 대상자 및 추진상황보고(6월, 12월)

사업대상자 현황				사업계획					추진상황 (구체적 기재)
성명	인증 단계	품목	재배면적 (㎡)	사 업 비(천원)				해충방제기 설치계획	
				계	도비	시군비	자담		

2. 사업완료 및 정산보고

○ 사업비 집행실적

(단위 : ㎡, 천원)

사 업 량			예 산 액				집 행 액				도비 집행 잔액
계획	실적	%	계	도비	시군비	자담	계	도비	시군비	자담	

○ 세부 사업내역

사업자 성명	사업실적			
	시설위치	해충방제기 설치 내역		비 고
		종 류	개소	

[별지 서식]

친환경 해충방제기 공급 내역서

연번	사업대상농가		설치내역				구입비(천원)			구 입 연월일
	주 소	성명	규격	설치량 (대)	위치	과수 품목	도비	시군비	자담	

생명의 땅 으뜸 전남
Land of Life, Best Jeonnam

III 시군별 사업내역

1 유기농가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단위 : 천원)

시 군	사 업 량 (ha)	사 업 비			비 고
		계	도 비	시군비	
계	10,000	1,000,000	300,000	700,000	
목포시	-	-	-	-	
여수시	84	8,400	2,520	5,880	
순천시	241	24,100	7,230	16,870	
나주시	352	35,200	10,560	24,640	
광양시	415	41,500	12,450	29,050	
담양군	240	24,000	7,200	16,800	
곡성군	386	38,600	11,580	27,020	
구례군	68	6,800	2,040	4,760	
고흥군	154	15,400	4,620	10,780	
보성군	975	97,500	29,250	68,250	
화순군	160	16,000	4,800	11,200	
장흥군	836	83,600	25,080	58,520	
강진군	175	17,500	5,250	12,250	
해남군	800	80,000	24,000	56,000	
영암군	1,615	161,500	48,450	113,050	
무안군	312	31,200	9,360	21,840	
함평군	630	63,000	18,900	44,100	
영광군	354	35,400	10,620	24,780	
장성군	80	8,000	2,400	5,600	
완도군	32	3,200	960	2,240	
진도군	671	67,100	20,130	46,970	
신안군	1,420	142,000	42,600	99,400	

2 친환경농산물 전시·홍보 부스 운영 지원

(단위 : 천원)

시 군	사 업 량 (회/부스)	사 업 비			비 고
		계	도 비	시군비	
계	28	84,000	42,000	42,000	
목포시	-				
여수시	1	3,000	1,500	1,500	
순천시	2	6,000	3,000	3,000	
나주시	1	3,000	1,500	1,500	
광양시	1	3,000	1,500	1,500	
담양군	1	3,000	1,500	1,500	
곡성군	1	3,000	1,500	1,500	
구례군	1	3,000	1,500	1,500	
고흥군	1	3,000	1,500	1,500	
보성군	1	3,000	1,500	1,500	
화순군	2	6,000	3,000	3,000	
장흥군	1	3,000	1,500	1,500	
강진군	2	6,000	3,000	3,000	
해남군	4	12,000	6,000	6,000	
영암군	1	3,000	1,500	1,500	
무안군	1	3,000	1,500	1,500	
함평군	1	3,000	1,500	1,500	
영광군	2	6,000	3,000	3,000	
장성군	1	3,000	1,500	1,500	
완도군	1	3,000	1,500	1,500	
진도군	1	3,000	1,500	1,500	
신안군	1	3,000	1,500	1,500	

3 친환경농업 전문기술지 보급 지원 사업

(단위 : 천원)

시군	사업량 (부수)	사업비			비고
		계 (100%)	도비 (20%)	시군비 (80%)	
계	2,790	334,800	66,960	267,840	
목포시					
여수시	200	24,000	4,800	19,200	
순천시	200	24,000	4,800	19,200	
나주시	200	24,000	4,800	19,200	
광양시	300	36,000	7,200	28,800	
담양군	100	12,000	2,400	9,600	
곡성군	100	12,000	2,400	9,600	
구례군	100	12,000	2,400	9,600	
고흥군	100	12,000	2,400	9,600	
보성군	100	12,000	2,400	9,600	
화순군	100	12,000	2,400	9,600	
장흥군	120	14,400	2,880	11,520	
강진군	100	12,000	2,400	9,600	
해남군	100	12,000	2,400	9,600	
영암군	100	12,000	2,400	9,600	
무안군	100	12,000	2,400	9,600	
함평군	100	12,000	2,400	9,600	
영광군	130	15,600	3,120	12,480	
장성군	100	12,000	2,400	9,600	
완도군	100	12,000	2,400	9,600	
진도군	190	22,800	4,560	18,240	
신안군	150	18,000	3,600	14,400	

4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사업

(단위 : 천원)

시 군	사 업 량 (개소)	사 업 비				비 고
		계	국 비	도 비	시군비	
계	5	750,000	375,000	112,500	262,500	
목포시	-					
여수시						
순천시	1	150,000	75,000	22,500	52,500	3년차
나주시						
광양시						
담양군	1	150,000	75,000	22,500	52,500	3년차
곡성군						
구례군						
고흥군						
보성군						
화순군						
장흥군						
강진군	1	150,000	75,000	22,500	52,500	3년차
해남군						
영암군						
무안군						
함평군	1	150,000	75,000	22,500	52,500	4년차
영광군						
장성군	1	150,000	75,000	22,500	52,500	3년차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5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

(단위 : 천원)

시 군	사업량 (명)	사 업 비					비 고
		계	국 비	도 비	시군비	자부담	
계	2,741	1,315,680	526,272	157,882	368,390	263,136	
목포시	280	134,400	53,760	16,128	37,632	26,880	
여수시	421	202,080	80,832	24,250	56,582	40,416	
순천시	320	153,600	61,440	18,432	43,008	30,720	
나주시	220	105,600	42,240	12,672	29,568	21,120	
광양시	240	115,200	46,080	13,824	32,256	23,040	
담양군	80	38,400	15,360	4,608	10,752	7,680	
곡성군	20	9,600	3,840	1,152	2,688	1,920	
구례군	50	24,000	9,600	2,880	6,720	4,800	
고흥군	80	38,400	15,360	4,608	10,752	7,680	
보성군	70	33,600	13,440	4,032	9,408	6,720	
화순군	80	38,400	15,360	4,608	10,752	7,680	
장흥군	80	38,400	15,360	4,608	10,752	7,680	
강진군	60	28,800	11,520	3,456	8,064	5,760	
해남군	100	48,000	19,200	5,760	13,440	9,600	
영암군	60	28,800	11,520	3,456	8,064	5,760	
무안군	150	72,000	28,800	8,640	20,160	14,400	
함평군	60	28,800	11,520	3,456	8,064	5,760	
영광군	120	57,600	23,040	6,912	16,128	11,520	
장성군	70	33,600	13,440	4,032	9,408	6,720	
완도군	80	38,400	15,360	4,608	10,752	7,680	
진도군	60	28,800	11,520	3,456	8,064	5,760	
신안군	40	19,200	7,680	2,304	5,376	3,840	

6 친환경농산물 인증비 지원

(단위 : 천원)

시군	사업량 (건)	사 업 비			
		계(100%)	도비(15%)	시군비(65%)	자담(20%)
계	21,000	13,650,000	2,047,500	8,872,500	2,730,000
목포시	14	9,100	1,365	5,915	1,820
여수시	510	331,500	49,725	215,475	66,300
순천시	1,040	676,000	101,400	439,400	135,200
나주시	588	382,200	57,330	248,430	76,440
광양시	1,389	902,528	135,379	586,644	180,505
담양군	1,212	787,800	118,170	512,070	157,560
곡성군	1,380	897,000	134,550	583,050	179,400
구례군	944	613,600	92,040	398,840	122,720
고흥군	748	486,200	72,930	316,030	97,240
보성군	898	583,700	87,555	379,405	116,740
화순군	900	585,000	87,750	380,250	117,000
장흥군	1,576	1,024,165	153,625	665,707	204,833
강진군	650	422,500	63,375	274,625	84,500
해남군	1,606	1,043,900	156,585	678,535	208,780
영암군	1,374	892,835	133,925	580,343	178,567
무안군	1,024	666,900	100,035	433,485	133,380
함평군	928	603,104	90,466	392,017	120,621
영광군	908	589,934	88,490	383,457	117,987
장성군	422	274,300	41,145	178,295	54,860
완도군	259	168,234	25,235	109,352	33,647
진도군	946	614,900	92,235	399,685	122,980
신안군	1,684	1,094,600	164,190	711,490	218,920

7 유기·무농약 지속 직불제

(단위 : 천원)

시군	사업량 (ha)	사 업 비		
		계(100%)	도비(20%)	시군비(80%)
계	18,000	4,285,000	857,000	3,428,000
목포시	16	3,860	772	3,088
여수시	181	43,000	8,600	34,400
순천시	1,785	425,000	85,000	340,000
나주시	378	90,000	18,000	72,000
광양시	2,941	700,000	140,000	560,000
담양군	420	100,000	20,000	80,000
곡성군	1,012	240,950	48,190	192,760
구례군	1,394	331,900	66,380	265,520
고흥군	441	105,000	21,000	84,000
보성군	927	220,710	44,142	176,568
화순군	441	105,000	21,000	84,000
장흥군	1,512	360,000	72,000	288,000
강진군	274	65,190	13,038	52,152
해남군	1,193	283,855	56,771	227,084
영암군	1,462	348,000	69,600	278,400
무안군	325	77,455	15,491	61,964
함평군	999	237,790	47,558	190,232
영광군	564	134,150	26,830	107,320
장성군	233	55,500	11,100	44,400
완도군	84	20,005	4,001	16,004
진도군	431	102,635	20,527	82,108
신안군	987	235,000	47,000	188,000

8 친환경농산물 잔류농약검사 지원

(단위 : 천원)

시군	사업량 (건)	사 업 비		
		계(100%)	도비(25%)	시군비(75%)
계	5,330	800,000	200,000	600,000
목포시				
여수시	85	12,800	3,200	9,600
순천시	213	32,000	8,000	24,000
나주시	427	64,000	16,000	48,000
광양시	192	28,800	7,200	21,600
담양군	192	28,800	7,200	21,600
곡성군	320	48,000	12,000	36,000
구례군	160	24,000	6,000	18,000
고흥군	213	32,000	8,000	24,000
보성군	234	35,200	8,800	26,400
화순군	181	27,200	6,800	20,400
장흥군	160	24,000	6,000	18,000
강진군	160	24,000	6,000	18,000
해남군	480	72,000	18,000	54,000
영암군	320	48,000	12,000	36,000
무안군	320	48,000	12,000	36,000
함평군	320	48,000	12,000	36,000
영광군	320	48,000	12,000	36,000
장성군	106	16,000	4,000	12,000
완도군	106	16,000	4,000	12,000
진도군	394	59,200	14,800	44,400
신안군	427	64,000	16,000	48,000

9 논벼 재배농가 왕우렁이 공급사업

(단위 : 천원)

시군	사업량 (ha)	사 업 비			
		계	도비	시군비	자부담
계	41,320	5,000,000	500,000	3,568,000	932,000
목포시					
여수시	500	60,000	6,000	45,120	8,880
순천시	760	91,200	9,120	56,160	25,920
나주시	1,530	183,600	18,360	102,240	63,000
광양시	200	24,000	2,400	14,880	6,720
담양군	1,130	135,600	13,560	97,920	24,120
곡성군	1,800	216,000	21,600	157,440	36,960
구례군	270	32,400	3,240	21,600	7,560
고흥군	1,980	237,600	23,760	181,440	32,400
보성군	1,490	178,800	17,880	97,920	63,000
화순군	1,710	205,200	20,520	138,240	46,440
장흥군	3,170	380,400	38,040	283,200	59,160
강진군	2,080	249,600	24,960	177,120	47,520
해남군	3,430	437,600	43,760	350,080	43,760
영암군	4,310	517,200	51,720	350,880	114,600
무안군	2,040	244,800	24,480	189,600	30,720
함평군	2,350	282,000	28,200	185,760	68,040
영광군	3,480	417,600	41,760	268,800	107,040
장성군	920	110,400	11,040	63,360	36,000
완도군	710	85,200	8,520	64,800	11,880
진도군	3,160	394,800	39,480	315,840	39,480
신안군	4,300	516,000	51,600	405,600	58,800

⑩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

(단위 : 천원)

시군	사업량 (ha)	사 업 비		
		계(100%)	도비(20%)	시군비(80%)
계	46,000	17,500,000	3,500,000	14,000,000
목포시	14	5,900	1,180	4,720
여수시	526	220,250	44,050	176,200
순천시	1,952	894,950	178,990	715,960
나주시	859	331,700	66,340	265,360
광양시	2,492	1,138,900	227,780	911,120
담양군	1,153	414,000	82,800	331,200
곡성군	1,710	734,200	146,840	587,360
구례군	1,158	402,800	80,560	322,240
고흥군	3,233	957,450	191,490	765,960
보성군	1,342	555,750	111,150	444,600
화순군	1,441	504,650	100,930	403,720
장흥군	3,129	1,234,350	246,870	987,480
강진군	1,790	538,900	107,780	431,120
해남군	5,284	1,811,650	362,330	1,449,320
영암군	3,944	1,642,800	328,560	1,314,240
무안군	2,548	855,300	171,060	684,240
함평군	1,851	912,250	182,450	729,800
영광군	2,401	842,250	168,450	673,800
장성군	505	237,350	47,470	189,880
완도군	770	259,950	51,990	207,960
진도군	3,448	1,126,000	225,200	900,800
신안군	4,450	1,878,650	375,730	1,502,920

11 친환경농업 기반구축 사업

(단위 : 천원)

시군	사업량 (개소)	사 업 비				
		계(100%)	국비(30%)	도비(25%)	시군비(25%)	자담(20%)
계	9개소	8,530	2,559	2,134	2,134	1,705
목포시						
여수시						
순천시						
나주시	1	978	293	245	245	196
광양시						
담양군						
곡성군						
구례군						
고흥군	1	947	284	237	237	189
보성군	3	2,867	860	717	717	573
화순군	1	739	222	185	185	148
장흥군						
강진군						
해남군						
영암군	1	1,347	404	337	337	269
무안군	2	1,652	496	413	413	330
함평군						
영광군						
장성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12 친환경농산물 계약재배 청년농가 육성

(단위 : 천원)

시군	사업량 (개소)	사 업 비			
		계(100%)	도비(%)	시군비(%)	자담(%)
계		0	0	0	0
목포시					
여수시					
순천시					
나주시					
광양시					
담양군					
곡성군					
구례군					
고흥군					
보성군					
화순군					
장흥군					
강진군					
해남군					
영암군					
무안군					
함평군					
영광군					
장성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13 유기농 생태마을 육성사업

(단위 : 천원)

시군	사업량 (개소)	사 업 비			
		계(100%)	도비(45%)	시군비(45%)	자담(10%)
계	2	1,000,000	450,000	450,000	100,000
목포시					
여수시					
순천시					
나주시					
광양시					
담양군					
곡성군					
구례군					
고흥군	1	500,000	225,000	225,000	50,000
보성군	1	500,000	225,000	225,000	50,000
화순군					
장흥군					
강진군					
해남군					
영암군					
무안군					
함평군					
영광군					
장성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14 유기농 생태마을 활성화

(단위 : 천원)

시군	사업량(개소)	사 업 비			
		계(100%)	도비(15%)	시군비(70%)	자담(15%)
계	0	0	0	0	0
목포시					
여수시					
순천시					
나주시					
광양시					
담양군					
곡성군					
구례군					
고흥군					
보성군					
화순군					
장흥군					
강진군					
해남군					
영암군					
무안군					
함평군					
영광군					
장성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15 친환경 과수·채소 전문단지 조성 지원

(단위 : 천원)

시군	사업량 (개소)	사 업 비			
		계(100%)	도비(21%)	시군비(49%)	자담(30%)
계	6	2,856,000	599,760	1,399,440	856,800
목포시					
여수시					
순천시					
나주시	1	400,000	84,000	196,000	120,000
광양시	1	500,000	105,000	245,000	150,000
담양군					
곡성군					
구례군					
고흥군	1	456,000	95,760	223,440	136,800
보성군					
화순군					
장흥군					
강진군					
해남군					
영암군	1	500,000	105,000	245,000	150,000
무안군					
함평군	1	500,000	105,000	245,000	150,000
영광군					
장성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1	500,000	105,000	245,000	150,000

16 친환경농산물 생산·유통 인프라 구축

(단위 : 천원)

시군	사업량(개소)	사 업 비			
		계(100%)	도비(45%)	시군비(15%)	자담(40%)
계	3	1,100,000	450,000	310,000	340,000
목포시					
여수시	1	100,000	45,000	15,000	40,000
순천시					
나주시					
광양시					
담양군					
곡성군					
구례군					
고흥군					
보성군					
화순군					
장흥군	1	500,000	180,000	220,000	100,000
강진군					
해남군					
영암군					
무안군					
함평군					
영광군					
장성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1	500,000	225,000	75,000	200,000

17 친환경 과수농가 비가림하우스 시설 지원

(단위 : 천원)

시군	사업량 (㎡)	사 업 비			
		계(100%)	도비(15%)	시군비(50%)	자담(35%)
계	35,220	880,500	132,075	440,250	308,175
도 유보액	9,501	237,525	35,629	118,762	83,133
목포시					
여수시					
순천시					
나주시					
광양시					
담양군					
곡성군	2,000	50,000	7,500	25,000	17,500
구례군					
고흥군					
보성군	2,000	50,000	7,500	25,000	17,500
화순군	9,939	248,475	37,271	124,238	86,966
장흥군	4,500	112,500	16,875	56,250	39,375
강진군					
해남군	3,650	91,250	13,688	45,625	31,938
영암군	1,650	41,250	6,188	20,625	14,438
무안군					
함평군					
영광군					
장성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1,980	49,500	7,425	24,750	17,325

18 친환경 포트육묘 이앙기 공급 지원

(단위 : 천원)

시군	사업량(대)	사 업 비			
		계(100%)	도비(15%)	시군비(45%)	자담(40%)
계	20	1,360,000	204,000	612,000	544,000
목포시					
여수시					
순천시					
나주시	1	68,000	10,200	30,600	27,200
광양시					
담양군					
곡성군					
구례군					
고흥군	5	340,000	51,000	153,000	136,000
보성군	1	68,000	10,200	30,600	27,200
화순군					
장흥군	2	136,000	20,400	61,200	54,400
강진군					
해남군	3	204,000	30,600	91,800	81,600
영암군					
무안군	1	68,000	10,200	30,600	27,200
함평군	1	68,000	10,200	30,600	27,200
영광군					
장성군	1	68,000	10,200	30,600	27,200
완도군					
진도군	5	340,000	51,000	153,000	136,000
신안군					

⑲ 친환경 중경제초기 공급 지원(신규)

(단위 : 천원)

시군	사업량 (개소)	사 업 비			
		계(100%)	도비(15%)	시군비(35%)	자담(50%)
계	126	945,000	141,750	330,750	472,500
목포시					
여수시	2	62,000	9,300	21,700	31,000
순천시					
나주시	3	7,000	1,050	2,450	3,500
광양시					
담양군	4	40,500	6,075	14,175	20,250
곡성군	1	31,000	4,650	10,850	15,500
구례군					
고흥군	12	72,500	10,875	25,375	36,250
보성군	1	31,000	4,650	10,850	15,500
화순군	10	89,000	13,350	31,150	44,500
장흥군	6	24,000	3,600	8,400	12,000
강진군	2	8,000	1,200	2,800	4,000
해남군	14	127,000	19,050	44,450	63,500
영암군	24	115,500	17,325	40,425	57,750
무안군					
함평군					
영광군	6	21,500	3,225	7,525	10,750
장성군	4	13,500	2,025	4,725	6,750
완도군	2	8,000	1,200	2,800	4,000
진도군	6	75,500	11,325	26,425	37,750
신안군	29	219,000	32,850	76,650	109,500

20 친환경 과수농가 해충방제기 지원(신규)

(단위 : 천원)

시군	사업량 (개소)	사 업 비			
		계(100%)	도비(15%)	시군비(35%)	자담(50%)
계	583	540,000	81,000	189,000	270,000
도 유보액		112,400	16,860	39,340	56,200
목포시					
여수시	12	8,400	1,260	2,940	4,200
순천시					
나주시	40	16,000	2,400	5,600	8,000
광양시	30	12,000	1,800	4,200	6,000
담양군	7	8,200	1,230	2,870	4,100
곡성군	10	22,000	3,300	7,700	11,000
구례군					
고흥군	102	49,800	7,470	17,430	24,900
보성군	9	12,600	1,890	4,410	6,300
화순군	51	63,600	9,540	22,260	31,800
장흥군	22	8,800	1,320	3,080	4,400
강진군					
해남군	203	156,800	23,520	54,880	78,400
영암군	37	20,200	3,030	7,070	10,100
무안군					
함평군	11	17,000	2,550	5,950	8,500
영광군	5	7,400	1,110	2,590	3,700
장성군	25	15,400	2,310	5,390	7,700
완도군	12	4,800	720	1,680	2,400
진도군	1	400	60	140	200
신안군	6	4,200	630	1,470	2,100